

'96

경 기 향 토 사 학

창 간 호

전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96

경 기 향 토 사 학

전 국 문 화 원 연 합 회 경 기 도 지 회

目 次

1. 百濟 建國過程의 諸問題	金 玟 秀	1
2. 穉經의 저술동기에서 본 實學의 한 모습	홍 정 덕	37
3. 燕山君 禁標碑 研究	鄭 東 一	49
4. 許眉叟 金石文의 秀作, 李處士 墓表에 관한 研究	李 宇 衡	97
5. 수원부의 나무와 교량	정 인 숙	113
6. 富川 복사골 民俗 놀이의 研究	蘇 鎭 燮	151
7. 茶山 丁若鏞의 繪畫觀에 관한 研究	林 炳 圭	171
8. 休庵과 牛溪의 生涯와 文學的 연관성에 대하여	성 희 모	191
9. 七支刀 銘文 解讀을 考察해 본 百濟의 對倭 關係	安 國 承	215
10. 閨門要覽(翻譯)	姜 眞 淑	229

百濟 建國過程의 諸問題

金 玟 秀*

目 次

머리말

I. 馬韓·蓋馬國·蓋馬韓·蓋國의 考察

II. 朝鮮百濟의 考察

III. 扶餘百濟의 考察

IV. 慰禮城의 考察

맺는말

머 리 말

百濟의 건국과정은 古代史의 難題로 남아있다. 『三國史記』에서는 高句麗와 같은 계통의 扶餘族으로서 兄弟說話를 根幹으로 하여 해석하였고, 中國史書에서는 扶餘의 단일계통인 仇台를 始祖로 하여 설명하고 있다. 國名에 있어서도 前纂된 『後漢書』 『三國志』에서는 伯濟로 나타나며 다음의 史書에서는 百濟로 明記되어 있어서 의혹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또한 中國大陸에서도 相距한 지역에서 百濟의 흔적들이 歷史書에 나타나고 있어서 百濟史에 대한 의혹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대체로 百濟는 馬韓의 屬國으로부터 출발하였다고 한다. 百濟와 연관된 馬韓의 名稱 역시 概念을 정리할 수 없었다. 馬韓이 箕子朝鮮遺民의 정착 이전에 있었던 名稱인지, 아니면 箕子朝鮮遺民에 의하여 稱名된 것인지도 史書마다 다른 의미로 表記하고 있다. 압록강유역에서도 馬韓이 나타나며 近 10세기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相距한 지역에 위치한 馬韓을 어떻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가. 또한 馬韓과 音似한 蓋馬韓(國)은 어떠한 계통에 있는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 韓半島의 古代史는 中國大陸의 歷史의 波長에 놓여 있었다. 中國의 팽창은 韓半島의 歷史를 변화시켰으며 歷史의 波長에서 발생한 遺民들이 韓半島 유입을 가속화시켰다. 또한 韓族들의 각성을 촉구하여 反波長을 일으켜 나갔다. 따라서 百濟史의 研究는 韓半島의 歷史가

* 九里文化院 鄉土史研究所 所長

開始하는 古朝鮮時代에서부터 소급하여야 하고 다시 줄기를 찾아 내려와야 한다. 이러한 개괄적인 방법은 百濟의 건국과정이 유기적으로 파악되어서 좀 더 百濟의 실체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箕子朝鮮의 末王 準의 南來에 관계된 馬韓, 압록강유역에 나타나는 蓋馬韓, 古朝鮮 이전의 蓋國은 어떠한 分類에 속하며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漢의 침입에도 1여년을 항거한 古朝鮮의 세력이 歷史의 章에서 어떻게 단절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전제되어야 한다. 衛滿의 침입으로 箕子朝鮮의 末王 準이 南來하여 馬韓을 성립하는 여하한 계기가 되었고, 唐의 高句麗 攻略으로 渤海가 歷史의 脈을 이은 사실은 주지하는 바이므로 이러한 의문은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古朝鮮遺民이 百濟의 건국과 어떤 연관이 있을 유혹을 느끼는 바, 中國史書에 나타나는 古朝鮮遺民의 동향은 세밀히 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의 韓半島 경영은 어떠한 정책에서 추구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종합적인 이해와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中國史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百濟 始祖仇台論에 접근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扶餘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地政學的 위치에서 오는 扶餘의 歷史는 단편적인 史料에 국한되어 있지만 주목할 필요가 있다. 百濟의 건국에 직접 관계가 있는 扶餘族의 이동경로와 그 시기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扶餘史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扶餘族에 의한 百濟의 건국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資治通鑑』 晉紀에서 燕의 慕容皝에게 복속되므로써 4세기 중엽에 자취를 감춘 扶餘가 어떻게 그 이전 漢江流域에서 百濟라는 國名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은 면밀히 정리되어서 해답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扶餘族이 이동되어야 하는 원인과 필요성이 규명되어야 하고 漢江流域의 정세에 대한 고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먼저 유입된 古朝鮮遺民과 토착 韓族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中國郡縣과의 이해관계도 설명되어야 한다. 이러한 百濟의 건국과정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시대적인 상황과 部族의 分類의 방법을 택하여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本考에서는 古朝鮮遺民에 의하여 건국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伯濟를 朝鮮百濟라고 하였으며 扶餘系統의 百濟를 扶餘百濟라고 하여 단락을 따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朝鮮百濟와 扶餘百濟의 연결고리가 되는 慰禮城에 대한 이해가 따라야 한다. 慰禮의 名稱은 溫祚條에서만 쓰이다가 무려 263년이 지난 責稽王 元년에 나타나므로써 의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外國史書인 『日本書紀』에서도 慰禮國王이 明記되어 있어서

史料로써 신빙성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慰禮城은 어떠한 概念에서 연유한 城名인가 하는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百濟의 初都로써 검증되어야 하며 朝鮮·扶餘百濟에서 어떠한 유사관계로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써 慰禮城의 위치를 밝히는 단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질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中國史書와 기존의 百濟史를 조합하여 『三國史記』를 편찬한 찬자들의 史觀을 검토함으로써 百濟 건국과정의 의문점들을 심층있게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史料批判과 검증을 거쳐서 새로운 歷史認識의 바탕을 마련하므로써 百濟 건국과정은 재정립되어 질 것으로 사료된다.

Ⅰ. 馬韓·蓋馬國·蓋馬韓·蓋國의 考察

百濟의 開始는 馬韓의 屬國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定說이다. 이 때의 馬韓은 目支國을 盟主國으로 하는 三韓 중에서 一國을 지칭한다. 馬韓은 箕子朝鮮의 末王 準에 연관된 나라인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馬韓의 國名이 準의 南來 이전에 目支國을 위시한 小國들의 연합체로 존재하고 있었는지, 準의 南來에 의하여 群小國들을 어떠한 관계 여하로 묶은 國名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三國志』에서는 辰韓과 弁辰을 구별하면서도 韓條에 馬韓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將其左右宮人走入海, 居韓地, 自號韓王」이라고 하여 韓地에는 準 이전에 馬韓이 성립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三國志』이후에 編纂된 『後漢書』에서는 「攻馬韓, 破之, 自立爲韓王」이라고 하여 準 이전에 馬韓이 존재하였다고 표기하고 있다. 馬韓에 대한 검증은 『三國遺事』의 저자 一然에 의하여 시도되었다. 一然은 馬韓이 高句麗 또는 百濟와 같다는 一說을 비판하고¹⁾ 「…越海, 而南至韓之, 開國號馬韓」이라고 하여 準에 의하여 馬韓의 國名을 開始한 것으로 단언하였다. 準의 南來 先後에 있어서 馬韓의 존재 여부는 정황적 상황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秦의 流民流入說에 근거한 辰韓의 성립과정에서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라고 하여 馬韓의 東쪽 땅을 할애받아서 辰韓이 開始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²⁾ 秦의 流民들은 漢이 성립된 BC. 206년

1) 『三國遺事』卷第一 馬韓 「崔致遠云…馬韓麗也, …辰韓羅也, …以王準言之耳, 以此知東明之起, 已并馬韓而因之矣, 故稱麗爲馬韓, 今人或認金山, 以馬韓爲百濟者, 蓋誤濫也, 麗地自有邑山, 故名馬韓也」

2) 『三國志』魏書東夷傳 辰韓 「辰韓在馬韓之東, 其耆老傳世, 自言古之亡人避秦役, 來適韓國, 馬韓割其東界地與之…今有名之爲秦韓者」

이전에 발생하였다. 秦의 流民들이 馬韓의 東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辰國을 경유하지 않을 수 없다. 辰國은 衛滿朝鮮 末王 右渠 때에 歷谿卿의 「東之辰國」(三國志)으로 갔다는 기사로 보아 BC. 108년까지 존재가 확인되고 있다. 箕子朝鮮 末王 準이 韓地 정착은 BC. 194년이므로 馬韓이 準 南來 이전에 성립되어 있었다면 적어도 BC. 206년 경에는 秦의 流民뿐만 아니라 辰國도 간섭할 수 있는 小國들의 연합체인 古代國家를 형성하였다는 虛說이 성립하게 된다. 이러한 古代國家를 형성한 馬韓을 遺民集團인 準이 攻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準이 정착한 韓地에는 目支國(月支國:三國志)이 있었다. 馬韓이라는 國名이 添稱되어서 目支國이 일개 盟主國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결과에 따른 토착집단(目支國)과 流入集團(準)과의 종속관계를 밝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 시기 중국은 강력한 통일제국(秦·漢)의 출현으로 많은 流民들이 韓半島에 유입되는 상황이었다. 衛滿의 箕子朝鮮 찬탈에 의한 準이 目支國으로 南來하는 과정이나 秦의 流民들이 辰韓을 성립시키는 과정은 중국의 팽창정책에 따른 波長의 여파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韓地에서 北方의 流入民(古朝鮮·北中國)들이 南來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토착집단 간에 그들을 배척할만한 小國聯盟體가 형성되고 있지 않았음을 뜻한다. 따라서 『後漢書』에서 馬韓을 攻破하였다는 것은 目支國을 襲取한 사실을 『後漢書』 찬자인 范曄의 時代에서 想起할 수 있는 馬韓으로 혼동한 것이다. 韓地에서 馬韓을 선언한 準은 기존의 目支國을 盟主國으로 하였고, 辰國을 완충지역으로 하여 衛滿朝鮮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였다. 또한 辰國에 유입된 流民들을 馬韓의 東쪽으로 안착시키므로써 部族集團 간의 혼란을 진정시켰다. 따라서 韓地에서 小國들의 연맹체를 구성한 準은 遺民集團의 우월성을 내세워 그들의 部族名인 馬韓으로 國號를 定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馬韓이 箕子朝鮮遺民들의 族名과 관계가 있다면 古朝鮮의 領域에 있었던 馬韓·蓋馬國·蓋馬韓·蓋國의 실체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A) 『後漢書』 卷五 安帝紀 第五 「建光元年(AD121)十二月, 高句麗, 馬韓, 穢貊 圍玄菟城, 夫餘王遣子, 與川郡并力討破之」(後漢書, 句麗條同)

(B) 『宋書』 卷四九一 定安國(AD970~986)傳 「定安國本馬韓之種, 爲契丹所攻破, 其酋糾餘衆, 保于西鄙, 建國改元, 自稱定安國…臣本高麗舊壤, 渤海遺黎…」

위 기사는 馬韓의 존재가 2세기 초에서부터 10세기까지 압록강유역에서 포착되는 문헌

사료이다. (A)의 기사는 高句麗 6代 太祖王 때에 遼東으로 진출하려는 高句麗가 中國郡縣인 玄菟郡과의 接戰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高句麗·馬韓·穢貊이 연합하여 玄菟城을 공격하였고, 夫餘는 玄菟郡을 도와서 高句麗·馬韓·穢貊을 破하였다. 다음 해인 延光 元年 (AD122)에도 夫餘는 玄菟郡을 도와서 高句麗·馬韓·穢貊을 攻破하였다. 玄菟郡의 영역을 시대에 따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漢書』地理志에서 上殷臺·西蓋馬·高句麗의 3縣으로 축소되었던 적이 있었고 玄菟城은 通溝平野에 있는 것으로 비정되고 있다. 穢貊은 前漢時代에 압록강 상·중류 지역에서 高句麗와 混居하고 있었다. 따라서 馬韓 역시 압록강유역을 벗어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馬韓의 위치는 (B)의 기사에서 확인될 수 있다. 定安國은 渤海遺民이 세운 後渤海國의 변신이다. 定安國은 AD. 970년 宋에 史臣을 보내면서 烈氏王系를 표방하여 나타난다. 定安國은 압록강유역에서 발흥을 꾀하였고 遼에 의하여 멸망할 때까지 高麗와도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定安國이 馬韓의 種族임을 천명하였다는 것은 압록강유역에서 10세기까지 馬韓의 種族集團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단서가 된다. 압록강유역의 馬韓은 準이 세운 目支國의 馬韓과는 相距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두 馬韓 모두 古朝鮮의 영역에서 비롯된 國名이라는 점은 주목되어야 한다.

- (A) 『三國史記』 高句麗紀 大武神王九年(AD26)「冬十月, 王親征蓋馬國殺其王, 慰安百姓…十二月, 句茶國王聞蓋馬滅, 懼害及己, 舉國來降」
- (B) 『漢書』地理志 玄菟郡「…上殷臺, 西蓋馬, 高句麗」
- (C) 『後漢書』東夷列傳 東沃沮「東沃沮在高句麗蓋馬大山之東(蓋馬, 縣名, 屬玄菟郡, 其山在今平壤城西, 平壤卽王險城也…)」

위 기사 (A)는 高句麗 初期 영토확장을 하여 나아가는 과정에서 주변 국가인 蓋馬國과 句茶國을 정벌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高句麗의 건국과 영토확장은 압록강유역에서 이루어졌으므로 蓋馬國은 압록강유역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B)의 기사에서 西蓋馬는 玄菟郡의 3縣 중에서 하나의 縣으로 東·西蓋馬가 분리된 광대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漢이 東蓋馬에게까지 영역이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西蓋馬가 玄菟郡의 東界가 되는 것이다. 후일 신흥세력으로 나타나는 高句麗가 영역을 넓히면서 遼東으로 진출하려고 한다면 玄菟郡과의 충돌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蓋馬의 지역이 압록강유역에 있었다는 것은 (C)의 기사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蓋馬大山の 위치가 平壤城의 西쪽으로 비

정하였다면 압록강 하류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漢書』地理志의 西蓋馬縣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東蓋馬는 압록강을 거슬러 중·상류지역에 있었으며 전체의 蓋馬(國)는 압록강을 근거지로 하는 토착 部族集團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蓋馬가 앞에서 살핀 馬韓과 문헌에 보이는 시기가 비슷하며 압록강을 근거로 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 의문의 여지가 있다. 또한 音似한 것으로도 연결이 되는 蓋馬韓이 『周書』『北史』에서 百濟의 건국과 관계되어 나타나는데 馬韓·蓋馬의 原初의인 族名일 것이라는 유혹을 느낀다.

(A) 『周書』異域列傳 百濟 「百濟者，其先蓋馬韓之屬國，夫餘之別種，有仇台者，始國於帶方」

(B) 『北史』列傳 百濟 「百濟之國，蓋馬韓之屬也，出自索離國」

위의 기사는 蓋馬韓의 「蓋」를 부사로 분리하여 百濟가 目支國을 盟主國으로 하는 馬韓의 屬國으로 파악되어 있었다. 그러나 百濟의 根原을 밝히는데 屬國 云云부터가 합당하지 않을 뿐더러 馬韓(南)－夫餘(北)－帶方(南)의 南來順序가 「南－北－南」으로 혼동되고 있다. 蓋馬韓을 하나의 國(族)名으로 본다면 ‘百濟는 그 선대가 蓋馬韓의 나라에 속하였다(北). 夫餘의 별종으로써(北) 仇台라는 사람이 처음 帶方에 나라를 세웠다(南).’라고 하여 先代의 蓋馬韓에서부터 帶方까지 南來過程이 맞을 뿐 아니라 百濟의 근원과 관계 없는 馬韓(目支國)의 屬國이라는 불필요한 해석을 없앨 수 있다. 또한 (B)의 기사에서 索離國은 夫餘의 건국설화와 관계되어서 나타나는 原初의 國名이다.³⁾ 즉 百濟의 始原을 索離國에서부터 출발하여 夫餘의 줄기에서 救하는 것으로써 『北史』 편찬 당시의 百濟(泗泚)가 蓋馬韓의 족속으로써(압록강유역) 원래는 索離國에서 나왔다(만주), 라고 하여 扶餘族 百濟의 이동경로를 逆順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蓋馬韓(國) 역시 馬韓·蓋馬와 같이 압록강 유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地境에 관계된 種族集團임을 알 수 있겠다. 『周書』(편찬대상기간: AD557~581) 『北史』(“ AD386~618)가 百濟의 泗泚時代에서 史料를 제공받았을 것이므로 扶餘百濟의 주체성을 밝힌 聖王 때의 南扶餘와 연관되어 추정하더라도 百濟人 스스로 馬韓의 속국에서부터 출발하였다고 비하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두 史書(周書·北史)의

3) 『後漢書』東夷列傳 夫餘國 「初·北夷索離國王出行，其侍兒於後妊身，王還，欲殺之」

『三國志』魏書東夷傳 魏略 「舊志又言，昔北有高離之國者，其王者侍婢有身，王欲殺之」

蓋馬韓은 扶餘의 根原을 말하여 目支國의 馬韓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A) 『山海經』海內北經「蓋國在鉅燕南，倭北，倭屬燕」

(B) 『上書』海內北經「朝鮮在列陽東，海北山南，列陽屬燕」

『上書』海內經「東海之內，北海之隅，有國名曰朝鮮，天毒，其人水居，倭人愛之」

古書에서 나타나는 韓半島의 國名으로서 朝鮮 말고도 靑丘·震檀·蓋國이 있다. 靑丘, 震檀은 東쪽의 나라라는 뜻으로 國內外 史書에서 오래 동안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通稱으로 언급되어 왔었다.⁴⁾ 그러나 두 기점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위치를 파악한 『山海經』의 蓋國과 朝鮮은 中國正史인 『史記』에서부터 朝鮮으로 통일되어서 蓋國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蓋國과 朝鮮이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어서 朝鮮으로 단일화하는가 하는 의문의 여지가 남게 된다. 먼저 蓋馬韓이 압록강유역을 근거로 하는 族名임을想起한다면, 蓋國 또한 燕의 남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蓋馬韓과 같은 영역에 존재하였던 蓋馬韓의 先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蓋國은 蓋馬韓(國)의 축약으로써 중국 전통 歷史書가 편찬되기 이전에 單音節을 허용한 國名으로 단정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山海經』에 나타나는 朝鮮의 위치는 列陽을 遼東으로, 北海를 渤海灣으로 추정하는 견해에 따르면⁵⁾ 遼東의 東쪽에서 渤海에 이르는 지역으로 蓋國의 西쪽에 인접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근접한 지역에 있었던 蓋國과 朝鮮이 하나의 國名인 朝鮮으로 합쳐되었을 가능성은 『三國志』와 『三國遺事』에서 箕子朝鮮 末王 準이 南來하여 (蓋)馬韓의 族名으로 國號를 선언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山海經』의 같은 海內北經 條에 속해 있는 朝鮮과 蓋國은 중국의 팽창정책에 밀려서 유입과 혼합을 거치면서 하나의 國名으로 統稱될 소지는 충분하다고 하겠다. 朝鮮과 蓋國이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統稱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渤海灣에 있는 朝鮮이 중국에 근접하다는 사실과 蓋國이 箕子朝鮮의 族名인 (蓋)馬韓과 연관되고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어느 시기에 여하한 계기로 統稱된 朝鮮과 蓋國은 國名으로써 中國人의 中華觀에 입각한 朝鮮이 통용되었고, 古朝

4) 『山海經』海外東經「靑丘國在其北，其狐四足九尾，一曰在朝陽北」

『新唐書』北狄列傳 渤海「乃建國，自號震國王」

5) 『山海經』鄭在書譯解 1985, 「海內北經」269쪽, 「海內經」319쪽.

鮮 자체의 주체는 蓋國을 구성하는 (蓋)馬韓族이라고 할 수 있겠다.⁶⁾ 따라서 蓋國을 파악하는 것은 古朝鮮을 어떠한 種族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

(A) 『後漢書』東夷列傳 濊「濊及沃沮, 句麗, 本皆朝鮮之地也…元朔元年(BC128)濊郡

南閭等, 畔右渠, 率二十八萬口詣遼東內屬, 武帝以其地爲蒼海郡, 數年乃罷」

(B) 『三國志』東夷傳 濊傳「今朝鮮之東皆其地也…漢武帝伐滅朝鮮, 分其地爲四郡, 自是之後, 胡·漢稍別」

위 (A)의 기사에서 濊·沃沮·高句麗가 모두 古朝鮮의 영역에 있었다고 하였다. 古朝鮮의 영역에서 濊郡 南閭가 이탈하여 遼東에 귀속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濊郡 南閭 等の 漢의 遼東에 귀속은 20년 후에 漢이 朝鮮을 정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古朝鮮 部族集團을 와해시키고 蒼海郡을 설치하여 古朝鮮을 압박하려는 漢의 宜撫工作으로 볼 수 있다. 南閭 等이 遼東에 귀속한 28萬口의 영역은 대단한 것이다. 漢이 武帝가 이 지역에 蒼海郡을 설치하려다가 지역의 방대함에 그만 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濊族인 南閭가 古朝鮮에서 이탈하므로써 설치되었던 蒼海郡은 遼東과 연결되어 古朝鮮이 內陸으로 향하는 東北 경계를 감싸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古朝鮮은 광대한 蒼海郡 지역의 濊族集團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된다. 南閭가 이탈한 후에 準에 의해 통치되었던 古朝鮮 영역의 族名은 (B)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三國志』濊傳에서 '朝鮮의 東쪽은 모두 濊의 땅이다. ……漢四郡을 설치한 이후에 오랑캐와 漢族의 구별이 생겼다.' 라고 하였다. 이 때의 朝鮮은 古朝鮮 전체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朝鮮을 古朝鮮 전체의 영역

6) 『尙書大典』과 『史記』의 「宋微子世家」에서 근거를 가지고 있는 '箕子東來說'은 『三國志』에서 史料를 제시하므로써 箕子朝鮮의 역사적 실체를 확고히 하였다. 그러나 本考에서 살펴본바 準이 衛滿에게 쫓겨 바다를 건너 韓地에 세운 나라는 압록강지경의 토착부족인 (蓋)馬韓族이 族名에 따라 稱名된 馬韓이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箕子朝鮮의 末王이라고 일컬어지는 準은 기실 箕子와는 혈연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準이 통치하였다고 하는 箕子朝鮮의 國名 역시 準과는 관계가 없다. 準이 箕子の 후손이며 箕子朝鮮의 통치자였다면 韓地로 도피하여 나라를 세운 準은 마땅히 箕子國이거나 朝鮮의 國名을 계승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三國志』의 韓條는 (馬)韓과 漢郡縣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을 한 세기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三國志』의 저자인 陳壽는 馬韓의 실체를 잘 알고 있었다. 陳壽는 馬韓의 주체가 압록강지경의 토착부족인 蓋馬韓族임을 파악하고서 '箕子東來說'의 허구를 미봉하려고 하였다. 즉 魏略에서 「不與朝鮮相往來」와 韓條의 「其後絕滅, 今韓人猶奉其祭祀者」의 기사로 僞作하므로써 '箕子東來說'의 의문을 準에서부터 단절시켜서 再論의 여지가 없도록 한 것이다. 그러므로 衛滿에게 빼앗겼다고 하는 準의 箕子朝鮮은 (蓋)馬韓族의 蓋馬國이거나 馬韓이라고 고쳐져야 한다. 또는 朝鮮이라는 國名이 膾炙되었으므로 馬韓朝鮮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箕子東來說'은 「洪範九疇」「八條法禁」등 문화의 유입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서 '文化東來說'이 타당할 것이다.

으로 간주한다면 漢四郡 밖의 胡와 漢四郡이 구별되었다고 설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漢이 古朝鮮 영역에 있는 古朝鮮遺民들을 내쫓고 漢族으로만 漢四郡을 설치할 수 없는 일이며 엄연히 漢四郡의 漢族은 古朝鮮遺民의 지배계급으로 군림하였다. 그러므로 이 때의 朝鮮은 樂浪郡이 治所가 있는 古朝鮮의 都邑을 말하고 있다. 古朝鮮의 영역에 漢四郡이 治所를 두므로써 胡와 漢의 구별이 생겼다는 것이며 胡는 漢傳에 있는 濊族을 말한다. 따라서 胡로 불리우는 濊族은 古朝鮮의 토착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古朝鮮의 영역을 濊族의 거주지로 상정하여 편성된 두 史書의 濊條는 古朝鮮을 濊族 연합체적인 성격으로 파악하고 있다. 古朝鮮의 濊族集團에서 처음 南遷의 이탈이 있었다. 古朝鮮의 終末에 右渠王을 살해하고 漢에 복속한 「尼谿相參」의 「尼谿」를 「濊(族)」의 反切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⁷⁾ 이러한 견해가 맞다면 古朝鮮은 濊族의 분열로 인하여 멸망하였다는 추론이 성립하게 된다. 그러므로 古朝鮮의 自名은 濊族의 나라라는 뜻으로 濊國이며 濊國의 표기가 『山海經』에서 蓋國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蓋國·蓋馬韓·蓋馬國·馬韓은 시대에 따라 세력이 축소되었거나 이동이 있었지마는 압록강유역에서 古朝鮮의 중심을 이루었던 濊族集團의 명칭이다. 中國史書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리 표기하였으나 濊族의 단일 概念을 표상한 것에는 차이가 없었다. 箕子朝鮮의 末王 準이 南來하여 目支國에서 馬韓을 선언한 것도 古朝鮮의 自名인 濊族의 蓋國(蓋馬韓)을 계승한 것이다. 또한 古朝鮮의 영역에 잔류한 馬韓은 漢에 복속하는 것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高句麗와 연합하여 漢의 세력에 항거하면서 10세기까지 古朝鮮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Ⅱ. 朝鮮百濟의 考察

百濟의 건국과정에서 가장 난해한 것은 건국설화이다. 中國史書(周書·北史·隋書)에서 나타나는 始祖仇台說은 扶餘百濟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續日本紀』의 始祖都慕說은 『三國史記』 高句麗·百濟紀의 朱蒙說話와 같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려고 한다.⁸⁾ 『三國史記』의 百濟 건국설화는 高句麗의 건국설화와 연계되어 있다. 高句麗의 건국설화는 廣開土大

7) 『海東繹史』 卷第二 衛滿朝鮮 元封二年條「尼谿相參(按尼谿濊音之反)」

8) 『續日本紀』 桓武紀 延歷九年七月條「夫百濟太祖都慕大王者, 日神降靈, 奄扶餘而開國, 天帝授籙 惣諸韓而稱王」

王陵碑에 암각되어 있어서 史料的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⁹⁾ 따라서 『三國史記』에 나타나는 百濟 건국설화를 高句麗의 건국과정과 비교하면서 고찰하려고 한다. 高句麗의 건국은 朱蒙(鄒牟)이 주체가 되었고 烏伊, 摩離, 陝父의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이루어졌다. 이들이 처음 정착한 곳이 沸流水이며 처음 정복한 나라는 沸流水 上流의 토착집단인 松讓의 沸流國이다. 百濟의 건국과정에서는 沸流(兄), 溫祚가 주체가 되고 烏干, 馬黎의 협력을 얻어서 이루어졌다. 이들이 정착한 곳은 兩分되어 兄인 沸流는 해변가인 彌鄒忽에, 동생인 溫祚는 漢江流域 慰禮城에 정착한다. 두 나라의 건국과정에서 주체를 비교하면 선주집단에 있어서 松讓(高句麗)—沸流(百濟), 유입집단에 있어서는 朱蒙—溫祚가 된다. 동조세력은 烏伊—烏干, 摩離—馬黎, 陝父—(·)가 된다. 동조세력에서 高句麗의 陝父에 상응하는 百濟의 인명이 나오지 않는 것은 陝父가 高句麗에 끝까지 충성하지 않고 南韓으로 가버린 사건이 있었다.¹⁰⁾ 『三國史記』 찬자들은 陝父의 행위가 王朝史觀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陝父에 해당하는 百濟의 인명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다. 선주집단을 비교하면 沸流國(高句麗)—彌鄒忽(百濟)이 된다. 沸流國의 松讓이 朱蒙에게 자기의 처지를 낮추어서 한 말에 「寡人僻在海隅」라고 하여 ‘바다옆 벽지에 산다’고 하였다. 이 때의 「海」는 바다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高句麗가 압록강 중류지경에서 開始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므로 沸流水 상류의 沸流國은 바다와는 관계가 없다. 魏의 毋丘儉이 침입하였을 때에 東川王이 피신한 지경을 「逃至海濱」으로 표기한 것으로도 알 수 있듯이 「海」는 바다가 아니고 江邊을 뜻한다.¹¹⁾ 『三國史記』 찬자들은 「寡人僻在海隅」의 文脈에 얽매어서 松讓의 沸流國을 바닷가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따라서 沸流의 先住地를 「土濕水鹹」의 漢江河口 彌鄒忽로 비정한 것이다.¹²⁾

百濟의 건국시기는 高句麗와 百濟의 형제설화를 설정하고 이에 맞추려는 『三國史記』 찬자들의 의도에 의하여 定하여졌다. 高句麗 건국설화에서 朱蒙의 아들 琉璃가 찾아와서 王位를 계승한다. 百濟의 건국설화는 朱蒙의 아들인 沸流·溫祚가 異腹兄인 琉璃가 찾아와서 태자가 되자, 琉璃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 하여 南行하여 나라를 세운다. 高

9) 廣開土大王陵碑 第一面 「惟昔始祖鄒牟王之創其地出自北夫餘」

10) 『三國史記』 高句麗紀 琉璃王二十二年(AD3) 「王聞之震怒, 罷陝父職, 俾司官園, 陝父憤, 去之南韓」

11) 『三國史記』 高句麗紀 東川王二十年(AD246)八月條 「紐由入魏軍詐降曰, 寡君獲罪於大國, 逃至海濱, 措躬無地」에서 東川王이 南·北沃沮로 피신하였을 때의 「海」는 바닷가가 아니고 江邊을 말한다. 廣開土王 元年(AD392)條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而峭絕, 海水環統」의 「海」 역시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三國志』 魏書東夷傳 東沃沮傳에서 바다는 「賓大海而居」라고 하여 大海로 표기하고 있다.

12) 『三國史記』 百濟紀 始祖 溫祚 元年條(BC18) 「沸流不聽, 分其民, 歸彌鄒忽以居之, …沸流以彌鄒土濕水鹹」

高句麗에서 兄인 琉璃가 즉위(BC19)한 다음 해에 아우인 溫祚가 百濟를 開國(BC18)하므로써 高句麗·百濟의 형제서열을 맞추어 놓았다. 이와 같은 두 나라의 형제설화를 根幹으로 하여 볼 때, 百濟 선주집단인 沸流가 高句麗의 토착세력인 沸流國에서 擬人화된 人名인 것은 타당하다. 그렇다면 溫祚는 高句麗의 國名에 연관되어서 의인화된 인명이 되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百濟의 건국과정이 高句麗紀에서 僞作되었음을 검증하였지마는 溫祚의 문제는 다르다. 溫祚의 初都 慰禮城이 溫祚條말고도 責稽王 條, 『日本書記』 雄略紀에서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¹³⁾ 溫祚의 명칭은 百濟의 王系에서도 유사한 점이 없어서 설명할 단서가 없었다. 그러나 沸流가 沸流國에서 의인화된 인명이 확실한 만큼, 溫祚 역시 高句麗가 아닌 先代의 國名에서 의인화되었다. 바로 溫祚는 溫(古)朝鮮의 의인화된 인명으로써 溫朝(朝는帝의지위개념인 祚로대치)로 축약된 古朝鮮遺民 集團의 상징인 것이다. 溫祚의 명칭을 단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古朝鮮遺民들이 韓半島에 유입되는 과정을 검토하므로써 자연히 溫祚의 명칭은 이해되어질 것이다.

百濟의 國名은 十濟, 伯濟, 百濟로 표기되고 있다. 「十」「伯」「百」은 가변적인 接頭言이므로 百濟의 근본은 濟이다.

『隋書』 東夷傳 百濟條 「初以百家濟海, 因號百濟」

라 하여 百家가 바다를 건너갔으므로 나라 이름을 百濟라고 하였다는 百濟國號論을 제시하였다. 百家가 바다를 건너온 사실을 제외하면 百濟의 근원은 齊인 것이다. 單音節로 國名을 定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으로써 齊는 韓半島에서 쓰이는 國名이 아니다. 齊는 周에 의하여 山東省에서 封建된 나라로써 戰國時代 七雄의 하나로 활약하다가 BC. 221년 경에 秦에게 멸망한 나라이다. 그렇다면 百濟의 근원이 중국에 있었다는 실마리가 보이는 것으로써 古朝鮮의 멸망과정과 그로 인한 遺民들이 중국으로 이동되는 경로는 파악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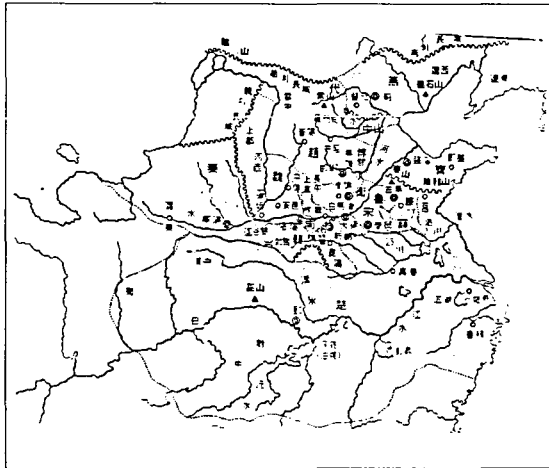
- (A) 『史記』 朝鮮列傳 「天子募罪人擊朝鮮, 其秋, 遣樓船將軍楊僕從齊浮渤海: 兵五萬人, 左將軍荀彘出遼東: 討右渠…樓船將軍齊兵七千人先至王儉, 右渠城守」
- (B) 『史記』 朝鮮列傳 「封參爲漣清侯(集解, 韋昭曰, 屬齊) 陰爲菽菹侯(集解, 韋昭曰,

13) 『三國史記』 百濟紀 責稽王 元年(AD286)條 「扶餘百濟의 考察 原文, 22쪽 참조」

『日本書記』 雄略紀 二十年 「百濟記云, 蓋鹵王之卯年冬, 貊大軍來, 攻大城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慰禮, 國王及后, 王子等 皆沒敵手」

屬勃海) 陝爲平州侯(集解, 韋昭曰, 屬梁父) 長[降] 爲幾侯((集解, 韋昭曰, 屬河東) 最以父死頗有功, 爲溫陽侯(集解, 韋昭曰, 屬齊)」

위의 『史記』의 기사는 『漢書』와 동일하다. 漢은 古朝鮮을 정벌하기 이전에 濊君 南閭集團을 회유하여 古朝鮮에서 이탈시킨 것으로 보아서 古朝鮮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漢이 古朝鮮을 정벌하게 된 직접 동기는 古朝鮮이 古朝鮮 以南의 여러 小國들과 漢과의 交易을 방해한데 있었다.¹⁴⁾(A)의 기사는 漢의 古朝鮮 정벌이 시작되는 상황으로써 遼東에서 陸軍이, 齊(山東省)에서 水軍이 出征하고 있다. 遼東의 陸軍 역시 漢의 募兵이므로 山東省에서 古朝鮮과의 경계가 되는 遼東으로 옮겨졌을 것이다. 漢은 遼西의 燕으로 통하는 陸路를 이용하지 않고 海路를 이용하여 단시일에 募兵된 陸軍을 遼東으로 옮겨졌음을 알 수 있다. (B)의 기사는 漢이 古朝鮮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論功行賞을 실시한 것이다. 이 때 古朝鮮을 배반하고 漢에 복속한 古朝鮮의 관리들에게 功臣이 예로써 領地를 하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集解]에 따르면 이들이 하사받은 지역은 灋濟, 荻菰, 平州, 幾, 溫陽으로써 山東半島를 반경으로 대부분 齊의 지역이거나 인접한 곳이다.¹⁵⁾ 이러한 사실은 漢이 漢四郡을 설치하면서 古朝鮮遺民들을 대거 齊의 지역으로 이동시켰음을 알 수 있다. 즉 古朝鮮遺民들을 燕을 넘어 齊에 이주시키므로써 復國의 의지를 말살하고



지도 1. 戰國時代(세계사대사전, 민중서림)

전쟁에 피폐해진 齊를 복구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므로 漢의 古朝鮮 정벌은 齊에서 시작되었고 齊에서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齊에 유입된 古朝鮮遺民들의 屬縣은 齊인 것이다. 이러한 古朝鮮遺民들은 漢族의 齊와 구별되었을 것이며 중국 전통의 國號로 쓰이는 단음절 齊에 대하여 두 음절을 사용하게 하여 卑稱인 貊齊라고 불렀을 것이다. 山東半島 일대에 이주해 온 古朝鮮遺民들의 세력은 漢에 있어서도 부담이 되었을 것이며 이들을 분산하기

14) 『史記』朝鮮列傳「傳子至孫右渠, 所誘漢亡入滋多, 友未嘗入見: 眞番旁衆國欲上書見天子, 又擁闕不通」

15) 井上秀雄『東アジア民族史』1, 昭和49年, 1974, 39쪽 「灋濟(山東省 臨淄方面), 荻菰(山東省 慶雲의 東쪽), 平州(山東省 萊蕪의 西), 幾(山西省 安邑方面), 溫陽(河南省 鎮平의 南쪽)」

위하여 貊齊의 한 집단이 韓半島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검토되어야 한다.

- (A) 『史記』朝鮮列傳 「左將軍已并兩軍，即急擊朝鮮，朝鮮相路人，相韓陰，尼谿相參，將軍王蚺，相與謀曰：始欲降樓船，樓船今執，獨在將軍并將，戰益急，恐不能與，王又不肯降·陰·陝·路人皆亡降漢，路人道死」
- (B) 『三國志』魏書東夷傳 韓傳 「魏略曰：初，右渠未破時，朝鮮相歷谿卿以諫右渠不用，東之辰國，(漢書，元封三年 夏，尼谿相參，乃使人殺朝鮮王右渠，來降)時民隨出居者二千餘戶，亦與朝鮮貢蓄不相往來」

위 『史記』의 기사는 古朝鮮의 멸망 직전에 古朝鮮의 尼谿相 參 等 지도세력이 右渠王에게 漢에 항복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漢에 투항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三國志』의 기사는 朝鮮相 歷谿卿이 右渠王에게 무엇을 諫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二千餘戶를 이끌고 東쪽 辰國으로 갔다는 내용이다. 또한 부연 설명하여 『漢書』에서의 尼谿相 參이 右渠王을 살해하고 漢에 항복한 사실을 첨가하고 있다. 『史記』나 『三國志』의 기사가 古朝鮮 右渠王 때의 멸망과정을 기술하고 있음으로 『三國志』 歷谿卿이 右渠에게 諫한 사실은 『史記』의 尼谿相 參 等이 漢에 항복할 것을 右渠에게 건의한 사실과 동일한 내용이다. 『三國志』에서 歷谿卿의 기사를 다루면서 『漢書』를 인용하여 尼谿相 參이 右渠王을 살해하고 漢에 투항한 사실을 삽입한 의도 역시 歷谿卿과 尼谿相 參이 어떠한 연관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먼저 尼谿相의 「相」과 歷谿卿의 「卿」은 『漢書』東夷傳에서 「戊狄(古朝鮮)不知官紀，故皆稱相」이라고 하여 朝鮮의 관제를 모르므로 모두 相이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미루어 漢·魏 관제의 명칭변화에 따른 다른 표기일 뿐 동일한 관제이다. 따라서 尼谿·歷谿도 漢과 魏의 시대에 따라서 달리 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海東繹史』는 尼谿를 지명에 연유한 種族名인 濊의 反切로 보고 있다. 尼谿와 音似한 歷谿 또한 시대에 따라 달리 표기될 수 있는 濊의 概念으로 해석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中國史書가 古朝鮮 右渠 時를 다루는 것은 漢과 古朝鮮의 戰時를 말한다. 동양사의 획을 긋는 大戰亂에 二千餘戶를 右渠의 간섭없이 이탈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러한 능력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史記』에서 尼谿相과 더불어 歷谿卿의 활동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史記』의 尼谿相과 『三國志』의 歷谿卿은 동일 인물인 것이다. 『三國志』의 기사에서 歷谿卿을 다루면서 尼谿相 參을 삽입한 의도는 『史記』『漢書』의 찬자들의 既述과 『三國志』의 記述의 단절을

극복하고 史料를 명확히 부연 설명하는데 있었다.

尼谿相 參과 歷谿卿이 동일 인물이므로 歷谿卿이 東쪽 辰國으로 가기 이전의 위치는 尼谿相 參이 封侯를 받은 齊의 山東省을 말한다. 山東半島에서 바다를 건너 韓半島 辰國으로의 진입은 확실한 東쪽 방위를 말하고 있다(東之辰國). 漢은 平壤에 樂浪郡의 治所를 두었으나 韓半島 깊숙히 간섭할 수 없었다. 辰國에는 準이 南來 때에 秦의 流民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古朝鮮遺民 역시 陸路 유입이 있었을 것이며 중국의 팽창정책에 위기감을 느낀 토착 韓族들의 각성이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漢은 韓半島 內의 諸部族의 통합을 저해하므로써 樂浪郡을 보호하려고 하였다. 그러한 漢의 정책은 漢江流域에서 古朝鮮遺民들을 결속하여 토착 韓族과 대립시키려고 하였다.¹⁶⁾ 이러한 漢의 정책에서 선택된 것이 貊齊의 尼谿(歷谿) 參의 濊族集團이다. 參은 古朝鮮의 末王 右渠를 살해하여 『史記』 「侯者年表」에서 으뜸 功臣으로 추대된 충성스러운 漢의 중북이었기 때문이다. 漢江流域에 유입된 參은 「亦與朝鮮貢蕃不相往來」(三國志)라고 하여 朝鮮에 조공하였던 나라와는 交通하지 않으므로써 漢의 意志를 충실히 받들었다. 이러한 연유 또한 中國史家들이 右渠王을 살해한 尼谿 대신 歷谿를 넣어서 의도적으로 신하가 왕을 살해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는지 모르겠다. 『三國史記』 百濟紀 溫祚條에서 「以十臣爲輔翼, 國號十濟」라고 하여 十臣의 추대에 의하여 王位에 올랐다는 것은 參이 王材가 아니었던 사실을 환기하고 있다. 따라서 朝鮮百濟의 건국은 BC. 108년으로 『三國史記』의 百濟 建國紀年 BC. 18년보다 90년이나 앞서있음이 밝혀진 것이다.

『三國志』 魏書東夷傳 韓條에서 馬韓 55國의 一國으로서 伯濟國이 나타나며 『三國志』 이후에 편찬된 『後漢書』 東夷列傳 韓條에서는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이라고 하여 두 史書 모두 伯濟로 표기하고 있다. 『三國志』는 三國時代(AD220~265)의 正史로 陳壽에 의하여 AD. 285년에 완성되었다. 이 해는 後述할 扶餘百濟의 開始 1년 전이므로 陳壽는 扶餘百濟의 실체를 알 수 없었다. 그러므로 『三國志』의 伯濟는 다음에 나타나는 扶餘百濟의 通名인 百濟의 始初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의 伯濟는 중국 齊에 있는 貊齊의 집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우두머리 貊齊로서 漢江流域에 진입한 尼谿(歷谿) 參의 집단을 가

16) 『三國志』 魏書東夷傳 韓傳 「桓·靈帝末(AD166~213) 韓·濊疆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韓國」에서 보는 바와 같이 韓族地域에 濊族이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漢은 韓半島에서 韓族과 濊族을 대립시켜 이 지역에서 古代國家의 출현을 저해하는데 성공하였으나 後漢末期 중국대륙이 혼란할 때에는 韓·濊를 제압하지 못하였다.

리키고 있다. 參의 집단을 중국 齊에 있는 古朝鮮遺民 집단인 貊齊들과 구별하여 先의 概念으로 伯齊라고 하였고 「東之辰國」하여 바다를 건너온 사실을 明記하여 伯濟라고 命名한 것이다. 그러나 伯濟 역시 貊齊 중의 一國으로 「貊」의 概念을 가지고 있으므로 百척의 배로써 漢郡縣인 樂浪에 충성하려고 왔던 사실을 美化하여 百濟라는 美稱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¹⁷⁾ 『後漢書』가 范曄(AD398~445)에 의하여 편찬될 당시에는 扶餘百濟는 宋과 國書를 교환하고 있었으므로 范曄은 伯濟(朝鮮)와 百濟(扶餘)를 알고 있었다. 百濟의 國名으로 중국과 通交한 최초의 使行記錄은 近肖古王 27년(AD372)에 이미 있었다.¹⁸⁾ 그러므로 范曄은 『後漢書』의 편찬대상기간(AD23~220)에 충실하여 『後漢書』를 편찬할 때(AD398~445)에는 이미 없어져버린 朝鮮百濟의 伯濟를 「凡七十八國, 伯濟是一國焉」이라고 하여 당시의 扶餘百濟의 百濟와 구별하였다는 것을 특히 강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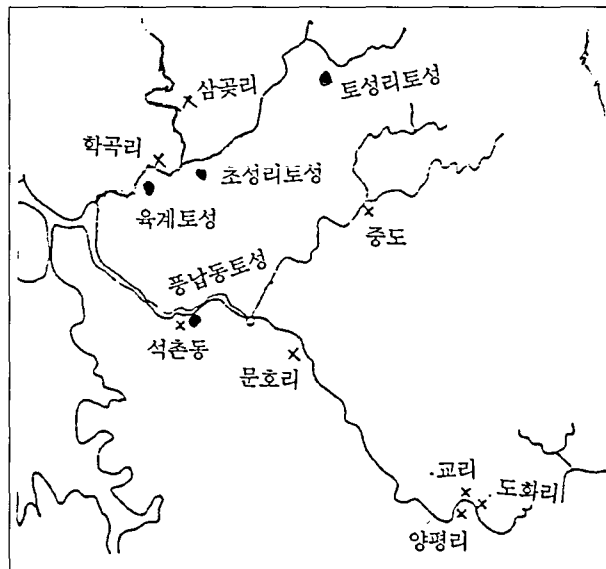
朝鮮百濟의 멸망을 확인할 수 없지만 『三國志』 韓條에 나타나는 韓·濊의 정벌과정에서, 桓·靈帝 末期(AD166~189) 韓·濊가 강성하였다, 建安 年間(AD196~220) 公孫康이 帶方郡을 설치하고 韓과 濊를 정벌하였다, 景初 年間(AD237~239) 明帝가 公孫氏 세력의 帶方·樂浪을 襲取하고 韓國의 臣智에게 벼슬을 내렸다, 또 辰韓八國의 분할 문제로 충돌하여 韓을 멸하였다(AD245), 라는 기록 중에서 公孫康이 韓·濊를 정벌한 이후에 濊의 명칭이 없어지고 韓으로 단일화되고 있다. 또한 伯濟가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後漢書』의 편찬대상기간(AD23~220)의 끝과 公孫康이 韓·濊를 정벌한 紀年(AD196~220)이 우연처럼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서 衛滿朝鮮이 멸망하고서 바로 나타난 古朝鮮遺民의 百濟는 중국대륙에서는 4세기 중반까지 명맥을 유지하였으나 韓半島에서는 公孫康이 韓·濊를 정벌할 때, 濊族인 朝鮮百濟(伯濟)는 一中國郡縣의 종속에서 벗어나서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기획을 농치고— 멸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의 一國인 朝鮮百濟가 漢郡縣(樂浪·帶方) 以南에서 「韓·濊疆盛」이라고 하여 韓族의 여러 小國들과 대등하게 濊族을 표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朝鮮百濟의 세력은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公孫康이 韓·濊를 정벌할 때 韓族보다 濊族인 朝鮮百濟는 재기할 수 없을 만큼 큰 타격을 받은 사실은 朝鮮百濟와 漢郡縣이 경

17) 『隋書』 東夷列傳 百濟條「初以百家濟海, 因號百濟」 伯濟에서 「貊」의 概念을 버리고 百濟가 되는 것은 晉時代의 扶餘百濟를 말한다(扶餘百濟의 考察참조).

18) 『晉書』 簡文帝本紀, 咸安二年(AD372)「春正月辛丑百濟, 林邑各遣使貢方物, 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鎮東將軍領樂浪太守」에서 나타나 있다. 『晉書』 慕容皝載記(AD345이전)「句麗, 百濟及宇文, 段部之人」에서 처음 나타나는 百濟는 韓半島의 百濟가 아니라 古朝鮮遺民의 百濟로서 중국에 있다.

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朝鮮百濟의 영역이 漢水地域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漢水地域에 유입된 朝鮮百濟는 漢江流域에서는 風納洞土城, 臨津江流域에서는 六溪土城, 漢灘江流域에서는 哨城里土城을 — 濊族의 특성대로 概念化한 원형(方形)의 平地城으로 — 구축하여 포구로 활용하였고 점차 漢水の 중·상류에까지 세력을 확장하여 나갔다. 이러한 사실은 압록강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유목집단의 積石式墓制가 漢郡縣의 지역을 공백으로 한 채 漢水地域에 유입되고 있는데 그 양식과 시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3세기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積石式古墳은 漢江·南北漢江·臨津江의 漢水地域에 고루 발견되고 있다. 다음에 漢江流域에 유입되는 4·5세기의 정제된 積石塚은 『石村洞 3號墳 東쪽 古墳群 整理調査報告: 서울대박물관』에 의하면 기존의 積石式古墳 위에 조영되어 있다. 이것은 積石式古墳과 정제된 積石塚墓制를 사용하는 두 집단이 한강유역에서 계승관계에 있지 않음을 단적으로 말하여 주고 있다. 따라서 公孫康이 韓·濊를 정벌할 때 멸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朝鮮百濟의 영역은 2·3세기에 축조된 積石式古墳이 분포되어 있는 漢水地域(漢江·南北漢江·臨津江·漢灘江)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지도 II. 積石式古墳의 본포로 본 朝鮮百濟의 영역

Ⅲ. 扶餘百濟의 考察

朝鮮百濟의 伯濟가 쇠락한 이후에 漢江流域에서 새롭게 百濟의 國名을 가지고 나타나는 百濟를 扶餘百濟라고 한다. 扶餘百濟는 扶餘의 계통에 있으므로 扶餘를 고찰하므로써 扶餘百濟의 윤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扶餘는 北만주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만주는 韓半島에서 西쪽으로 大興安嶺山脈과 東北쪽 小興安嶺山맥이 뻗어있는 사이의 부채모양의 광활한 지역을 일컫는다. 扶餘에 대한 적극적인 史料를 개진한 것은 『三國志』 『後漢書』 『晉書』에서 東夷의 國家로 편성되었고 또한 다른 東夷國家보다 扶餘를 初頭に 언급하므로써 中國郡縣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扶餘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제일 먼저 검토되는 것이 百濟의 始祖 仇台와 관계되는 扶餘王 尉仇台의 문제일 것이다. 尉仇台는 扶餘의 嗣子로서 後漢에 사신으로 파견된 尉仇台(AD120: 後漢書)와 遼東의 독자세력인 公孫度의 女와 결혼하였다고 하여 仇台始祖論을 야기시키는 尉仇台(AD?~204: 三國志)가 있다.¹⁹⁾ 두 尉仇台가 활동하였던 紀年으로 볼 때 동시대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익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中國史書(周書, 北史, 隋書)에서 「扶餘之別種, 有仇台者, 始國於帶方」이라는 百濟의 始祖 仇台와 연관되어서 百濟의 건국과정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또한 『三國史記』의 古尔王(AD234~286)과도 音似하고 紀年이 비슷하므로 실질적인 百濟의 건국자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²⁰⁾ 그러므로 먼저 扶餘의 王系를 이해하는 것이 扶餘百濟의 건국과정을 밝히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A) 2C.....尉仇台(後漢書), 夫台(後漢書), 尉仇台(三國志)——태(末音)

3C.....簡位居(三國志), 麻余(三國志), 依慮(晉書), 依羅(晉書)——

거, 여, 러, 라(末音)

(B) 『三國志』 魏書東夷傳 扶餘傳 「舊夫餘俗, 水旱不調, 五穀不熟, 輒歸咎於王,

或言當易, 或言當殺」

위 기사 (A)에서 扶餘의 王系는 공통적으로 末音 ‘태’를 가지고 있으며 尉仇台가 紀年에 관계 없이 다시 사용되고 있다. 또한 「仇」와 「夫」가 音似하므로 2세기의 扶餘王系는

19) 『後漢書』 東夷列傳 扶餘國 「永寧元年(AD120) 乃遣嗣子尉仇台(印)〔詣〕闕貢獻, 天子賜尉仇台印綬今綵」.

『三國志』 魏書東夷傳 扶餘傳 「扶餘本屬玄菟, 漢末(AD190~204)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扶餘王尉仇台更屬遼東, 時句麗, 鮮卑疆, 度以扶餘在二虜之間, 妻以宗女」

20) 李丙燾 「百濟의 建國問題와 馬韓中心勢力의 變動」 『韓國古代史研究』 1976, 472~477쪽.

왕 개인의 이름이라고 하기보다는 왕에 대한 일반적인 명칭일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3세기에 들어서서는 『三國志』나 『晉書』에서 扶餘의 王系가 父子繼承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2세기 扶餘王系의 내력은 기술되고 있지 않다. 부자계승으로 이어지는 3세기에 있어서도 嫡子가 아닌 麻余의 올림과정은 「諸加共立麻余」라고 하여 각 部族의 諸加에 의한 共立制가 잔존하고 있음을 비치고 있다. 이러한 共立制에 의한 왕의 추대는 (B)의 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扶餘의 옛 풍속에 기후의 이변, 농경의 책임은 왕에게 있으며 이러한 책임을 물어 왕을 바꾸거나 죽였다고 하였다. 이 때의 왕은 部族의 神을 받드는 祭祀長을 뜻한다. 또한 왕을 올림하고 결과에 따라 왕을 바꾸거나 죽일 수 있는 권한이 部族長인 諸加들에게 있다는 것은 확실한 共立制가 옛 扶餘에서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三國志』에서 처음 파악된 扶餘는 部族聯合體의 성격을 지닌 共立制國家로서 王系가 세습되지 않고 諸加들이 제사장을 선출하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中國史書에서 한결같이 扶餘의 계통으로써 百濟의 始祖를 仇台로 표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尉仇台的 「尉」는 接頭言에 해당되어야 한다. 『三國志』高句麗傳에 「句麗呼相似爲位, 似其相, 故名之爲位宮」이라고 하여 東川王이 太祖王(宮)을 닮았다고 하여 位宮이라고 하였음을 설명하면서 高句麗에서는 서로 닮은 것을 「位」라고 부른다 하였다. 「尉」와 「位」는 같은 음이고 扶餘는 高句麗의 先系集團으로서 언어와 풍속이 거의 高句麗와 같았다.²¹⁾ 따라서 尉仇台的 「尉」는 서로 닮았다(또는 같다)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尉仇台는 仇台와 닮은 者 또는 仇台와 같은 권한을 가진 者로 해석될 수 있다. 仇台가 扶餘의 部族에게 유일한 祖上(神)이므로 尉仇台는 神託을 받은 者로서 제사장으로서의 왕의 명칭에 해당한다.²²⁾ 2세기 扶餘王系에서 夫台는 『後漢書』의 찬자 范曄이 먼저 편찬된 『三國志』에서 3세기 扶餘王系가 확실하게 부자계승으로 이어지므로 尉仇台(後漢書)와 尉仇台(三國志) 사이에 차별성을 두어서 (尉)仇台와 音似한 夫台를 넣어 僞作하므로써 扶餘王系를 세습제로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扶餘의 역사는 『後漢書』 『三國志』 『晉書』 『資治通鑑』에서 단편적인 史料로써 간략히 기재되어 있다. 扶餘와 중국과의 관계는 後漢時代의 使行記錄이 『後漢書』 扶餘國傳에 나

21) 『三國志』 魏書東夷傳 高句麗傳 「東夷舊語以爲扶餘別種, 言語諸事, 多與扶餘同, 其性氣衣服有異」

22) 仇台를 祖上(神)으로 尉仇台를 始祖王으로 보는 견해는 『通典』 邊防 百濟條에서 「百濟 卽後漢末扶餘王尉仇台之後……其王, 以四仲之月祭天, 又海祭歲四祠, 其先仇台之廟」에서 尉仇台를 始祖王으로 仇台를 祖上(神)으로 확연히 구별하고 있다.

타나 있다. 漢郡縣과의 관계는 2세기 初에 樂浪을 공격하였고, 2세기 중엽에는 玄菟郡을 공격한 사실이 있으나 대체로 中國郡縣과는 親中華路線을 견지하였다. 이러한 扶餘의 親中華政策은 遼東의 독자세력인 公孫氏와 혼인동맹을 맺으면서 더욱 강화되어 高句麗의 遼東 진출을 제어하였다. 遼東의 패권이 公孫氏에서 魏로 넘어갔을 때에도 扶餘는 中國郡縣(玄菟郡)을 도와서 高句麗를 견제하였다. 扶餘의 親中華政策은 北中國의 諸部族과 高句麗 사이에서 自主性を 확립하지 못하고 점점 쇠락의 길로 들어서게 하였다. 이러한 扶餘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은 魏를 이어받고 중국을 통일한 晉時代에 遼河上流 朝陽에서 일어난 鮮卑族 慕容廆의 침입이었다.

『晉書』東夷列傳 扶餘國「至太康六年(AD285)爲慕容廆所襲破,其王依慮自殺,子弟走保沃沮,帝爲下詔曰:……其遺類足以復國者,當爲之方計,使得存立,有司秦護東夷校尉鮮于嬰不救扶餘,失於機略,詔免嬰,以何龕代之,明年(AD286),扶餘後王依羅 詣龕,求率見人還復舊國,仍請援,龕上烈,遣督郵賈沈以兵遂之,廆又要之於路,沈與戰 大敗之,廆衆退,羅得復國,彌後每爲廆掠其種人,賣於中國,帝愍之,又發詔以宮物贖還」

위 기사는 鮮卑族 慕容廆의 침입을 받은 扶餘王 依慮는 자살하였고 子弟는 沃沮로 피신하였다. 扶餘의 몰락을 애석히 생각한 晉의 武帝는 扶餘復國을 지시하는 한편 그 책임을 물어 東夷校尉 鮮于嬰을 파면시키고 何龕으로 교체하였다. 何龕은 扶餘의 後王 依羅의 요청을 받아들여 扶餘의 옛 나라를 회복하기로 하였다. 何龕은 賈沈에게 군사를 주어 扶餘人을 호송하게 하였고, 要路에서 기다리던 慕容廆를 격파하여 依羅의 扶餘를 회복시켰다. 그 후에도 慕容廆는 扶餘人을 잡아다가 중국에 팔았다. 晉의 武帝는 扶餘人의 매매를 금지시키고 그들을 扶餘로 돌려보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扶餘의 復國이 옛 扶餘의 故土에서 이루어졌다고 믿는 또 하나의 근거는 『資治通鑑』晉紀에서 4세기 중반에 나타나는 扶餘의 관계기사이다. 百濟(古朝鮮遺民)의 침입을 받은 扶餘가 西쪽 燕나라 근처로 옮기었다가 燕王 慕容皝(廆의 아들)에게 격파되어 종속되었다는 것이다.²³⁾ 『晉書』의 扶餘復國과 『資治通鑑』의 扶餘 몰락과정이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는가는 의문이 제기된다. 먼저 『資治通鑑』에서 「皝以玄爲鎮東將軍,妻二女」라고 하여 扶餘族을 대표하는 玄이 皝의 二女와 결혼하여 혼인동맹을 맺는다. 이 때는 AD. 347년으

로 扶餘가 復國된지 62년 밖에는 되지 않았다. 玄의 명칭은 扶餘王系에서 전연 관계가 없으므로 『晉書』의 扶餘復國과 『資治通鑑』의 扶餘 몰락을 같은 맥락에서 인정한다면 扶餘王系가 갑자기 변한 것이 된다. 그러나 扶餘系統을 自稱하는 泗沘時代의 百濟에 있어서 王系도 前述한 扶餘王系의 音似한 「於羅瑕」가 상존하고 있었다. 晉의 비호 아래 復國된 扶餘王系에 변란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우며 王材를 중시하던 古代國家에 있어서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²⁴⁾

『晉書』의 扶餘復國 이후 慕容廆의 行步를 살펴보면, 慕容廆는 扶餘를 攻破한 4년 뒤에 晉에 복속하였다. 그리고 1차(AD 293), 2차(AD296) 연이어 高句麗를 정벌하였다.²⁵⁾ 이러한 상황은 扶餘가 中國郡縣과 협공으로 高句麗를 견제하였던 것과 같다. 扶餘復國이 扶餘의 故土에서 이루어졌다면 慕容廆는 晉에 복속하기 이전에 高句麗보다 먼저 『資治通鑑』에서와 같이 扶餘를 몰락시켰을 것이다. 扶餘復國이 故土를 비켜 있었다면 晉에 복속되어 있는 慕容廆와 扶餘는 협력하여 高句麗를 공격하여야 한다. 何龕에게 扶餘復國 지시를 받은 買沈이 東쪽 沃沮에 있는 扶餘의 王族을 扶餘의 故土인 西쪽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慕容廆를 깨뜨렸다면 적어도 扶餘는 慕容廆, 高句麗의 接境에서 復國되어야 하며 이러한 환란에 모습을 나타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慕容廆가 扶餘人을 마음대로 노획할 수 있었던 것은 晉의 비호를 받은 扶餘復國이 故土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²⁶⁾ 扶餘

23) 『資治通鑑』卷九十七 晉紀十九 穆帝 永和二年(AD346)條「初, 扶餘居于鹿山, 爲百濟所侵, 部落衰散, 西徙, 近燕而不設備, 燕王毓遣世子儁, 帥慕容軍, 慕容恪, 慕與恨三將軍萬七千騎, 襲扶餘……遂拔夫餘, 虜其王玄及部落五萬餘口, 而還, 毓以玄爲鎮東將軍, 妻二女」但, 여기서 나타나는 百濟는 『晉書』慕容皝載記의 百濟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잔류한 古朝鮮遺民이다.

『上書』卷一百二 晉紀 可馬奕 太和五年(AD370)條「…丁丑 桓帥鮮卑五千奔龍城, 戊寅, 燕散騎侍郎餘蔚, 扶餘高句麗及上黨質子五百餘人夜開鄴北門, 納秦兵」에서 餘蔚을 扶餘의 王子로 註解한데에서 永和二年條의 玄을 扶餘復國의 王系로 인정한 듯하다.

24) 扶餘의 王系는 「위구대(後漢書·三國志)부대(後漢書)간위거(三國志)마여(三國志)의려(晉書)의라(晉書)여라하(周書)」에서 보듯이 두 音節 이상이며 末音에 終聲(받침)을 쓰고 있지 않다. 玄(玄)은 單音節이면서 終聲(ㄴ)을 쓰고 있으므로 扶餘의 正統 王名이 아니다. 『資治通鑑』에서의 玄(AD346)과 餘蔚(AD370)이 비슷한 시기에 王과 王子로 明記되어 있고, 北中國(前燕·前秦·後燕)의 세력 사이에서 잔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扶餘의 왕족으로서 혈연관계가 성립되는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正史로서 7세기에 편찬된 『晉書』에서 11세기에 저술된 『資治通鑑』에서의 「玄」과 「餘蔚」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玄」과 「餘蔚」이 復國된 扶餘의 正統 王系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구별하여 나라(扶餘國)로 인정하지 않은데 있는 것이다.

25) 慕容皝의 1차 高句麗 침입은 『三國史記』高句麗紀 烽上王 二年(AD293) 八月條에, 2차 침입은 五年(AD296) 八月에 西川王의 능묘를 파헤치고 돌아간 사건이 있었다.

26) 晉의 武帝가 扶餘復國을 지시하자 새로 교체된 東夷校尉 何龕은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扶餘王族을 호송하는 과정에서 慕容廆를 격퇴한 사실로써 입증된다. 만약 扶餘가 그들의 故土나 인접한 지역에서 復國하였다면 何龕은 약체인 扶餘를 慕容廆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兵力을 상주하여야 하며 이러한 扶餘人을 慕容廆가 노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故土에 남아있던 扶餘人들은 慕容廆가 晉에 복속된 이후 晉 武帝의 칙령으로 보호를 받았고 玄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資治通鑑』에서와 같이 62년 동안 扶餘의 명맥을 유지하였다. 그러므로 玄이 部族長으로 있었던 扶餘는 晉에 의해 復國된 扶餘가 아니고 扶餘의 故地에 남아있던 扶餘人集團인 것이다.

扶餘의 復國地는 慕容廆의 세력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高句麗와 接境을 이루어서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晉의 國益에 유용한 곳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때의 晉은 樂浪·帶方·玄菟를 平州에 예속시켜 韓半島 경영을 강화하고 있었다.²⁷⁾ 慕容廆에게 쫓겨 東쪽 沃沮로 피신한 扶餘의 王族이 高句麗의 北境과 慕容廆의 南境(接戰이 있었으므로)을 통과하여 沃沮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길은 —晉의 境內가 아니라면— 樂浪과 帶方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漢의 武帝가 古朝鮮을 멸망시켜 漢四郡을 설치하고서 樂浪을 韓族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尼谿(歷谿) 參을 漢江流域에 유입시켜 朝鮮百濟를 開始하는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이 시기 漢江流域은 公孫康이 帶方郡을 설치하여 韓·濊를 정벌하였고(AD196~220), 뒤를 이은 魏는 辰韓八國의 분할 문제로 韓이 帶方을 공격하자, 韓을 滅하였다(AD245).²⁸⁾ 이러한 상황은 晉때에까지 계속되어 馬韓은 晉에 조공하는 것은 물론 扶餘를 復國시킨 東夷校尉 何龕에게까지 조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AD 290).²⁹⁾ 晉에 있어서 漢江流域을 통치한다는 것은 韓族의 強盛을 미리 막고 二郡(樂浪·帶方)을 보호하는데 있었다. 漢江 以南의 馬韓에까지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何龕은 慕容廆와 高句麗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二郡과 韓族 사이의 완충지대로써 韓族의 발흥을 미리 억제할 수 있는 漢江流域이야말로 최적의 扶餘復國地로 생각한 것이다.³⁰⁾ 또한 復國된 扶餘가 흩어져 있는 尼谿(歷谿) 參의 朝鮮百濟 遺民들을 수습하여 강력한 濊族集團을 형성하므로써 漢時代와 마찬가지로 韓·濊의 대립을 야기시

27) 『晉書』 卷十四 地理志上四 平州條 ‘平州는 後漢末 公孫度에 의해 平州牧이 있었다. 晉代의 平州는 幽州에서 분리되어 지금의 河北省에 治所를 두었다. (AD274)’

28) 『三國志』 魏書東夷傳 韓傳 ‘桓·靈帝末(AD166~189) 韓濊強盛, 郡縣不能制, 民多流入 韓國, 建安中(AD196~220) 公孫康分屯有縣以南荒地爲帶方郡, 遣公孫模, 張敞等收集遺民, 與兵伐 韓濊……(AD245) 部從事 吳林以 樂浪本統 韓國, 分割 辰韓八國以與 樂浪, 吏譚轉有異同, 臣智激 韓忿, 攻帶方郡 崎離營, 時太守 弓遂, 樂浪太守 劉茂與兵伐之, 遂戰死, 二郡遂滅 韓’

29) 『晉書』 東夷列傳 馬韓條 ‘武帝太康元年(AD280), 二年, 其主頻遣使入貢方物, 七年, 八年, 十年, 又頻至, 太熙元年, 詣東夷校尉 何龕上獻, 咸寧三年(AD277) 復來, 明年又請內附’

30) 晉의 東夷校尉 何龕은 扶餘復國地로 漢江流域을 定하고 난 다음의 문제는 帶方과 경계에 있는 馬韓의 양태를 구하는 것이었다. 溫祚二十四年(AD6)條의 ‘王初渡河, 無所容足, 五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의 기사는 何龕이 漢江流域에서의 扶餘復國을 馬韓에서 양해받은 사실을 『三國史記』 찬자들이 『三國志』 辰韓條의 ‘馬韓割其東界地與之’의 기사를 모방 僞作하여 溫祚條에 遡及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키려는 이간책도 간과하지 않았을 것이다.

『三國史記』百濟紀 責稽王 元年(AD286)「古尔王者,身長大,志氣雄傑,古尔薨,卽位,王徵發丁夫,葺慰禮城,高句麗伐帶方,帶方請救於我,先是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古日帶方我舅甥之國,不可不副其請,遂出帥救之,高句麗怨,王慮其侵寇修阿且城,蛇城備之」

위 기사의 紀年은 晉의 東夷校尉 何龕에 의하여 扶餘가 復國되던 해로써 百濟의 責稽王 元년에 해당한다. 責稽王은 古尔王의 아들로써 帶方王女 寶菓와 결혼하였고 帶方이 高句麗의 공격을 받자, 前日 帶方과 혼인동맹을 맺은 사실을 想起하여 帶方을 도왔다. 그러나 그로 인한 高句麗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阿且城과 蛇城을 정비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慰禮城은 朝鮮百濟 初期 溫祚條에서만 쓰이다가 무려 4세기를 넘어서 責稽王 元年條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漢江流域에서 溫祚와 責稽王 사이의 기간 동안 역사의 단절을 의미하며 또한 단절된 역사의 脈을 慰禮城으로써 환기시키고 있다. 단절된 기간 동안에 百濟의 王歷을 살펴보면, 「溫祚—多婁—己婁—蓋婁—肖古—仇首—古尔—責稽」로 되어 있다. 溫祚는 古朝鮮을 의인화한 명칭으로써 尼谿(歷谿) 參에 해당한다. 朝鮮百濟의 建國紀年 BC. 108년에서 責稽王 元年 AD. 286년까지는 394년이나 되며 溫祚의 재위기간(46년)을 인정한다면 6왕의 평균재위는 산술적으로 58년이 된다. 왕으로 즉위할 수 있는 나이까지 합산한다면 百濟初期의 왕들의 수명은 80세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權力鬭爭의 상징인 王系가 순탄하게 계승되는 것이나, 古代人의 수명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王歷인 점은 누누이 지적되어 왔다. 『日本書紀』神功紀 49年條에서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라고 하여 『三國史記』百濟紀의 近肖古王을 肖古王으로, 近仇首王을 貴須(仇首)로 기술하고 있다. 『三國史記』찬자들이 高句麗의 王系에서 宮(太祖王)과 位宮(東川王)과 같이 「位」字를 첨가한 사실을 百濟紀에서 인용하여 「近」字를 첨가하여 王歷을 僞作하였을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³¹⁾ 『三國史記』百濟紀 蓋鹵

31) 『三國志』魏書東夷傳 高句麗傳「句麗呼相似爲位, 似其祖, 故名之爲位宮」이라고 하며 東川王이 太祖王(宮)을 달았다고 하여 位宮으로 불렸다. 高句麗에서 「位」, 扶餘에서는 「尉」가 같다는 뜻의 接頭語로 사용되고 있음을 파악한 『三國史記』찬자들이 朝鮮百濟의 王系를 僞作하였다. 즉 高句麗의 「位」, 扶餘의 「尉」대신에 가깝다는 의미의 「近」字를 사용하였다.

王 元年條에서 「蓋鹵王 或云近蓋婁」라고 하여 蓋鹵王이 近蓋婁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近」字가 첨가되지 않은 4代 蓋婁王 때의 都彌說話는 음미할 필요가 있다.³²⁾ 都彌夫人이 都彌와 같이 漢江에서 뗏목을 타고 高句麗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은 蓋婁王 때(AD131~166)가 아니라 樂浪·帶方이 멸망(AD313~314)한 다음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百濟紀의 王歷에서 「近」字가 첨가된 왕만이 실재의 왕이며 이들의 실재 王名은 「近」字를 빼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扶餘의 復國紀年에 해당하는 責稽王의 先王 古尔王은 在位期間이나 생존기간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 왔다. 古尔王은 扶餘復國 前의 百濟王으로 나타난다는 점과 中國史書(周書·北史·隋書)에서 百濟의 始祖를 仇台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三國史記』 찬자들이 扶餘百濟 開始 前의 推尊된 왕으로 僞作하므로써 나중에 올 朝鮮百濟와 扶餘百濟의 史料批判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바 溫祚 이후 古尔王까지의 王系는 多婁, 己婁의 王歷의 의심의 여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蓋然的 상황으로 볼 때 僞作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그렇다면 朝鮮百濟가 溫祚 때에만 존속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朝鮮百濟의 考察」에서 朝鮮百濟의 물락은 公孫康이 韓·濊를 멸망시킨 3세기 初로 추정할 바 있다. 溫祚 이후 朝鮮百濟의 王系는 『後漢書』 『三國志』에 나타나는 78國의 小國들과 마찬가지로 밝힐 수 없는 것이다.

責稽王이 帶方女 寶菓와 결혼한 사실은 買沈(何龕의 부하)에게 인도되어 漢江流域에 안착하는 扶餘의 依羅集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扶餘集團이 漢江流域으로 진입하려면 帶方界를 통과하여야 한다. 또한 責稽王이 帶方女 寶菓와의 결혼은 帶方に 高句麗가 침입하자 바로 援軍을 보낸 사실로 미루어 혼인동맹을 뜻한다. 이러한 상황이 扶餘復國의 紀年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隋書』東夷列傳 百濟 「東明之後，有仇台者，篤於仁信，始立其國于帶方故地，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漸以昌盛，爲東夷強國，初以百家濟海，因號百濟」(北史同)

위 『隋書』의 기사에서 百濟는 東明의 후손인 仇台가 帶方の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웠다. 遼東太守 公孫度の 女를 아내로 맞아서 東夷의 강국이 되었다. 百濟라는 國名은 처음에

32) 『三國史記』列傳第八 都彌

百家가 바다를 건너와서 나라를 세웠다는데서 유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먼저 帶方故地에서 百濟를 세웠다는 것은 中國郡縣으로서 존재하였던 帶方郡을 『隋書』 편찬 당시(AD629~636)에서 想起시키는 것이다. 公孫度の 女를 아내로 맞은 것은 扶餘王 尉仇台이며, 이 때의 扶餘는 帶方郡에 있는 것이 아니라 鮮卑와 高句麗 사이에 있었다.³³⁾ 遼東의 독자세력인 公孫度和 扶餘가 혼인동맹을 맺은 이후 扶餘는 強國이 된 것이 아니라 中國郡縣의 위성국으로 전락하여 점점 쇠락의 길을 걸었다. 또한 帶方郡은 公孫度の 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公孫康이 설치하였다. 百濟가 東夷의 強國이 되었다는 것은 尉仇台時代의 扶餘가 아니라 依羅集團이 扶餘百濟로서의 전환기를 말한다. 따라서 買沈에게 인도되어 帶方界에 들어선 扶餘의 復國集團은 公孫度 때에 遼東勢力和 혼인동맹을 맺고 충성을 서약한 尉仇台와 마찬가지로 帶方郡에 충성할 것을 서약하는 징표로 帶方女 寶菓와 扶餘王 依羅와의 결혼으로 혼인동맹을 맺고 扶餘復國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혼인동맹과 復國 선언이 帶方郡에서 있었던 사실만을 파악한 『隋書』의 찬자들이 帶方郡을 설치한 公孫康과 그의 父 公孫度 때에 尉仇台와의 혼인동맹을 연상하여 혼동을 일으켰다. 따라서 『隋書』의 「漢遼東太守公孫度以女妻之」는 「晉帶方太守○○○以女妻之」의 誤記인 것이다. 이로써 扶餘의 依羅集團이 帶方까지의 南來가 합리적으로 이해되었으며 扶餘復國이 帶方에서 행하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帶方에서 扶餘를 復國한 紀年과 責稽王이 帶方女 寶菓와 결혼한 責稽王 元年이 같다는 것은 責稽王이 扶餘를 復國한 依羅라고 단정할 수 있다. 帶方에서 復國을 선언한 依羅는 扶餘의 族名을 버리고 朝鮮 百濟가 貊齊에서 樂浪의 甬甌國으로서 伯濟의 美稱을 얻은 전례에 따라 한 차원 승화된 「初以百家濟海, 因號百濟」의 百濟의 國名을 계승하므로써 「貊(伯)」의 개념을 버리고 韓族과 구별을 두었다. 또한 중국 齊에서 연유한 國名을 가진 百濟는 王名 역시 扶餘式表記인 依羅를 버리고 漢文化한 責稽로 바꾸었다. 帶方에서 扶餘百濟를 開始한 責稽王은 何龕의 세력하에 있는 漢江流域에 안착하기 위하여 涓水(禮成江)와 帶水(漢江, 臨津江)³⁴⁾를 넘어서

33) 『三國志』 魏書東夷傳 夫餘傳 「夫餘本屬玄菟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尉仇台更屬遼東, 時句麗・鮮卑疆: 度以夫餘在二虜之間, 妻以宗女」

34) 李丙巖 「百濟의 建國問題와 馬韓中心勢力的 變動」 470쪽 『韓國古代史研究』 1976, 에서 涓水를 禮成江, 帶水를 臨津江으로 보았다. 筆者는 涓水를 禮成江으로 보는 견해를 따른다. 그러나 帶水는 臨津江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漢江까지도 포함된다. (金玟秀, 「漢水의 概念」 3~11쪽 『漢水의 概念과 高句麗 南平壤의 考察』 1995 참조) 帶方郡에서 漢江 南까지는 禮成江과 漢水(漢江・臨津江)가 있을 뿐이며 帶水는 漢江(臨津江포함)을 가리키는 동시에 帶方의 境界를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三國史記』 溫祚條의 「渡涓帶二水」는 朝鮮百濟가 山東半島에서 「東之辰國」하여 바다를 건너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三國史記』 찬자들이 扶餘百濟가 涓水(禮成江)・帶水(漢江・臨津江)를 건너온 것을 朝鮮百濟 溫祚條에 遡及하여 僞作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慰禮의 명칭이 長壽王이 漢城을 함락시킨 사실을 慰禮國이 멸망하였다고 기술한 『日本書記』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漢江流域에서의 朝鮮百濟와 扶餘百濟의 어떠한 유사성이 관여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中國(漢·魏·晉)이 漢江流域을 인식하는 것은 漢江流域을 완충지대로 하여 韓族을 통제하므로써 中國郡縣을 보호하는데 있었다. 朝鮮百濟의 건국도 韓族과 구별되는 濊族의 尼谿(歷谿) 參의 집단을 漢江流域에 이주시키므로써 이루어졌다. 이러한 漢의 정책은 韓·濊의 대립을 야기시켜 漢江流域에 강력한 古代國家의 출현을 제어하였다.³⁹⁾ 扶餘百濟 역시 晉의 도움으로 漢江流域에 안착하였으나 樂浪·帶方이 高句麗에 의하여 추출되자 中國郡縣의 중속관계에서 벗어나 古代國家를 성립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中國郡縣의 일관된 정책은 漢江流域에 古代國家의 출현을 저지하기 위하여 韓族과 異質의인 濊族을 투입하므로써 種族的 갈등을 야기시켜 韓族의 결속을 방해하는데 있었다. 朝鮮百濟와 扶餘百濟가 漢江流域에 유입되는 시기나 방법(海路·陸路)에 차이가 있으나 中國郡縣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과 朝鮮·扶餘百濟 모두 古朝鮮의 영역에 있었던 濊族이라는 사실을 주목한다면 慰禮城은 濊族과 관련이 있을 유혹을 느낀다.

『三國志』 魏書東夷傳 夫餘傳 「其印文言(濊王之印)國有故城名濊城, 蓋本濊貊之地」(晉書同)

陳壽에 의하여 『三國志』가 편찬된 AD. 285년은 扶餘百濟의 開始 1년 전의 일이므로 위 『三國志』의 기사의 濊城은 扶餘의 故土에 있는 城으로써 漢江流域의 慰禮城과는 지역적으로 연관이 없다. 그러나 扶餘族의 중심이 되는 곳에 그들의 種族名에 의한 濊城에 있었다는 것은 주목되어야 한다. 먼저 『山海經』에서 蓋國이 濊國이었음을 논술한 바 있거니와 그들의 근거지를 種族 스스로의 族名으로 稱名하거나 他種族에 의하여 族名으로 구별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扶餘百濟도 후일 南扶餘를 천명하므로써 韓族에 대한 濊族의 우월성을 강조하였다.⁴⁰⁾ 漢江流域에서 최초로 濊族集團을 형성한 尼谿(歷谿) 參의 朝鮮百濟는 토착 韓族과 어떠한 이유나 결과에 따라 구별되었을 것이다. 토착 韓族에 의하여 구별되었거나 朝鮮百濟 스스로 濊族의 우월성을 천명하였거나 간에 尼谿(歷谿)

39) 『三國志』 魏書東夷傳 韓傳 ‘桓·靈帝末(AD166~189)’에 韓·濊의 疆盛은 朝鮮百濟(伯濟)의 濊族의 유입을 말하며, 建安中(AD196~220)에 公孫康이 帶方郡을 설치하고 韓·濊을 정벌하였고, 景初中(AD237~239) 魏의 明帝는 公孫氏勢力에 있는 樂浪과 帶方을 빼앗고 韓國의 臣智와 邑長에게 벼슬을 주어 결속을 방해하였다. 또한 AD245년에는 辰韓八國의 분할문제로 韓族이 蜂起하자 토벌하였다.

40) 『三國史記』 百濟紀 聖王十六年(AD538) 「春·移都於泗泚, 國號南扶餘」

參의 집단의 근거지가 濊城일 蓋然性은 『三國志』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扶餘族 일반에게 濊城이라는 근거지를 가지고 있다는데서 짐작되리라고 본다. 濊族의 근거지로 概念化된 濊城은 故土(古朝鮮)를 그리워하며 이를 復元하려는 參의 집단에 의하여 故土의 濊城과 같다는 의미로 慰(尉·位)를 첨가하여 慰濊城으로 불렸을 것이다.⁴¹⁾ 慰濊城이 慰禮城이 되는 것은 「禮」가 頭音에서는 ‘예’로 次音에서는 ‘레’로 변화하여 자연스럽게 子音(己)을 첨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漢江流域에서 『三國史記』 朝鮮百濟의 王系나 기사를 신빙할 근거는 희박하다. 『三國志』 『後漢書』에서 나타나는 小國들과 마찬가지로 紀年을 정리할 歷史書가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慰禮城은 扶餘百濟 開始 責稽王 元年條에 修理한 사실이 나타나므로써 그 이전 朝鮮百濟 溫祚의 初都로서 인정되어도 무리가 없을 줄 안다. 朝鮮百濟나 扶餘百濟에 있어서 漢江流域에 대한 자연지리적 배경의 인식은 동일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朝鮮百濟가 사용하였던 慰禮城을 扶餘百濟가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많은 수고를 덜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당연한 일일 것이다. 溫祚條의 기사가 건국과정에서부터 僞作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慰禮城 역시 溫祚條에 限하여 기술되고 있고 扶餘百濟의 開始 責稽王 元년에 나타나고 있는데 유의한다면 責稽王 元年條의 慰禮城을 遡及하여 溫祚條의 기사로 僞作하였을 의심이 여지가 보인다. 扶餘百濟는 近肖古王 30년(AD375)에 高興에 의하여 書紀를 처음 만들었으므로 責稽王 元年(AD286)條의 기사는 사실로 받아드려야 한다.⁴²⁾ 慰禮城이 朝鮮百濟의 舊都임을 확인한 『三國史記』 찬자들이 溫祚의 初都로 부각시키려는 일련의 노력이 溫祚條의 기사에 내포되었다고 보여진다. 溫祚條에서 慰禮城이 6회 기술되어 있는데 都邑을 定하는 2회를 제외한 4회가 靺鞨과 樂浪의 침입에 관계되고 있다. 또한 靺鞨의 침입 횟수가 溫祚條에서 무려 7차례나 되는데 扶餘百濟(責稽 이후) 전 기간 동안 5회의 침입에 불과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溫祚條의 기사는 僞作되었음을 직감할 수

41) 扶餘에 있어서 尉仇台의 「尉」, 高句麗의 位宮의 「位」와 같이 같다는 뜻으로 「慰」를 接頭語로 첨가하였을 概然性이 있다. 琉璃王 때에 천도한 尉那巖城에 있어서도 史書에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본래의 那巖城이 있었을 것이다. 『日本書記』 天智紀 二年條 「但可住於弓禮城」에서 「弓」은 接頭語로써 「禮城」을 돕는 古語이다. (日韓辭典, 1981, 679쪽, 世一社) 弓禮城도 濊城일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42) 『三國史記』 百濟紀 近肖古王 三十年(AD375)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라고 하여 高興에 의하여 百濟史가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든 史書가 前王朝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當王朝의 扶餘百濟紀의 責稽王 元年(AD286)의 기사는 확실한 史料라고 인정된다.

있다.⁴³⁾ 따라서 『三國史記』 찬자들이 溫祚의 건국과정의 어려움을 外侵에 의한 것으로 作僞하기 위하여 (河北)慰禮城을 假定하였고 河南慰禮城으로 천도하므로써 안정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인식시키려는 編纂史觀에 의한 것이지 慰禮城은 責稽王 元年條에 파악된 대로 朝鮮百濟에서나 扶餘百濟에서도 같은 장소에 있었던 하나의 慰禮城인 것이다. 責稽王 元년에 慰禮城을 都邑으로 定하고 수리하였다면 慰禮城은 朝鮮·扶餘百濟의 宮城을 말한다. 다음에 高句麗의 침입에 대비하여 阿且城(江北)과 蛇城(江南)을 수리하였다는 것은 방어의 개념을 漢江으로 확충시킨 것이다. 阿且城이 후일 高句麗 長壽王의 陣營이 되어 蓋鹵王을 斷罪한 漢江 北의 峨嵯山 古城이며⁴⁴⁾ 蛇城은 崇山(黔丹山)과 연결된 漢江 南의 방어선이므로⁴⁵⁾ 慰禮城은 마땅히 漢江 南에 있어야 한다. 漢江 南에 있었던 慰禮城은 百濟의 漢城으로 대치되었으므로⁴⁶⁾ 史料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扶餘百濟 汾西·比流王 때의 기사로써 宮城 漢城의 입지적 조건을 파악하고자 한다.

『三國史記』百濟紀 汾西王 七年(AD304)「冬十月，王爲樂浪太守所遣刺客賊害薨」

『上書』百濟紀 比流王 三十年(AD333)「夏五月，星隕，王宮火，連燒民戶」

위 汾西王 때의 기사는 樂浪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의문의 여지가 많으나⁴⁷⁾ 宮城(漢城)

43) 溫祚 때의 靺鞨의 침입은 3년(BC16), 8년, 10년, 11년, 18년, 22년, 40년(AD22)으로 모두 7차례나 있었다. 扶餘百濟(責稽이후)에서 靺鞨의 침입은 辰欺王 3년(AD387), 7년, 東城王 4년, 武寧王 3년, 6년(AD506)까지 5차례 밖에는 없었다. 溫祚 때의 靺鞨의 침입은 朝鮮百濟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시기인데 7차례나 靺鞨의 침입을 받고 격퇴하였다면은 兩측의 피해는 조직이 와해될 지경에 이를 것이다. 특히 靺鞨의 전투능력은 扶餘百濟 전 기간 동안 5차례의 공격에 그쳤으므로 溫祚條의 침입은 作僞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4) 『三國史記』百濟紀 蓋鹵王 二十一年(AD475)「秋九月，……等帥兵來攻北城，七日而拔之，移攻南城，城中危恐，王出逃，麗將樂婁等見王下馬拜，已向王面三唾之，乃數其罪，縛送於阿且城下，戕之」

45) 『上書』百濟紀 蓋鹵王 二十一年「綠河樹堰，自蛇城之東，至崇山之北」

46) 慰禮城과 漢城의 관계는 扶餘百濟에 있어서 都城인 漢城이 朝鮮百濟에 있어서는 慰禮城이었음을想起시킨 扶餘百濟의 史料(葺慰禮城：責稽元年)를 『三國史記』찬자들에 의하여 朝鮮百濟 溫祚條의 기사로 溯及 附會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것이다. 『三國史記』蓋鹵王條의 『麗王巨璉帥兵三萬來圍王都漢城』과 『日本書紀』雄略紀「遂失慰禮國」에서 나타나 있듯이 漢城과 慰禮城은 같은 지명이다. 또한 溫祚條의 僞作된 慰禮城이나 초기 扶餘百濟의 漢城은 宮城과 都城의 포괄적 概念으로 사용되었다.

47) 高句麗에 의하여 樂浪이 멸망한 것은 AD. 313년(美川王14년)이다. 그 이전 高句麗 大武神王 15년(AD32)에 王子 好童의 정략에 의하여 멸망한 崔理의 樂浪國이 있었다. 樂浪의 존속은 扶餘百濟時代까지 이어져 왔으므로 樂浪郡內에 崔理의 樂浪國처럼 漢人의 小國이 성립되어 있을 개연성도 있다. 그러나 汾西王 때의 樂浪은 太守의 직책이 보이므로 樂浪郡의 주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는 晉의 분열기로 접어들었으므로 二郡(樂浪·帶方)의 세력도 약화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帶方에 예속된 扶餘百濟가 독자적인 노선으로 선회하자, 帶方이 樂浪에게 扶餘百濟를 견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데서 汾西王의 암살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

의 입지적 조건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써 史料로 선택한 것이다. 汾西王이 樂浪이 보낸 자객에게 살해당하였다면 漢城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었고 漢城(慰禮城) 內에 宮城이 있었다. 比流王 때에 王宮의 화재가 연이어 民家까지 재해를 입었다는 것으로써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두 왕 때의 기사로 추정하건대 百濟의 漢城은 宮城과 民戶가 어울려져 있는 平地城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가 뒷받침되는 扶餘族의 城에 대한 概念은 『後漢書』와 『三國志』에서 찾아볼 수 있다.

『後漢書』東夷列傳 扶餘國「以貝柵爲城, 有宮室, 倉庫, 牢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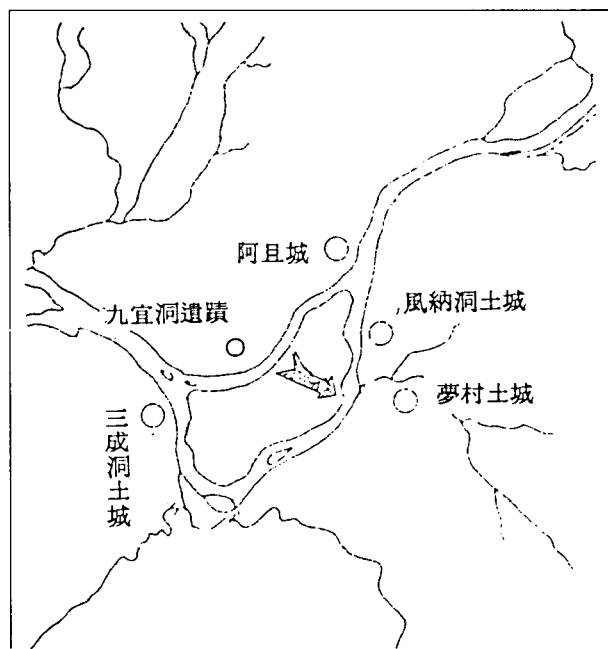
『三國志』魏書東夷傳 扶餘傳「作城柵皆貝, 有似牢獄」

扶餘가 그들의 都城을 木柵을 둘러서 둥글게 만들었다고 한 것은 平地城을 築造하였음을 뜻한다. 山城이라면 山勢에 따라서 城을 만들어야 하므로 일정한 원형의 城을 만들 수 없다. 원형의 城이 감옥과 같다는 것은 方形的 立柵形態에서 土城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外壁線이 입체감을 가지므로써 둥글게 보이는 시각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扶餘族의 城은 方形構造에서 발전한 원형의 토성으로서 平地에 축조되었다. 扶餘族이 유목집단이라는 것을 유념한다면 처음 안착한 漢江流域에서 그들의 방식에 따라 城을 만들거나 선택할 개연성이 있다. 또한 平地城은 목축과 농경을 관리하는데 유리하므로 광활한 평야와 水原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漢江 南의 古城은 風納洞土城이 있다. 阿且城과 蛇城을 漢江의 방위개념으로 묶는다면 責稽王 元年에 開始한 扶餘百濟의 都城은 漢江邊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즉 阿且城—漢江—蛇城(堤防線)—慰禮城(風納洞土城)의 순서로 압축된 漢江의 방위개념 속에 慰禮城이 존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慰禮城으로 비정되는 風納洞土城은 初期 철기시대의 유물이 다량 출토되므로써 朝鮮百濟의 紀年에 포함될 뿐 아니라 백제토기류 및 유물의 中心編年이 4·5세기경으로 파악되고 있어서 扶餘百濟의 영역임이 확실시 되고 있다.⁴⁸⁾

근래에 발굴되었고 그 성과로 인하여 百濟의 河南慰禮城으로 추정되어 온 夢村土城은

48) 金元龍「風納里包含層調査報告」1965. 『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叢書, 第三冊』20쪽, 40~44쪽에서 초기 철기 시대의 유물로서는 風納里無紋土器를 들 수 있다. 城의 築造時期도 『三國史記』百濟紀 初期紀事를 긍정하는 입장에서 西曆紀元前後로 보았다. 또한 백제토기류의 編年이 4·5세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扶餘百濟의 漢城時代와 부합하고 있다. 筆者는 『漢江流域에서의 三國史의 諸問題』1994, 6~8쪽에서 河北慰禮城(北城)을 인정하였고 그 위치를 阿且城으로 비정하였다. 『三國史記』의 史料에만 의존하였던 편협한 論旨였음을 시인하고 정정한다.

峨嵋山(阿且城)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고 丘陵에 있다. 支川(성내천)을 경계로 하여 독립된 丘陵인데도 木柵을 둘러서 주위와 격리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의 발굴결과에 의하면 궁궐지가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初期 철기시대의 흔적이 미미하다. 따라서 朝鮮百濟와 扶餘百濟가 시대에 따라 활용하였던 慰禮城이라고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⁴⁹⁾ 또한 漢江流域이 역사의 배경이 되는 漢城百濟의 마지막 蓋鹵王 條에서 北城을 風納土城으로 南城을 夢村土城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⁵⁰⁾ 이에 따르면 高句麗軍이 漢江을 渡河하여 風納土城(北城)을 공략하는데 7일을 소비하였다는 것으로써도 百濟의 都城으로서 主城은 風納土城이었음을 알 수 있다. 夢村土城(南城)이 主城이라면 高句麗軍은 수송능력에 부담을 안고 있는 山城인 阿且城을 攻破하지 않고 그 능선이 서쪽에서 끝나는 九宜洞遺蹟(남평양유적)에서 바로 渡河하여 夢村土城을 공략하였을 것이다.



지도 Ⅲ. 夢村土城이 主城일 경우 高句麗軍이 渡河路

49) 金元龍, 任孝宰, 朴淳發, 崔鍾澤 『夢村土城 西南地區發掘調查報告書』 1989, 210쪽에서 백제토기의 흑색아연 토기 유형 및 회색연질토기를 뭉흔 1기(3세기 후반)로 보고 있다. 1985년도 발굴에서 西晉의 錢文磁器片이 3세기 후반의 것으로 판명되어서 城의 築造年代 역시 3세기 후반으로 보고 있다.

50) 李道學 「도성체제의 확립」 『백제 고대국가 연구』 1995. 280쪽. 北城·南城은 漢水의 概念을 포함하고 있는 北漢(山)城 또는 漢山城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北城·南城은 漢水의 南北概念이 아니다. 따라서 漢江 南에서 風納土城을 北城으로 夢村土城을 南城으로 비정한 氏의 견해는 타당하다.

맺 는 말

百濟의 건국과정을 밝히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百濟史 자체의 史料 검증에 있는 것이 아니라 歷史의 연속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百濟의 건국과정을 파악하는 방법은 中國史書와 『三國史記』의 건국설화에서 합리적 해석을 도출하려는데에서 모순이 있었다. 『三國史記』의 百濟 건국설화가 中國史書와 기존의 百濟·高句麗紀를 조합하여서 찬자들의 史觀에 의한 저술인 점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百濟 건국세력의 유입과정은 재검토하여야 하는 당위가 설정된다. 먼저 百濟의 영역에 先住集團으로 있었던 馬韓의 실체를 검증함으로써 古朝鮮遺民의 南來가 百濟建國에 어떠한 연관이 있었는지를 검토하였다. 目支國을 盟主國으로 하는 馬韓은 압록강유역의 蓋馬韓과 같은 概念의 濊族으로서 古朝鮮에 합축되어 있는 蓋國에 根原을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目支國의 馬韓의 名稱은 箕子朝鮮의 末王 準이 古朝鮮 중심세력인 蓋馬韓의 族名을 目支國에 添稱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周書』 『北史』에 나타나는 「蓋馬韓之屬國(也)」의 馬韓은 目支國의 馬韓이 아니라 압록강유역의 蓋馬韓을 가리키고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므로 蓋馬韓·蓋馬國·馬韓(또는 目支國의 馬韓)은 같은 概念의 濊族인 箕子朝鮮의 遺民으로서 漢에 귀속을 거부한 主體的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漢江流域에 첫 번째 유입된 伯濟는 衛滿朝鮮의 멸망 후에 발생한 古朝鮮遺民들로서 朝鮮百濟라고 命名하였다. 漢의 古朝鮮 정벌은 齊의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또한 마무리되었다. 『史記』 「侯者年表」에서 朝鮮王 右渠를 배반하고 漢에 복속한 朝鮮의 大臣들에게 領地를 하사한 지역이 齊의 중심지였던 山東省(半島)일대로써 秦에 멸망한 齊國의 지역이다. 漢은 古朝鮮遺民들을 燕을 넘어서 齊에 유입시키므로써 故土의 古朝鮮 세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전쟁으로 피폐된 齊를 復舊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齊에 귀속된 古朝鮮遺民들의 名稱은 中國 전통의 國名인 單音節 「齊」를 허용하지 않고 卑稱인 貊齊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러한 貊齊 중에서 異名同人으로 밝혀진 尼谿(歷谿) 參 집단이 山東半島에서 「東之辰國」하여 漢江流域에 유입하므로써 先 貊齊의 概念과 바다를 건너온 사실을 덧붙여서 伯濟가 되었고, 晉時代 扶餘百濟에서는 中國郡縣(樂浪·帶方)을 보호하기 위한 傭兵國으로서의 충정이 더 한층 美化되어 「貊(伯)」의 概念을 버리고 百濟의 國名을 얻은 것이다. 朝鮮百濟의 王系를 파악하지 못한 『三國史記』 찬자들은 高句麗 건국설화를 모방하여 朝鮮百

濟의 始祖를 溫(古)朝鮮의 概念인 溫祚(朝)로 擬人化하였고, 溫祚 다음의 王系는 扶餘百濟에서 冒稱하였다. 朝鮮百濟의 建國 紀年은 『三國史記』 찬자들이 高句麗와의 兄弟說話로 묶기 위하여 高句麗 琉璃王 즉위(BC19) 다음 해인 BC. 18년으로 定하였으나 사실은 古朝鮮이 멸망하던 BC. 108년으로 90년이나 앞서 있었다. 漢水地域(漢江·南北漢江·臨津江·漢灘江)에서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의 一國으로서 漢水地域 이외에 산재한 70여 國의 韓族과 대등하게 滅族을 표방한(韓·滅疆盛) 朝鮮百濟의 몰락 시기는 公孫康이 帶方郡을 설치하고 韓·濊를 정벌한 이후 韓으로 단일화되어 濊(族)가 보이지 않으므로써 後漢 建安 연간(AD196~220)으로 추정된다.

朝鮮百濟의 몰락 이후에 漢江流域에 유입된 扶餘의 遺民들을 扶餘百濟라고 한다. 扶餘百濟를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扶餘를 이해하여야 한다. 『周書』 『北史』 『隋書』에서 百濟의 始祖로 나타나는 仇台는 扶餘에서 神格화된 祖上이며 尉仇台는 各 部族長인 諸加들에 의하여 翁립된 祭祀長으로서의 왕의 名稱으로 파악되었다. 이후 扶餘는 王系가 세습화되었고 中國郡縣과 北中國 諸部族 그리고 高句麗 사이에서 親中華政策으로 일관하여 自主性を 확립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扶餘를 攻破한 것은 遼河上流 朝陽에서 일어난 鮮卑族 慕容廆의 침입이었다. 이때 扶餘는 東沃沮까지 쫓겨갔었고 晉의 武帝는 교체된 東夷校尉 何龕에게 扶餘復國을 지시하였다. 何龕에 의하여 復國된 扶餘를 『資治通鑑』에서 4세기 중반에 나타나는 燕의 慕容皝(廆의 아들)에게 攻破되어 복속된 扶餘와 동일시하므로써 扶餘復國이 扶餘의 故土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껏 여겨 왔다. 그러나 『資治通鑑』에서 나타나는 扶餘는 部族長이 玄으로서 扶餘王系와 전연 무관할 뿐 아니라 정황적 상황으로 보더라도 扶餘故土의 잔류민으로 확인되었다. 何龕이 선택한 扶餘의 復國地는 慕容廆와 高句麗의 세력이 미치지 않고 二郡(樂浪, 帶方)을 韓族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漢江流域의 완충지대였다. 扶餘의 後王 依羅는 東沃沮에서 買沈(何龕의 부하)에게 인도되어 慕容廆와 高句麗 사이를 빠져 나와 帶方郡에 安着하였다. 晉은 漢時代와 마찬가지로 扶餘集團을 漢江流域에서 復起시키므로써 朝鮮百濟의 잔류민과 더불어 濊族의 發興을 피하였다. 이러한 晉의 정책은 漢의 韓半島 경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써 濊族과 韓族을 대립시켜 漢江流域에서 강력한 古代國家의 출현을 제어하고 二郡을 보호하는데 있었다. 帶方에 안착한 扶餘는 晉의 정략에 따라 帶方女 寶菓와 扶餘王 依羅의 결혼으로 혼인동맹을 맺고 扶餘復國을 선언하였다. 또한 韓族과 차별을 두어 中國 國名에서 유래된 朝鮮百濟의 國號를 계승하므로써 朝鮮百濟의 遺民들을 수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濊族의 百濟를 선언한

扶餘百濟는 帶方郡에서 溟水(禮成江)와 帶水(漢江, 臨津江)를 건너와서 朝鮮百濟의 慰禮城을 수리하여 都邑으로 定하였으며 王名 역시 扶餘式表記를 버리고 漢文化한 責稽로 바꿨다. 扶餘百濟가 開始한 紀年은 晉의 武帝가 扶餘復國을 지시한 다음 해인 責稽王 元年으로써 AD. 286년이다. 扶餘百濟의 初期에는 責稽系와 比流系의 王系交替가 있었으나 比流王의 아들인 近肖古王 때에 들어서면서 건국의 혼란을 수습하고 강력한 王權을 확립하여 末王 義慈에까지 比流系로 일관되게 王위가 계승되었다.

慰禮城은 史料가 인정되는 責稽王 元年에 慰禮城을 수리하여 都邑으로 定한 사실로 미루어 朝鮮百濟에서도 都邑이었음을 알 수 있다. 漢江流域 韓地에서 濊族인 朝鮮百濟 尼谿(歷谿) 參 집단이 이주하여 처음으로 濊族의 근거지를 확보하였으므로 韓族에 의하여 命名되었거나, 韓族에 대한 濊族의 우월성에 대한 自名이든 간에 濊城일 가능성은 높다. 濊族인 扶餘人은 故土에서 그들의 구심점을 濊城으로 불렀다. 故土를 想起하는 濊族인 朝鮮·扶餘百濟人들에게 濊城과 같다는 의미로 慰(尉·位)濊城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소지는 충분하다고 본다. 慰濊城이 慰禮城으로 표기되는 것은 「禮」가 頭音에서 ‘예’로, 次音에서 ‘레’로 변화하여 모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子音(己)을 첨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朝鮮百濟의 王歷이 신빙성이 없음이 파악되었다. 朝鮮百濟(伯濟)에 있어서 다른 小國들과 마찬가지로 紀年을 정리한 歷史書가 편찬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溫祚條의 기사는 僞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溫祚條에서 靺鞨과 樂浪의 침입을 극대화하여 건국의 어려움이 外侵에 있었던 것으로 作僞하는 과정에서 河北慰禮城을 假定한 것이지 慰禮城은 責稽王 元年에 파악한 대로 漢江 南에 하나 밖에 없었다. 責稽王 元年條에서 朝鮮百濟가 사용하였던 慰禮城을 수리하여 宮城으로 삼고 高句麗의 침입에 대비하여 漢江 北岸의 阿且城과 南岸의 蛇城을 방어선으로 정비하였다면, 慰禮城은 漢江 南에 있었으며 자연지리적 배경으로 압축된 漢江의 방위개념 속에 있어야 한다. 『後漢書』 『三國志』에서 扶餘는 城을 둥글게 만들어서 그 안에 宮城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扶餘族이 城에 대한 概念은 목축과 농경을 관리하는 유목집단인 扶餘에 있어서 水原을 확보할 수 있는 平地城을 선호한 것으로써 漢江流域에 안착한 扶餘百濟는 그들의 방식대로 平地城인 慰禮城을 선택하였을 것이다. 慰禮城이 平地城이었다는 증거는 史料가 인정되는 『三國史記』 百濟紀 汾西·比流王 때에 宮城이 民家와 어울려져 있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扶餘百濟 初期 遺民集團인 責稽 元年에 있어서 漢江의 방위개념은 최소한 압축되었을 것이며 이에 포함된 漢江 南의 平地城인 慰禮城은 初期 철기시대 유물이 증거하는 風納洞土城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漢時代의 朝鮮百濟(伯濟)나 晉時代의 扶餘百濟(百濟) 모두 中國郡縣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들의 변방에 용병국으로 이주되었음이 확인되었다. 晉은 이에 그치지 않고 遼西의 古朝鮮遺民들로 하여금 燕의 慕容氏 세력을 견제하게 하였고 南齊 때에는 韓半島 百濟와 交通하게 하여 北魏의 南下를 막았다. 또한 晉은 南蠻을 방비하기 위하여 山東半島의 古朝鮮遺民들을 대거 晉平郡(今, 廣西壯族自治區)으로 이주시켰다. 이러한 晉의 정책은 漢帝國에 1여년을 항거한 강력한 古朝鮮遺民들을 그들의 변방에 분산시켜 용병국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대륙을 방어하고 그 세력을 소모시키려는 계책이었다. 따라서 古朝鮮遺民들이 貊齊에서 韓半島의 百濟와 같이 百濟의 美稱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宋書』 『梁書』 『南史』 『通典』에 나타나는 百濟의 遼西·晉平經營說의 始初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대체로 中國史書에 나타나는 百濟의 기록은 단편적이지만은 史料의 신빙성이 인정되었다. 다만 前 史書를 답습하여 附會하는 과정에서 誤記가 나타나는 부분은 百濟史를 심층 있게 기록하려는데서 오는 실수로써 비판적인 견지에서 재정립한다면 史料의 가치를 높힐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보는 中國史書의 百濟史觀은 朝鮮·扶餘百濟 모두 古朝鮮 영역에 있었던 濊族으로써 親中華勢力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문제가 되는 『三國史記』의 百濟 건국과정은 『後漢書』 『三國志』에서 朝鮮百濟(伯濟)를 파악한 찬자들이 다음에 나타나는 扶餘百濟(百濟)가 高句麗와 같은 扶餘系統에 있으므로 두 百濟(伯·百)를 조합하여 하나의 百濟로써 三國鼎立의 紀年에 맞추려고 하였다. 『三國史記』 편찬 당시의 高麗는 高句麗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것으로 천명하였으므로 高句麗를 兄으로 百濟를 아우로 하는 兄弟建國說話를 기존의 高句麗紀에서 모방하여 僞作하였다. 다행히 百濟의 始祖를 古朝鮮에서 擬人化한 溫祚로 冒稱함으로써 朝鮮百濟의 史料批判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基本史料

- 『三國史記』 『三國遺事』 『日本書紀』
『續日本紀』 『資治通鑑』 『海東繹史』
『與猶堂全書』 『中國正史朝鮮傳譯註』 『日本六國史朝鮮關係記事譯註』

2. 發掘報告書

- 金元龍, 『風納里土城內包含層調查報告』 1967.
夢村土城發掘調查團, 『夢村土城發掘調查報告書』 1985.
文化財管理局, 『八堂·昭陽鎭水沒地區遺蹟發掘綜合調查報告』 1974.
文化財管理局·文化財研究所, 『漣川三串里百濟積石塚發掘調查報告』 1994.
朴漢高·崔福奎, 『中島積石塚發掘報告』 『中島發掘調查報告書』 1982.
裴基同, 『堤原 陽平里 A地區 遺蹟發掘調查報告』 『忠州鎭水沒地區文化遺蹟發掘調查綜合報告書』 考古·古墳分野(Ⅰ), 1984.
서울大學校博物館·考古學科, 『石村洞積石塚發掘調查報告』 1975.
서울大學校博物館, 『石村洞 3號墳 東쪽 古墳群 整理調查報告』 1986.
서울大學校博物館, 『石村洞 古墳群 發掘調查報告』 1987.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東南地區 發掘調查報告』 1988.
서울大學校博物館, 『夢村土城—西南地區 發掘調查報告』 1989.
서울大學校博物館, 『石村洞 1·2號墳』 1989.
石村洞遺蹟發掘調查團, 『石村洞 3號墳 積石塚發掘調查報告書』 1983.
崔鍾澤, 『九宜洞—土器類에 대한 考察』 1994.

3. 著 書

- 金貞培 『韓國古代의 國家起原과 形成』 1986.
盧重國 『百濟政治史研究』 1988.
文定昌 『百濟史』 1988.
孫永植 『韓國의 城郭의 研究』 1987.
申滢植 『百濟史』 1992.
俞元載 『中國正史 百濟傳 研究』 1993.

- 尹乃鉉『고조선 연구』1994.
- 尹武炳『百濟考古學研究』1992.
- 王健群『廣開土王碑 研究』林東錫 譯 1985.
- 李康來『三國史記 典據論』1996.
- 李道學『백제고대국가연구』1995.
- 李丙壽『韓國古代史研究』1976.
- 井上秀雄『東アシア民族史』1974.
- 崔夢龍『한강유역사』1993.
- 최무장『고구려고고학 I·II』1995
- 宮崎市定『中國史』曹秉漢 譯 1983.
- 유엠부전『古朝鮮』이항재·이병두 譯 1990.
- 『山海經』鄭在書 譯解 1985.
- 『韓國古地名辭典』李永譯·田溶新 1993.
- 『한국민족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원연구원 1991.
- 『韓國史大事典』教育出版社 1981.
- 『世界史大辭典』民衆書林 1995.

4. 論 文

- 金賢淑「高句麗 初期 那部の 分化和 貴族의 姓氏」『慶北史學』第16輯, 1993.
- 權五榮「初期百濟의 성장과정에 관한 일고찰」『韓國史論』15, 1986.
- 盧泰敦「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國史館論叢』第4輯, 1989.
- 成周譯「漢江流域 百濟初期 城址研究」『百濟研究』14, 1984.
- 李根兩『日本西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한국정신문화원 博士學位論文, 1994.
- 李基東「百濟王室 交代論에 대하여」『百濟史의 理解』1991.
- 任孝宰「石村洞 百濟初期古墳의 性格」『考古美術』129·130합집. 1976.

색경(穡經)의 저술동기에서 본 발생기 실학(實學)의 한 모습

홍 정 덕*

— 목 차 —

I. 序 論

II. 本 論

1. 실증적인 자세
2. 愛民의 입장

3. 우리것에의 관심

III. 結 論

參考圖書

I. 序 論

서계(西溪) 박세당(朴世當)은 1629년에 태어나 1703년에 세상을 떠난 조선중기의 특징적 학자이다. 1660년 등과이래, 여러벼슬을 거쳐 1667년 행정일선에서 물러난 후 양주(楊州) 석천동(石泉洞) [현 의정부시 장암동-장자울]에 은거하여 후진양성과 학문연구 및 저술에 몰두하게 되는데 이 은거중에 그의 학문적 탐구의 성과인 사변록(思辨錄)과 농서 [색경(穡經)]을 저술하게 된다.

서계 박세당의 생년기간인 인조에서 숙종까지의 시대는 소위 양란이후 혼란해진 조선사회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면서 무엇보다도 그 지배이데올로기인 성리학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대안을 찾고 있던 시대였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종교의 전반이 급류를 타고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었고, 이를 붙들고 올바른 지향을 추구하며, 변화를 긍정적인 발전으로 인도해야 할 사대부층은 오히려 더욱 더 심각한 자기 모순 속에서 당쟁을 격화시키며, 한층 딱딱한 보호막을 둘러치고 있을 뿐이었다. 흔히 지적되

* 議政府文化院 郷土文化研究員

는 것처럼 과전법(科田法)체제와 더불어 국가 수취체제가 급격히 붕괴되었고, 양란의 혼란을 틈타 새로이 성장하는 민중세력은 사대부 양반문화를 부정하는 서민문화를 확산하는 것과 더불어 신분제 자체를 붕괴시켜가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되는 새로운 사조 내지는 가치관을 일람하여 우리는 흔히 실학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거니와, 조선후기사회는 이 실학운동을 통하여 새로운 활로를 찾는 적극적인 탐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 실학의 발생, 성장, 전성, 쇠퇴의 과정은 경제, 지리, 역사, 산업 등 전영역에서 보다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사상적 지평을 전개하여,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학이 가지는 정확한 개념적 정의나 성격은 아직도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지하는바 실학의 단계를 정리하여 권문해, 한백겸, 김 욱, 이수광 등의 준비기, 유형원, 박세당, 이익, 안정복, 이증환, 신경준, 서명응 등의 맹아기,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성해응, 정약용, 김정희, 이규경 등의 전성기, 그리고 박규수, 박영효, 이동인 등의 쇠퇴, 계승기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그 사고의 지향하는 바를 따라 경제치용(經世致用)적 실학과 이용후생(利用厚生)적인 실학으로 구분하기도 하는 등의 분류가 있어 왔다.

또한 실제로 용어의 문제에 있어서도 [실학]¹⁾은 불교나 도가에 대응하여 유교적 학문을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고, 또는 고증학을 실학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서양의 근대과학을 수용하는 태도 전반을 일컫는 용어로 쓰여지기도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실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익은 율곡 이이를 들었고, 정인보는 반계 유형원을, 현상윤은 김육을 들었으며, 학문적 성과에 주목하여 한백겸을 내세우는 견해도 있다.

실학은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생하였는가? 전기한 것처럼 실학은 주자(朱子)의 사고체계를 재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성리학(性理學)을 지존의 가치로 확립한 조선의 지배층은 이 성리학을 바탕으로 그위에 국가통치 및 사회조직 그리고, 문화발전의 기본노선을 설정하였었다. 현실적으로 과거에 합격하고 관리로 입신하는 일 이외에는 사회참여의 길이 없었던 사대부지식층의 입장에서 주자 성리학을 체득하고 천착하는 일은 유일한 출세의 통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1) 조선후기문화(실학부분)

었다. 따라서 주자의 울타리 밖에 서거나 또는 그 울타리 밖을 기웃거리는 일 자체가 대단히 큰 모험이며 사대부로서의 삶 자체에 대한 불경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양란은 이런 기본구조를 뿌리채 뒤 흔들어 놓는다. 주자학의 명분론에 바탕한 중화체제에의 안주나, 신분적 상하관계를 견인하던 윤리가치가 수습 못할 정도로 흔들리고 거기에 더하여 그나마 양란을 수습하였던 주체세력은 사회지도층이던 주자학적 사대부들이 아니라 그들이 억압하던 민중들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정치현장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주변세력들은 지배주체를 공격하며 개혁적인 새로운 사고의 모색을 주장하게 되는 바 이것이 주자사상체계에 대한 재검토로 나타나게 되고 지배주체에서는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 한층 교조적인 경직을 보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개혁, 보수의 갈등은 조선 후기의 정치상황을 특징짓는 당쟁의 격화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서, 남인의 다툼과 노소론의 분파는 이런 배경 안에서 변전과 환국을 거듭하며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하는데 규모가 크게는 인조의 반정에서부터 장희빈 사사 및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이어지며, 예론(禮論), 북벌운동(北伐運動) 및 사관론(史觀論) 등 첨예한 대립을 계속하게 된다. 서계 박세당은 봉당의 측면에서 볼 때 소론(少論)계열에 위치한다. 이는 그가 명재 윤증(尹烝)과 친밀히 교류하였고 동향이었던 박세채나 처숙²⁾남이성 또는 처남 남구³⁾ 만 등이 모두 소론당색이었던데다 그의 가치관 역시 개혁을 지향하는 입장에 있었던 까닭이다. 물론 서계가 중앙정과의 봉당을 주도한바 없다하여도 그는 오히려 봉쟁이상의 격렬한 다툼의 표적이 되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그가 반 주자의 입장을 선명히 한데다가 당시 보수, 명분론의 중심에 있었던 송시열을 과감히 공격하는 태도를 취한 까닭이다. 조선 후기 당쟁의 한 분수령이 되었던 회니 논쟁의 연장선 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이경석 신도비문(神道碑文) 사건은 서계가 우암을 올빼미, 백헌 이경석을 봉황으로 묘사하여 대비하게 되는바 이 사건으로 그는 소위 사문난적(斯文亂敵)으로 규정 되는 것이다. 비록 아들 박태보가 장희빈 책봉과 민비 폐척에 반대하여 장사(杖死)한 공로가 참작되어 죽음은 면하고, 유배되는 것으로 감형되기는 하지만 이 일은 서계가 생애를 마치는 계기가 되었고 사변록은 압수하여 불태우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서계는 사변록에서 주자의 사서장구(四書章句)를 공격하는 과감성 외에 유자로서는 금기라고 할수 있던 노자의 도덕경 등 도가의

2) 일찌기 부모를 여윈 박세랑은 결혼한 후에 비로서 공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 처가의 도움이 컸다.

3) 양주 석천동(의정부시 장암동)의 옛집 근처에는 남구만, (또는 김시습)의 필적이라고 전해지는 암각이 있다.

경전을 주석하기도 하였다. 그러면, 박세당의 이와 같은 입장은 그의 농서인 색경의 저술에 어떤 모습으로 반영되었고, 어떤 형태로 나타났을까? 이를 통하여 살펴볼수 있는 발생기 실학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

Ⅱ. 本 論

1429年 세종은 정초. 변계문 등에 명하여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국적농서인 [농사직설](農事直說)을 편찬하게 하였다. 중국 농서에 의지하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한 이 농사직설은 관찬 농업지침서로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고 당시의 농업기술의 실태를 망라하여 이후 조선 농업기술 및 경영의 표준이 되었던 것이다. 이 농사직설은 비곡(備穀)에서부터 종교맥(種蕎麥)에 이르기 까지 10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예컨대 직파법(直播法), 건답법(乾畝法), 이앙법(移秧法) 등 수도(水稻) 재배법 및 육도(陸稻) 등 당시 조선의 농야에서 행하던 실제의 농업기술이 종합되어 있으며 세종조의 정치안정과 국력발양기의 산업발전 상황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양란을 거치며 농지는 그 면적이 급감하고 황폐해졌을 뿐 아니라 모자라는 국용(國用)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취체계가 강화되었고 이 위에 토호(土豪)나 향관(鄉官)의 약탈이 심하여 농가와 향촌은 피폐의 극에 달하게 되며 민생은 극도로 수척해지게 된다. 따라서 발생기 또는 초기 실학의 관심은 이와 같이 피폐한 농촌사회를 어떻게 재건하고 불들어 세울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대동법(大同法)의 시행이나 군보포미감(軍保布米減), 진상감성(進上減省), 세공신공감(稅貢身貢減), 폐언경간(廢堰耕墾) 등 국가정책도 위농(爲農)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더하여 이 수광, 김육, 유형원, 홍만선, 이익 등은 나름대로 향촌부흥의 방법을 제시하게 되었다. 구황식품의 보급이나 외래작물⁴⁾의 경작이 나타나고 신농법의 보급도 행해졌다.

1655年 신숙(申夙)은 전기 농사직설에다 금양잡록(衿陽雜錄),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 그리고, 세종의 권농교본, 주자의 권농문을 합본하여 농가집성(農家集成)을 간행하게 된다. 박치유에 의하여 구황촬요가 부록으로 첨부된 이 책은 조선조 농학을 대표하는 최고수준의 농서로 평가받으며 농업경영의 표준지침으로 자리잡는다. 1676年 박세당은 새로이 색경을

4) 서양세력의 세계확산과 함께 아메리카 대륙의 농작물이 유럽을 거쳐 아시아로 전파된다. 감자, 호박, 담배등이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

편찬하면서 그러나 농가집성이나 농사직설 등 체제농서를 인용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농서를 만든다. 행정가이며 경학자였던 박세당이 농서를 편찬한 것은 무엇 때문이며, 체제농서를 응용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근래 색경을 검토한 많은 이들이 이 농서의 가치를 폄하하여 이르기를 단지 중국농서를 베꼈을 뿐이라고 하였다.

(1) 그렇다면, 서계는 단순히 중국농서를 베껴내는 이런 쓸데없는 작업을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해 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농가집성이 가지는 결함을 인식하는데 있다. 김용섭은 농가집성⁵⁾이 관찬되어 널리 보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서가 가지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첫째가 수전농법에만 치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부지방의 수전농촌 이외의 한전(旱田)농업지대에서는 적용범위가 제한될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농사직설과 함께 농가집성도 역시 삼남의 농법을 위주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양잡록과 사시찬요초를 부가하였지만, 이런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농가집성은 중부 또는 그 이북지역에 적용할수 있는 완전한 농서가 아니었다.

세번째는 농정이념에서 지주, 대농위주의 입장을 취하였다는 것이다. 지주, 전호제(佃戶制)의 유지를 기본바탕으로 한 이와 같은 농정입장은 당시 진행되던 농민몰락의 상황에서 비판되어야 할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이와 같은 지주제 내지 관유지 또는 검병의 확대를 주자의 권위를 빌려 강요하고 있는 듯한 태도는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었다.

양난 이후의 농촌사회몰락을 소농제 회복을 통하여 구원하려는 입장을 가졌던 개혁파나 발생기 실학자들에게 있어서 농가집성의 이러한 결함은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문제로 비쳐지게 되고 이후 새로운 농서편찬의 급격한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색경의 편찬은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는 한 선구적 현상이었다. 백호 윤휴나 명재 윤증과 함께 주자학을 비판한 서계 역시 주자사상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고경(古經)으로의 복고(復古)를 내세우게 되는바 농서편찬에서도 농가집성이 가지는 현실적 문제를 본인의 현실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한전농법을 위주로 편찬된 중국농서에서 준거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알려진 것처럼 서계가 준거로서 발견한 중국농서는 [농상집요](農桑輯要)이다. 이 책은 [제민요술](濟民要術)과 함께 중국의 하북농법을 반영한 농서로서 이

5) 김용섭-조선후기 농학사 연구

미 여말 선초에 우리나라 농법경영에 크게 참고된 바가 있었다. 화북은 한전농업지대로서 기후와 풍토가 시차를 달리 하는바는 있으되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흡사함이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점은 이 책을 준거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박세당이 이 책을 준거하면서 견지하였던 학문적 태도에 있는 것이다. 박세당은 이 농상집요를 자신이 삼사(三司)에 재직하는 동안 궁내 도서관에서 구하여 읽고 그 내용이 자신이 얻은 농사 경험상의 여러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서 기뻐하며 이를 요약하였다.⁶⁾ 그리고, 그 후 오랜세월 자신이 스스로 경작하여 직접검증하고 검토하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실제의 경농을 거쳐 확증되는 것들만을 다시 보충하였고, 그는 이를 [오득오사](吾得吾師)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다. 현종 9년에는 친히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화북현지를 출장하여 여행하였으므로 화북의 풍토를 확인하여 실증적인 면을 보완할수 있었을 것이다. 서계는 색경의 서문에서 '자료를 덜어내고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농사경험이 자료의 준거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발생기 실학의 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무증불신](無證不信)의 모습이다. 서계는 실제로 농사를 지어 농가집성이라는 관학체계가 가지는 문제점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려 하였을 뿐 아니라 한전농업에 적용될 수 있는 농법상의 준거를 찾아내었고, 소농체제의 확립을 통한 향촌사회의 재건이라는 개혁목표에 이론적 근거를 확립할 수 있게 되었다.

김용섭은 색경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농가집성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중요한 문제들이 다루어졌다. 그러한 점에서 색경은 농가집성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문제들을 어지간히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⁷⁾

(2) 두번째로 서계는 愛民이라는 입장에서 학문의 목적과 학문하는 자의 기본자세를 구하였다.

'제왕의 덕은 절약 감소하여 애민하는데 있을 뿐입니다... 임금이 만약에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마땅히 절약하여 쓰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서계집 8권 잡저 —

6) 색경서문

7) 김용섭-조선후기 농학사 연구

그는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민(民)을 사랑하고 민(民)을 양육하는 것이 목민의 본의이며 마땅히 힘 쓸 부분이라고 극력 주장한다. 물론 당시나 지금이나 행정에 관여하는 이들치고 이런 뜻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언(言)과 행(行)이 얼마나 일치하는가 하는데 있다. 주지하는바 성리학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던가? 그것은 이론의 궁구가 지나쳐 실행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왕학(王學)이 성리학을 공격하는 주의도 바로 성리학이 공론에 그친다는 것이요, 실생활에 널리 이용할 바가 적다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조선사회에 끼친 성리학적 해악도 역시 이런 [공론(空論)]일 것이다. 무엇이 실제로 민을 육성하는 도리이며, 민의 고통을 풀어내는 것인가에 대하여 지배층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계가 사문(斯文)의 난적(亂敵)으로 물리는 이경석 신도비문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경석은 대 청관계에서 분명한 주화(主和)의 입장에 선다. 누구라도 양국의 국력과 당시 국제적 역학관계를 조명한다면 신흥강국 후금(後金)과 맞서 싸워야 할 명분도 이유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결국 전쟁으로 내 몰려 항복한 인조는 청제의 송덕비를 세우도록 강요받고 거절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백현 이경석이 수치를 무릎쓰고 송덕비의 비문을 작성하느라 또하나의 국가위기를 모면하게 한다. 그러나 그 후 집권세력의 주체가 된 인 송시열은 정통명분론의 입장에서 비문작성자 이경석을 신의와 신역(臣役)을 저버린 사람으로 매도하게 되고 아울러 맹목적 명분론에 입각한 북벌론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⁸⁾ 이와 같은 정치구조에서 박세당이 그 백현의 신도비문 가운데서 우암을 공격하여 그를 불상인(不祥人)으로 규정한 것은 결국 그 피해가 최종적으로는 민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는 명분론의 허구를 공격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다. 색경서문에서 박세당은 사대부가 가져야 마땅한 애민의 자세를 이렇게 말한다.

‘그대는 이책 [색경]을 무엇에 쓰려는가? 그대는 장차 군자가 되지 않고 야인이 되려는가? 그렇다. 나는 진실로 야인이 되려 한다. 대체로 사대부가 조정에 나아가 그 뜻을 행할 때는 군자라하고 물러나와 들을 갈아 제 힘으로 밥 먹으면 야인이라 하나니 나는 들에서 농사지은지 벌써 오래인데 어찌 야인이 아니기를 바라겠는가?’⁹⁾

8) 조선후기당쟁의 종합적 검토(한국정신문화연구원)

9) 색경서문

10) 서계전서 8권-잡저

그는 이 농서가 진실로 농사짓는 이 땅의 민에게 유용한 책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다. 김용섭도 이점을 유의하여 박세당이 준거로 참고하였던 농상집요에 가장 먼저 또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우마](牛馬)편이 색경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그는 소농의 입장에서 소농에게 도움이 되는 현실적 농법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것이지 지주나 광작인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발생기 실학이 적어도 박세당에게는 애민의 입장을 배경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왕도(王道)는 민을 기르는데 있고 (在於養民), 이는 민으로 하여금(事民) 재산을 누리게 하여야 하니 (有恒產), 이것이 천하에 가장 근본되는 (天下之大本) 바탕(實)이라고 하였다.’¹¹⁾

(3) 세번째, 색경의 저술은 철저히 현실적 여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변적이고 보편적인 사고체계에서부터 돌이켜 학문의 토양이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주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리학의 명분론적 논리들은 정치안정과 집권기반의 확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조선사회는 나름대로의 안정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안정은 고정된 지배체제의 확립과 함께 우리가 아는바 지배주체의 자리를 놓고 치열한 분열과 분쟁을 야기하게 된다. 흔히 말해지는 것처럼, 사화를 훈구와 사람간의 대립이라고 규정하지만 좀더 자세히 그 내막을 들여다 보면 훈구와 사람의 싸움이라는 흑백논리가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오히려 태종, 세종, 세조를 거치면서 집권자들은 왕권(王權)과 신권(臣權)이라는 보다 실질적인 대립구조를 만들었고¹¹⁾ 왕권은 훈구와 사람의 경쟁을 이 대립구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판단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성종에서 연산군, 중종에 이르는 시기에 발생하는 사화의 제반 과정에서 성종, 연산군의 왕권강화 노력이 보다 큰 사화의 발생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붕당의 발생도 보다 직접적으로는 이런 구조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배계층의 입지는 주자학적 명

11) -삼사를 중심한 언관(言官)의 활약은 구조적으로 신권이 왕권을 제약하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왕권은 이를 제압하고자 하였다.

분론과 이에 입각한 지배장치를 더욱 강화시켜갔으나 양란의 충격 속에서 이러한 지배이데올로기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재검토의 작업이 보편적인 학문세계로부터 돌이켜 현실적이고 주관적인 입장을 모색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이 보다 자주적인 학문태도와 학문대상을 선택하게 한다고 보겠다. 이용후생적이거나 경제치용적이거나 그 근본 입장과 지향점이 다르다고는 하여도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우리]의 상황에 보다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 준다는 것이 실학을 파악하는 커다란 관점임에는 이견이 없다. 서계의 경우 그가 일찌기 실학발생기의 한 주체로 주목받았던 것은 그의 이러한 자주적인 태도 때문이었다. 그는 독자적으로 사서(四書)를 개주(改註)하므로써, 반 주자의 입장을 확립하였고 이런 학문적 입장을 실천하여, 성리학적 정통론을 강화하므로써 양난이후의 혼란을 수습하려 노론세력으로부터 견제받기 시작했다.¹²⁾ 물론 주자의 입장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박세당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다. 일찍이 회재 이언적이 이를 구체화하고 있었고, 이율곡도 안민(安民), 위민(爲民)의 입장에서 실학의 선구적 입지를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양난이후 지배주체들이 성리학적 보수를 절대가치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백호 윤희가 사문난적으로 사사되고, 노, 소의 분당으로 정치적 대립이 첨예화하는 과정에서 박세당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점은 주목의 대상일 뿐 아니라 발생기 실학의 선구적 위치에서 새로운 학문의 지평을 열었다고 보겠다. 서계가 색경을 집필하면서 당시의 관찬농서인 농가직설이나 농가집성을 단 한줄도 인용하지 않은 것을 김용섭은 박세당의 반주자적 입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서계의 자세는 단호하다. 색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일부 의견은 중국농서인 농상집요를 인용하고 참고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아예 배겼다고 까지 지적한다.

그러나 오늘날, 색경을 정독하고 그 본뜻을 정확히 이해하여 볼 때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대부분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서계는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오래 직접 농사 지으며, 조선중기의 농업경영이 가지는 현실적 입장을 정확히 파악한 후에 관찬농서가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농민의 농법상 어려움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여 해결하려 하였고, 한전농법을 위주로한 농상집요, 제민요술의 농법을 도입하므로써 이를 준거하였다는 것이다. 그것도 단순히 중국의 한전농법을 중국농서를 소개하여 우리 농업경영에 도입하려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직접 검증하고 확인하는 자주적이고 실증적인 입장을 견지했던

12) -송시열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박세당이 이조전랑에 임용되는 것을 않도록 막았고 이일 후에 박세당의 관로는 막힐수 밖에 없었다.

것이다.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편찬한 관찬농서를 중심하지 않고 중국의 농서, 그것도 시대가 많이 올라가는 농서를 사용하여 자신의 저서에 준거로 삼았다는 것만을 비판하고 그 내용도 인용이 많다는 것만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부농촌 경리의 당시 실상과 문제점들이 색경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었는가 하는 여부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그는 벼보다는 대, 소맥을 농곡의 중심으로 삼고 이를 보다 다득(多得)하기 위하여 새로운 농법으로 일무삼경(一畝三畝)의 대전(代田)체제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구종법(區種法)이나, 운도(耘稻), 시비(施肥)등에서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농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실사구시(實事求是)가 공부하는 태도의 기본이라면 서계의 색경저술이야 말로 실사구시의 가장 훌륭한 표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Ⅲ. 結 論

양난 이후의 급변하는 사회현실을 박세당은 개혁으로서만 안정시키고 더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체제이데올로기의 재검토라고 파악했다. 이와 같이 근본을 재검토하는 과감한 입장에서부터 농서 색경이 탄생하였다. 색경은

첫째, 당시 관찬 농서를 통하여 보급된 농업경영의 제 원칙이 가지는 문제점과 한계를 인식하는데서부터 그 저술의 동기가 주어진다. 중국 강남농법체제와 3남의 수전농업에 바탕을 두고 지주, 전호제 강화를 농정사상으로 하는 농가집성이 가지는 여러 한계를 해결하는 개혁적 대안을 그는 탐색했던 것이다.

두번째로 그는 당시피폐한 국가 경영 상황에서 책임과 부담을 강요당하던 농민의 입장에 섰다. [애민(愛民)]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이런태도는 혼란기에 처한 학자, 대안을 모색하는 행정가가 견지해야 할 근본입장으로서 거기에 더하여 언과 행이 일치해야하는 실천적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겠다. 그는 자신의 입장을 야인(野人)에 두므로써 애민을 위한 자세를 확립할 수 있었고, 또 자신의 주장에 무게를 실을 수도 있었다.

셋째 그는 현실적인 상황인식에서 나아가 자주적 입장을 확립한다. 보편적인 학문으로부터 현실적인 자기 세계로의 회귀와 함께 새로운 학문적 지평을 열게되었던 것이다. 발생기 실학은 대안 모색의 탐색단계에서 한 개혁론자 박세당의 치열한 삶을 통하여 이후

성호, 여유당, 연암, 담헌 등으로 계승되며 보다 확고한 학문세계를 정립한다. 그러나 색경은 널리 보급되거나 농서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 했다. 서계가 염원하였던 바 야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실제로 상실했던 것이다. 이것은 색경이 가지는 농서 자체로서의 한계때문은 결코 아니었다. 색경은 이론적 구상이기 보다는 실질적인 저자 경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그것은 정치적 상황이었다. 그가 주자학적 명분론을 공격하고 부정하였다는 이유로 사문의 난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바로 원인이 아니었을까? 이 때문에 색경도 불온서적으로 간주될 수 밖에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색경의 한계는 비단 서계나 색경만이 가지는 한계는 아니었다. 그것은 실학 전체가 가지는 한계이기도 하였다. 오늘날 다시 주목되고 검토되는 실학의 학문적 성과들이 그 연구자가 지배주체가 아니었고, 신분상 한계가 있었고, 또는 지나치게 선구적이라는 이유로 활용되는 면에 적극적인 제한이 있었다는 점은 학계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부분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 서계 유거 일대와 그가 가꾸던 농경지 부근은 지금 떠들썩한 유원지로 변해있다.

參 考 圖 書

- | | |
|-----------|----------------------------------|
| 김용섭, | 한국 농학사, (1994-민음사) |
| 이춘녕, | 한국 중세 사회 해체기의 제문제, (1992-한울) |
| 근세사연구회, | 조선 후기 당쟁의 종합적 검토, (1994-정신문화연구원) |
| 이성무(외), | 한국사론선, (1985-형설출판사) |
| 한국사연구실, | 회룡문화5호, (1995-의정부문화원) |
| 의정부문화원, | 세종조 문화연구(Ⅱ), (1984-정신문화연구원) |
| 역사연구실, | 조선출판문화사(고대-중세), (1995-사회과학원) |
| 리철화, | 조선출판문화사(고대-중세), (1995-사회과학원) |
| 이형구(외), | 한국사학8, (1984-정신문화연구원) |
| 윤사순, 고익진, | 한국의 사상, (1984-열음사) |
| 김광진(외), | 한국경제사상사, (1989-이성과 현실) |
| | 조선전사10, (1980-과학, 백과사전출판사) |
| 김용섭, | 조선 후기 농업사연구, (1988-일조각) |
| 민성기, | 조선 농업사연구, (1988-일조각) |
| 김태영(외), | 한국의 사회경제사, (1991-한길사) |
| 정성철(외), | 조선철학사Ⅱ, (1987-과학백과사전출판사) |
| 동양학연구소, | 조선 후기문화(실학부분), (1986-단국대 동양학연구소) |
| 정성철, | 실학파의 철학사상과 사회정치적 견해, (한마당) |

燕山君 禁標碑 研究

—大慈洞 禁標碑를 中心으로

鄭 東 一*

目 次

序 言	2. 燕山君代 大慈洞 禁標碑
第1章 禁標의 起源과 設置 目的	第3章 大慈洞 禁標碑와 棄毀制書律
1. 起源	1. 禁標의 設立과 禁標 區域
2. 禁標의 設置 目的	2. 大慈洞 禁標碑와 棄毀制書律
3 禁標의 區域과 管理	3. 燕山君代 大慈洞 禁標碑의 撤去
第2章 大慈洞 禁標碑의 發掘 經緯	結 語
1. 禁標碑의 發掘 및 確認 經緯	

序 言

본 연구는 조선시대 燕山君 집권기 경기도 고양시에 세워진 ‘大慈洞 禁標碑¹⁾에 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 禁標碑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금표비가 발굴된 것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자동 금표비’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禁標(碑)에 관한 기록은 문헌상에 간헐적으로 보이고는 있으나 그 실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줄만한 자료는 물론 그 實物이 그동안 발굴된 바 없었다. 지금까지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전무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굴된 ‘대자동 금표비’의 발굴 경위를 소상하게 밝히는 데 있다. 두번째는 금표비의 實相 곧, 금표비가 생겨난 연원과 설치 목적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를 究明해 보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세번째는 금번 최초로 발굴된 ‘대자동 금표비’의 金石學的인 의의와 함께 그것이 지니는 역사

*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1) 이 금표비는 현재 ‘燕山君 禁標碑’란 명칭으로 京畿道地方文化財 자료88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향후 또 다른 燕山君代 禁標碑가 발굴될 가능성이 있어 편의상 발굴된 地名 이름을 부쳐 그 명칭을 ‘大慈洞 禁標碑’라 지칭하기로 한다.

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후술하거니와 ‘대자동 금표비’는 흔히 石物이 갖는 금석학적 의미 외에도 연산군의 ‘弊政’과 깊은 역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상정된다. 다시 말해 이 금표비를 통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연산군 폐정’의 또 다른 일면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廣開土大王 碑文 연구를 비롯한 丹陽 赤城碑, 中原 高句麗碑 등 고대사와 관련된 고대 비문에 관한 연구는 매우 큰 진척을 보였다.²⁾ 그러나 이에 비해 조선시대 비문 및 석물 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금석학적인 연구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예컨대 神道碑, 墓碑, 墓標 등의 銘文 판독 및 서체 연구 등 금석학 내지 미술사적 가치를 밝히는데 치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³⁾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인 ‘대자동 금표비’는 이상과 같은 금석학적 의미 외에 이 금표비에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이라는 銘文이 담겨 있어 이를 통한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의 추론을 가능케 해주고 있다. 따라서 우선 ‘棄毀制書律’이란 법률 조문이 언제 어떠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그것이 연산군 집권기에 들어와 ‘언문사용금지’ 처벌 법률로 사용되게 된 경위 등을 먼저 구명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법률 조항이 ‘대자동 금표비’에 명문화됨으로써 생겨난 결과에 특히 유념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棄毀制書律’이라는 법률 조항을 담고 있는 이 표비로 인해 그것이 세워진 경기도 고양시 지역에 미친 弊害 등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후술하거니와 고양시 지역은 이 표비가 세워진 이후 3년간(1504~1506) 혁파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이 기간에 관한 고양시의 역사가 단절 및 공백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으로 ‘대자동 금표비’ 연구는 금표비 자체에 관한 연구 뿐만 아니라 고양시 향토사 연구에

2) 李進熙, 『廣開土王碑의 探究』, 一潮閣, 1982.

李亨求 朴魯姬, 『廣開土王碑新研究』, 同和出版公社, 1986.

權敬愛, 「廣開土王陵碑文解釋의 再整理」,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0.

廉胤洙, 「中原高句麗碑小考」, 高麗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3.

金貞培, 「中原高句麗碑의 몇 가지 問題點」, 『史學誌』13輯, 1979.

木下禮仁, 「中原高句麗碑」, 『素軒南都泳博士 回甲記念史學論叢』, 素軒南都泳博士 回甲記念事業會, 1991.

鄭泳鎬, 「단양신라적성비의 발견조사 경위」, 『史學誌』,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8.

李基白, 「단양적성비 發見의 意義와 적성비 王敎事 部分의 檢討」, 『史學誌』,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8.

邊太燮, 「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대한 檢討」, 『史學誌』, 檀國大學校 史學會, 1979.

3) 秦弘燮, 「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 『歷史學報』26輯, 1964.

文玉祥, 「香村埋香碑에 對한 小考」, 全國鄉土史研究論文 第3集, 文化院聯合會, 1993.

李蘭暎, 『韓國金石文追補』, 中央大學校 出版部, 1968.

黃壽永, 『韓國金石文遺文』, 一志社, 1976.

金洪哲, 「下溪洞所在 國文古碑 研究」, 『향토서울』, 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76.

주요한 단서와 새로운 연구 지평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의가 높다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主 자료로 사용한 것은 금번 발굴된 ‘대자동 금표비’ 외에 주로 이와 직접 관련된 『燕山君日記』에 크게 의존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금표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기에 본 연구는 이에 관한 초보적 연구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없지 않다. 따라서 금번 이 연구는 금표비에 관한 연구의 端初를 열었다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第1章 禁標의 起源과 設置 目的

1. 起 源

금표비란 왕이나 왕족이 사냥, 군사 훈련, 산림 보호의 목적으로 금표 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을 말한다. 넓은 의미로써의 금표비는 나무로 만든 木柵과 石碑로 이루어져 있는데 금표 구역의 입구나 산비탈, 하천 등 자연적인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세워졌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금표는 대체로 두가지의 유형이다. 그 중의 하나가 강원도 原州 稚岳山에 남아 있는 금표 입석이다.⁴⁾ 이 금표석은 소나무 등 산림을 보호할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이와 유사한 예는 경기도 고양시 西五陵⁵⁾ 입구에 존재하였던 禁川에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금천은 ‘금골’이란 지명으로만 구전될 뿐 그 정확한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두번째의 유형은 중국에서 자주 보이는 금표의 한 형태로 왕실의 사냥을 위해 금지 구역을 정하고 그 표시로 세운 예이다. 본고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대자동⁶⁾ 금표비는 이 두가지 유형 중 후자의 경우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금표의 설치는 옛 古代 中國으로부터 있어 왔다. 중국의 대표적인 古書이며 經書의 하나인 『孟子』에 보면 “文王의 사냥터는 70리나 되었으며 齊나라 임금은 40리가 된다.”⁷⁾고 하였다. 그런데 똑같은 금표내에서도 문왕의 사냥터는 백성들이 땀감을 얻는 등 왕과 백

4) 이 금표 立石에는 『禁標』란 글씨만 기록되어 있음.

5) 경기도 고양시 龍頭洞에 소재한 사적 198호. 昌陵 敬陵 翼陵 弘陵 明陵.

6) 행정구역상 京畿道 高陽市 大慈洞, 조선3대 太宗이 하사한 명칭.

7) 孟子, 『孟子』, 梁惠王章句 下, 文王之, 方七十里, 齊王之, 方四十里.

성이 서로 이용할 수 있었으나 제나라 왕의 경우는 40리 안쪽 사냥터에서 일반 백성이 보이게 되면 殺人罪를 적용하여 다스리게 했다고 한다.

“제선왕이 문기를 ‘문왕의 동산이 사방 칠십리라고 하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맹자가 대답하기를 書傳에 실려있습니다.’ ‘(제선왕이) 그렇게 큼니까?’ ‘(맹자) 백성들이 오히려 작다고 했습니다.’ ‘(제선왕이) 나의 동산은 사방 사십리인데 백성들이 오히려 크다고 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 문왕의 동산이 사방 칠십리로되 풀을 베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으며 꿩이나 토끼를 잡는 사람들이 다닐 수 있어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이용하였으니 백성들이 작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제(맹자)가 이 나라 국경에 들어 올 때에 국가에서 금한 곳에서 검문을 받은 뒤에 겨우 들어오게 되었으니, 제가 듣건대 국경선 내 사방 사십리 안에서 사슴을 죽인 자는 살인죄와 같이 한다고 하니 이는 사방 사십리로 나라 가운데 합정을 파놓는 것과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크다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⁸⁾

이는 고대 중국사회에 있어 금표의 성격을 시사하여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대사회의 금표비 설립에 관한 내용은 좀처럼 알 수 없다. 다만, 高句麗 벽화에 보이는 말타고 사냥하는 모습 등에서 당시 사냥을 목적으로 왕과 왕족이 금표 구역을 설정하였으리라는 추론도 가능하다. 조선조에 들어 왕과 왕족들은 王宮 주변에 일정한 지역을 금지 구역으로 정하였다. 이들은 政事에 지친 몸을 궁안 장소에서 심신의 휴식을 취하는 의미로 금지 구역을 정하였는데 景福宮의 杏遠亭, 昌德宮의 後園인 秘苑 등이 이와 비슷한 예라 할 것이다.⁹⁾

요컨대 금표는 고대 중국으로부터 유래되었으며 왕과 왕족들이 자신들의 전용 사냥터, 군사 훈련 등의 목적으로 설정한 구역이며 이를 표시하기 위하여 목책이나 석비로 세운 표석이 곧 금표비라 할 수 있다.

2. 禁標의 設置 目的

삼국시대로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금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기원에 대해서는

8) 위와 같은 책, “齊宣王이 問曰 文王之 方七十里라 하니 有諸잇가 孟子對曰 於傳에 有之하니이다 曰 若是其大乎잇가 曰 民猶以爲小也니이다 曰 寡人之 是 方四十里로되 民猶以爲大는 何也잇고 曰 文王之 是 方七十里에 芻 者往焉하며 雉兔者往焉하여 與民同之하시니 民以爲小不亦宜乎잇가. 臣始至於境하여 問國之大禁然後에 敢入하니 臣聞 郊關之內에 有 方四十里에 殺其麋鹿者를 如殺人之罪라 하니 則是方四十里로 爲 於國中이니 民以爲大 不亦宜乎잇가.

9) 정재훈, 『한국의 옛 조경』 대원사, p.*62, 1990.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금표비의 설립 목적은 크게 아래의 세가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그 중 첫번째는 왕이 사냥을 목적으로 세운 것인데 이 구역 내에서 사냥과 함께 휴식도 취하였다.

연산군 10년 8월 19일 丙子條에 보면

19日(丙子) 전교하기를,

“文王의 동산에는 서민들이 자식들처럼 왔다(庶民子來)’ 하였으니, 그때는 풍속이 순박하므로 이와 같았던 것이다. 지금은 비록 당연히 할 일을 하더라도 不肖한 무리들이 싫어하여 꺼리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미 배어 없었노라. 田獵같은 것은 淫佚(방탕한 것을 하며 노는 것)이 아니요, 정사하는 여가에 기운을 풀고 사방을 살피는(行氣省方) 것인데, 어찌 백성의 폐를 헤아리겠는가? 또 庶人들이 활쏘기를 배우는 것은 진실로 쓸데 없는 일이다. 쓸데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불의를 자행하게 된다. 洪伯慶이 형조 郎廳으로 있을 때에 죄인이 이를 쏘려는 자가 있었고, 禹允恭이 光州判官으로 있을 때에 쏜 자가 있었다. 풍속의 아름답지 못함이 이같을 수 있겠는가? 서인으로서 활쏘기를 배우는 것은 일체 금단하라.” 하였다.¹⁰⁾

라 하였다.

위와 같은 전교로 볼때 연산군은 중국 고대의 文王을 예로 들어 정사에 피곤해진 심신을 사냥으로 풀기 위하여 금표를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또 왕의 금표 구역을 일반 백성들이 범할 것을 우려해 일반인의 활쏘기 또한 일체 금지시키는 내용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왕의 경우 금표 지역이 넓고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며 자유로이 출입하였던 점에 비해 연산군은 금표 구역 내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일체 자유로운 출입을 용납하지 않은 점에서 그 성격이 사뭇 달랐다. 일찍이 聖君이라고 일컬어지는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함과 아울러 龍飛御天歌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 세상의 백성들을 교화시키기에 힘썼다. 이 용비어천가를 일명 與民樂이라고 하는데 이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이다. 곧, 왕 혼자만이 즐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과 고락을 같이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민락을 하면서 동시에 성군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근

10) 丙子傳曰文王之 庶民子來其時風俗淳朴故如此令雖爲所當爲之事不肖鎮壓憚怨故既誅除之矣至於田獵非爲淫佚政事之暇行氣省方耳豈計百姓之弊乎且庶人學射固無用徒無用因此恣行不義如洪伯慶爲刑曹郎廳時有罪人欲射之禹允恭爲光州判官時人有射之者風俗之不美有如是耶庶人學射者一禁.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丙子條(『국역연산군일기』8권, 민족문화추진회, p.40, 1972. 이후로『일기』라 약칭함).

거가 되는 까닭이다. 이러한 금표의 이용 대상 면에 있어서도 성군과 폭군의 차이를 분명히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즉, 성군은 금표를 백성들과 함께 이용하며 즐겼으나 폭군은 금표 구역으로 자신만이 이용하며 일반인의 출입을 일체 허락하지 않았다.

또 10년 8월에

“옛말에, ‘선왕의 법을 따른다’ 하였으니, 지금도 또한 선왕 때의 일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령으로 말하면, 위에서 시행하도록 명하는 것은 예전에 하지 않던 것이라 하여 저지하고, 아래서 하고 싶은 것은 반드시 하기를 계청하니, 이 어찌 옳은 일이며, 田獵으로 말하면 10旬토록 돌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 때로 나가서 사냥하는 것이 무엇이 정사에 해로워 불운하게 아뢰는 것인가? 이는 곧 스스로 편하려는 계책이다. 禁標로 말하면 小民들이 자주 범하게 되므로 그렇게 죄준 것이니, 만약 범하지 않는다면 어찌 반드시 죄주겠는가? 또 금표 한계가 넓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범하기 쉬우니, 그 禁限을 넓게 하여야 범하지 않을 것이므로, 錄楊坪도 또한 금표 안에 넣도록 하라.”¹¹⁾

고 하였다.

이 내용은 왕이 조선조 先王의 법에 따라 전렵을 합법적으로 행하고 금표 구역 내로 침입하는 일반 백성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연산군은 금표 내에서 아주 오랜 기간만 사냥을 하지 않으면 나라 일에 해가 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금표를 정하고 백성들이 이를 범하기 때문에 금표 구역을 더욱 넓힌다며 금표 구역 확대를 정당화하고 있다.

왕이 자신의 전용 사냥터로 만들기 위한 금표의 설치에 대하여 조선 중신들은 옛 제왕의 예를 들어 그대로 따르고 있다.

10년 8월에 柳淳¹²⁾등이 아뢰길

“만약 흉악한 사람이라면 경연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조정의 반열에 두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사냥하는 일은 절도 있게 하면 또한 불가할 것이 없습니다. 옛 제왕도 또한 모두 행 하였으니, 정사에 마음을 두다가 때로 나가 한다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누가 스스로 편하기 위하여 아뢰었겠습니까? 금표는 곧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

11) 啓古云遵先王之法令亦可遵先王時事也以法令言之上命之行則以爲古所不爲而退之下所欲爲則啓請必行是豈可乎以田獵言之井十旬不返則時出而田何害投政而於紅啓之是乃目安之計也以禁標言之小民等數有所把故罪之如此若不把之則何必罪之今禁限不麻故民易伯順令廣其禁限乃得不把錄陽坪亦今入禁標內又介宴享或進.『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丁卯條(『일기』 p. 26).

12) 柳淳(1441~1517), 조선초의 文臣, 本貫은 文化, 燕山君代에 領議政을 역임. 中宗反正에 功臣으로 수록.

그 한계를 넓히는 것도 또한 무방하며, 연향도 또한 모두 부득이한 일이므로 天災가 없는 때이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¹³⁾

라고 하였다. 이는 금표가 수렵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다. 이때 금표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냥에 대한 반대 의견이 기록에 보이지 않는 것은 왕에게 直言할 수 있는 중신들이 각 사화 등을 통해 화를 당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금표를 세우게 되는 두번째 목적은 군사를 訓練시키기 위해서였다.

연산군 10년 8월에

전교하기를,

“대저 백성들이 사는 땅은 임금의 땅 아닌 것이 없어 사사로이 할 수 없으므로 그 取捨와 興奪이 마땅히 위에 있어야 한다. 지금 禁限을 세운 것은 가까운 지역에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냥을 하려는 것이다.”¹⁴⁾

하였다. 위의 기록에는 온 나라의 땅을 왕의 소유로 본 연산군의 통치관을 엿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그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사냥을 하기 위하여 금표를 세우고자 하였다.

또, 同王 8월 9일에

9일(병인) 金 勘 등이 戒論文를 지어 올렸는데,

“지금 도성밖 동서 근방지역에 표를 세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함은 봄 가을 사냥과 군사 조련을 위한 곳으로써 食治하고 수렵하는 장소이므로 모두 국가에서 폐할 수 없는 일이다.”¹⁵⁾

라고 하였는데 이는 연산군대 금표 설립 초기에는 옛 先王들과 같이 사냥과 군사 훈련을 위해 금표가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세종실록』 세종30년 12월 10일조에 보면 세종이 고양 지역의 대자암 부근을 講武場, 狩獵場으로 삼아 이 일대를 사냥금지구역으로 정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또, 세조 18년 4월에 西郊에 거동하여 경천, 옥련 등지에서 사냥하고

13) 洵等日若堯人則非唯不可入於事行之有節則亦未爲不可古之帝王亦不可使在於朝列也全獵之 帝王亦皆行之留心政治而時出之則何害哉泉九以爲自安而啓之乎禁標乃所當爲之事也廣其標限亦 爲無妨宴享亦皆不得已之事時無天災則所當行也.『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10日, 丁卯條(『일기』pp. 22~23).

14) 傳曰大抵民人所居之地莫非王土非所得而私之取舍與奪當在於上今立禁限者欲於近地鍊兵行獵.『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7日, 甲子條(『일기』 p.14).

15) 丙寅金勘等製戒論文以進曰茲者都城外東西近地樹標禁人出入爲蒐獵鍊兵之地食治禽獵之所國家不可廢之事.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9日, 庚寅條(『일기』p.21).

저녁 때에 이르러 환궁하였다.¹⁶⁾

이곳 금표 내에서는 주로 도성의 수비를 담당하는 군사들이 주둔, 수렵 훈련을 하였다. 금표를 세우게 된 세번째 목적은 유흥을 즐기기 위함이었다.

연산군 11년 5월에

“왕이 興淸을 거느리고 금표안에 나가 노닐기에 틈나는 날이 없으므로, 菓闕이 있으면 곧 口傳으로 하비하게 하였다.”¹⁷⁾

이는 王이 금표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 내용은 연산이 금표 내의 유흥으로 나라 정사에 얼마나 소홀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입으로 하비케 한 것은 선비들의 상소 등을 피하기 위하여 취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연산군 11년 7월에

왕이 승정원에 묻기를,

“예로부터 제왕은 누구나 연회를 베풀고 놀이하는 곳이 있었다. 隋에는 汾陽, 唐에 驪山, 前朝에 이르러서도 長源이 있어 고려의 詩人이 읊은,

푸른버들에 문 닫힌 열아홉 집이요, 綠楊閉戶八九屋

밝은 달에 발을 걷은 서너 사람이더라. 明月捲簾三四人

라는 글귀가 있다. 그 詩辭를 읊어보니 곧 화려하고 진기한 경치를, 천년 뉘에도 悠然히 상상할 만하다. 이제 藏義門 밖이 산 밝고 물 고와 참으로 한 조각 절경이므로, 禁標를 세워 離宮 수십 칸을 지어 잠시 쉬는 곳으로 하고자 하니, 의정부와 의논하여 지형을 그려서 바치라.”

하매, 영의정 유 순 등이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하십니다.”

하였다.¹⁸⁾

16) 幸西郊 于敬天玉蓮等獵至慕還宮, 『태종공정대왕실록』 제35권, 18년 4월 12일 壬辰條.

17) 王率與淸出遊禁標內無虛日故有菓闕即今口傳下批, 『燕山君日記』 第58卷, 燕山君 11年 5月 6日, 庚寅條(『일기』 p.290).

18) 王問承政院曰自昔帝王莫不有燕遊之所隋有冷陽唐有驪山至於前朝亦有長源高麗詩人有綠楊閉戶八九屋明月捲簾三四人之句詠其辭則其麗景奇致千載之後悠然可想令藏義門外山明水麗眞一段奇境欲樹禁標構離宮數十間以爲假息之地其與議政府議圖形以進領議政柳洵等啓上教兄當, 『燕山君日記』 第58卷, 燕山君 11年 7月 1日, 甲申條(『일기』 p.337).

이는 연산이 유흥을 즐기기 위하여 경치 좋은 곳을 찾아 금표를 세우고 궁을 지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 내용 중 수십칸의 이궁은 곧 行宮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이궁은 위급시에 왕이 임시로 피하는 행궁의 본래 의미와는 달리 오직 유흥과 휴식을 위한 장소로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산군의 폐정이 심화되면서 금표는 본래의 의미인 사냥이나 군사 훈련 보다도 유흥에 더욱 큰 비중을 두게 된다. 연산군 12년 1월에는 왕이 말 천여필을 두고 항상 안장을 싣어놓고 나가 놀기를 기다렸다는 기록이 보인다. 당시 왕은 이 말들을 타고 마음대로 금표 안을 다니면서 놀고 술을 마시는 것을 일상생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금표 내에서는 일반 백성들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폐륜의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同王 12년 7월

“왕이 禁標 안 길을 따라 豆毛浦에 놀이가므로 궁녀 천여 명이 따랐었는데, 왕이 길가에서 간음하였다.”¹⁹⁾

이는 금표 내에서 있었던 일들 중 구체적인 지명과 출입자,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즉, 이 내용으로 주로 경치좋은 곳과 도성 주변에 금표가 설정되었고 왕이 금표에 행차할 때에 궁녀가 대규모로 동원되었으며 간음 등의 폐륜적인 예가 금표 내에서 행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결국 금표 구역이 정해지고 금표비 설립 초기에는 사냥과 군사 훈련 등의 목적으로 금표가 이용되었으나 연산군 집권 후기로 들어서면서 유흥과 폐륜의 목적으로 금표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禁標의 區域과 管理

(1) 금표의 구역

금표의 구역은 늘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각 시대와 왕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연산군이 자주 인용하던 중국의 문왕과 제왕도 30여리의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 고대에 있어 금표의 구역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 王由禁標內路遊豆毛浦官入千餘從王淫千道傍. 『燕山君日記』第63卷, 燕山君 12年 7月 18日, 乙未條(『일기』 p.677).

조선조 전기에는 비교적 도성 주변의 좁은 구역이 사냥터로 이용된 듯 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냥터는 항상 일반 백성을 통제하지 않고 왕이 사냥에 임할 때만 일시적으로 출입금지 구역으로 삼은 듯 하다.

금표비에 관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연산군 10년 8월부터이다. 『燕山君日記』 제 55권 연산군 10년 8월조에 보면 처음 금표비를 세우게 된 것은 任士洪²⁰⁾ 이 인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후 금표의 면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확장된다. 다음은 금표가 세워진 뒤 처음 보이는 기록인 10년 8월 6일의 내용이다.

6일(계해) 都城門을 열도록 하였다.

李季全 閔孝曾 등이 새 길을 답사하여 정하였다. 嘉麟院으로부터 昌敬陵 남쪽을 둘러 幸州의 길과 합하여 禁標를 세우고, 북쪽은 達峴으로부터 성까지의 거리가 30~40리인데, 산 언덕이 끊어진 곳에는 모두 木柵을 설치하여 그 안의 人家를 모두 철거시키고, 전지도 모두 경작을 금하였다.²¹⁾

라 하였다. 금표를 인도한 사람이 임사홍으로 지목한 것은 중요한 사실인데 이는 임사홍이 갑자사화를 일으키게 한 장본인이며 연산군에게 유홍과 폐륜을 부추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위의 기록 중에서 昌敬陵²²⁾은 현재의 高陽市 龍頭洞에 위치한 서오릉 중의 한 곳이다. 이 곳을 서쪽으로 하여 幸州의 길과 만나게 되면 그 경계는 현재의 花田洞과 玄川洞인데 이는 현재의 昌陵川을 그 경계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강 방향의 금표는 幸州의 길과 만나게 되면 그 경계는 현재의 花田洞과 玄川洞인데 이는 현재의 昌陵川을 그 경계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강 방향의 금표는 幸州의 길과 井浦가 만나는 江梅洞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구역은 지금의 고양시 지역 1/3 가량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금표로 설정된 지역 내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였고 논밭 耕作을 禁하였으므로 금표 설치 초기부터 고양 지역은 황폐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한 위의 기록은 금표 설립 초기에 금표의 표식을 목적으로 한 금표비의 재질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20) 任士洪(~1506), 조선조 전기의 權臣, 本貫은 豐川, 甲子士禍 등을 주도한 인물.

21) 李季全 閔孝曾等查定新路自嘉麟院循昌敬陵南與幸州路合而禁標北自達峴距城幾三四十里山絕斷處皆設木柵其內人家撤之田皆禁耕. 『燕山君日記』 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6日, 癸亥條(『일기』 p.13).

22) 昌敬陵, 昌陵은 조선조 8대왕인 睿宗과 그의 妃 安順王后의 능이며 敬陵은 睿宗의 형인 추존의 德宗과 그의 妃 昭惠王后의 능이다.

그후의 기록들은 주로 금표 구역이 급격히 확장되는 내용들이다. 연산군 10년 8월에는, 전교하기를,

“옛글에 이르기를, ‘온 하늘 밑이 왕의 땅 아닌 것이 없고, 온나라 사람이 왕의 신민 아닌 것이 없다’ 하였으니, 만약 다른나라 토지를 침범하여 차지한다면 잘못이지마는, 내 나라 땅을 내 하고 싶은대로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는가? 서쪽은 弘福山 惠陰峴으로부터 恭順陵에 이르기까지와 동쪽은 수락산으로부터 綠楊坪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표 안에 넣고, 큰 길을 蛾嵯山 등처로 나가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여 수목이 무성하여 지기를 기다리면 禽獸도 살게 되어 연병과 사냥을 할 수 있을 터이니, 경기 관찰사 安潤德이 李季全과 함께 가서 금표를 세우되, 畫員 2인을 데리고 가서 지형을 그려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²³⁾

라 하였다.

위의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왕 자신이 온 나라의 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금표 구역을 크게 확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당시 금표의 경계가 구체적인 지명으로 보이는데 楊州의 弘福山²⁴⁾을 거쳐 高陽의 惠陰峴,²⁵⁾ 坡州의 恭順陵²⁶⁾에 이르는 지역이 금표에 포함되었다. 이 기록으로 보면 현재 고양시 전지역이 금표 구역 내에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大慈洞 禁標碑도 이때 세워진 것으로 여겨진다. 즉, 금표비가 세워져 있는 대자동 間村마을은 기록에 보이는 惠陰峴과 恭順陵 사이인데 구체적으로 惠陰峴으로부터 남쪽 5리 지점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 혜음령은 都城으로부터는 60여리 떨어진 거리이며 이곳 대자동에 금표비가 세워지게 된 것은 당시 이곳이 高陽郡 地域의 行政 交通에 중심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즉, 조선조 전기 고양군 청사는 이곳으로부터 북쪽 3리 지점인 古邑마을에 있었으며 漢陽과 中國, 朝鮮 북부지방으로 연결된 關西大路²⁷⁾가 이 부근을 지나가고 있다.

이후 금표는 楊州의 豐壤宮²⁸⁾과 光陵²⁹⁾까지 연이어 세워지게 되고 도성과 금표 구역의 경계를 분명히 구분하기 위하여 금표비가 세워지게 된다. 금표의 구역이 확대될 때 직접

23) 傳曰古云全天下莫非王土率土之濱莫非王臣若他國土地侵有之則非矣我國之地惟意所欲有何不可西則自弘福山 惠陰峴至恭順陵東則自水落山至綠楊坪皆今入標內而大路今出蛾嵯山等處如是而待樹木茂密則禽獸可居可以鍊兵打圍今京畿觀察使安潤德同李季全往樹禁標率畫員二人圖形以啓. 『燕山君日記』 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16日, 癸酉條(『일기』p.37).

24) 楊州郡 長興面 石峴里 일대의 산.

25) 고양시 碧蹄洞과 坡州郡 廣炭面 龍尾里 사이에 위치한 고개.

26) 坡州郡 條里面 奉日川리에 소재한 사적 205호, 恭陵은 睿宗의 元妃인 章順王后의 능이며 順陵은 成宗의 元妃인 恭惠王后의 능이다.

27) 또는 燕行路, 義州路라 부르기도 한다.

28) 양주군에 있던 離宮의 명칭.

29) 南楊州郡 富平리에 소재한 사적 197호, 조선조 제7대 世祖와 그의 妃인 貞憲王后 尹氏의 능.

왕명을 받고 시행한 官廳과 官吏는 도성 주변에 위치한 漢城府, 工曹堂上, 京畿 監司 등이었다. 이들은 금표 구역이 왕명에 의해 정하여지면 도면을 이용하여 이를 정리하고 관리하였다.

금표의 구역을 넓히면서 연산군은 王陵도 예외를 두지 않고 금표 구역으로 삼았는데 왕의 조부인 敬陵 안 守護軍도 금표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그 결과 금표 안의 묘, 능 등은 관리하지 않아 풀밭으로 변하고 田地는 모두 황폐화되었다. 또한 漢城의 입구인 慕華館의 담장 모퉁이에 木柵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게 하고 오직 왕이 行幸할 때에만 임시로 철거토록 하였다.

한편 연산군 10년(1504)에 들어서게 되면 금표 구역이 동 서 남 북 사방으로 고루 확장되었다. 10월에 도성으로부터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웠던 남쪽 금표의 면적을 넓혔다. 연산은 李季全 등에게 그 경계를 大江으로 하여 그 앞을 새로이 금표로 삼게 하고 인적을 막아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연산군 10년 10월까지 금표 구역이 계속 확대되었는데 당시 정해진 구역은 다음과 같다.

우찬성 李季全 경기 관찰사 安潤德 승지 尹 珣이 금표에 가서 살펴보고, 도면을 만들어 올리고 아뢰기를, “號鳴山 술당리로부터 작령(까치재)을 따라 귀암에 이르기까지 토성을 쌓되 높이를 10척으로 하고, 성밖에는 구덩이를 파되 넓이와 깊이를 각각 3척으로 하며, 귀암 서낭당 산고개로부터 우이현까지는 표를 세우고, 또 결석현에 토성을 쌓고, 이동으로부터 직동까지 무릇 8개처에는 삭장(창던지기 연습장)을 만들며, 주엽 산동으로부터 새 길을 따라 그 노상에 표를 세우고, 잉읍현 및 소야동 내송현에는 모두 토성을 쌓으며, 마산현 길점 패라리현 추현은 모두 막아버리고, 또 함정원부터 웅주현 묘적사동 동구 문신각 동 동구를 지나 평구역 북쪽 길 위까지는 금표를 세우고 근방에 사는 사람들로 나누어 지키게 하고, 또 별도 군사를 배치하여 지키게 하면 스스로 범해 들어오는 자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리하라 하였다.³⁰⁾

30) 右贊成李季全京畿觀察使安潤德承貞尹珣往查禁標作圖以獻曰自婁鳴山述堂里尊鵠嶺抵龜巖築土城令高十尺城外掘坎廣深各三尺自龜巖城陰堂山嶺至牛耳峴立標又於乞石峴築土城自梨洞至直洞九八造場自往葉山洞從新路於路上立禁標仍邑峴及所地洞內松峴築土城馬山峴吉帖掛羅里峴峴防寒又自檻峴經態走峴妙寂寺洞口文臣各洞口至平丘驛北路上立禁標使旁近居人分守又別置軍士以守之則自無犯入者矣傳曰可『燕山君日記』第56卷, 燕山君 10年 10月 25日, 壬午條(『일기』 p.120).

이 구역은 도성으로부터 동으로 70리, 서로 60리, 북은 65리, 그리고 남으로 10리였다. 현재의 行政區域으로 본다면 서울과 그 주변에 위치한 高陽, 楊州, 廣州, 坡州, 抱川 안쪽 지역이 금표에 포함된 것이다. 연산군 11년에 들어서도 왕은 중국 文王의 苑이 사방 70리라 하면서 금표를 더욱 넓히게 되는데 이후 연산이 中宗反正³¹⁾에 의해 왕위에서 물러날 때까지 금표는 도성 四方으로 백리에 이르기까지 넓혀지게 된다.

동왕 11년 6월에 금표는 동으로 龍津에 이르고 남은 龍仁, 북으로는 大灘에 이르며 서로는 臨津에까지 넓혀졌다. 당시 기록에는

전교하기를,

“경기의 사면으로 백 리를 도형에 의하여 금표를 세우라.”³²⁾

하였다. 도성으로부터 1백리 안의 금표구역은 동북에 廣州, 楊州, 抱川, 永平까지, 서남쪽으로는 坡州, 高陽, 陽川, 果川, 通津, 金浦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새로이 금표구역으로 포함된 곳에 살던 500여 戶의 백성을 모조리 강제로 내쫓고 그 대신 內需司³³⁾의 奴子를 옮겨서 채우게 하였다.

연산군은 금표의 입구에 해당하는 곳에는 예외없이 네 모퉁이에 금표비를 세우게 하여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죽여 거리에 버려두게 하였다. 그후 연산군 12년(1506)에 들어서면서 새롭게 서쪽의 富平도 금표에 포함시켰는데 그 거리는 바다에 이르기까지 도성으로부터 70여리였다.

연산군 12년 2월의 내용에 금표 구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명하여 금표의 한계를 정하였는데, 서북은 고임진 석벽 고랑이를 기점으로 하여, 무미동 뒷고개 저구리 차유령 상수역 남쪽 고개 소라산 마차산 대탄을 거쳐 신장산에서 그치고, 동북은 중현산에서 시작하여 오방산 천보산 석문고개 백련천을 거쳐 수종산 대찬에서 그치고, 남쪽은 대고현에서 시작하여 소고현 작은 내에서 그치고, 서쪽은 경안역에서 시작하여 마산 선장산 문현산 현릉 남산 천천현 장성곶 양재역을 거쳐 습은현에서 그치고, 서남은 양화도에서 시작하여 고부평 뒷고개에서 그쳤다.³⁴⁾

31) 1506년(연산군12) 成希顔, 朴遵宗 등이 연산을 폐위하고 晉城大君을 추대한 사건.

32) 傳曰京畿四面百里依圖形立禁標.『燕山君日記』第58卷, 燕山君 11年 6月 26日, 己卯條(『일기』p.130).

33) 조선조의 관청으로 궁중에서 사용되는 미곡, 포목, 잡화, 노비 등을 맡아보던 관청.

34) 命定禁標限西北起古臨津石壁古郎伊由無迷洞後帖猪仇里車踰領湘水驛南帖所羅山磨嵯山大灘盡空靈山東北起鍾懸山由五方山天寶山石門峴白連川盡水鍾山大灘南起大荒峴盡小荒峴小川西起慶安驛由馬山禪場山門縣山獻陵南山穿川峴長城串良才驛盡習隱峴西南起楊花渡盡古富平後帖.『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2月 2日, 壬午條(『일기』p.532).

이렇게 하여 금표는 도성으로부터 100리 이내의 구역으로 정하여졌는데 이로써 京畿道의 절반 이상이 이 금표안에 들어가 백성들이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표1)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기록과 같이 도성으로부터 100리까지의 지역이 모두 금표 구역으로 정해져 민가가 모두 철거되었는 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구점이 있게 된다.

이렇듯 광활한 면적이 모두 금표에 포함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며 아마도 『연산군일기』의 기록에 보이는 금표 구역의 100리 설정은 왕의 전교일 뿐 실제로는 연산군의 폐위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실행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표 구역의 광대한 설정은 당시의 政治 經濟 社會에 큰 폐단으로 이어져 燕山君 자신도 결국 中宗反正에 의해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연산군과 중종반정에 관한 연관관계는 뒤의 금표의 철거에서 좀더 자세히 기술토록 하겠다.

표1) 燕山君代 各 時期別 禁標碑 區域 變遷 및 現 行政區域 比較表

연 대	금 표 구 역	현 재 의 행 정 구 역
연산군 10년 (1504) 8월	도성으로부터 30~40리 지역 (가린원, 창경릉, 달현)	고양시, 양주군, 서울시 일대
연산군 10년 (1504) 8월 21일	도성으로부터 60~70리 지역 (홍복산, 공순릉, 혜음령, 아차산, 수락산, 녹양평)	서울시, 고양시, 양주군, 파주군, 남 양주군, 구리시, 광주군 일대
연산군 10년 (1504) 6월	도성으로부터 동은 70리, 서로는 60리, 북으로는 65리, 남으로는 10 리 지역 (호조산, 작령, 우이현, 잉읍현, 추 현, 묘적사 등)	서울시, 고양시, 양주군, 파주군, 포 천군, 남양주시, 의정부시, 구리시, 광주군, 하남시, 성남시, 김포군 일 대
연산군 11년 (1505) 6월	도성으로부터 100리 (광주, 양주, 포천, 영평, 파주, 고 양, 양천, 과천, 통진, 김포)	서울, 김포, 고양, 파주, 포천, 광주, 과천, 시흥, 성남, 부천, 의정부, 하 남시 일대
연산군 12년 (1506) 2월	도성으로부터 100리 지역에 서쪽으 로 서해에까지 이르는 거리	위 내용 지역에 인천 지역이 포함 됨

결국 연산군대의 금표 구역은 다른 여러 王들에 비해 그 면적이 지나치게 광대하였으며 범입자에 대한 잔혹한 處罰도 백성들의 원망으로 이어져 그가暴君으로서 불리우게 된 주요 요인 중의 하나가 되었다.

(2) 금표의 管理

넓은 구역의 금표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은 주로 잔혹한 형벌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금표의 범입자는 매우 많았다. 그 이유는 일시에 모든 생활 기반을 빼앗긴 백성들이 금표 구역 밖에서 굶어 죽거나 금표 구역 내에서 잡혀 죽거나 하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도면을 통하여 금표의 구역과 도성과의 거리가 결정되면 이를 管理하기 위하여 官吏를 두고 경계선을 만들었다. 먼저 도성 안쪽 금표에는 담을 치지않고 성을 쌓았는데 이 禁城의 높이와 면적은 景福宮과 같은 규모로 축조하였다. 또한 경복궁의 서쪽에는 금성과는 별도로 가시 울타리를 쌓아 금표로 삼았는데 仁王山³⁵⁾ 아래에까지 이르렀다.

한편 도성 밖의 금표는 木柵과 담을 쌓아 관리케 하였다. 당시 동서 금표의 담장 높이는 4장이며 宮의 禁牆 높이는 3길³⁾이 되게 하였는데 담을 높게 쌓은 것은 금표 밖에서 안쪽을 바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도성 부근의 금표가 禁牆 등으로 축조되자 연산군은 성 주변의 인가를 모두 철거시킨다. 당시 금표의 管理를 위해 撤去된 인가들은 주로 금표 구역 안쪽을 굶어 볼 수 있는 높이에 해당하는 집들이었다. 그 결과 도성 주변의 駝駱山과 木覓山の 人家들이 철거되어 연산군 12년(1506)에 이르게 되면 景福宮 내에서 보이는 인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또 높은 위치의 인가 철거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금성의 밑으로 통행하는 것조차도 철저히 금지하였다.

연산군 12년 1월에

傳校하기를

“내일은 마땅히 친히 성터를 살펴볼 것이니, 李詮의 집 앞길 이북과, 鄉校洞 軍堡 이북과, 大寺洞 蛇山君의 집 이북과, 典醫監洞 남편 屏門(골목어귀의 길가)이북과, 壽眞坊 南里門이북과, 濟用監洞병문 이북과, 경복궁 下馬碑이북과, 三間 屏門이북과, 松針橋에

35) 景福宮 서편에 위치한 산으로 현재 仁旺山으로 표기하나 이는 일본인에 의해 바뀌어진 명칭이다.

서 社稷에 이르는 이북과, 西部 行廊에서 懸鼓屏門에 이르는, 이상의 인가는 전부 몰아 내라” 하였다.³⁶⁾

위의 내용들은 금표의 管理가 철저한 통행 제한과 범입자에 대한 처벌로 가능하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위해 수많은 官吏들이 동원되었다. 당시 도성 주변의 금표 구역 관리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금표의 서쪽 普賢院과 요로에는 警守所가 설치되어 금표의 출입을 막게 하였다. 본래 경수소는 도성 주변을 비롯한 각지에 설치되어 도적과 화재 등을 막는 임무를 지닌 곳이었다. 그러나 금표의 설치 및 구역 확대로 본래의 목적인 치안유지와는 전혀 다른 연산군의 놀이터를 지키는 곳이 되었다.³⁷⁾ 또 경수소와는 별도로 郎廳을 포함한 羅將과 內需司의 別坐, 書題 등을 수시로 보내 管理케 하였다. 이들은 옛 軍營에서 낮에는 사무를 보고 밤에는 숙직을 하게 하여 왕이 거동할 때마다 행차에 따르게 하였다. 이들에게는 금표에 침입하는 사람을 체포,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처벌케 하였으며 이들 官吏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雷吏라 부르게 하고 羅將의 옷 색깔은 반팔에 검은색 天翼을 붙여 입히게 하였다. 금표 내의 管理는 주로 내수사의 官吏와 奴子들이 맡게 하였다. 이들 노비들은 금표의 경계에 둘러 살며 雜人의 출입을 금지하였으며 奴婢들도 官吏와 마찬가지로 금표의 출입을 보장하는 標示를 하였는데 色絲로 팔뚝에 묶고 官吏가 署名하여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철저한 금표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범입자가 계속 발생하자 수시로 금표에 대한 국가 관청이 범입자 수색에 나서게 되는데 연산군 10년 10월에 보면,

밤에 왕이 매행하다가, 동소문 밖에서 소를 탄 두 사람이 활과 살을 지니고 網을 뚫는데, 한 사람은 동쪽 금표로 들어가 양주로 가는 것을 보고, 환궁하여 바로 전교하기를, “내금위 10인, 검사복 5인, 선전관 1인, 금부낭관 1인을 보내어 양주로 가서 목사와 함께 잡아 오게 하고, 경기 관찰사와 양주목사는 이를 규찰하여 금단하지 못하였으니, 국문하라. 또 인가가 금표에 가까우므로 이와 같이 범하는 자가 있으니, 그 동대문과 수구문을 닫으며, 한강 舟楫을 없애고 모두 금표를 세우라.”

36) 傳曰明日當親查城基自李詮家前路以北鄉校洞軍堡以北大寺洞蛇山君家以北典賢監洞南邊屏門以北壽眞坊南里門以北濟用監洞屏門以北景福宮下馬碑以北三間屏門以北松針橋至杜稷以北西部行廊至懸鼓屏門以上全家刷出.『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1月 8日, 戊子條(『일기』p.502).

37) 元永煥,『朝鮮時代 漢城府 研究』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pp.89~90, 1985.

하고, 또 전교하기를,

“전일 정승들이 의논하기를, ‘箭串을 금표에 넣으면 나뭇길이 끊어진다.’ 하였으나, 아래에서 강행하는 것을 위에서 강행하지 못하겠는가? 다시 불러 묻으라. 또 중요한 길에 초소를 세워 관리를 보내어 지키도록하고, 3개월이면 교체시키되, 교체할 때에는 범한 사람의 유무를 아뢰라.” 하였다.³⁸⁾

위의 기록은 금표를 제대로 管理하지 못한 官員을 국문케 하고 또 금표의 통제를 위해 도성의 문과 한강 다리를 막는 당시의 금표 관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중요한 도로에 사람을 보내서 지키게 하였는데 이로써 도성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큰길은 막히게 되었다.

한편 왕명을 받은 官吏들은 금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承命牌란 출입 표시패를 가지고 있었다. 승명패는 왕이 직접 하사하는데 주로 금표 침입 범인을 색출하거나 금표 안의 내수사 노자들을 관리 감독할 때 착용하였다. 이들 官吏에게는 구체적으로 금표의 관리를 위한 임무와 역할이 부여되었는데 관리 여부에 따라 상과 벌이 내려졌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연산군 12년 4월에 보인다.

전교하기를,

“금표안에 사는 사람들을統領하는 사람이 없을 수 없으니, 官十例에 의하여 길을 나누어 衙門을 설치하고 堂上 郎廳 각 한사람씩을 두되, 소송 이외의 驛馬를 함부로 타는 것, 잡인이 함부로 출입하는 것, 과실나무나 雜木을 작별하는 것 등 일체 모든 일을 다 단속하게끔 衙前 卒徒들을 마련하여 차정해 주고, 모든 公事를 직접 서로 통하여 거동할 때면 길옆에 엎드려 기다리게 하라. 단속을 잘하지 못한 자는 죄를 처벌하여 파면하고, 임무를 잘 보면 資級으로 상주리라.” 하였다.³⁹⁾

이 내용은 금표 구역 내의 관리 상황을 상세히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를 통해 볼때 관리들은 금표 구역 내에서 다른 임무는 없이 오직 금표 구역을 보호 유지하는 역할을 하

38) 夜王微行東小門外見騎牛二人待弓矢擔網 一人入東禁標指楊州去還宮即傳曰遣內禁衛十人無司僕五人宣傳官一人義禁府郎廳一人住楊州同牧使捕來京畿觀察使楊州牧使不能糾禁其 之且人家與禁標相近故有如此犯入者其閉東大門水口門去漢江舟楫 立禁標又傳曰前日政丞等議云箭串入禁標則 採路絶然下之所強上不能強乎其更召問且於要路設鋪遣官守之三朔相逆時啓犯人有無. 『燕山君日記』第56卷, 燕山君 10年 10月 17日, 甲戌條(『일기』p.106).

39) 傳曰禁標內居人不可無統領依官十例分遣談衙門置堂上郎廳各一員詞訟外如驛馬濫騎雜人出入所伐果木及雜木等一應諸事 皆檢察衙前卒徒磨鍊定給九公事直自相通舉動時於路傍俯伏 候不能檢察者決罪罷黑出若着於其任營資. 『燕山君日記』第62卷, 燕山君 12年 4月 14日, 癸亥條(『일기』p.593).

였다. 이들 관리들은 평상시에는 철저한 통제로 금표를 관리하다가 왕이 幸次하면 각 官吏끼리 통하여 각자 임무를 수행하였다.

금표의 입구와 내부의 管理 중 일부는 內需司의 奴婢를 두어 하였지만 특수한 집단을 기거시키기도 하였다. 그 하나의 예로써 연산군 12년 3월 23일조에 보면,

23일(계묘) 해무리가 졌다.

전교하기를,

“奉先寺에 御容(임금의 영정)을 택일하여 移安하라. 중들은 모두 찾아내어 문서를 작성하여 머물러둘 만한 자는 장가들게 하여 금표 내외 밭을 갈아먹고 사냥할 때에 역사를 시키게 하라. 그 나머지는 표 안에 있는 內需司의 종의 집에 붙이게 하라. 만약 도망하는 자가 있으면, 住接을 허락한 戶首를 중죄에 처하고 알면서 고하지 않는 자는 아울러 치죄하라. 외방의 중도 또한 감사 수령에게 영하여 찾아내서 둘 만한 자는 두고, 그 나머지는 아울러 금표 내외 종의 집에 붙여 역사를 시키게 하라. 그리고 淨業院 여승도 둘만한 자는 두고 그 나머지와 각처의 여승은 아울러 연방원의 房婢로 붙이게 하라.”하였다.⁴⁰⁾

라 하였다. 위의 내용은 당시 朝廷의 佛教觀을 엿볼 수 있는 기록이다. 즉, 佛家の 僧들을 금표로 몰아넣어 일을 시키고, 女僧들은 奴婢로 만들어 금표에 머물도록 하였는데 이는 불교 탄압을 통해 또 하나의 연산군의 폭정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백성의 경작 금지와 단순한 수렵장으로서의 금표 관리는 금표 구역 내의 토지를 황폐화시키는 폐단을 낳게 하였다. 또, 금표의 효율적인 管理를 위해서 강제적인 행정 구역이 개편되기도 하였다. 즉, 京畿道 땅의 절반 이상이 금표에 포함되자 京畿와 가까운 忠淸道의 고을을 갈라 京畿에 붙이고 楊州, 坡州의 禁標 밖으로 남은 땅 및 吏民들은 이웃 고을에 옮겨 살게 하였는데 이 구역 안에 있는 各驛들도 금표 밖으로 옮겨 설치케 하였다. 이때에 富平 땅의 경우에는 罪人이 산다하여 완전히 革罷한 후 모두 금표에 포함시켰다.

연산군 집권 후기에 이르면서 금표의 관리를 위하여 군사들도 금표 내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으며, 금표 내의 군사 훈련을 위한 주둔지도 금표 밖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즉, 江原, 黃海, 京畿, 開城의 군사들이 당시 금표 내의 綠楊坪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40) 傳曰奉先寺御容擇日移安僧人等推刷成案可留者令娶妻許耕標內田打園時役使其餘屬標內內需司奴家如有逃者許接戶首置重典知而不告者 治罪外方僧亦令監司守令推刷可留者留之其餘 屬標內奴家以供役使且淨業院尼僧可留者留之其餘及各處邑僧 屬聯芳院芳婢.『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3月 23日, 癸卯條 (『일기』p.574).

금표에 포함되자 이를 鄭今院坪으로 옮기게 하였다. 이러한 주둔지의 이전은 군사상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와 유사한 국방과 교통의 소홀함을 보여주는 기록이 10년 11월조에 있는데,

병조가 아뢰기를,

“下三道(경상 전라 충청도) 烽燧軍이 왕래할 때에 표장을 주어야 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봉수는 다만 변방 일의 유무를 보고할 뿐이니, 모든 변방일을 만약 제때에 馳報한다면 봉수가 없어도 되니, 모든 봉수를 폐지하라.”⁴¹⁾

하였다.

금표의 管理를 위해 都城을 지키는 군사는 주둔지를 잃고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가장 빠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할 烽燧가 폐지된 것을 보면 이미 국방에 큰 허점이 노출된 것을 알 수 있다. 봉수는 본래 불과 연기로써 위급한 일이 발생할 경우 변방으로부터 중앙에 그 상황을 가장 빨리 알려주던 교통 전달 수단이다.⁴²⁾ 이 신호를 통해 왕은 국난 극복의 방비책을 세우고 일반 백성들은 인근의 성으로 피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산군은 이러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봉수를 금표 구역 관리를 위해 폐지시킨 것이다. 봉수제의 폐지는 왕만이 사용하는 금표 구역이라는 점과, 철저한 형벌에 의한 금표의 관리와 더불어 다른 선왕에서는 찾기 어려운 예로써 이는 연산의 폐정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第2章 燕山君 禁標碑의 發掘 經緯

1. 禁標碑의 發掘 및 確認 經緯

1991年 高陽市에서는 新都市가 건설되기 이전에 관내의 문화재를 일제 조사 기록키로 하고 이 연구 작업을 高陽文化院에 의뢰하였다. 문화원에서는 이에 따라 3년에 걸친 조사

41) 兵曹啓下三遺烽燧在南山而南山令入禁限烽燧人往來時當給章標乎傳曰烽燧只報邊事有無耳越邊若能走示時馬也報則燧烽可無也諸烽燧罷.『燕山君日記』第56卷, 燕山君 10年 11月 1日, 丁亥條『일기』p.127).

42) 南都泳, [조선시대 군사통신조직의 발달] 『한국사론9』 국사편찬위원회, 1981.

계획을 세우고 그 결과를 [高陽市文化財大觀]⁴³⁾으로 발간키로 하였다. 대관의 책임 조사 및 원고 집필은 연구자가 맡았고 책자의 편집은 指定文化財, 非指定文化財로 구분하였는데 지정문화재에는 고양시 내의 총 문화재 52점을 수록키로 하였다. 한편 비지정문화재에는 그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 문화재와 새로이 발굴된 문화재를 수록키로 하고 약 2년의 기간으로 비지정문화재 조사에 착수하였다.

문화재 조사는 현장 조사에 앞서 각종 文獻을 통한 1次 史料 정리부터 하였다. 문헌 조사에 기본 자료로 『高陽郡誌』⁴⁴⁾를 이용하였는데 이 책자는 1755년 英祖年間에 발간된 것이다. 주로 조사된 문화 유적지는 개인 묘가 많았으며 大慈洞 일대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확인되었다.

금표비가 발굴된 대자동은 현재 서울에서 統一路를 따라 북쪽 지방으로 연결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 이곳으로부터 남서쪽 4km에 高陽市廳이 위치해 있고 일산 신도시까지의 거리는 서남쪽 8km이다. 본래 이곳 大慈洞의 間村마을 부근은 조선시대 전기부터 高陽의 중심지 역할을 해온 곳이다.

『高陽郡誌』에 의하면 이곳 間村마을 뒷편 5리 지점에 고양군 청사가 위치해 있었다. 당시 이곳에는 鄉校, 南別館, 東軒, 文廟 등이 위치해 있었으며 특히 남별관은 중국왕의 使臣을 맞이하던 곳이다. 이 청사는 世宗代에 지어진 것인데 戰亂을 겪으면서 그 모습이 頽落하였고 仁祖 3年(1625) 금표비의 동쪽 5리 지점인 고양리로 옮기게 되었다. 이곳 고양리는 1914년 서울의 忠正路로 군청사⁴⁵⁾가 옮겨질 때까지 289년 동안 고양의 행정적 중심지였다.

이렇게 볼 때 금표가 위치해 있는 곳은 옛 군청과 새롭게 옮겨간 군청의 중앙에 위치해 교통 문화 통신 등의 요지 역할을 한 곳이다. 또, 이곳에는 이러한 지리행정학적 특징과 함께 朝鮮朝 王孫의 墓들도 수십기 위치해 있어 왕족들의 대규모 족분이 형성된 곳이기도 하다.

이중 금표비로부터 2km 이내에 있는 대표적인 묘로는 太宗의 아들인 溫寧君⁴⁶⁾과 謹寧君⁴⁷⁾

43) 고양문화원, 『고양시문화재대관』 고양, 고양문화원, 1994.

44) 李錫禧, 『고양군지』 고양, 고양군, 1755.

45) 현재의 적십자병원 자리, 1914~1936년까지 사용.

46) 太宗의 셋째 君.

47) 太宗의 넷째 君.

을 들 수 있다. 이들 외에도 玉山君⁴⁸⁾ 寧仁君⁴⁹⁾의 墓들도 금표비와 같은 穴의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데 이중 가장 가까운 거리인 30m 앞에는 戊午士禍⁵⁰⁾때 流配되었다가 1504년 甲子士禍⁵¹⁾때 7父子가 연산군에 의해 死刑당한 茂豐君⁵²⁾의 墓도 위치해 있다.

대자동의 이러한 地理的 歷史的 위치로 보아 이곳은 일찌기 금표가 세워질 가능성이 높았던 곳이다. 또 『燕山君日記』에 왕이 신하를 거느리고 고양땅 大慈山⁵³⁾에 사냥을 자주 나갔다는 기록과 금표비의 발굴은 이곳이 금표 구역 내에 포함되었던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다음으로 금표비를 처음 발굴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94년 11월 17일 오후 1시경 이곳 대자동 일대의 全州李氏 묘역 관리자에게 묘의 분포 상황을 듣고 문화재적 가치가 큰 묘의 조사부터 시작하였다. 금표비는 이중에서 가장 남동쪽에 위치한 茂豐君의 조사를 마치고 錦川君 묘역의 석물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음 발굴하였다. 비는 묘의 오른쪽 文人石과 新墓碑 사이에 세워져 있었는데 생김새가 일반 묘비와 구분되어 쉽게 발굴할 수 있었다.

처음 발굴 당시에는 비문의 내용 중에 금표라는 기록이 있어 금표비임은 알았으나 언제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세워졌는지는 알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묘역 앞쪽의 묘비와 신도비에서는 비의 뒷면에 年號와 주체자가 기록되어 그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었으나 이 비의 경우 뒷면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 고증에 어려움이 있었다. 비는 처음 발견 당시부터 오랜기간 땅 속에 묻혀 있다가 출토되어 황토색이 비의 각 면에 묻어 있었다. 후일 이곳을 管理하고 있는 全州李氏 子孫에 의하여 이 비가 약 10여년 전 금표비 부근 묘역의 정화사업 도중 땅 속에서 발굴되어 묘비인 줄 알고 이 묘역 위에 세워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연구자는 발굴된 금표비를 먼저 실측과 사진 촬영을 한 뒤 비문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뒤 좀더 자세한 文獻調査를 위해 文化院으로 돌아왔다. 1987년도에 본 문화원에서 발간한 『高陽郡誌』에 금표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燕山君時代에 만들어진 금

48) 太宗의 손자이며 謹寧君의 장남.

49) 太宗의 曾孫, 玉山君의 둘째 아들.

50) 1498년(연산군4) 金瑬孫 등 新進士類가 柳子光 등 勳舊派에게 화를 당한 사건.

51) 1504년(연산군10) 연산군의 生母인 廢妃尹氏 賜死문제로 연산군이 일으킨 사건. 太宗의 曾孫, 號는 西湖主人.

52) 太宗의 曾孫, 號는 西湖主人.

53) 고양시 大慈洞에 소재한 해발 124m의 산. 崔瑩장군 묘가 있다.

표비임을 확신하고 다음날 魚漢 文化院長께 조사 보고를 하였다. 사진과 함께 금표의 내용을 들은 어원장은 이곳 大慈洞에 거주하면서 고양 지역의 金石文에 조예가 깊은 鄭漢昌 先生께 諮問 요청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문화재대관의 발간에 자문을 맡은 鄉土文化研究委員會 회의를 소집하였다.

3일 후 문화원 회의실에서 열린 향토문화 연구위원회에서 연구자는 금표비의 발견 경위와 현 상황에 대해 설명한 후 연산군대의 금표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개인 의견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위원들의 자문을 받았는데 정한창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은 금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거론치 않았으나 연산군대에 세워졌다는 건립시기 문제와 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문연구자에게 考證을 받았다.⁵⁴⁾

대자동의 금표비는 『燕山君日記』 56卷의 10년 8월 내용 기록에 구체적인 지명으로 확인되었다. 즉, 惠陰嶺과 恭順陵 사이에 標를 세웠다는 기록과 棄毀制書律이 연산군 당대에만 금표 침입에 적용한 법률이라는 점이 밝혀져 대자동의 금표비가 연산군대의 금표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燕山君代 大慈洞 禁標碑

연산군 금표비는 1994년 처음 발견된 이래 현 위치에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⁵⁵⁾ 비의 형태도 발견 당시와 큰 변화는 없으나 필자가 그동안 몇차례 拓本 을 위해 碑身을 씻어 비문은 예전보다 훨씬 뚜렷한 상태이다. 그후 이 금표비는 1995년 文化財管理局과 京畿道, 高陽市 等 關聯機關의 調査와 建議로 京畿道地方文化財⁵⁶⁾로 指定되어 보호되고 있다.

금표비는 花崗巖 재질로 되어 있으며 비의 전체적인 모습은 長方形이다. 비의 규모는 총높이 147cm, 두께 23cm, 가로가 55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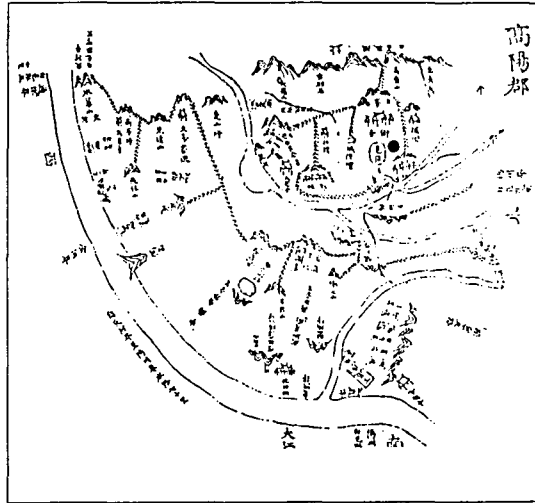
비는 현재 臺座와 碑身, 碑頭의 構造인데 이중 대좌는 근래에 전주이씨 종친회에서 새로이 만들어 놓았다. 비신은 본래 회백색의 화강암이었으나 오랜기간 땅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곳곳에 황토색이 보이고 있다. 비의 윗부분 20cm를 이루고 있는 비두는 아무런 문자나 문양은 보이지 않으나 왼쪽과 오른쪽 모서리의 대부분은 깨져있는 상태이다. 깨진

54) 향토문화연구위원회의 자문과 문화재대관의 감수를 맡은 한성대학교 국문학과 鄭後洙 교수에게 고증을 요청, 『국역연산군일기』내용을 통해 금표비임이 확인되었다.

55) 연산군 금표비 건립 당시에 이곳의 행정지명은 高陽郡 沙里大面 大慈里이다.

56) 京畿道 文化財 자료 제88호.

모양이 한 방향으로 일정치 않고 훼손상태가 심한 것으로 보아 도끼나 정 같은 것에 의해 毀損된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후기에 제작된 지도상의 금표비 위치(●부분)



연산군 금표비 근경

대자동 금표비에는 모두 14자의 비문이 앞면에 기록되어 있는데 書體는 해서체이다. 금표비에 기록된 14자의 비문은 다음과 같다.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處斬”

이를 간단히 국역해 보면 “금표내에 들어오는 사람은 棄毀制書律에 의해 處斬한다.”라는 내용이 된다. 여기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은 棄毀制書律인데 이 법률은 본래 중국 大明律의 하나로서 조선조 전기부터 기록에 보이는데 연산군10(1504)년에는 연산군이 한글 使用禁止法으로 도용하였다. 다시 그후에는 금표 범입자에게 적용하였는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토록 하겠다.

第3章 燕山君 禁標碑와 棄毀制書律

1. 禁標의 設立과 禁標 區域

(1) 금표의 설립

다음은 연산군대 대자동 금표비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산군대 이전의 금표 모습이 『世宗實錄』 세종 30년 12월 10일조에 보이는데 당시에 고양땅 혜음산 등이 사냥터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곳은 왕을 위한 사냥 금지 구역일뿐 일반 백성들도 땀감을 하는 등 왕과 백성이 같이 이용할 수 있었고 그 면적도 일정한 구역만을 설정하였을 뿐이다. 또한 왕이 행차하지 않는 시기에는 금표 구역 내에서 경작도 가능하였고 범입자에 대한 처벌도 연산군에 비해 훨씬 가볍게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금표비의 설립은 아래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연산군의 즉위 초에는 윤필상, 이극돈 등 성종 때의 인자와 사림이 있어 조정의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재위 4년부터 사화의 기운이 돌더니 1498년에 무오사화로 많은 인제가 도퇴되고 다시 1504년 연산군의 지나친 사치와 향락과 폐비윤씨 사사사건으로 갑자사화가 일어났다. 이후 연산군 주변에는 전조에 있던 충신과 직언을 할 수 있는 중신은 없고 다만 임사홍, 임승재 등과 같은 간신과 권신들만이 그를 보좌하게 되었다. 특히 임사홍 부자는 당대에 풍류객으로 술과 향락을 좋아하였는데 이들은 연산의 포악한 성품과 자질을 이용하여 수많은 폐륜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귀찮게 하는

사간원, 홍문관, 정언 등 언관을 모두 혁파시키고 상소와 상언, 격고 등 여론과 관련되는 제도는 모두 중단시키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연산은 전국 각지의 미색여인을 골라 바치게 하고 매일 유흥을 일삼았는데 처음에는 도성 내의 궁 깊숙한 곳에서 있었으나 점차 그 지역을 넓혀갔다. 특히 경치가 좋은 곳에는 이궁 정자 등을 짓게 하고 금표 구역으로 삼았다.

이러한 弊政이 심화되면서 연산군은 도성과 그 부근에 금표를 세워 경기도 수백리 땅을 모두 풀밭으로 만들어 짐승이 살게 하였다.

연산군 10년 8월에는

“인군은 어찌 밤낮으로 수고만 하고 말 것이겠는가? 정사하는 여가에 때로는 놀며 구경하여 中和의 기운을 길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世宗께서도 群臣을 거느리고 수렵의 예를 행하셨고, 文王의 동산도 또한 수렵을 위하여 둔 것이니, 그 望遠亭 成山浦 衍禧宮 길을 막아 사람들의 통행을 금하라.”⁵⁷⁾

연산군은 治世의 상징인 世宗을 예로 들어 狩獵을 하고 이에 필요한 금표 설정을 합리화하려 했으나 금표 본래의 의미인 사냥과 軍士訓練보다 개인적 유흥의 장으로 금표를 이용하여 결국 朴元宗과 成希顔 등 中宗反正 세력에 의해 폐정을 끝맺게 된다.

금표비가 세워지고 그 경계를 구분하는 木柵이나 가시울타리, 禁牆, 禁城 등이 만들어진다면 이곳에는 일반 백성들은 절대 출입이 금지되었다. 이 금표 구역은 해당 官吏, 官聽에 의해 徹底히 管理, 통제되었으며⁵⁸⁾ 中國 사신 등 외부에는 일체 비밀로 하거나 합당한 命分과 대비책을 강구해 놓았다. 연산군 11년 8월 기록에 금표 구역이 구체적으로 보이는데

21일(계유) 전교하기를,

“望遠亭 이남으로 백 리를 한계로 하여 禁標를 세우고 陽川縣을 革罷하며, 망원정 근처의 도로에는 사람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되, 李季소을 불러서 가서 금표를 세우게 하라.”

57) 傳曰人君矣待勞勞肝而已行政之暇時遊觀以養中和之氣故世宗率群臣行蒐狩之禮文王之亦爲蒐狩而設也其寒望遠亭成山浦衍禧宮之路禁人通行.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18日, 乙亥條(『일기』p.41).

58) 尹泰榮 具素靑, 『李朝五百年野史』眞文出版社, 1972.
鄭飛石, 『李朝女人史話』正音社, 1976.
서울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東亞出版社, 1963.

하매, 계동이 아뢰기를,

“망원정에서 이남으로 가면 富平 관아의 문에 이르는데, 관아를 거쳐서 바닷가까지 40리쯤과, 양천으로부터 서쪽으로 金浦 通津을 거쳐 甲串에 이르는 70여 리쯤은 다 바닷가 경계가 되므로 표를 세울 것이 없으며, 표를 세워야 할 곳은 망원정으로부터 부평에 이르는 사이 뿐입니다. 그러나, 먼저 금표를 세우면 세 고을에 사는 백성은 그 수가 매우 많은데, 다 楊花渡(양화나루)를 거쳐서 분주히 나갈 것이므로 騷擾하게 될 것 같사오니, 監司로 하여금 먼저 모조리 내보내게 한뒤에 표를 세우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⁵⁹⁾

이 내용으로 보면 금표의 구역이 도성에서 漢江을 건너 西海에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 있는데 당시 각 지명이 상세히 기록되어 지금 현재의 면적과 비교가 용이하다.

또한 연산군 11년 7월에는

이로부터 동북으로는 廣州 楊洲 抱川 永平에서 서남으로는 坡州 高陽 陽川 衿川 果川 通津 金浦 등에 이르는 땅에서 주민 5백여 호를 모조리 내보내고, 內需司의 奴子(종)를 옮겨서 채우고, 네 모퉁이에 금표를 세우고, 함부로 들어가는 자는 棄市를 하니, 樵夫 牧童의 길이 끊겼다.⁶⁰⁾

고 하였다. 이는 윗쪽의 내용과 종합해 보면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京畿道가 금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 광대한 금표 내에서는 주민들을 내쫓는 대신 內需司의 노비들만 살게 하여 일반 백성들의 인적이 끊이게 되었다.

左贊成 李季全 京畿觀察使 宋이 禁標의 경계를 물린 地圖를 바치니, 서로는 臨津 건너편 5리쯤에 이르고, 동으로는 龍津에 이르고, 북으로는 檜巖에 이르고, 남으로는 龍仁縣北에 이르렀는데, 전교하기를,

“반드시 백 리가 되도록 한계 하여야 한다.”

하매, 이 아뢰기를,

59) 癸酉傳曰望遠亭以南限百里立標革陽川縣且望遠亭近處道路勿人物通行其召李季全往立標季全啓自望遠亭南抵富平官門由官至海濱可四十里日陽川以西金浦通津至甲串可七十餘里皆以海爲界不願立標所當立標者自望遠亭至富平間耳但先立禁標則三縣居民其數勘多皆由楊花慶弊出恐致騷擾請令監司先刷出後立博曰可. 『燕山君日記』 第59卷, 燕山君 11年 8月, 癸酉條(『일기』 pp.374~375).

60) 自是東北自廣州楊洲抱川永平西南抵坡州高陽陽川衿川果川通津金浦等地刷出居民五百餘戶從內需司奴子以資之立標四 濫入者棄市蕉牧之遺節矣. 『燕山君日記』第58卷, 燕山君 11年 7月1日, 甲申條(『일기』 p.337).

“畿內的 땅이 반이 넘게 금표 안에 들어갔사오니, 가까이 붙은 충청도의 고을을 갈라서 경기에 붙이소서. 또, 楊州 坡州의 금표 밖으로 남은 땅 및 吏民들을 이웃 고들에 옮겨 붙이고, 금표 안의 各驛을 금표 밖으로 설치하고, 楊州鎭의 軍丁을 다른 고을로 옮김이 어떠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하였다.⁶¹⁾

위의 기록은 이미 대자동 금표비가 있는 고양지역이 금표안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주는 데 즉, 군 자체가 완전히 금표에 포함되어 그 본래의 행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그 부근의 군에 付處시켰다. 당시 고양군청은 현 금표비가 세워져 있는 대자동 古邑마을로, 군 청사는 壬辰倭亂 당시 碧蹄館 戰鬪⁶²⁾로 소실되었다. 고양의 혁파되면서 倉庫가 옮겨진 坡州도 후일에는 모두 금표지역내로 포함되게 된다. 이렇듯 금표에 들어간 지역은 몇 년 만에 걸쳐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그 구역은 연산군 11년 6월 기록에 의하면 도성으로부터 각각 1백리 떨어진 곳까지 해당된다. 이중 구체적인 금표 구역 내의 실정을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동왕 10년 8월

전교하기를,

“箭串에 사람들이 통행하면 노루나 사슴들이 평지로 내려오지 않아 긴급한 食治 사냥에 방해됨이 있으니, 목장을 다른 데로 옮길 곳이 없겠는가? 이제동에게 묻는다.”

하였다. 계동이 아뢰기를,

“國初의 일은 신이 알지 못하나, 일찌기 듣건대, 처음에는 목장을 綠楊坪에 두었었는데, 말이 많이 도봉산과 수락산 범에게 상하게 되므로, 목장을 전관으로 옮겼다 하여, 그밖에 水草가 있어 말을 칠 만한 곳은 신이 아직 생각해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관은 나의 토지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니, 목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전관은 금지구역으로 하여 때로 사냥가는 것이 좋겠으니, 이제동을 시켜 전관에 금표

61) 左贊成李季全京畿觀察使宋 進禁標楊退限地圖西至臨津越邊五里許東至龍津北至繪巖南至龍仁縣北傳曰必順進百里爲限車失啓畿內之地過半人標內請以附近忠遺州縣割屬京畿且楊州坡州標外餘地及吏民等移屬隣邑標內各驛設於標外移楊州鎭丁他州何如傳曰可『燕山君日記』第58卷,燕山君11年 6月 29日, 癸丑條(『일기』 p.308).

62) 1593년 壬辰倭亂 당시 명나라 군과 倭軍이 벌인 전투. 왜군의 승리로 명군은 開城까지 撤軍하였다.

를 세우고, 목장은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하라.”하였다.⁶³⁾

여기에서 보이는 箭串은 一名 살곶이로 현재의 城東區 一帶에 해당하는 곳이다.⁶⁴⁾ 이곳은 동쪽 금표와 직접 연결되는 요로인데 연산이 금표로 포함시킨 것이다. 금표로 포함시키는 명분으로 연산군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보았다.

금표 구역의 통제와 경계는 금표구역안에는 물론 그 주변에도 금표를 바라볼 수 없도록 철거하였다.

연산군 11년 11월에

전교하기를,

“궁궐은 깊숙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근래에 비록 여러번 禁標를 세웠지만 범하는 자가 끊이지 않으니, 이것은 인가가 궁성에 너무 접근해 있는 까닭이다. 동서의 성터를 마땅히 물려야 할 것이니, 동으로는 후원을 환하게 바라볼 수 없는 곳까지 한계하고, 駝駱山 고지에도 아울러 담을 쌓아 사람으로 하여금 올라가서 바라볼 수 없게 할 것이며, 서쪽으로는 觀象監 고개로부터 禮賓寺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와, 경복궁 성의 서남 모퉁이부터 똑바로 서편으로 나가되 줄을 띠어 한계하여, 한계 안에 있는 인가는 기한을 정하여 철거하도록 하라. 그리고 그 담 쌓았던 터는 각자가 평평하게 골라놓게 하라. 나간 후에 그 한계를 따라 성을 쌓되 전부터 있던 성을 파괴할 필요가 없이 안팎으로 성이 있는 것도 또한 가하다. 또 성을 쌓을 때에 石面이 울퉁불퉁 하면 사람이 더위잡고 올라올 수 있으니 매우 불가하다. 그러니 그 臺石을 넓게 하고, 쌓아 올리는 石面도 또한 마땅히 平直으로 올려야 한다. 또 종묘의 3면에 있는 인가도 또한 마땅히 철거해야 하니, 동으로는 蓮池의 예전 큰 길까지, 서로는 창덕궁 東行廊까지, 남으로는 큰길까지 한계를 지어 철거하고 담을 쌓아라.”하였다.

뜯기는 집이 수만 호인데, 漢城府가 기한을 엄격히 정하여 뜯으라고 독촉하므로, 혹 재목이나 기와를 실어갈 수 없어 버려둔 채 돌아보지 않았고, 사람들은 의지할 곳이 없

63) 傳曰箭串人物通行則籬鹿不下平原有妨 現急食治之獵牧場他無可移處乎其間李季全啓國初之事臣未之知嘗聞初設牧場於綠楊坪而馬多爲道峯山水落山之虎所傷故移設牧場于箭串其他具水草牧馬之處臣未之愚也傳曰箭串是吾土地而非奪人之有也移設牧場於他處以箭串爲禁場時行遊獵可也令李季全立禁標于箭串移設牧場于他處.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25日, 壬午條(『일기』 p.51).

64) 韓昌道, [箭串橋에 對하여] 『향토서울』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72.

어 길가에 둘러앉아 소리를 삼키면서 눈물을 머금었다.⁶⁵⁾

위의 내용은 금표의 규모와 정확한 위치 그리고 담쌓은 方法까지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금표의 담장을 도성 주변까지 쌓고 부근의 민가들을 철거하여 백성들의 치참한 모습을 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위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금표내의 재산을 왕에게 그대로 바치는 이도 있었다.

연산군 10년 8월

南川君山靑이 아뢰기를,

“신의 집이 동대문 밖에 있는 것이 셋인데, 모두 금표 안에 들어 있으므로 바치기 바랍니다.”하였다.⁶⁶⁾

燕山君은 일반 백성들과 官廳, 私有財産에 對한 禁標內 편입에 보상이 없었으나 一部 사람들에게 그에 온당한 보상을 해주었다.

연산군 12년 1월에

전교하기를,

“閔淑儀의 집이 금표 안에 들었으니, 그에게 列山正 偕의 屬公한 집을 주게 하라. 獐山守 稠의 집은 市價에 준하여 權淑儀에게 사사로 살 것을 허락하게 하라. 侍女 未珍의 집이 금표안에 들어 있으니 죄인 尹偉의 집을 주게 하라.”하였다.⁶⁷⁾

위의 내용을 보면 연산군과 친분이 있고 또, 자신이 거느리는 후궁, 시녀들의 집들을 士大夫의 집으로 보상하여 주는 당시 사회상을 잘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산군대의 정치 사회상은 조선조 사회의 근간이 되고 있는 儒學政治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백성을 위한 도학정치 대신 淑儀와 侍女

65) 傳曰宮闕不可不深近來難屬立禁標犯者不止地北由人家迫近宮城故也東西邊城基宜退定東則以後苑不通望地爲眼駝駱山高地 築牆使人不得等望西則自觀象監帖至禮賓寺隅自景福宮城西南隅直踰而西引絕爲限限內人家定日期撤去其牆恒遺址令各平治而出後循其限築城前築城子則不必破壞內外有城亦可且城子造築時石面參差人可舉援而上不可宜廣其地臺石所築石面亦宜平直而上且宗廟三面人家亦宜撤去東則蓮池奪大路西則昌德宮東行廊南則大路爲限撤去築牆所撤家數萬漢城府刻期督撤或不能輸其材瓦棄不復顧人無所夜環坐路傍 聲欲泣『燕山君日記』第60卷, 燕山君 11年 11月 18日, 癸亥條(『일기』p.460).

66) 南川君山靑啓臣家在東大門外者三皆入禁標請獻之.『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23日, 庚辰條(『일기』p.46).

67) 傳曰閔淑儀家入禁標其給列山偕屬公家獐山守稠家市推許令權淑儀私買侍女未珍家入禁標其給罪人尹偉家.『燕山君日記』第61卷, 燕山君 12年 1月 21日, 辛丑條 (『일기』p.519).

만을 위한 향락과 유흥만이 금표내에서 있었다. 이러한 폐정은 연산군의 불교 탄압의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다. 12년 7월 전교하기를,

“수색해 낸 중들은 모두 내수사에 소속시켜 궁안의 사냥 모릿군을 삼으라.” 하였다.⁶⁸⁾

금표의 확장과 연산군의 사냥은 일반 백성뿐만이 아니라 승들도 큰 곤욕을 치루었다. 이들은 산속에서 금표 지역으로 잡혀와 강제로 內需司의 奴婢가 되었다. 그리고 왕이 행차시에 사냥에 나서게 되면 모릿군이 되었다.

금표 내에서는 또 사냥에 필요한 말을 키우게 하였다. 이들 말은 평상시에는 금표 내에서 풀을 먹게 하고 사냥 때에는 모릿군과 官吏들을 위해 동원되었다.

연산군 11년 4월에는

29일(갑신) 전교하기를,

“東 西標 안에 驛馬가 없어서는 안되며 또 田地도 많으니, 驛卒 중에서 스스로 살고자 원하는 자에게 표안의 馬爲田(추수한 곡식을 역마의 먹이로 쓰는 밭)을 주어 騎卜馬(타는 말과 짐 실는 말)를 기르라.”

하였다.⁶⁹⁾

백성들이 강제로 쫓겨난 금표 구역 내에서는 기름진 경작지 대신 말먹이 풀이 자라는 馬爲田이 되었다. 이는 금표의 구체적인 용도를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들 말은 주로 왕의 유흥과 사냥 등에 동원되었다.

한편, 금표 구역은 궁인의 葬地로도 사용된 경우가 있었다. 이들 궁인은 연산군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부류인데 연산군은 이들의 무덤을 한강을 건너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대신 금표안 길지에 묻게 하였다. 무덤자리에 혹 다른 사람의 무덤이 있으면 이를 옮기도록 傳教를 내리기도 하였다. 그 예가 연산군 11년 9월의 기록에 보이는데 “麗媛이란 宮人이 죽자 王의 曾祖인 昌陵 곁에 묻게 해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王이 麗媛을 생각하여 都城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인 금표에 무덤을 쓰고 사냥하면서 보고자 함이었다. 금표를 만들면서 왕릉인 昌陵을 훼손하게 만들었고 또 궁녀의 무덤을 능역에 사용케 한 것이다.

그러나 금표 구역을 늘 일반 백성에게 통행금지한 것은 아니었다. 왕이 필요로 하는 시

68) 傳曰刷來僧人并屬內需以爲內獵驛軍. 『燕山君日記』第63卷, 燕山君 12年 7月 1日, 戊寅條(『일기』 p.661).

69) 甲申傳曰東西標內不可無驛馬且多有田地驛卒中自願欲居者給獵內馬位田立騎卜馬. 『燕山君日記』第57卷, 燕山君 11年 4月 29日, 甲申條(『일기』 p.284).

기나 사람들에게 금표 구역을 이용토록 하기도 하였다. 즉, 연산군 12년 8월에

전교하기를,

“경기는 사방의 근본으로서 왕화가 앞서야 할 곳이니 관찰사의 품계가 낮아서도 안되고 또한 혼자 일을 맡기도 어려우니, 직위가 높은 재상을 가려 별도로 칭호를 부쳐 관찰사를 겸임하도록 하되, 현관찰사 尹金孫은 다른 도의 절도사 예에 의하여 백성을 치안하는 뜻으로 별도로 칭호하여 관찰사의 버금이 되게 하고, 각도의 진상을 사용원에서 명을 받들어 경기에 알리면 경기는 팔도에 공문을 돌려 진상을 封進토록 하라. 또, 금표 안 동 서 남 都檢察使는 역시 관찰사에게 소속시켜, 농사짓는 모든 일을 권장하고 겸하여 통치하도록 할 것이며, 경기 각 관내에 토지는 넓고 주민은 희소하여 농민을 이주시킬 만한 곳을 관찰사로 하여금 살펴보고 啓聞하도록 한 뒤에 경상도와 전라도 백성을 뽑아 이주시키도록 하라.”하였다.⁷⁰⁾

위의 내용은 금표구역을 왕의 進上 곡물 재배를 위해 출입을 허용하는 기록이다. 즉, 慶尙道, 全羅道の 백성을 강제로 이주시켜 진상할 작물을 재배케 하고 그 管理의 책임을 철저히 하여 진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이는 당시 금표 내에서 향락과 유흥이 자주 벌어져 국가의 재산이 적재적소에 사용치 못하던 폐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금표가 경기도 관내 멀리까지 설치되고 연산은 이 금표 구역 안에서 유흥과 향락을 즐기는 연흥을 자주 열었다. 궁녀들을 유흥을 위해 먼 長湍石壁⁷¹⁾까지 데리고 가서도 이 일을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왕이 유흥에 한창 심취되어 있었던 시절인 연산군 11년 3월에, 연산은 宰相들에게 命을 받지 않고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왕이 금표에 다니며 밤낮으로 유흥과 향락으로 보내자 宰相들은 한밤이 되어도 물러나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된다. 이 내용은 이 시기에 나라의 기강과 法道가 완전히 실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산군 12년 4월에

70) 傳曰京畿四方之本王化所先觀察使不宜手失果又難獨任釋位高宰相別稱職 無帶觀察使令觀察使尹金孫依他遺節慶使以安民之意別稱號亞於觀察使各道進上筆事司奪院承命論京畿京畿移文八道封進且標內東西南都檢察使亦屬於觀察使勤耕諸亭兼令統治京畿各官內地廣民稀可徒民之地令觀察使審視啓聞後妙慶尙全羅道民丁移入. 『燕山君日記』第63卷, 燕山君 12年 8月 8日, 乙卯條(『일기』pp.702~703).

71) 京畿道 坡州郡 長湍面 臨津江에 있는 절벽. 옛부터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전교하기를,

“獻陵山 清溪山 良才驛의 지역을 모두 禁標 안으로 들이되, 현재 살고 있는 2백 73호 내에 良人 公私賤을 막론하고 살릴만한 사람은 가려 그대로 살게 하여 모두 內需司에 붙이고 나머지는 뽑아내라.”하였다.⁷²⁾

이는 금표 안의 양인들을 포함한 주민들을 내수사의 노비로 삼는 내용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한편 이들 내수사의 官吏와 종들은 새로이 금표구역이 넓어져 사는 곳이 포함되더라도 쫓겨나지 않고 그대로 살며 금표내의 管理를 맡았다.⁷³⁾ 또한 내수사의 官吏 이외에 금표내에서 특별한 일을 추진할 때에는 承命牌을 주어 犯入者를 잡게 하였다. 한편 연산군은 중국 명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히 금표를 은폐하려 하였다.

연산군 12년 1월에

전교하기를,

“중국 사신이 문묘 참배(謁聖)를 하려고 하거던, 마땅히 ‘成均館이 궁궐과 너무 가까워서 옮겨 짓고 있다’고 대답할 것이며, 만약 移安한 곳에서도 곳이 참배하겠다면 다르게 하라. 만약 금표 안에 인가가 稀少한 까닭을 묻거던 마땅히 ‘봄 사냥(春蒐), 여름 사냥(夏苗)은 폐할 수 없는 것이며, 또 사냥을 하자면 반드시 숲이 있어서 새 짐승을 길러야 하겠으므로, 백성들에게 물러가서 살게 한 것이라.’고 대답하게 하라. 만약 慕華館에 새로 담을 치는 까닭을 묻거던 마땅히 ‘이 館은 詔書를 맞이하는 곳이며, 또한 武術을 점열(閱武)하는 곳이므로, 담을 쌓아 잡인을 금한다.’고 대답하라. 그리고 서강, 한강의 인가는 중국 사신이 돌아간 후에 철거하게 하고, 중국 사신이 지나는 길가에 있는 禁標는 모두 빼어 없애게 하라.” 하였다.⁷⁴⁾

이는 연산군이 금표로써 대표되는 폐정이 중국에까지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이다. 그러나 사신은 이미 그 연산군의 폐정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왕 10년 11월에 보면

72) 傳曰獻陵山清溪山良才驛地 入標內所居人民二百七十三戶內勿論良人公私賤釋其可居者許偕居 屬內需司其餘妙出. 『燕山君日記』 第62卷, 燕山君 12年 4月 14日, 癸亥條(『일기』 p.594).

73) 鄭鉉在, [鮮初內需司 奴婢考] 『慶北史學 3집』 慶北大學校 史學科, 1981.

74) 傳曰天使若欲謁聖則當答以成均館副近宮闕故令移造岩強欲謁聖于移安處則從之若問禁標內人家稀少當答以春蒐夏苗所不可廢若行蒐狩則必有林穀以養禽獸故今民退居若問慕華館新塙造築事當答以館是迎詔之地且闕武之所故築塙以防難人且西江漢江人家天使回還後撤去天使所經路邊禁標木皆撤去. 『燕山君日記』 第61卷, 燕山君 12年 1月 21日, 辛丑條(『일기』 p.518).

史臣은 논한다.

“왕의 미치광이 같은 방탕이 이미 극도에 달하여 모든 진기한 새와 기이한 짐승을 사방에 잡아 바치도록 독촉하고, 사신을 보내어 貢獻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산이나 바다의 기괴한 족속을 새장이나 우리에 대고 길을 이었으며, 武士들을 파견하여 범표범 곰 말곰(猛貌熊罷) 등속을 산채로 잡아 다 후원에 가두어 놓고, 혹은 고기를 먹으며 구경하기도 하고 혹은 친히 쏘아 죽임을 낙으로 삼았으며, 돼지, 노루 같은 유는 산속에 놓아두고 駿馬를 타고 달리며 쫓아 비탈과 골짜기의 밀림 속을 드나들기를 조금도 차질이 없이 하여, 비록 狩獵에 늙은 자라 할 지라도 더 나을 수 없었으며, 날로 공사의 준마를 징발하여 龍(왕이 타는 말의 마구)에 모으므로, 민간이나 역로에 이름난 말이 하나도 없게 되었다.”⁷⁵⁾

고 하였다. 이는 연산군이 중종반정 이후 명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도 증명되었다.

2. 大慈洞 禁標碑와 棄毀制書律

(1) 기궤제서울

다음은 대자동 금표비의 앞면에 기록되어 있는 기궤제서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궤제서울은 [大明律]吏律 棄毀制書印信條의 한가지 法令이다.⁷⁶⁾ 이 법령의 처음은 “곧 왕의 敎旨 및 사신에게 내리는 驛馬 發給에 관한 御印 찍힌 文書와, 사신에게 내리는 乘船에 관해 발급한 文牒 또는 官司의 印章 및 夜巡에 관한 片卑面을 故意로 내버리거나 破損한 자는 斬刑에 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연산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기궤제서울은 본래의 의미인 문서를 훼손, 파기하는 자를 다스리는데 사용되었다. 『世祖實錄』36권 11년 8월 16일 신묘조에 보면

병조에서 아뢰기를,

“대저 배를 타는 사람이 소지하는 물건은 본시 금방함이 없는 까닭으로 금은 주옥과

75) 史臣曰王狂荒洗極凡孫禽異餘撤督四方至遣使貢獸於是山海奇在之族築盤繁振級擇於道分遺武士生連奪猛貌熊罷之屬宰于後苑或嗅內以觀或親射爲樂如 獐之類放諸山間乘駿馬馳逐出入庵谷崖密之間無小蹉足失難老於射獵者不能過爲日微公私駿馬髮于龍 民間驛路各馬一空. 『燕山君日記』第56卷, 燕山君 10年 11月 11日, 丁酉條(『일기』 p.137).

76) 崔殷範, [李朝刑法에 있어서의 明律의 位置]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60.

여러 文書를 몰래 꺾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는 자가 자못 많습니다. 금후로는 영 진을 왕래하는 사람과 조전 상판으로 어물을 캐고 잡는 것 등 일단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각각 그 배가 정박하는 곳의 수령 만호가 일일이 끝까지 수색하고서야 바다를 지나도록 허락하소서. 만일 몰래 꺾가지고 간 뒤에 드러나면 청컨대, 자기 자신을 기궤제서울로써 논죄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⁷⁷⁾

위의 내용은 세조년간에 문서 등을 가지고 바다의 섬으로 가는 자를 다스리기 위하여 기궤제서울로 처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과 선왕들과는 달리 연산군은 이 법률을 諺文 使用禁止法으로 이용하였다. 연산군 10년(1504)에 연산군은 포악무도한 죄상을 열거한 諺文匿名投書事件의 연루자를 붙잡기 위하여 이 법률을 도용하였다. 당시 이 법률은 制書 違反律과 制書棄毀律로 나뉘어져 있다.

전교하기를,

“언문을 쓰는 자는 棄毀制書律로, 알고도 고하지 않는 자는 制書有違律로 논단하고, 조사의집에 있는 언문으로 구결 단 책은 다 불사르되, 한어를 언문으로 번역한 따위는 금하지 말라.”

하였다.⁷⁸⁾

그러나 금표가 설정되고 그 구역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금표 내의 범인자가 늘어나자 연산은 이 기궤제서울을 금표 관리를 위한 처벌의 근거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연산군 12년 8월조에 보면,

전교하기를,

“장단에 거동할 때는 미리 의금부 당상 郎廳을 보내어 온 길 주변의 雜人을 모조리 내 쫓아 바라보니 못하도록 하고, 내거동에는 웅지관 문 치가 앞을 인도하고 內插 2인이 뒤를 옹호하게 하되, 만일 숲속에 잠복한 자가 있으면 棄毀制書律로 논단하고 의금부

77) 辛卯兵曹啓凡乘船人厚持物件本無禁防故金銀珠玉及諸文書潛狩入海者頗多令後營鎮往來人及轉漕商販採捕魚物一應入海人各其舟公到泊竊守令萬戶一一窮搜方許過海萬一潛狹後現則請本身以棄毀制書律論守令萬戶以制書有違律論從之. 『世祖實錄』第36卷, 世祖 11年 8月 16日, 辛卯條.

78) 傳曰諺文行用者以棄毀制書律知而不告者以制書有違論斷朝士家所藏諺文口訣書冊皆焚之如翻譯漢語諺文之類勿禁. 『燕山君日記』第54卷, 燕山君 10年 7月 22日條(『일기』p.572).

당상 낭청은 장 1백을 쳐 파직시켜라.”하였다.⁷⁹⁾

위의 기록은 왕이 멀리 나아갈 때 여러 관리를 동원하여 자신을 호위케 하는데 만일 금표 내에 숨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기궤제서율로 논단하고 아울러 그 책임을 물어 해당 관리를 파직시킨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은 아마도 연산군이 금표 내에서 피살될 것을 우려해 내려진 전교인 듯 하다.

연산군은 금표와 그 부근 지역에 대하여 철저한 통제와 경계로 일반 백성의 출입을 통제하고 이를 소홀히 한 官吏나 왕의 뜻에 대하여 협조치 않는 사람들에게 棄毀制書律을 적용하였다. 그 내용 중의 일부가 연산군 11년 8월의 내용이다.

“京外の 자색 있고 音律을 아는 私婢는 그 주인으로 하여금 進告하게 하되, 진고에서 빠지는 자가 있거든 棄毀制書律로 論罪하라.”하였다.⁸⁰⁾

이 내용 중에 京外는 곧 조선 전지역을 가리키며 姿色과 音律을 아는 私妃는 곧 아름다움과 音樂을 아는 個人 奴婢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노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은 왕에게 보고하게 하였는데 여기에서 빠지게 보고하거나 전혀 보고하지 않을 경우 棄毀制書律로 論罪한다는 것이다. 이를 보면 당시 연산군은 금표에 나아가 사냥이란 명목으로 각종 유흥과 향락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기궤제서율이 폭군의 폐정을 유지시키는 근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을 추종하거나 유흥을 연 官吏를 비판한 일반 관리에게 연산이 큰 벌을 기궤제서율로 내리는 내용도 10년 8월조에 보인다.

전교하기를,

또 김인령이 위에 속한 일을 논개한 것은, 마땅히 제시를 기궤한 율로 논하되, 무관참시하고 가산을 몰수하도록 하라. 하였다.⁸¹⁾

이를 통해 볼때 당시 기궤제서율은 산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剖棺斬屍하고 가문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도 있었다. 이제 기궤제서율의 사용은 처음의 諺文使用禁

79) 傳曰長湍舉動時預遣義禁府堂上郎廳一路雜人 刷出使不得通望內舉動則潛 官文致前遣內豎二人後據若有潛伏草莽之中者以棄毀制書律論斷義禁府堂上郎廳杖一百罷職. 『燕山君日記』第63卷, 燕山君 12年 8月 20日, 丁卯條(『일기』p.715).

80) 傳曰京外有姿色解音律私婢舍其主進告脫有泥告者論以棄毀制書律. 『燕山君日記』第59卷, 燕山君 11年 8月 22日, 甲戌條(『일기』p.376).

81) 且金引齡論啓屬上之事宜論以棄毀制書律割木官斬屍籍投家產.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10日, 丁卯條(『일기』p.23).

止에서 좀더 여러 부분의 범법자에게 적용된다. 연산은 특히 이 법률을 금표의 유지 관리와 함께 폐정에 대한 불만을 가진 자를 탄압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는 기궤제서울을 국가와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비록 작더라도 남에게 누설하여 그 이야기가 도성내에 들리게 하는 것과, 듣고서도 고발하지 않는 자 등을 모두 기궤제서울로 논죄하였다. 또 그와 관련된 처자들은 이 법률에 근거하여 모두 杖을 쳐 전가족을 바다밖 섬으로 옮기었고 이외에도 금표를 쌓는데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자에게도 이 기궤제서울을 적용하였다.

이렇듯 기궤제서울은 중앙 관리에게만 적용된 것은 아니었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각 고을의 수령 등도 죄인을 잡기 위하여 힘쓰지 않을 때 기궤제서울로 처벌을 받았다. 이는 이 법률이 금표를 보존 管理하기 위함과 국가의 주요한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기궤제서울은 처음 명나라의 법률로서 조선왕조가 받아들여 본래의 의미인 문서 훼손 등에 사용되었으나 연산군은 이를 전혀 다른 의미인 한글사용금지와 금표 범입자의 처벌,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치수단으로 삼았다.

(2) 금표 침입의 처벌과 백성들의 상황

금표 구역의 설정과 운용으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것은 일반 백성들이었다. 연산군은 금표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使臣을 통해 중국으로 알려지거나 국내에서도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연산군이 금표부근의 집들을 철거하고 사람의 통제를 철저히 하여 수많은 목숨을 빼앗은 것도 금표의 비밀을 보장받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금표구역의 기궤제서울에 의한 통제는 백성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연산군은 기궤제서울에 의한 백성들의 管理 및 처벌과 함께 三族을 멸하는 법도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연산군 10년 8월에 보이는데

“그 안에 田宅을 가진 小民들이 혹 원망할 터이나, 지금 풍속을 크게 개혁시키고자 바야흐로 금령을 시행하는 것인데, 근일 投書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사로운 분으로 위에 속하는 말을 하기까지 하니, 이는 실로 옷사람을 능멸하여 그런 것이다. 무릇 죄주는 법이 장 1백의 죄가 있고 1백 이상의 죄도 있으며 또 極刑도 있는데, 亂言을 하는 자와 같은 것도 또한 아주 해로운 것과 그다지 해롭지 않은 차이가 있으니, 형은 비록 차등이 있다 할지라도 죄는 같은 것이다. 옛날에는 三族을 멸하는 법이 있었으니 만약 이런 법을 쓰기로 한다면 한 집안의 형제나 숙질이 서로 경계하여 형이 착하지 못하면

아우가 책하고, 아재비가 착하지 못하면 조카가 경계하여, 이렇게 서로가 힘쓰게 되면 풍속이 거의 바로 잡히게 되리라. 이런 뜻으로 글을 지어 대중을 타이르도록 하라.” 하고 또 주서 尹龜壽를 시켜三公에게 수의하도록 하고, 또 홍문관으로 하여금 옛글 중에 삼족을 멸하는 법을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였다. 柳 洵 등이 의논드리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다만 삼족을 멸하는 법은 비록 秦나라 때에 비롯되었다 하나, 李 斯에게만 삼족을 멸하였다는 글이 있을 뿐, 이밖에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후세에는 某某族이 삼족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이 없어, 漢나라 이후 천백 세가 되도록 쓰지 않던 법이니, 지금 성세에 거행할 수 없는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금한 안에 田宅을 가진 자들이 원한을 품고 말하기를, ‘금한이 어찌 그렇게도 광대하고, 荒田이 어찌 그렇게도 많은가?’ 하는데, 또 서생의 不肖한 자가 있어 입을 모아 서로 의논을 하여 혹은 臺諫을 주축하고, 혹은 사람을 주축하여 소장을 지어 紛 하게 陳訴하니, 이는 너무도 불가한 것이다. 그러므로 삼족을 멸하는 법을 세워 풍속을 고치는 특별한 법을 만들려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진나라의 법이라 할지라도 풍속을 고칠 때에는 특별히 딴 법을 만드는 것도 또한 옳지 않겠는가?” 하였다.

전교하기를,

“전일 승정원에서 製述하도록 하였는데, 승지가 일이 많다는 것으로써 말을 하는 자가 있다. 이 또한 싫어하는 것이니 그를 고찰하여 아뢰라.”하였다.⁸²⁾

위의 내용은 금표가 넓어지는 것에 대해 원망하는 사람에게 연산이 삼족을 멸하는 명을 내리는 기록이다.⁸³⁾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 중의 한 내용을 보면 연산군 10년 8월에,

전교하기를,

“서쪽 금표를 물려서 세우라. 만약 입표가 온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자 및 옛 땅을 생

82) 貢小民之有田宅於其中者容或怨之今欲使風俗丕變方行禁令而近日有投書人以其私憤爲屬上之言此實陵上而然也九罪律有拓一百有一百以上之罪又有極刑若亂言者亦有切害不切害之異刑雖有差籍而罪則一也古有妻三族之法若用此法則一家之內兄弟叔女至來相警戒兄有不善則弟責之叔有不善則女至戒之以之相勉則庶幾風俗歸正矣以此作文論衆又命往書尹龜壽收謹子三公又令弓口文館致古書中妻三族法以啓柳洵等驢上載兄當但妻三族之法灘云筆自泰世然只於李斯有妻三族之文此外無聞馬故後世無有明言某某族爲三族自漢後歷千百世不行之法方令城世恐不可舉行傳曰禁限內有田宅者舍怨而曰禁限何其大廣耶荒田何其太多耶又有書生不消之革交口相議或族臺練或屬人草跡紡 陣許茲甚不可故欲立夷三族之法以爲草俗之別典此難泰法 俗之時特設別典不亦可乎『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7日, 甲子條(『일기』p.15).

83) 張錫權,『朝鮮王朝 刑罰制度의 研究』檀國大碩士學位論文, 1976.

각하여 원망하는 말을 하는 자가 있으면 삼족을 멸하리라.”하였다.⁸⁴⁾

이 내용에서 보이는 서쪽 금표는 당초 德水로부터 도성까지 그 거리가 30리였으나, 왕이 좁다 하여 다시 넓히도록 한 것이다. 금표가 확장되면서 수확철이 된 곡식을 잃게 된 백성들이 원망하는 기색이 보이자 연산은 三族을 滅한다는 무시무시한 傳敎를 내리게 된다.

연산군 10년 11월의 기록에 의하면

“금표 안을 범한 사람 천둥은 머리를 베어, 전례대로 금표 근처에 효수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라.”하였다.⁸⁵⁾

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연산군이 금표의 管理를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음을 알려주는 기록이다. 이중 효수 등은 보통 일반적인 극악무도한 살인죄나 역모죄에 해당하는 자를 처벌하는데 되었는데 연산은 금표 범입자에게 적용한 것이다. 이러한 금표의 범입의 처벌한 처벌은 금표 부근의 백성들에게 매우 큰 피해를 끼치었다.

당시 전국 팔도의 길은 이곳 금표에 와서는 멀리 돌아가거나 단절되었으며 금표밖에서 도둑질한 자가 몰래 금표에 숨어 왕기 1백리가 盜賊의 소굴이 되었다. 또 금표 내에 있는 내수사의 종들은 일반 백성을 몽둥이로 몰아내어 금표에는 인적이 끊이게 되었다. 당시 금표구역내의 상황을 보여주는 예가 연산군 11년 10월의 기록이다.

옛 길을 막고 새 길을 뚫는데, 서쪽은 鷲梁 古富平을 거쳐 洛河에 이르고, 동쪽은 果川 古廣州 慶安驛 德淵 車踰巖 仇羅驛을 거쳐 朝宗古縣에 이르니, 옛 길과 비교해 보면 모두 數日 길을 돌게 되었다. 그때 부역이 번거로워 백성들은 살 길이 없으므로, 많이 모여서 도둑이 되어 사람과 물건을 겁탈했다. 그리하여 길가는 사람이 끊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각 도에서 바치는 공물까지 약탈당하였는데, 경상 전라 충청도에서는 가깝 수백 명이 떼를 짓기도 하였다. 그리고 금표제도가 생기면서부터 도둑들이 그를 의지하여 보금자리를 삼아 난로 나와 죽이고 약탈하는데, 아무리 서울의 준비하게 모여 사는 동네라 하더라도 또한 꺼리지 않고 어둡기만 하면 떼를 지어 다니면서 겁탈하였다. 집을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아 가도 사람들은 모두 피하여 숨고 감히 잡지 못하였

84) 傳曰退樹西禁標若有言立標未使者及懷思舊土出怨言者妻三族. 『燕山君日記』第55卷, 燕山君 10年 8月 6日, 癸亥條(『일기』p.13).

85) 傳曰禁標內犯入人千同斬首依前例梟首於禁標近處使入觀視. 『燕山君日記』第56卷, 燕山君 10年 11月 2日, 戊子條(『일기』p.128).

으며, 그중에도 더욱 잔악하고 교활한 것은, 왕명을 받들었다고 일컬으면서 똑바로 인가에 들어가 보화와 재물을 빼앗아 가는데도 사람들은 모두 허둥지둥 달아나 숨을 뺄 따져볼 수가 없었으므로 매우 괴로워하였다.⁸⁶⁾

위의 내용은 당시 일반 백성들의 피해를 비교적 상세하게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특히 경기도 주민들이 큰 피해를 겪었다. 이는 경기도의 고을들의 반이상이 금표에 들어갔고 각종 물건을 운반해야 할 길이 막혔으며 禁塙을 쌓는 등 많은 시간을 부역에 임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성부근과 도내 주민들은 다른 도로 옮겨가거나 폐도독이 되었다. 금표에 의해 혁파된 고양군의 경우 (표2)와 같이 인구수, 호수 등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지만 토지의 결수는 오히려 줄어있는 모습이다.

표2) 大慈洞 禁標碑 設置 前後의 高陽郡 現況 比較表

연 대	호 구 수	인 구 수	토지결수	인용문헌
朝鮮 世宗 30년 (1448)	679호	1,314명	6,326結	『世宗實錄』
朝鮮 英祖 31년 (1755)	3508호	13,878명	3,937結	『高陽郡誌』

이를 통해 볼때 호구 수는 6배, 인구는 10배 이상 늘어난 반면 토지의 결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러한 고양 지역의 토지 결수 감소는 금표의 설치와 함께 양란을 거치면서 국토의 황폐함이 가져온 결과였다.

당시 이러한 현상은 비단 고양 지역 뿐만이 아니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하여 고려 말부터 조선조 각 시기의 토지 결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86) 寒舊路開新路西由路梁古富平達于洛河東由采川古廣州慶安驛德淵車踰巖仇羅驛達于朝宗古縣視舊路皆汚數日程時臚役繁興內不聯生多飛爲盜劫掠人物行路或絕至奪諸遺供進之物慶尙全羅忠清等道座座數百爲群及禁標之興誠依以爲籍日出殺掠難都下坊曲隲比調芽之中亦不忌憚至昏群行劫奪禁其家取其財而去人皆壁。『燕山君日記』 第61卷, 燕山君 12年 2月 2日, 壬子條(〔일기〕p.533).

표3) 高麗末 朝鮮朝 各 時期別 土地結數 變化表 (단위 : 結)

연 대	전국토지 전결 수	참 고 문 헌
高麗恭讓王2년 (1390)	798,127	『高麗史』
朝鮮太宗 4년 (1404)	931,835	『太宗實錄』
世宗14년 (1432)	1,632,006	世宗實錄地理志
燕山君7년 (1503)	1,032,070	『燕山君日記』
英祖45년 (1769)	748,583 (실결수)	『增補文獻備考』 『萬機要覽』 『英祖實錄』

참고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10 13 24권, 탐구당, 1994. 참조

고려 공양왕대 이래로 전국의 토지 총 전결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세종조를 고비로 하여 연산군대에는 약 60여만 결의 토지가 감소하고 이어 금표의 설치와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영조 연간에는 약 30여만 결의 토지가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통계 수치는 고양 지역이 금표로 인하여 얼마나 황폐화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금표의 설정으로 인하여 일반 백성들은 물론이고 금표의 여러 토지를 가지고 있던 권신들도 큰 피해를 겪게 되었다. 아마 이러한 토지의 수탈은 곧 있게 될 증중반정에 여러 중신들이 가담하게 하였던 한 요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서운 형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금표를 계속 범하게 되는데 이는 굶어 죽으나 금표에서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라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금표 구역의 확장과 기휜제서울에 의한 엄한 처벌은 결국 일반 백성들에게는 생존권의 위협이 되었으며 당시 지배층에게는 경제적 기반인 토지를 잃게하여 자신들의 권력 기반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동안 개인적인 원한, 연산의 포악함으로 인해 증중반정이 일어났다는 기존의 연구에 새로운 반정의 요인을 추론할 수 있게 해주었다.

3. 燕山君代 大慈洞 禁標碑의 撤去

대자동 금표비를 비롯한 연산군의 금표비는 연산군의 폐정이 심화되면서 전국 각지에 서는 반정의 기운이 나돌았다. 그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 귀향 중이었던 李長坤과 성희안, 박원종 등이었다.

이들은 반정에 대한 필요성은 서로 인식하면서도 각자 반정을 준비하다가 성희안, 박원종 등이 먼저 거사하게 된다. 이들 중 성희안은 금표를 잘못 관리하였다가 이조참판에서 말관직으로 쫓겨난 인물이며 박원종은 경기도 관찰사 재직시 많은 관할 구역이 금표에 포함되어 그 폐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인물이다.

결국 연산군 12년 박원종, 성희안 등이 주축이 된 세력에 의해 연산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왕이 즉위하니 이가 곧 中宗이다.

중종과 새로이 권력을 잡은 세력은 연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共同認識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종반정의 주도적인 인물인 박원종, 성희안은 모두 금표와 관련된 인물들로 그간 중종반정의 연구가 지나치게 개인의 감정, 원한 등으로 비추어져 왔으나 앞으로 이들의 금표내 토지소유관계 등을 살펴보는 사회경제사적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中宗實錄 元年 9월에 보면,

都城 사면에는 1백 리를 한정하고 禁標를 세워서 노닐고, 사냥하는 장소를 만들고, 금표 안에 들어오는 자는 棄毀制書律로 논죄했다. 항상 單騎로 새벽과 밤을 가라지 않고 치달리고 왕래하였다. 따로 應師軍 1만여 명을 설치하여 사냥할 때는 항상 隨從시켰다. 楮子島 豆毛浦 濟川亭 長湍의 石壁, 莊義의 水閣, 延曙亭 望遠亭 慶會樓 後苑 등의 곳에서 항상 흥청을 거느리고 밤낮으로 노닐며 향연하니, 당시 이를 일컬어 작은 거동, 큰 거동이라 하였다.

社稷北東에서 興仁門까지 인가를 모두 철거하여 표를 세우고, 仁王岾에서 동쪽으로 駝駱山까지 크게 民丁을 징발하여 높직한 돌성(石城)을 쌓았다. 廣州 楊洲 高陽 陽川 坡州 등 읍을 革罷하고 백성들을 모두 짜아내어 內需司의 노비가 살게 하고, 惠化 興仁 光熙 彰義 등의 문을 閉鎖해 버렸다. 또 나루터(津渡)를 금지하고, 다만 육로와 교량만을 통하게 하매, 나그네들이 몹시 괴로와하고, 땀나물을 하기도 또한 어려웠다.

昌德宮 후원에 쌓은 臺는 높이가 1백여 척이고, 이름을[瑞臺]라 하였다. 그 위에는 1천여 인을 앉힐 만하며 그 아래에는 못을 파고 그 곁에 정자를 지었다. 또 창덕궁 후원에서 경복궁 경희루까지 假家 3천여 간을 이어 짓고, 망원정 아래의 潮水를 끌어들이 彰義의 水閣 아래까지 파서 통하게 하려고 都監으로 하여금 水道의 깊이 너비 高低를 측량하게 하여, 거기에 동원될 役夫의 수를 헤아려보면 50여만이 내려가지 않을 것인데, 다음해에 역사를 시작하여다가 미처 성취하지 못하였다. 修理都監 築城都監을 두

고三公으로 都提調를 삼았으며, 그 나머지 副提調 및 郎官 監役官이 2백여 명이 나 있었는데, 여러 곳을 分掌하여 백성을 몹시 가혹하게 침탈하였다. 築塙軍 築臺軍 鑿池軍 離宮造成軍 仁陽殿造成軍 斫材軍 流材軍 따위를 일시에 아울러 징발하여 독촉해서 赴役하게 하니, 민간이 소동하여 집에는 남은 장정이 없었고, 流離飄泊하여 열 집에 아홉 집은 비었다. 부역은 과중하고 양식은 결핍하여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으니, 崇禮門 밖 路梁 사이에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연산은 스스로 그 잘못을 알고 말하는 이가 있을까 두려워서, 經筵을 폐지하고 司諫院 弘文館을 혁파했으며, 持平 2員을 감하였다. 무릇 上疏 上言 擊鼓 등의 일은 일체 모두 금지하였다. 형벌 씬이 극히 참혹하여, 烙訊(단근질로 신문하는 것) 寸斬(마디마디 잘라 죽이는 것) 割棺斬屍(죽은 사람의 관을 쪼개어 시체의 목을 베는 것) 碎骨飄風(뼈를 깟아 바람에 날리는 것)을 상전으로 삼았다.

나인을 핍박하는 말을 한 자는 屬上(위에 저촉되는 것)이라 하고, 論啓에 관계되는 말을 한 자는 逆命한다 일컬어, 이리저리 엮어 죄를 만들어서 조금도 용서하지 않았다. 또 따로 密威廳을 설치하고 항상 승지를 보내어 죄수를 국문하였는데, 포박하고 峻刻하여 억울하게 誅戮을 입은 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즉위 이후의 日記史草에 만약 直言 論이 있으면, 모두 도려내고 삭제하게 했으며, 家藏 사초도 또한 거둬들이게 하였고, 또 인군의 과실을 기록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兼帶春秋(춘추관의 직을 겸임함)의 호칭을 모두 혁파하고 他官으로 校史官이라 일컬어, 즉위 뒤의 實錄을 撰集하게 하였다. 또 스스로 尊崇하기를, [憲天弘道 經文衛武]라 하고 하례를 받고 頒敕하였다. 예로부터 荒亂한 임금이 비록 많았으나 연산과 같이 심한 자는 아직 있지 않았다.⁸⁷⁾

87) 都城四面限百里立禁標以爲遊略之所入標內者論以棄毀制書律常以單騎駝鷹往來不計最夜別設鷹師軍葛餘各田獵常令隨從楮子島豆毛浦濟川亭長湍石壁裝義水閣延曙亭望遠亭慶會樓後怨等處常率興清日夜遊宴時殺爲小舉動大舉動自社稷北洞抵興仁門盡撤人家立標自仁王帖東至駝駱山大業民丁高築石城華廣州楊州高陽陽川坡州等邑窓達其民以內需司奴婢居之閉惠化興仁光熙彰義等門又禁津渡只通路梁行旅甚若樵採亦難昌慶宮後苑築臺高百餘尺名曰瑞怨臺上可坐千人鑿池其下作亭其傍又自昌德宮後苑至景福宮慶會樓連造假家三千餘間欲引望遠亭下湖水鑿通彰義水閣下使都監審量水道深廣高低而計其役夫則不下五十餘萬將於明年始役而不及就置修理都監築城都監以三公爲都提調其餘副提調及郎官監後官多至二百餘員分掌諸所役民甚奇如築塙軍築臺軍鑿池軍離宮造成軍仁陽殿造成軍所材軍流材軍一時 督令赴役民間騷動家無留丁流離播越十室九空役重米良之餓相繼崇禮門外路梁之間積尸如山燕山自知其惡恐有言者廢經籍革司諫院弘文館減持平二員九上號上言繁鼓等事一皆禁之用刑極慘以烙言凡寸斯剖棺斬屍碎骨飄風爲常典辭遍內人者以爲屬上言涉論啓者稱爲逆命羅織成罪小不容貸又別設密威廳常遣承旨覲因暴惡掇刻枉被誅戮者不可勝數即位以後日記史草如有直言 論盡令割割家藏史草亦令收入且令不記人君過失盡革無帶春秋之號以他官稱校史官使選集即位後寶鍊又自尊崇曰憲天弘道經文衛武受賀頒敕自古荒亂之主難多末有如燕山之甚者也。『中宗實錄』第1卷, 中宗 元年 9月 2日, 戊寅條。

이는 당시 중종을 비롯한 朝廷大臣들의 연산군에 대한 시각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연산군의 폐정 중의 하나인 금표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폐단을 알고 이에 대한 평가도 내려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금표가 革罷된 것은 도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서 금표였다. 즉, 중종 원년 9월초에 중종은 다음과 같이 동서 금표의 革罷를 命하였다.

洪淑儀의 직첩을 두로 주어 慈壽宮에 들게 하고(숙의는 성종의 후궁으로, 폐주가 직첩을 빼앗아 궁에서 내쫓았던 이) 朴崇質의 벼슬을 복직시키고 동서의 금표를 혁파할 것을 명하였는데, 모두 대신의 말을 좇은 것이다.⁸⁸⁾

당시 이 금표는 한성의 서쪽인 사직동으로부터 동쪽의 홍인지문에 이르는 구간이었는데 이 부근과 안쪽에는 백성의 인가를 모두 철거하여 표를 세워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금표에 대해서도 중종 10년 8월에

전교하였다.

“경기의 각 고을에서, 폐조 때의 禁標(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철거하고 流亡한 사람의 陳荒田을 한두 곳 개간하여 경작하면, 아직 개간하지 않은 밭까지 아울러 조세를 징수하기 때문에 백성이 개간하지 못하여 폐해가 막심하니, 유망한 사람의 묵은 밭은 밭수를 한정하여 免稅하게 하라.”⁸⁹⁾

고 하여 금표를 철거하게 된다.

대자동의 금표비가 깨어지고 쓰러져 그동안 땅에 묻혀 있었던 것도 아마 이 당시로 여겨진다. 이는 금표로 인해 피해를 본 백성들이 연산에 대한 보복행위의 형태에서 나온 행동이다.

중종은 금표의 철거를 계기로 금표안에 새로이 관청을 두게 하였다. 그중의 하나가 諫院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羅將, 早隸, 奴婢 등을 모두 본역으로 돌려주었다.

또, 중종은 경기도내의 백성에 대해서는 京倉에서 나누어 준 곡식에 대하여 다음 해까지 그 수납을 기다려 주었다. 이는 中宗反正 뒤에 금표에 모인 사람이 적었고 또 逋脫한 租稅의 독촉을 입어 평안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취해진 命令이었다.

88) 命還給洪淑儀職牒入慈壽宮復朴崇質官罷東西禁標皆從大臣之言也. 『中宗實錄』第1卷, 中宗 元年 9月 2日, 戊寅條.

89) 傳曰京畿各官廢朝時禁標撤去流亡人陳荒田一二處起耕則未閉墾田 徵稅故民不得閉墾弊 莫甚流亡人陳田其令限年免稅. 『中宗實錄』第22卷, 中宗 10年 8月 16日, 庚卯條.

중종은 연산군대의 금표를 혁파한 뒤 이곳을 금표이전의 옛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복구 노력을 하게 된다. 금표내의 東學, 西學, 南學을 무성한 풀밭에서 청소하고 정돈하여 유학하는 선비들이 모이게 하였다. 또한畿邑의 백성을 위하여 京倉에서 나누어 준 곡식을 다음해 추수까지 연기해 갚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중종은 금표구역에 살다가 변방으로 쫓겨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본래 살던 고향으로 오도록 하여 폐허화된 금표를 복구하게 하였으며 중종 2년에는 成均館의 수리를 命하는 教旨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중종의 복구 노력은 그후 급속도로 추진되었으나 이미 혁파되어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한 백성들이 돌아와 관아를 복구하여 금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데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였다.

결국 연산군의 폐정에 의한 정치는 중종반정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되었다. 폭군 연산군의 폐위는 곧 금표비의 철거로 이어졌는데『중종실록』의 기록을 통해 볼때 금표 구역의 철거는 왕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나 금표비 자체의 훼손 및 철거는 그간 큰 고통을 받은 백성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는 금표비가 연산군의 폭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었기 때문이었다.

結 語

이상에서 보듯 禁標碑는 본래 왕과 왕실의 사냥과 군사 훈련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일반인들의 거주 및 왕래의 제한을 목적으로 금지 구역을 표시한 標碑의 일종이다. 중국에서 유래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실시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위에서 살펴보았듯 대체로 고대사회부터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燕山君 집권기 1504년(燕山君10年, 甲子年) 경기도 고양시에 세워진 ‘대자동 금표비’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결어에 대신하여 우선 이 금표비를 발굴하게 된 경위를 먼저 요약하기로 한다.

대자동 금표비는 1994년 11월 본 연구자가 고양시 문화 유적 일제 조사 도중 고양시 대자동 간촌마을에서 처음 발굴하였다. 발굴 당시 금표비는 오랜 기간 땅 속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비면 곳곳에 황토 흙이 묻어 있었다. 비의 전체적인 구조는 화강암의 臺座, 碑身, 碑頭로 되어 있었으며 특히 碑頭는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비의 앞면에는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라 쓰여진 14자의 銘文이 기록되어 있었으며

비의 뒷면에는 아무런 銘文이 없었다. 이 대자동 금표비가 연산군대에 세워진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은 ‘棄毀制書律’이 연산군 당대에만 금표 침입자에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우선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발굴된 ‘대자동 금표비’에 관한 연구를 통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결론에 대신해 정리하기로 한다.

첫째, ‘대자동 금표비’는 본래 금표비의 설립 목적인 왕과 왕실의 사냥과 군사 훈련의 목적 이외에 유흥과 향락의 장소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칙적인 운영은 그 규모에서도 엿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금표 구역이 금표비를 중심으로 사방 10리로 제한되었던 점에 반해 연산군조에 세워진 이 ‘대자동 금표비’는 사방 100리로 금표 구역이 크게 확장되어 있어 그 피해가 매우 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진 연산군 폐정의 또다른 일면을 확인해주는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둘째, 본 ‘대자동 금표비’ 연구를 통해 그동안 경기도 고양시 향토사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던 3년간(1504~1506)의 ‘단절된 역사’의 원인과 그 역사적 배경을 확인하였다는 점이다.

그동안 이 기간의 고양시 官衙와 倉庫 그리고 일반 백성들의 모습 등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 주요 요인이 바로 ‘대자동 금표비’에서 기인한 것임이 실증적으로 究明되었다. 바로 이 점은 고양시 향토사 연구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할 것이다.

이밖에 본 ‘대자동 금표비’에 담겨 있는 ‘禁標內犯入者論棄毀制書律’ 명문 가운데 ‘棄毀制書律’에 주목하여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糾明하였다. 우선 이 법률 조항은 본래 중국 명나라의 大明律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법률 제정의 본래 목적은 국왕과 왕실의 문서의 내용 조작 및 破棄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었다.

그러나 연산군 집권기에는 본래의 목적이 변질되어 한글 사용을 금하는 이른바 ‘언문사용금지’ 조치에 대한 법적 장치로 변용되었다. 이는 연산군의 포악한 폐정을 비난하는 ‘언문억명투서사건’이 연이어 일어나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 법률을 도용 내지 남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법률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본래 태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삼죽을 멸하거나 효수하는 극형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엄격한 ‘棄毀制書律’이라는 법률 조항이 ‘대자동 금표비’에 명문화되었다는 것은 이 금표비가 세워진 경기도 고양시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일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대한 생활상의 피해를 주었는가를 잘 시사해 주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 등으로 ‘대자동 금표비’는 이 지역 백성들의 怨聲의 대상이 되었으며

더욱이 금표 지역을 사방 백리라는 넓은 지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지역에 科田을 소유하고 있던 관리들의 불만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대자동 금표비’는 연산군의 廢位와 ‘中宗反正’(1506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蓋然性이 높다 하겠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후일로 기약토록 하겠다.

參 考 文 獻

1. 基本史料

『燕山君日記』 『高陽郡誌』 『中宗實錄』
『孟子』 『然藜室記述』 『韓國人名大辭典』新丘文化社, 1967.

2. 研究書

檀國大史學會, 『韓國古代史』 서울, 學研文化史, 4號, 1994.
國史編纂委員會, 『韓國史』 서울, 探求堂, 1984.
李弘植, 『國史大辭典』 서울, 百萬社, 1974.
精神文化研究院, 『民族文化大百科辭典』 서울, 웅진출판사, 1993.
高陽文化院, 『高陽郡誌』 京畿, 高陽市, 1987.
高陽文化院, 『高陽市文化財人觀』 京畿, 高陽文化院, 1995.
李進熙, 『廣開土王碑의 探究』 서울, 一潮閣, 1982.
李亨求 朴魯姬, 『廣開土王碑新研究』 同和出版公社, 1986.
尹泰榮 具素青, 『李朝五百年野史』 서울, 眞文出版社, 1972.
鄭飛石, 『李朝女人史話』 서울, 正音社, 1976.
서울市史編纂委員會, 『서울特別市史』 서울, 東亞出版社, 1963.
崔臣海, 『燕山君의 精神世界』 서울, 관동출판사, 1975.
楊州文化院, 『楊州郡誌』 京畿道 楊州郡, 楊州郡廳, 1994.
坡州文化院, 『坡州郡誌』 京畿道 坡州郡, 坡州郡廳, 1995.
民族文化推進委員會, 『國譯燕山君日記』 서울, 1974.
姜萬吉, 『燕山君』 韓國의 人間象 1卷, 서울, 新丘文化史 1965.
李蘭映, 『韓國金石文追補』 서울, 中央大學校 出版部, 1968.

- 黃壽永,『韓國金石文遺文』서울,一志社,1976.
- 任昌淳,『韓國美術全集』서예,서울,同和出版公社,1980.
- 韓國精神文化研究院,『韓國民族文化大百科辭典』서울,웅진출판사 1993.
- 京畿道廳,『京畿道 指定文化財 解説』수원,京畿道廳郷土史料室,1995.
- 瀨野馬慤,『燕山君의 二大禍獄』동경,청구학총 3,1931.
- 申奭鎬,『朝鮮成宗時代의 新舊對立』서울,朝鮮史編修會,1944.

3. 研究論文

- 權敬愛,『廣開土王陵碑文解釋의 再整理』서울,高麗大學敎 碩士學位論文,1980.
- 廉胤洙,『中原高句麗碑小考』서울,高麗大學敎 碩士學位論文,1983.
- 金貞培,『中原高句麗碑의 몇가지 問題點』『史學誌』13輯,1979.
- 木下禮仁,『中原高句麗碑』서울,『素軒南都泳博士 回甲記念史學論叢』素軒南都泳博士 回甲記念事業會,1991.
- 秦弘燮,『南山新城碑의 綜合的 考察』『歷史泳學報』26輯,1964.
- 文玉祥,『香村埋香碑에 對한 小考』『全國郷土史研究論文集3집』文化院聯合會,1993.
- 허재일,『四大士禍와 權力鬭爭에 關한 研究』서울,建國大博士學位論文1981.
- 崔殷範,『李朝刑法에 있어서의 明律의 位置』서울,연세대석사학위논문 1960.
- 張錫權,『朝鮮王朝 刑罰制度의 研究』서울,檀國大碩士學位論文,1976.
- 鄭鉉在,『鮮初內需司 奴婢考』『慶北史學』3집,慶北大學校 史學科,1981.
- 千惠鳳,『燕山朝의 印經木活字本에 對하여』,曉城趙明基博士회갑기념불교사학
논총간행위원회,1965.
- 鄭泳鎬,『단양신라적성비의 발견조사 경위』서울,檀國大學校 史學會『史學誌』 1978.
- 李基白,『단양적성비 發見의 意義와 적성비 王敎事 部分의 檢討』서울 檀國大學校 史
學會『史學誌』1978.
- 邊太燮,『中原高句麗碑의 內容과 年代에 對한 檢討』서울,檀國大學校 史學會『史學誌』
1979.
- 韓昌道,『箭串橋에 對하여』서울,『향토서울』서울市史編纂委員會,1972.
- 金洪哲,『下溪洞所在 國文古碑研究』서울,『향토서울』서울市史編纂委員會 1976.
- 元永煥,『朝鮮時代 漢城府 閉止』서울,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1985.
- 南都泳,『조선시대 군사통신조직의 발달』『한국사론9』국사편찬위원회 1981.

許眉叟 金石文의 秀作, 李處士 墓表에 관한 研究

李 宇 衡 *

目 次

- | | |
|-------------|---------------------|
| 1. 序 言 | 4. 處士 李晉茂의 生涯와 家系 |
| 2. 墓表의 發見經緯 | 5. 墓表의 金石學의·藝術史의 價値 |
| 3. 翻譯文 | 6. 結 語 |

1. 序 言

許穆의 字는 文父·和甫, 號는 眉叟 또는 臺嶺老人이라 하였고 陽川이 본관이다. 1595년(선조 28) 서울에서 태어나 1682년(숙종 8) 향리인 漣川의 恩居堂에서 88세의 나이로 타계할 때까지 정통 朱子學에서 탈피, 「古學」으로 평생을 일관한 巨儒이며, 당대 및 近畿南人系의 後學에게까지 宗匠의 위치를 차지했던 상징성 뿐 만아니라, 우리 思想界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이기도 하다.

미수의 학문과 사상은 그의 遺作品인 『記言』을 통해 접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미수에 관한 國學界의 연구 경향은 17세기 정치적인 쟁점으로 인식되는 禮論과 經世·文學 등의 시각에 치우쳐 있어 다방면에 남긴 先生의 업적에 비해 학계의 연구 성과는 매우 零星하며 폭넓고 객관적인 시각에서의 論旨조차 刻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¹⁾

* 漣川文化院 郷土史研究委員

1) 지금까지 발표된 미수에 관한 연구 논문은 아래와 같다.

- 鄭玉子, 「眉叟 許穆研究」- 그의 文學觀을 中心으로 - 서울대학교, 韓國史論, 第5輯, 1979, 197~232쪽.
- 金吉煥, 「許穆의 學問과 思想」, 韓國學報 第18輯, 一志社, 1990, 24~45쪽.
- 韓國哲學會編, 「許穆의 哲學思想」, 철학사(中卷), 東明社, 1987, 323~344쪽.
- 韓永愚, 「17세기 중엽 남인 許穆의 古學과 歷史認識」, 『朝鮮後期史學史研究』, 一志社, 1989, 91~134쪽.
- 金道基, 「眉叟 許穆의 經學思想」, 眉叟研究會 主催 學術發表會 論文, 『眉叟 許穆의 學問과 思想』, 세종문화회관 1993, 2. 12.
- 李永春, 「服制禮訟과 眉叟 許穆의 禮論」, 위의 책.
- 朴性鳳, 「許穆의 東事(史)意識」, 위의 책.
- 崔강현, 「미수(眉叟) 허목(許穆)의 문학을 살핌」, 위의 책.
- 梁泰鎮, 「許眉叟의 遺作品에 관한 書誌의 考察」, 위의 책.
- 金東建, 弘益대학교 大學院 美術史學科 碩士學位論文, 「眉叟許穆의 書藝研究」, 1992.

이에 本稿에서는 총 1093편으로 분류되는²⁾ 『記言』의 원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238편의 「碑誌」의 내용에도 실려 있고,³⁾ 최근에 필자에 의해 발견되어 미수 晩年の 書體研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 미수 撰·書의 「處士李晉茂墓表」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본고를 작성해 보았다.

2. 墓表의 發見經緯

미수의 향리이며 필자의 지역 연구범위 가운데 하나인 漣川郡 內에는 도처에 미수와 관련된 사적과 전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 선생의 유혼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6·25 이후 여러 가지의 불비한 여건으로 인하여 미수에 관한 1차 자료들은 무관심 속에 발굴·정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인식의 무지에서 빛을 보지못했을 본고의 소재인 「李處士墓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직계의 일부 후손들에게만 묘역에 구비되어 있는 전형적인 묘비의 형태로 인식되어 왔을 뿐, 비문과 서체를 중심으로한 미술사와 금석학의 초점에서 이 비가 차지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중요성에 관한 이해는 全無했던 것이다.

墓表의 발견은 지난 '96년 4월 3일 오후의 일로 다른 목적의 유적조사를 위해 漣川郡 郡南面 三巨2里 부처골(佛峴洞) 마을의 탐방조사시 이 마을 7반에 거주하는 任在元氏(69才)의 우연한 제보에서였다.

李處士의 묘역은 삼거리의 부처골 마을과 경계인 군남면 旺林里에 위치하며(사진 1) 묘표는 정남향의 봉분 오른쪽에 옥개석이 없는 碣의 양식을 하고 있다.(사진 2) 화강암 재질의 碑身 높이는 118.5cm, 폭 55.3cm, 두께는 17.5cm이며 字數는 총 475자(전면 171, 후면 304)로, 1행이 27자로 이루어져 있다. 大字의 字徑은 10.5×8.3cm, 小字는 3.7×3cm 크기이며 서체는 미수만의 독특한 楷行書(사진 3-1·2)로 씌어 있으나 6·25 때 입은 彈痕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일부 글자는 파손되어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 최강현, 위의 논문, 6쪽 표 1.

3) · 『記言別集』, 「卷之二十 丘墓文」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미수기언』, IV, 1979, 157~158쪽.

3. 翻 譯 文

李晉茂 墓表의 碑文은 전술한 바와 같이 『記言別集』에 실려 있고, 번역문 역시 『국역 미수기언』에 소개되어 있는 상태이나, 기존 번역문이 안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고 원문과 비문과의 차이를 대조하면서 살펴보는 기회를 본 장에 마련해 보았다.

〈碑 文〉

處士李晉茂卿之墓

孺人南陽洪氏附葬

李處士墓表銘 并序

李茂卿諱晉茂初名晉高本宗室之世我 恭定王第二王子孝寧大君補之後也大父景嶸司諫院獻納父惲以孝發聞旌表其閭者也茂卿爲後於族父吩咐父台壽義禁府都事茂卿自少時樂從先生長者遊初見雪翁先生欣然慕之遂爲弟子終身事之方剛自守不肯循俗媚世苟容平生好禮法慕古人直節以高尚居漣川熊淵上無事閒暇漁釣性愛鶴養雙白鶴三年春茂卿病胃入京求醫其九月茂卿客死京中鶴既別主人飛去不返及茂卿歿而歸鶴忽飛下殯門之外哀鳴良久不去客出涕曰烏有知其十二月葬縣南十里高子洞茂卿年七十自號醉愚云娶南陽洪氏前古名臣忠貞公應之後儒生順一之女也亦有婦人善行善於舅姑嚴於祀事娠則居處必正飲食必謹曰女節胎教不可不慎少茂卿一年先茂卿二十年五十而歿葬於白嶽東麓茂卿歿而合葬於高子有三男遠紀鼎紀漢紀皆讀書慎行稱善士茂卿能教家導師⁴⁾之力也遠紀早歿有二婿許翽鄭觀周翽老人之次子也今爲安峽縣監茂卿有弟晉元與之同爨而居晉元不幸短折而無子有寡妻稚女茂卿視其衣食撫育一如其弟時以鼎紀爲後銘曰

4) 『記言』에는 「率」자로 되어 있다.

善之無不喜過之無不視奄忽長逝而不見今我茫然而心悲
上之六年庚申季夏孔岩許穆眉叟著仍書石 八十六書

〈번역문〉

이처사묘표명 병서(李處士墓表銘 并序)⁵⁾

이 무경(茂卿, 이처사의 字)의 휘는 진무(晉茂)요 초명은 진설(晉髡)이며, 종실 세계(世界)에 근본을 두어 우리 공정왕(恭定王, 태종의 시호)의 둘째 왕자인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 1396~1486)의 후예다. 조부 경륜(景輿, 1537~1573)은 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이며 아버지 격(悌)은 효행으로 알려져 여리(閭里)에 정표(旌表)가 세워진 분이다. 무경은 족숙(族叔)인 분(吩, 관직은 承議郎)의 양자가 되었는데, 분의 아버지 태수(台壽)는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다.

무경은 어려서부터 선생이나 덕이 높은 어른들을 따라 지내기를 좋아하였다. 처음 설옹 선생(雪翁先生, 미수의 종형 許厚, 1588~1661)을 뵈고 혼연히 사모하여 결국 제자가 되고 평생토록 섬겼다. 군세게 자신을 지켜가며 세속에 따르고 아침하거나 구차히 용납받으려는 일을 하려 들지 않았다. 평생토록 예법을 좋아하고 고인(古人)들의 곧은 절개를 흠모하면서 고상한 뜻을 가지고 연천의 웅연(熊淵)⁶⁾가에 살면서 일없이 한가하게 물고기를 낚았다.

성품이 학(鶴)을 좋아해서 백학 한 쌍을 기른지 3년 되던 봄에 무경이 위병(胃病)을 치료하려고 서울에 갔다가 그해 9월에 서울에서 객사(客死)하였다. 학도 주인과 헤어지자 날아가 돌아오지 않다가 무경이 죽어 돌아오자 학이 갑자기 빈소 문밖에 내려 앉아 한동안 슬피울면서 떠나지 않았다. 조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도 아는 게 있어’라고들 했다. 그해 12월 연천현 남쪽 10리 되는 고자동(高子洞)⁷⁾에 장사지냈다. 무경은 나이 70에 스스로 취우옹(醉愚翁)이라는 호를 썼다.

남양 홍씨인 전 명신(名臣) 충정공(忠貞公) 응(應, 1428~1492)의 후예 유생 순일(順一)⁸⁾의 딸을 부인으로 맞았다. 역시 부인이 지켜야 할 훌륭한 행실이 있어 시부모를 잘 섬기고

5) 『記言』에는 「李處士茂卿墓表」로 되어 있다.

6) 연천군 중면 삼꽃리와 왕징면 강내리 사이의 임진강에 있는 깊고 큰 소(沼). 마을에서는 ‘괴미소’로 부르고 있다.

7) 연천군 군남면 왕림리에 있는 골짜기 마을로, ‘고조울’이라는 우리 고유의 땅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다.

8) 자는 亨九이며 通訓의 품계에 扶安縣監을 역임했다.

제사를 엄격히 받들었으며, 임신해서는 반드시 거처를 바르게 하고 음식을 삼가면서,

“여자의 법도는 태교(胎敎)를 삼가지 않아서는 안된다.”

하였다. 무경보다 1년 아래였으나 그보다 20년 앞서 50세에 세상을 떠나 백악(白嶽, 연천군 왕징면 강내리에 있는 산) 동쪽 산기슭에 장사했다가 무경이 죽고 나서 고자동에 합장했다. 아들 3형제가 있었으니 원기(遠紀)·정기(鼎紀)·한기(漢紀)다. 모두 공부를 하고 조심성이 있어 훌륭한 선비로 불리웠으니 무경이 집안을 잘 교도한 힘이다. 원기는 일찍 죽고 사위 둘이 있는데, 허함(許翺)⁹⁾과 정관주(鄭觀周)¹⁰⁾이며, 함은 노인(老人, 미수 자신을 지칭하는 말)의 둘째 아들로 지금 안협(安峽)의 현감이다. 무경은 아우 진원(晉元)이 있어 한 술의 밥을 먹으며 살았으나 진원이 불행하게 일찍 죽어 아들도 없이 과부가 된 처와 어린 딸만 있었다. 그들의 입고 먹는 것, 그리고 보살피고 가르치는 것을 동생이 살았을 때와 똑같이 하여 정기(鼎紀)로 뒤를 잇게 했다.

다음과 같이 명(銘)한다.

잘하면 기뻐하지 않는 적 없고
잘못하면 바로잡지 않는 법 없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나 볼 수가 없어
우리를 멍하니 가슴아프게 하네.

상(上, 숙종) 6년 경신(庚申, 1680년) 여름 공암(孔岩, 양천의 고호) 허목 미수가 비문을 짓고 글씨를 쓰다. 86세 서(書).

4. 處士 李晉茂의 生涯와 家系

醉愚翁 李晉茂의 字는 茂卿이며 본관은 전주로, 1608년(선조 41) 漣川에서 태어나 1679년(숙종 5) 72세의 나이로 타계한 사람이다.

9) 1627(인조 5)~1688(숙종 14), 자는 子翺. 『許氏大宗譜』, 「十卷之六, 陽川許氏編」, 168쪽.
10) 본관은 동래, 鄭蘭宗의 伯兄 蘭孫의 7대손인 有錫의 長子.

앞의 비문에 소개된 바와 같이 이진무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뜻을 두어 미수의 종형인 許厚¹¹⁾의 門下에 들면서 깊은 영향을 받고 雪翁을 평생 스승으로 섬겼다. 이러한 師弟관계는 그를 평생토록 禮法을 좋아하고 古人들의 꿈은 절개를 흠모하면서 高尚한 뜻을 가지게 한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임진강의 熊淵(사진 4-1·2) 가에 위치했던 그의 別業인 「醉愚堂」에서 일생을 無爲自然의 道家的 思想과 處士의 몸가짐으로 遊逸하였다. 또한 나이로 14년이 먼저인 미수의 老莊의 우주관과 인생관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두 사람의 사상은 많은 부분에서 동일한 면을 읽을 수 있다. 더욱이 미수의 생가인 恩居堂과 熊淵의 醉愚堂까지는 7km 거리이며, 이로 인한 잦은 왕래와 함께, 가문간 사돈의 인연을 맺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진무의 遺稿가 없는 관계로 더 자세한 연구의 전개는 한계에 도달하지만 『記言』에는 취우옹과 화답하며 읊은 미수의 詩 2수가 실려 있기도 하다.¹²⁾

〔醉愚堂偶題〕

跣之濁不可清

夷之清不可濁

夷清跣濁莫須別

但願長醉百年三萬六千日

〔취우당에서 우연히 쓰다〕

盜跣¹³⁾의 탁함 맑게 할 수 없고

伯夷의 맑음 흐릴 수 없네.

백이의 맑음, 도척의 탁함 따지면 무엇하리

원하노니 翁과 함께 백년 삼만 육천일을 취하고 싶다.

11) 1588(선조 21) ~ 1661(현종 2). 字는 重卿, 號는 觀雪·遜溪·逸休. 張顯光의 문인으로 미수의 학문과 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眉峯」역시 雪翁에 의해 體와 格이 이뤄지게 된다. 묘는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 새울에 있다.

12)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미수기언』, II. 1979, 226~227쪽.

13) 중국 秦나라 때의 大盜.

〔熊淵泛舟示永叔〕

山下春江深不流
綠蘋風動浪花浮
草青沙白汀洲晚
捲釣移舟上渡頭

〔웅연에서 뱃놀이하고 永叔에게 보여주다〕

산 아래 봄 강물 흐르지 않는 듯 깊고
부평초는 넘실넘실 물결타고 춤추네.
푸른 풀 흰 모래의 강 물가에 날 저물어
낚시 건어 배 타고 나무터로 돌아오네.

이진무 후손들의 제보에 의하면 위 2편의 詩는 미수 친필의 硯판으로 제작되어 淸우당에 걸려 있었으나 6·25 때 안타깝게도 淸우당과 함께 전소되었다 한다.

李晉茂와 許穆의 學脈은 南人系에서도 淸南에 속한다. 미수는 56세에 이르러 官界에 들지만, 淸우옹은 處士로서 평생을 은일한다. 그의 이러한 직접적인 계기는 그의 家系와 깊은 관련 때문이기도 하다. 『全州李氏孝寧大君靖孝公派世譜』, 「首卷 江城都正派, 545쪽」과 관련자료를 참고해 보면 그의 재종질인 宣川府使 李埴(1603~1642)의 事件¹⁴⁾ 이후로 그의 家系에는 관계에 진출한 인물을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그의 부인은 미수와 함께 葱山 鄭彦審¹⁵⁾의 門下에서 修學했던 驪州牧使 李志定¹⁶⁾의 딸이었고, 그의 아들 國均의 부인은

14) 1603(선조 36)~1642(인조 20). 문신. 자는 熙遠. 호는 鳴阜. 1621년(광해군 13) 문과에 급제, 1637년 지평이 되었고 鴻文館수찬·사간을 역임한 뒤 1642년(인조 20) 선천부사가 되었으나, 임지에서 명나라 상선과 밀무역을 하다가 청나라에 발각되어 義州에 구금, 淸將 龍骨大에 의해 처형당하게 되자 구명책으로 崔鳴吉·李敬輿·申翊聖·李明漢 등이 명나라와 密通한다는 사실을 고하여 그들을 瀋陽에 囚禁케 하여 목숨을 건지려 하다가 조정에서 보낸 義禁府都事 鄭錫文에 의해 斬首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조선은 외교관계에 있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15) 1545~1612. 자는 宇容. 호는 葱山. 明宗~先祖 연간의 大文章家.

16) 1588~1650. 자는 靜吾. 호는 聽蟬堂. 본관은 어주. 찬성 尙毅의 아들. 1612년(광해군 4) 문과에 급제한 뒤 여러 고을의 군수를 거쳐 여주목사를 역임했다. 草書와 文章에 뛰어났고, 『聽蟬詩稿』가 전한다. 미수 허목, 東州 李敏求 등과 교분이 두터웠으며, 星湖 李滉의 祖父인 志安의 친형이 된다.

判書 鄭世規¹⁷⁾의 딸이며, 큰 딸은 參判 陸長欽¹⁸⁾의 아들 順善에게 출가시켰다. 이와 같이 당대 南人系를 대표했던 名門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李桂의 사건이 당시 정치·외교적인 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가 깊이 작용하고 얽혀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전말의 많은 부분이 지금까지도 의문점으로 남아 있기도 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醉愚翁 李晉茂는 鳴皋 李桂의 사건으로 인하여 관계 진출에 장애가 있었으나 鶴과 같은 고결한 성품을 소유하였고, 古學에도 깊은 식견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5. 墓表의 金石學的·藝術史的 價值

미수는 三代의 古文인 六經의 深源한 眞意를 실득하기 위해 평생 古人의 글을 읽어 聖人の 마음을 체득하고, 原始儒敎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창의적인 尙古精神으로 생을 일관하면서 몸소 실천하여 당대의 흐름이었던 전통 주자학과 시각을 달리하는 「古學」이라는 독자적이고 혁기적인 反轉의 사상적 경지를 개척하여 ‘미수의 學은 古學이요, 미수의 文은 古文이며, 미수의 書는 古書’라 通稱되고 있다.¹⁹⁾ 이러한 미수의 修己의 노력은 그의 書體에도 그대로 응용되어 일찍이 선례가 없는 독특한 古篆八分體로 드러나고 완성되어 ‘東方第一人者」라는 평가와 함께 우리나라 서예사에 혁명적인 업적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수의 영향은 星湖 李瀼의 仲兄 玉洞 李淑(1662~1723)에게 이어져 東國眞體의 완성에 모태가 되었으며, 또 다시 옥동의 문하 白下 尹淳(1680~1741), 圓嶠 李匡師(1705~1777)에게 전수되어 후일 金正喜(1786~1856)의 秋史體 完成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미수의 篆書는 少時의부터 익힌 八分·古文·篆書에 기인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古篆에도 뛰어 났던 종형 觀雪堂 許厚에게서이다. 이어 미수는 30세에 이르러 경기도 廣州 牛

17) 1583(선조 16)~1661(현종 2). 문신. 자는 君則. 호는 東里. 본관은 동래. 우의정 彦信의 손자. 1613년(광해군 5) 사마시에 합격, 관계에 올랐다. 병자호란 때 공충도관찰사로 남한산성으로 진격하였으나 용인에서 패전하였다. 벼슬은 병주판서에 이르렀고 시호는 景憲이다.

18) 1572(선조 5)~1641(인조 19). 문신. 자는 禹卿. 호는 孤石. 1599년 문과에 급제하였고 인조반정으로 승지에 임명되었다. 1615년(광해군 7) 폐모론 때 두문불참하였으며 병자호란 때에는 임금을 호종하였다. 벼슬은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19) 金道基, 위의 논문, 3쪽.

川の紫峯山에 寓居하면서 體와 格을 完成²⁰⁾하였고 郎善君 李悞(1637~1693)가 중국 사신으로 가 탁본으로 구해 온 衡山 神禹碑²¹⁾와 李晉茂의 別業인 醉愚堂과 인접한 熊淵 石文의 異書(사진 5-1·2)²²⁾ 등의 古本과 自然神物에서 筆力을 얻어 어떠한 사람도 추종할 수 없는 완숙한 古篆의 세계를 타계 전까지 왕성하게 남겼다.

특히 미수의 가장 많은 유작품인 金石文은 매우 다양하고 방대하며, 이 가운데 우리 서예사에 神品으로 평가되고 있는 「陟州東海碑」²³⁾가 대표적인 걸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안타깝게도 이외에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금석문 자료들은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기초자료의 정리 단계에도 못미치는 실태이며 李晉茂의 墓表역시 전술한 바와 같은 예일 것이다.

李晉茂의 墓表는 미수 타계 2년 전인 86세 때의 작품으로, 미수 특유의 꾸미고 아로새김이 없는 문장의 간결과 순수함, 도덕이 글 전체에 담겨 있다. 더욱이 미수의 독특한 篆書法을 응용한 楷行書體의 비문은 孤高・枯淡하고 典雅하여 만년에도 聖人の 大法에 따라 미수 자신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려는 修己와 인격수련의 굳은 의지를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비문 마지막의 건립연대의 표기 부분에서는 당시 慕華思想에 근원을 둔 지배적이고 일반적인 양식이었던 이미 멸망해버린 明나라의 「崇禎」연호를 과감히 배격하고 자각적인 민족주의 의식과 강력한 왕권의 확립의지가 표방되고 있는 「上」표기의 상징적 독창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체적인 연대표기는 다른 금석문 및 유목자료에서도 일관되게 표기되고 있어 『東事』에서도 나타난 미수의 선구적이고 주체적인 역사의식을 깊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6. 結 語

이상에서 미수 허목이 친필로 남긴 金石文 가운데 秀作으로 평가되는 新發見의 醉愚翁

20) 『眉叟先生年譜』「卷之一」, 2.

21) 형산은 중국 五岳의 하나로 古代 夏나라 임금 禹의 碑石을 말한다.

22) 왕징면 강내리 임진강변 암벽에 있는 天然石文으로, 자연의 풍화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의 기이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미수기언』, Ⅲ, 218~219쪽, 242~243쪽 참조.

• 필자 편저, 『鄕土史料集』, 연천문화원, 1995, 614~616쪽 참조.

23) 강원도 삼척시 정상동 육향산 정상에 있는 비. 175×76×23cm 크기이며 1661년 삼척부사로 있던 미수가 동해의 풍랑으로 인한患을 제거하기 위해 세운 비이다.

李晉茂 墓表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고찰을 시도해 보았다. 하나의 금석문을 중심으로 펼친 본고의 전개과정을 통해 밝혀진 중요한 요점을 종합하고 보충·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수 허목은 깨어 있던 선각자이지 異人이 아니다. 16~17세기 동아시아의 질서 개편은 임진왜란·병자호란·명의 멸망 등, 일련의 큼직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새로운 변화로의 전환이 이루어 지지만, 조선은 그때까지도 본질적 유학에서 이미 퇴색되고 변질되어 관념적으로 빠진 ‘程朱學’이 지배하던 제한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小華」로 自慰한데 반하여, 時流의 공통분모 속에 동시대인이었던 미수는 15~16세기 朱子學에 대항하는 明나라 古文辭派의 개척과 실험정신을 芝峰 李睟光(1563~1628)과 같은 先學의 영향을 통해 변화의 조류를 일찍부터 읽고 있었으며 미수는 그 흐름을 奇人으로도 평가되고 있는 자기의 仙敎的 성향에 결부시켜 古文·古體·古篆·古經의 재해석을 통한 溫故之新의 「古學」으로 철저히 일관하였고, 그 방대한 학문적 축적을 현실사회에 독창적으로 결합시켰으며, 더 나아가 구체적인 개혁론을 주장하고 실행에 옮긴 현실주의자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미수의 독창적인 예술세계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開陳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미수의 독특한 古篆이 발생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과, 미수 생전에 당쟁의 맥락에서 老論系의 李正英·洪吉周 등이 ‘眉叟의 篆은 論할 가치도 없다.’라는 評說에 관해서도 통시적인 맥락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가 뒤따라야 하겠다.

셋째, 미수가 남긴 방대한 금석문 가운데 친필로 남긴 유적은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위해 위치 및 현상이 1차적으로 파악되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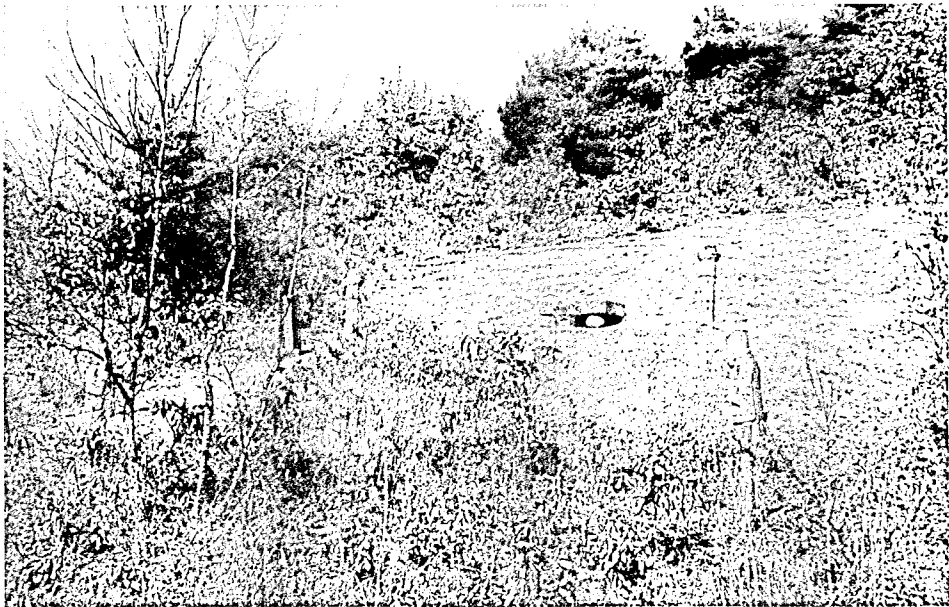
넷째, 미수 만년 古篆의 백미이며 압권인 「處士李晉茂墓表」에 대한 보호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겠다.

이상으로 우연한 제보로 인하여 새로 발견된 「李處士墓表」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論旨를 통해 이 비석이 차지하는 예술사적 중요성과, 李晉茂·許穆 등 당시 南人系의 학맥과 혼인관계의 규명 작업을 통하여 17세기 미수 허목의 학사적 위치와 시대정신, 그의 예술세계에 대한 재조명에 본고의 초점을 맞추어 보았으나 서예사 및 예술사에 관한 필자의 안목과 전문성의 결여로 인하여 書評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 두는 바이다. 아무쪼록 필자의 拙稿가 관련학계 및 향토사연구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參 考 文 獻

- 『韓國의 美 ① 謙齋 鄭敬』, 中央日報社, 1986.
- 精神文化研究院, 『民族文化大百科辭典』, 웅진출판사, 1993.
- 吳世昌, 『槿域書畫徵』, 學文閣, 1970.
- 李宇衡, 『鄉土史料集』, 漣川文化院, 1995.
- 申維翰, 『靑泉集』, 규장각본, 奎5030.
- 李墩衡, 『李夏鎭一門의 實學思想』, 原州文化院, 1992.
-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성호사설』, 19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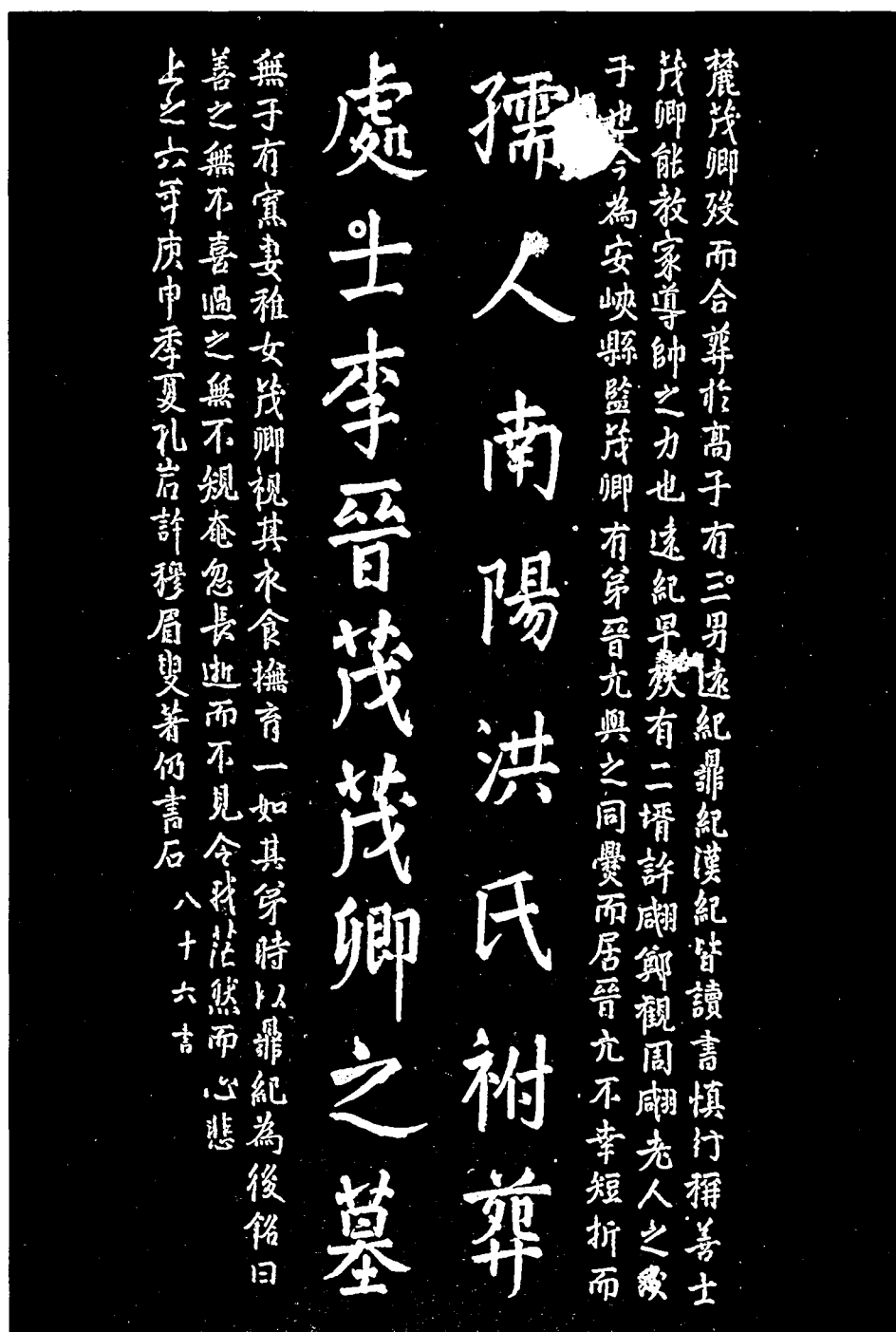
※ 이외 각주로 대신함.



〈사진 1〉 處士 李晉茂 墓域 全景



〈사진 2〉 李晉茂 墓表 近景



〈사진 3-1〉 墓表 拓本 加墨, 前面

李虞士墓表銘并序

李茂卿諱晉茂初名晉高本宗室之世孫恭定王弟二王子孝寧大
 君柿之後也大父景嶸司諫院卿為後於族父盼盼父台壽義
 進初見雪翁先生欣然慕之遂終身事之方到自守不百循俗
 邇世苟容平生好禮法慕古人直節以高尚居連川熊淵上無事間暇
 漁釣性愛鶴養雙白鶴三年春茂卿病胃入京求醫其九月茂卿客死
 京中鶴既別主人飛去不返及茂卿歿而歸鶴忽飛下殯門之外哀鳴
 良久不去客出潸曰鳥有知其十二月葬縣南十里高子洞茂卿年七
 十自別醇愚云娶南陽洪氏前古名臣忠貞公應之後儒生順一之女
 也亦有婦人善行善於舅姑嚴於祀事姪則居處少正飲食必謹曰女
 節胎教不可不慎少茂卿一年先茂卿二十年五十而歿葬於白嶽東



〈사진 4-1〉謙齋 鄭澈 作「熊淵繫纜」

1742년 『漣江壬戌帖』中 일부, 33×74.4cm

—웅연과 石文, 취우당이 실경으로 담겨진 귀중본이다—



〈사진 4-2〉熊淵 全景



〈사진 5-1〉 熊淵 石文 全景



〈사진 5-2〉 熊淵 石文의 異書. 細部

수원부의 나루와 교량

정 인 숙*

目 次

1. 나 루	2. 교 량
결 어	결 어

1. 나 루

수원지방의 고대사를 공부하고자 하였을 때 여러가지 어려움을 느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움을 느낀 점은 고대에 있어서 수원지방의 해안 지형이 오늘날의 지형과 비교하여 현저히 달랐다는 점이었다. 조선시대 해안가에 염전(鹽田)을 만들기 위한 제(堤)의 축조 등 농지의 확장을 위해 바뀌어지기 시작한 수원지방의 해안지형은 최근에 와서는 남양방조제, 아산만방조제를 비롯하여 대규모 방조제공사로 인하여 그 모습이 불과 50년 전과 비교하여도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 수원지방에 있어서 해안선의 현격한 변화는 오늘날 주민들의 교통권, 교역권의 변화는 물론, 산물(産物)의 변화, 주민들의 직업의 변화마저 일으켰다. 수원지방의 지형의 가장 큰 변화는 내륙 깊숙이 들어오던 해운(海運)이 사라졌다는 점일 것이다.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점은 수원부의 옛나루의 현 위치를 찾아보고 당시의 교통, 교역, 선세관계를 엿보고자 하는 것이다. 배 아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화성군 해안선 전체가 배터였다 하나 능력의 부족으로 조선시대 지리지들과 선세(船稅)관계 문헌에 기록

* 수원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된 나루들만을 서술하였음을 밝혀둔다. 수원지방의 지형을 이해하는데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

1) 항곶진(項串津)

- a-1 奈川 在縣西二十里 自水原府邑川東北 下流 與長好川兔峴川合流 入于水原項串浦(輿地圖書 振威 山川)
- 2 長好川 在縣南一里 其源有二 一出龍仁東 一出古陽智縣 西流合流 經客舍南西 水原項串浦(輿地圖書 振威 山川)
- 3 長好川 出龍仁聖輪山 西流至陽城金洞 過處仁川 經縣南西 流入水原亢串浦(大東地志 振威 山水)
- 4 兔峴川 在縣西十五里 自龍仁駒興驛川 下流 與長好川合流 入于水原項串津(輿地圖書 振威 山川)
- 5 兔峴川 西十五里 龍仁驅興川 下流 至西二十里爲奈川 卽亢串浦(大東地志 振威 山水)
- 6 驅興川 南十里 源出寶蓋山西 南流爲葛川 經石隅店 至振威界爲兔峴川 至水原界爲烏山川 入亢串浦(大東地志 龍仁 山水)
- 7 大川 過山北升良院 仍與振威長好川水 合流爲亢串津(輿地圖書 陽城 山川)
- 8 亢串川 南六十里 源出光教山 南流 貫南北水門而出 爲上下柳川 經大皇橋 禿城之西 左過烏山川 南流 左過振威長好川 入鷄頭津(大東地志 水原府 山水)

항곶진(項串津)은 오늘날의 평택군 서탄면 황구지리에 위치하였는데 항곶진(亢串津) 항곶포(項串浦) 항곶포(亢串浦)로도 쓰여졌다.

오늘날의 황구지천(黃口池川)의 원래 이름은 항곶천(亢串川)으로 내천(奈川)으로도 불리워졌는데, 항곶진으로부터 이름이 유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지류들은 여러 갈래로서 지역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여 불리워졌다. 수원시의 경우에는 진목천(眞木川), 상유천(上柳川), 하유천(下柳川)으로 불리워졌으며, 서탄면 내천리부터는 내천(奈川), 서탄면 황구지리부터는 항곶천(亢串川)으로 불리워졌다.

즉 황구지천 본류의 기원은 수원 광교산으로부터 발원하여 연무동을 거쳐 수원 시내를 관통하는 유천(柳川)과 역시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괴목정교(槐木亭橋) 아래로 흘러나온 물줄기와 진목천(眞木川)의 물줄기가 정자동에서 만나 이루어진 영화천(迎華川)이 된다. 이들 하천은 이의동 방향에서 흘러온 원천천과 대황교(大皇橋)에서 만나서 황구지천이

되는데, 남으로 흘러 서탄면 내천리(奈川里) 부근에서는 내천(奈川)이라 불리우고, 남으로 흘러 진위현장호천(振威縣長好川)과 합류하여 항곶진(項串津)으로 내려가서 항곶천(亢串川)이 되고, 항곶천 물은 다시 남으로 흘러내려 동청포(東靑浦)를 거쳐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으로 내려간다. 다라고비진에서 동쪽으로부터 흘러내려온 양성현(陽城縣) 홍경천(弘慶川 일명 素沙川)을 만나 합류하여 계두진(鷄頭津)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대동여지도』에는 내천(奈川)의 남쪽이자, 영신속현(永新屬縣)의 서쪽에 항곶포(亢串浦)를 기록하여 놓았다. 항곶포는 오늘날의 화성군 팔탄면(八灘面), 양감면(楊甘面) 사람들이 송탄 방면으로 건너가는데 주로 이용하였던 나루였다. 이곳은 아산만으로부터 바닷물이 들어왔는데 왜정 때까지 항곶진 북 4km에 위치하는 내천리(奈川里)까지 바닷물이 들어갔다. 새우젓배 등 많은 배들이 내천리까지 들어갔는데 이곳 항곶포에도 1946년까지 1~2척의 배가 들어왔다 한다. 주로 들어온 배는 새우젓배로 여름, 가을 들어왔고 가을에는 버를 받고 김장새우젓을 주고 가는 물물교환을 하였다 한다.¹⁾

내천리 서쪽 3km 향남면 길성리에는 백제초기 초축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길성리토성(吉城里土城)이 있으며, 항곶포의 서북 2km 양감면 사창리에는 창고의 둘레를 쌓은 사창리성(社倉里城)과 백제초기에는 길성리토성의 보조성(補助城)으로서 조선시대에는 사창리성의 보조성으로서 사용되었으리라 보이는 소근산성(疏勤山城)이 있다. 이들 성지들의 축성은 아산만으로부터 내륙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던 해운(海運)의 편리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2) 동청포(東靑浦)

b-1 宗德面 東靑浦 白花鹽一囊一兩 石花鹽一囊一兩五錢 海防營捧去 甲申爲始 每船二兩 以堤稅 水北徐相敦 捧去 (水原府船稅革罷成冊)

2 古頭面 東靑里(輿地圖書 振威 坊里)

3 宗德面 南距六十里 凡九洞 本屬陽城 太宗丁酉來屬 加內里 東靑里 開野山 九力里 烏谷里 知串里 頭應里 堂本里 莫今里 (水原郡邑誌 坊里)

평택군 고덕면 동청리(平澤郡 古德面 東靑里)는 본래 양성땅이었는데 조선초 태종 17

1) 홍성관(67세, 서탄면 황구지리)증언

년(1417)에 수원부에 내속되었고 『여지도서』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진위현 고두면에 속하였다가 조선시대 말기 『수원부선세혁파성책』이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수원부 종덕면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현재 동연교가 지나가는 자리에 동청포나루가 있었으나 여러차례 다리를 세우면서 나루터 자리는 없어졌다. 나루터를 중심으로 나루터 옆에 창고들이 있었으며 현 농협 정미소 앞에 장(場)이 섰다.

동청포 나루는 평택군 청북면(靑北面)의 황골, 밤뒤, 쟁기동, 한산리, 백봉, 토진리 사람들이 서정리로 갈 때 주로 이용한 나루이다. 나루터 근처는 아산만으로부터 올라온 바닷물과 민물이 합류하는 곳이었으므로 우여, 붕어, 메기, 뱀장어, 바다새우, 고치레(민물참게) 등이 함께 많이 잡혔다. 포승면 만호리나루(大津)를 거쳐 새우젓, 조개젓, 황새기젓배 등이 들어왔다 하는데 배들은 이곳을 거쳐 북으로 황고지나루(項串津)로 들어갔다.

조선시대로부터 왜정 때까지 이 근방 서울 지주들 소유로 되어 있던 땅에서 나는 모든 곡식의 조세는 이곳 동청나루에서 배로 실어 인천을 통해 서울로 운송하였다 한다.

『수원부선세혁파성책』에 의하면²⁾ 백화염(白花鹽) 1항아리마다 1냥, 석화염(石花鹽) 1항아리마다 1냥 5전을 고종 21년(1884)부터 해방영(海防營)에서 걷어갔고, 배 1척마다 2냥을 제세(堤稅)로써 수북면(水北面, 동청포의 서쪽 平澤郡 靑北面 閑山里, 魚淵里 일대)의 서상돈(徐相敦)이 걷어갔다.

3) 다라고비진(多羅高飛津)

c-1 多羅高飛津 在府南六十七里 大川及振威縣長好川之水 合流于此 又南流入海(新增東國輿地勝覽 水原 山川)

2 長好川 在縣南一里 其源有二 一出龍仁屬縣處仁東 一出陽智縣 西流合流 經客舍南 又西流 入于水原府多羅高飛津 (新增東國輿地勝覽 振威 山川)

3 多羅高飛津 在府南六七里 大川及振威長好川之水合流 南入海 (輿地圖書 水原府邑誌 山川)

4 弘慶川 過素沙橋 西南 與振威縣長好川 合流爲多羅高飛津 (輿地圖書 陽城 山川)

5 大川過山北升良院 仍與振威長好川水 合流爲亢串津 水又下 與本縣素沙橋下流水 合爲多羅高飛津 入于海(輿地圖書 陽城 山川)

2) 『水原府船稅革罷成冊』 고종23년(1886) 12월

다라고비진은 수원부 옛 치지로부터 남 67리에 위치하였다. 항곶진(項串津)과 동청포(東靑浦)를 거쳐 내려온 황구지천(내천, 항곶천)은 소사교(素沙橋 평택시 소사동)를 지나온 홍경천(弘慶川 일명 素沙川)과 다라고비진에서 합류하여 아산만 바다로 흘러간다.

오늘날 평택군 고덕면(古德面) 궁(宮) 1리를 주민들은 다루지나루라고 부르는데 현 궁 안휴게소 자리에 다루지나루터가 있었다 한다. 다라고비진은 다루지나루의 옛이름인 것으로 추정된다. 1938~1939년 무렵까지는 막사리 때 돛대를 쓰러뜨리고 황구지(項串津)까지 조개젓배가 들어갔다고 한다. 또 이곳으로부터 동북에 위치한 해창 4리 뱃말까지 배가 들어갔으나 소청다리가 생긴 이후에는 해창으로 배가 들어가지 못하고 다루지나루터에 배가 섰다고 한다.

곡식이 되지 않는 덕적도(德積島)로부터 조개젓배, 새우젓배, 소라젓배가 들어와서 보리로 바꿔 가고는 했는데 지금도 덕적도 아줌마가 굴것을 이고 온다고 한다. 새우젓배들은 주로 충남 아산시 백사포리(白石浦里)를 들어서 다루지나루터로 들어왔다 한다.³⁾

4) 리포진(里浦津)

d-1 里浦津 在府南五里今勿村面 平澤等邑通涉 (輿地圖書 水原 山川)

2 今勿村面 在南距四十里 (輿地圖書 水原 坊里)

3 里浦津 在府南五十里今勿村面 平澤等邑通涉 (水原府邑誌 山川)

4 今勿村面 府南距四十里 (水原府邑誌 坊里)

5 里浦津 在府南七十里今勿村面 平澤等邑通涉 (水原府邑誌 津渡)

6 里浦津 南七十里 通平澤 (大東地志 水原 津渡)

7 五朶面 黑津浦 石花鹽一甕一兩五錢 白花鹽一甕一兩 租一石二錢 米一石三錢 順和宮與海防營 各其捧去 而順和宮今年爲始 海防營甲申爲始 租一石二錢 米一石三錢 於音沙工捧去 每船二兩 以堤稅水北徐相敦捧去 (水原府船稅革罷成冊)

8 五朶面 南距七十里 凡九洞 舊今勿村面 今合于此 鬱城里 新里 東古里 防築里 亭子里 孝鶴里 乾坤里 五營里 黑洞里 (水原郡邑誌 坊里)

9 里浦津 在府南七十里五罵面 忠淸道平澤等邑 通涉 (水原郡邑誌 津渡)

리포진(里浦津)은 리진포(里津浦), 리진포(黑津浦)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여지도서』

3) 안주웅 (73세, 평택군 고덕면 해창3리가 고향이며 현재 궁1리 거주) 증언

『수원부읍지』에는 금물촌면(金勿村面)에 위치한다 되어 있으나 금물촌면은 조선시대 후기 오타면(五朶面)에 합쳐지므로 『수원부선세혁과성책』 『수원군읍지』에는 오타면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다. 조선시대 오타면은 오늘날의 평택시 지제동(芝制洞) 울성리(蔚城里) 효학동(孝鶴洞) 건곤(乾坤) 동고리(東古里) 일대로서 리포진은 이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여지도서』 진위(振威) 지방도에는 현재의 평택군 고덕면 해창리 남쪽에 리진(黑津)이라 적어 놓았으므로 오늘날의 평택시 동고리(東古里) 근처에 리진포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동고리는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에는 신환포(新換浦)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리진포(黑津浦)가 후대에 신환포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조선시대 지리지들에 의하면 리포진은 평택 등읍으로 건너가는 나루였다 하는데 일제시대 이곳 동고리에는 평택군 평성읍 내리, 안정리로 건너가는 나루가 있었다 한다. 이곳 동고리 포구는 평택시 서부동 삼교에까지 뻗쳐 있었는데 동쪽으로 군문동까지 배가 들어갔다 한다.

『수원부선세혁과성책』에 의하면 오타면 리진포(黑津浦)에서는 석화염(石花鹽) 1항아리마다 1냥 5전, 백화염(白花鹽) 1항아리마다 1냥, 좁쌀 1섬마다 2전, 쌀 1섬마다 3전을 순화궁(順和宮)과 해방영(海防營)에서 세금으로 걷어갔다. 순화궁에서 걷어간 것은 고종 23년(1886)부터 시작되었고 해방영에서 걷어간 것은 고종 21년(1884)부터 시작되었다. 또 좁쌀 1섬마다 2전, 쌀 1섬마다 3전을 어음사공(於音沙工)에서 걷어갔고, 배마다 2냥씩을 제세(堤稅)로써 수북면(水北面, 平澤郡 靑北面 魚淵里 閑山里 일대)의 서상돈(徐相敦)이 걷어갔다.

5) 신흥포(新興浦)

e-1 廣德面 新興浦 靑魚一同五錢 石魚一同五錢 甘藷一同二兩 租一石一錢 米一石二錢 車麥一石一錢 錢一百兩 以一年浦稅主人處捧去 海防營捧去 甲申爲始 靑魚一同三兩 石魚一同二兩 甘藷一同三兩 古等魚一同五兩 白花鹽一囊二兩 租一石二錢 米一石三錢 車麥一石二錢 鹽一石二錢 木花一隻三兩 窓戶紙一同十五兩 牛皮一張一兩 南草一隻一兩五錢 錢一百兩 以一年浦稅主人處捧去 順和宮捧去 今年爲始 (水原府船稅革罷成冊)

조선시대 광덕면(廣德面)에 있었던 신흥포는 평택군 현덕면 신왕 2리로부터 충남 계양으로 건너가는 나루였다. 안중으로부터 동남 6.6km 떨어져 있는데 북 1km에 위치한 덕목

리(德陸里)에는 수원부 속현(屬縣)이었던 광덕현성지(廣德縣城址)로 비정되는 토성지가 있으며,⁴⁾ 신왕리 심복사(深福寺 舊名新福寺)에는 보물 565호로 지정된 납석제의 석조비로차라불좌상(石造毘盧遮羅佛坐像)이 있다.

『수원부선세척과성책』에 의하면 청어 1동마다 5전, 조기 1동마다 5전, 미역 1동마다 2냥, 조 1섬마다 1전, 쌀 1섬마다 2전, 대맥 1섬마다 1전, 돈(錢) 100냥을 1년 포세(浦稅)로써 주인이 걷어갔는데 고종 21년(1884)부터는 해방영에서 걷어갔다.

또한 청어 1동마다 3냥, 조기 1동마다 2냥, 미역 1동마다 3냥, 고등어 1동마다 5냥, 백화염(白花鹽) 1항아리마다 2냥, 좁쌀 1섬마다 2전, 쌀 1섬마다 3전, 대맥 1섬마다 2전, 소금 1섬마다 2전, 목화 1척마다 3냥, 창호지 1동마다 15냥, 소가죽 1장마다 1냥, 담배 1척마다 1냥 5전, 돈(錢) 100냥을 1년포세(浦稅)로써 주인이 걷어갔는데 고종 23년(1886)부터는 순화궁(順和宮)에서 걷어갔다.

6) 신성포(新星浦)

f-1 新星浦 靑魚一同三兩 石魚一同二兩 順花宮捧去 今年爲始(水原府船稅革罷成冊)

조선시대 광덕면(廣德面)에 속하였던 신성포는 평택군 팽성읍 노성리 신성에 위치했다. 『수원부선세척과성책』에 의하면 청어 1동마다 3냥, 조기 1동마다 2냥을 고종 23년(1886)부터 순화궁(順和宮)에서 걷어갔다.

7) 계두진(鷄頭津)

g-1 鷄頭山 在府南八十里 加士串面 峯上有盤石 有碁局形 世稱神人之遊 (輿地圖書 水原 山川)

2 鷄頭津 南八十里 通牙山 (大東地志 水原府 津渡)

3 鷄頭山 在府南百里 佳士面 有古蹟 見古蹟 (水原郡邑誌 山川)

4 鷄頭山碁局岩 在府南百里 佳士面 峯上有碁局形 世稱神人之遊 (水原郡邑誌 古蹟)

5 乞梅串 西南一百二十里 越在牙山西北界(大東地志 水原府 山水)

6 佳士面 南距百里 凡十二洞 頭麻里 安中里 鷄頭里 權官里 麥山里 基谷里 水山洞 三島新屯村 洞城浦 密頭里 麥堰里 (水原郡邑誌 坊里)

4) 참고, 《화성군 향남면 길성리토성연구》 숙명여대사학과석사학위논문 1982, pp.71~74.

수원부 치지를 옮긴 이후 계두진은 수원부 치지(治址)로부터 남 80리에 있었는데 아산(牙山)으로 갈 때 주로 이용한 나루였다. 향꽃진, 동청포, 다라고비진, 리포진을 거쳐내려온 황구지천의 물이 이곳에서 아산만 바다를 이룬다. 계두암은 오늘날 평택군 현덕면 권관리(權管里) 남쪽 바다 끝, 아산만 방조제가 시작되는 지점에 있었는데 신인(神人)들이 놀았다고 전하는 바둑판모양(碁局形) 바위가 있었다. 현지노인들은 이를 달기머리라고 부르는데 아산만 방조제를 쌓으면서 돌을 가져가 사용함으로써 자취가 없어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는 최근에 만든 팔각정이 세워져 있다. 계두암은 절벽으로 형성되고 수류가 불안정하므로 계두암 바로 아래 나루가 형성되지 않았고 서쪽 기슭과 계두암 동 1km에 위치하는 노랑바위 근처가 현재까지 나루터로 사용되고 있다. 계두진도 이 근처에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계두진으로부터 부여로 향할 때는 아산만을 건너 →충남 백석포리→함덕면→예산→유구 마곡사→금강 곶나루→부여로 향하였다 한다.⁵⁾ 『대동지지』 산수조, 『수원군읍지』방리조에 의하면 계두진 바다 건너 오늘날 충남 안주면(仁州面) 걸매리(傑梅里)와 밀두리(密頭里), 충남 영인면(靈仁面) 백석포리(옛지명 洞城浦)가 수원부(군)에 속하였음이 주목된다.

8) 당진포(唐津浦)

- h-1 唐津浦 在府南八十里廣德面 牙山等邑 通涉(輿地圖書 水原 山川)
- 2 唐浦津 在府南九十里廣德面 忠清道牙山等邑 通涉(水原府邑誌 津渡)
- 3 堂浦津 南九十里 通牙山(大東地志 水原府 津渡)
- 4 唐津津 在府南九十里廣德面 忠清道牙山等邑 通涉(水原郡邑誌 津渡)
- 5 廣德面 新巖洞 大外洞 鳩屯洞 小外洞 德木里 竹峴里 冷井里 新成里(水原郡邑誌 坊里)

옛 수원부 치지(治址)로부터 남 80리 광덕면(廣德面)에 위치하였으며 충청도 아산(牙山) 등읍을 갈 때 주로 이용하였던 나루였다. 당포진(唐浦津) 당포진(堂浦津) 당진진(唐津津)으로도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9) 대포진(大浦津)

- i-1 大浦津 在府南八十里浦內彌 唐津等邑通涉(輿地圖書 水原 山川)

5) 남양 향토학자 홍승길 교시

- 2 大浦津 在府南九十里浦內面 唐津等邑通涉 (水原府邑誌 津渡)
- 3 大津 西南一百里 廣十餘里 朝勢悍駛 中流有下令翁岩巉岩卓立 高可百餘尺 潮滿
用舟乃渡 通洪川沔川等 諸邑捷路 (大東地志 水原府 津渡)
- 4 漢津 在府南九十里 浦內面 舊稱大浦津 忠清道唐津等邑通涉 (水原郡邑誌 津渡)

대포진은 옛 수원부 치지(治址)로부터 남 80리(90리) 포내미에 위치했다 하는데 오늘날의 평택군 포승면 만호리(晩湖里) 나무이다. 당진 등 읍을 건너 다닐 때 이용되었는데 조선시대 후기에는 대진(大津), 한진(漢津)이라고도 불리워졌다. 『대동지지』에 의하면 대진(大津)은 서남 100리에 있는데 나무 폭이 10여리가 된다. 조수의 물결이 사납고 빠르게 중류(中流)에 영웅암(令翁岩)이 깎아 지른듯이 높이 우뚝 솟아 있는데 높이가 100척 가량된다. 만조(滿潮) 때 배를 타고 건너는데 홍천(洪川) 먼천(沔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청구도(靑丘圖)』에는 수원부 감암면(甘岩面) 서쪽 바다에 대진(大津)을 그려놓았다.

오늘날 만호리나무로부터 아산만 건너에는 충남 송악면(松嶽面) 한진리(漢津里)의 한진나무가 있는데 만호리나무와 한진나무 사이에는 영웅바위가 있다. 만호리 바다 건너 충남 송악면 한진리에 한진나무라는 지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서 만호리와 한진리 사이의 나무 자체를 대포진, 대진, 한진으로도 불렀음을 짐작 할 수 있다. 현재 만호리로부터 충남 송악면 복운리(伏雲里) 사이에는 서해대교가 세워지고 있으므로 육로로 통할 예정이다.

10) 위포(圍浦)

- j-1 楚坪面 南距四十里 凡十四洞 水鐵里 樓邑里 他宗里 馬遊洞 新村 牟田洞 龍蘭里 西村
余垞里 內昌洞 魚隱窟里 大花村 宮基里 魚仁浦

오산시 필봉의 남쪽 기슭의 충혼탑 근처의 현 지명은 은계이나 1912년에 만들어진 『근세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에는 위포(圍浦)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왜정 때 이름은 위포이며 원래 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수원군읍지』 초평면(楚坪面)조에는 이 부근에 어인포(魚仁浦)라는 지명이 보이므로 주목된다. 초평면은 오늘날 오산시 서리저수지 일대를 일컫는다. 수철리(水鐵里)→수청리(水淸里), 용란리(龍蘭里)→용수리(龍水

里), 내창리(內昌里)→내리(內里), 서촌(西村)과 여대리(余垞里)→서동(西洞), 대화촌(大花村)→대호밭(죽담밭,竹田), 궁기리(宮基里)→궁터로 지명이 바뀌었다. 또 서리 저수지 일대는 초평동으로 불리워지는데 초평면의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인다.⁶⁾

『수원군읍지』에 궁기리(宮基里) 다음으로 나오는 어인포(魚仁浦)는 오늘날의 오산 필봉(筆峯) 남쪽 기슭 은계에 있었던 위포(圍浦)와 같은 장소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11) 개죽포(竹浦)

개죽포(가죽포,죽포)란 남양만(南陽灣) 바다의 물줄기가 화성군 남양면 남양리 내륙 깊숙이 들어와 형성된 포구이다. 즉 남양리(南陽里) 서남쪽 신남리(新南里) 장덕리(長德里)와 마도면 쌍송리(雙松里) 청원리(靑園里) 사이의 갯벌에 위치한 포구이다.

개죽포의 개죽은 갯벌을 의미하며, 보통 발목 이상 빠지지 않는 다른 갯벌에 비하여 한없이 빠져들어가는 갯벌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범선(帆船)이 남양부를 향하여 들어오는 풍경이 절경을 이루었으므로 죽포귀범(竹浦歸帆)을 남양팔경 중의 하나로서 꼽았다.

현재 바닷물은 마도면 쌍송리 하라문(活河門)까지 들어오는데 원래는 남양면 북양리까지 들어왔다는 전설이 있다. 현재 배는 개죽포의 입구 장덕리(長德里)에서 탈 수 있다. 개죽포 입구에는 조선시대 만호진(萬戶鎭)이었던 남양영종포성(南陽永宗浦城)과 당성(唐城)의 보조성이었던 청명산성, 백곡리백제고분군, 백곡리성이 있으며, 개죽포 내부에는 조선시대 남양부 치지(治址)와 남양동토성, 사강의 삼존리토성 등이 있다.

남양의 대동미를 개죽포 내부의 포구들에서 실어 나갔기 때문에 오늘날도 개죽포 내부의 몇몇 포구들을 대동포구(大同浦口)라고 부른다 한다.⁷⁾

12) 구이포(仇耳浦) 진목포(眞木浦) 적진포(赤津浦)

k-1 仇二浦 眞木浦 赤津浦 俱在雙阜縣 (新增東國輿地勝覽 水原都護府 山川)

2 仇二浦 眞木浦 赤津浦 八羅串 兀未串 俱在雙阜 (大東地志 水原 山水)

3 雙阜縣 古六浦 顯宗九年來屬 (高麗史 志 卷10 地理1 水州)

6) 金喆洙(79세, 오산시 필 3리) 증언

7) 남양 향토사학자 홍승길 교시

- 4 屬縣 雙阜縣 在府西四五十里 古浦六 高麗顯宗九年來屬 (輿地圖書 水原府邑誌 建置沿革)
- 5 雙阜 西南六十里 本百濟六浦 景德王改雙阜爲唐城郡領縣 (大東地志 水原 古邑)
- 6 雨汀面 西距八十里 凡二十四洞 舊禾方八羅串兩面 今合于此 巨物里 元宗里 元案里 安斗村 屈原里 虎谷里 烽火谷 啓陽里 晚津里 …雲井里 閑角里 防築里 盤谷里 覓洞 倉村(水原郡邑誌 坊里)
- 7 草長面 南距七十里 凡九洞 魯亭洞 眞木里 興天里 新堰里 舊川里 德多串里 獨之洞 魚隱洞 沙浪里 (水原郡邑誌 坊里)

구이포 진목포 적진포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모두 쌍부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포구가 위치한 화성군 우정면(雨汀面) 일대는 원래 백제시대에 6군데에 포구가 있었으므로 육포(六浦)라고 불리워진 것 같다.⁸⁾ 『삼국사기』에는 기록이 보이지 않고 『고려사』에서부터 기록이 보인다. 『고려사』와 『대동지지』의 기록을 종합하면 신라 경덕왕 때 본래 백제 육포(六浦)였던 곳을 쌍부(雙阜)로 이름을 고쳐서 당성군(唐城郡) 영현으로 삼았고 고려 현종 9년(1018) 수주(水州)에 래속시켰다. 쌍부현은 조선시대 『여지도서』가 만들어지는 시기까지 존재하였으나 『대동지지』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폐하여졌다. 『수원군읍지』방리조에 나타나는 우정면(雨汀面), 압정면(鴨汀面)은 오늘날 화성군 우정면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초장면(草長面)은 우정면 동부와 장안면 서부로 편성되어 있다.

쌍부란 지명은 오늘날 우정면 조암리에 있는 쌍봉산(雙峯山)이 낙타등과 같이 쌍봉을 이루므로 붙여진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에 구이포(仇二浦)로 기록된 구이포는 1834년 만들어진 『청구도(靑丘圖)』에는 홍천산봉수 서쪽을 구이포면(仇耳浦面)이라고 적어놓았다. 즉 구이포(仇耳浦)는 쌍부포, 쌍귀포를 한자로 기록한 것으로서, 쌍부현과 홍천산봉수 가까이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조선시대 쌍부현의 중심지와 쌍창(雙倉)은 오늘날 우정면 먹우리 남은아실, 창말에 위치하였으며, 홍천산봉수는 우정면 화산리 봉화산에 위치하였다.

구이포 진목포 적진포 3포구 중에 진목포(眞木浦)는 오늘날 화산리 홍천산봉수의 동남 지점인 장안면 노진리 참나귀동 177번지에 위치했다. 나머지 구이포, 적진포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홍천산봉수를 중심으로 우정면 서쪽 해안일대에는 현재 고온포, 장포, 낭포가 있고 우정

8) 서지학자 이종학 교시, 『여지도서』 건치연혁조에도 雙阜縣 在府西四五十里 古浦六으로 되어있다.

면 북쪽 해안에는 석포리, 선창이 있다. 그러나 남양만방조제를 쌓기 전에는 홍천산 북 2km에 위치한 마산리(馬山里) 각골, 운평리(雲坪里)의 감적이까지 내륙 깊숙이 배가 드나들었다. 마산 3리 각골은 특히 쌍부현의 치지(治址)였던 먹우리 낚은아실로 들어가는 입구포구였던 곳이다.

한편 홍천산봉수 동쪽 약 2km 지점에는 홍천계라는 지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배를 내려 홍천으로 걸어들어갔다 한다. 홍천계의 동쪽 장안면 덕다2리는 옛 지명이 구래(舊川里)라는 곳으로 이곳 구래 서쪽 해안가(덕다 2리 수로가 지나가는 지점)에 인근에서 가장 큰 포구가 형성되어 있었다 한다. 구래를 중심으로 바닷물은 구래의 북쪽 진계골(현 조암으로부터 정남 1km, 쌍부산의 정남 1.5km), 계룡고지, 사랑리까지 들어왔다 하는데 구래가 그 중심지로 큰배(벼 200섬을 싣는 쌍판배 등)가 많이 정박하였다 한다. 이곳 구래에는 왜정 때 벼공판장이 있었는데 왜정말 우정면 호곡리로 옮겨갔다 한다. 벼공판장에서 모은 벼들은 인천으로 실어갔다고 한다. 구래에는 큰배들이 많이 정박한 까닭에 상인들이 모여들었고 주막집이 집중되어 있었으며 진계골 북쪽에 원래의 삼괴장(三槐場)이 섰다고 한다. 소금배들과 새우젓배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벼와 보리로 물물교환하여 갔으며 인근바다에서 누룩지(망둥이), 팥게(참게) 등 바닷게들이 많이 났다 한다.⁹⁾ 구래포구는 조암으로부터 불과 정남 2km 지점에 위치한 점에서 운평리 감적리와 함께 쌍괴지방의 중심포구를 이루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이포 적진포는 이들 포구 중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13) 고온포(古溫浦)

I-1 鴨汀面古溫浦 網子每機十兩 鹽每井三十七兩 海防營捧去 甲申爲始(水原府船稅革罷成冊)

조선시대 압정면에 속하였던 고온포는 오늘날 화성군 우정면 매항 1리 고로리에 위치한다. 고온포에서 주로 왕래하였던 나루는 바다 건너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곡리(佳谷里) 성구미포구, 안섬(內島)포구였으며, 우정면 국화도(菊花島), 장안면 장안나루, 남양 궁평리 등도 왕래하였다 한다. 이중 고온포에서 가장 많이 이용한 포구는 당진 성구미포구였으며 당진읍내 동북쪽에 위치한 틀무지장(5일장으로 機池시장이라고도 한다)에서 1년에 두어차례 년중행사가 벌어지면 건너가서 장구경을 하곤 했다 한다. 행정구역이 우정면에

9) 김연홍(88세, 화성군 장안면 덕다2리)증언

속하는 국화도 사람들은 현재도 선거와 행정 일을 우정면에서 본다. 남양 궁평리 앞 구영 종뿌리에서는 고기가 많이 잡혀서 고기를 잡으러 가곤 하여 남양 가는 일이 있을 때는 궁평리포구를 이용한다.

『수원부선세혁과성책』에 의하면 고종 21년(1884)부터 해방영(海防營)에서 어망은 매를 마다 10냥, 소금은 매정(井)마다 37냥을 세금으로 걷어갔다.

14) 금천포(金川浦)

m-1 載陽廢縣 在府東十里 古安陽縣 高麗顯宗九年改今名屬水州 又屬仁州 後來屬(新增東國輿地勝覽 南陽 古邑)

2 八灘面金川浦 各物船每隻 隨其物 本面高五衛將英植 稱以海防營稅捧稅 以去 甲申爲始(水原府船稅革罷成冊)

조선시대 팔탄면에 있었던 금천포는 오늘날 화성군 팔탄면 울암리에 위치했다. 쇠내포구라고도 불리운다. 울암리는 『근세 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에는 입암리로 표기되어 있다. 울암리는 입암리(立岩里)의 암자와 울리(栗里)의 울자가 합쳐져 지어진 지명이다. 입암리는 쇠내포구 입구에 자연암석이 높이 솟아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쇠내포구는 고려시대 인주(仁州) 혹은 수주(水州)의 속현이었던 재양현(載陽縣)으로 들어가는 입구 포구로서 남양과 팔탄을 잇는 교통의 요지였던 곳으로 오월 단오에는 씨름판이 벌어졌고 평소에도 한량, 기생, 술집들이 모여 있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곳 쇠내포구에만 오면 돈(쇠)를 다 쓰지 않고는 못 떠나가는 큰 포구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주민들은 전하나 원래는 금천포(金川浦)로 표기되는 쇠내는 창곡리 소재 서미산(쇠미산)이 철광산이었기 때문에 유래한 것 같다.

『수원부선세혁과성책』에 의하면 고종 21년(1884)부터 화물선 매척마다 그 물건에 따라 본면(本面)의 오위장(五衛將) 고영식(高英植)이 해방영세(海防營稅)로써 바칠 세금이라 칭하며 걷어갔다.

15) 빈정포(濱汀浦)

n-1 松洞面 濱汀浦 各物船每隻 隨其大小 本面宣京三 稱以海防營稅捧稅 以去 甲申爲始(水原府船稅革罷成冊)

조선시대 송동면(松德面)에 있었던 빈정포는 오늘날 화성군 매송면 야목 4리에 위치했다. 수원~인천 간을 운행했던 수인선의 빈정역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산물은 소금 새우 조개 굴 낙지 등이 많이났다. 해방 될 때까지 야목다리께까지 새우젓배가 올라가 배를 대고 새우젓(해방 무렵에는 여기서 잡히지 않는 새우젓)을 풀어 장사꾼들에게 팔고 갔는데 이곳의 새우젓은 주로 수원, 군포로 팔려 나갔다 한다. 소마차로 싣고 나가는 새우젓은 용인까지 팔려나갔다. 한편 연평도로부터 조기가 무지하게 많이 잡혀와서 수원, 군포, 과천, 여주, 안성, 용인, 이천까지 팔려 나갔다 한다.

왜정 때 수원 매송 야목 어천리 일대의 농산물은 모두 이곳 빈정포에서 배로 실어 인천으로 갔는데 수인선이 생긴 이후에는 배로 실어가는 일이 적어졌다 한다. 이곳은 수인선이 지나는 자리여서 그런지 유난히 왜정 때 수탈이 심한 곳이었다 한다. 추운 겨울 만주에서 전쟁을 하기 위한 방한모를 만든다고 개껍질까지 벗겨갔으며 인근의 나무껍질을 다 벗겨가서 현재도 피낭구라고 부르는 나무가 남아 있을 정도이며 소나무 송진은 윤활유로 쓰기 위해 공출했다 한다.¹⁰⁾

충남 당진, 서신으로는 배를 이용하여 갔으며, 서울, 남양, 오산을 갈 때의 육로길은 빈정→야목→군포→서울, 빈정→야목→비봉→남양, 빈정→야목→봉담재청재(면소재지)→와우리→병점→오산으로 향하였다 한다.

『수원부선세혁파성책』에 의하면 고종 21년(1884)부터 화물선마다 그 물건의 대소에 따라 본면(本面)의 선경삼(宣京三)이 해방영세(海防營稅)로써 바칠 세금이라 칭하고 걷어갔다.

16) 옥포(玉浦)

n-1 玉浦 西南九十里 (大東地志 水原 山水)

『대동지지』 산천조에 수원부 치지(治址)로부터 서남 90리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으나 오늘날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없다. 평택군 포승면 서북부해안 근처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0) 金熙善(80세, 매송면 야목4리), 金士鐘(80세, 매송면 야목4리)증언

17) 옹포(瓮浦)

- o-1 槐台吉串烽燧 南應忠清道沔川郡倉宅山 又應稷山縣望海山 北應水原府興天山 在縣西九十里 周回二十里 (輿地圖書 陽城 烽燧)
- 2 瓮浦 西南八十里 與陽城地越入者連界 源出建達山西 流入海 魚鹽之會 (大東地志 水原山川)
- 3 瓮浦 在甘味洞面 (大東地志 陽城 山水)
- 4 槐台串 在外良洞面 濱海有牧場 (大東地志 陽城 山水)
- 5 土津浦 甕浦 青魚一同七錢 石魚一同六錢 葛治魚一同一兩 大茈一同一兩五錢 中茈一同一兩 古等魚一同一兩 北魚一駄一兩 紅魚一束一錢五分 全鰻一束一錢 骨獨魚一級四錢 眞魚一束一錢 鹽眞魚一束一錢 雜魚一圓三錢 乾蝦一石一錢 生蛤一石五分 海衣一桶五分 青筍一桶五分 生薑一負二錢 民魚一同一兩 鹽民魚一同一兩七錢 鹽石魚一同一兩一錢 鹽青魚一同一兩 乾青魚一同九錢 木花一隻五錢 租一石二錢 米一石三錢 白花鹽一甕二錢五分 雜鹽一甕二錢五分 文魚一貼二錢 白木一同五錢 長木一駄五分 鹽一石一錢 牛皮一稱二兩 錢五百兩 以一年浦稅主人處捧去 海防營捧去 甲申爲始 白花鹽四甕 景祐宮捧去 雜物代錢二十五兩 每船二兩 該浦主人收給於負商 辛巳爲始(水原府船稅革罷成冊)

평택군 청북면 삼계리에 위치한다. 『대동지지』가 만들어지는 시기에는 양성현(陽城縣) 감미동면(甘味洞面)에 속하였다. 양성현 외량동면(外良洞面)에 속하였던 평택군 포승면 원정리의 괴태곶과 함께 양성(陽城) 땅이었으므로 옹포 일대를 오늘날도 양성도개라고 부르는데 『수원부선세혁과성책』이 만들어졌던 1866년경에는 수원부 토진면(土津面)에 속하였다.

옹포의 내부인 신포(新浦) 농협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나 옹포 앞을 왜정 때 막게된 이후 옹포까지 바닷물이 들어온다. 왜정 때에는 벼 200섬을 싣는 배들이 인천 도정공장에서부터 들어와서 벼를 싣어 갈 정도로 큰 포구였다 한다. 또한 옹포의 내부에 위치한 신포(新浦)에는 지금으로부터 55년전까지 현 신포농협 자리에 5일장이 섰다 한다. 3, 8, 13, 18, 23, 28일 한달에 6번, 10년 정도 섰는데 해방되면서 안중장이 커지자 없어졌다.

옹포로부터 송탄 서정리로 가는 길은 옹포→한뫼(한산, 漢峴)→어연→동청포나루→서정리로 향하였고, 옹포로부터 장안면(長安面)으로 가는 길은 옹포→삼계리→고잔(큰골)→장안포(長安浦)→장안리로 향하였고, 오산으로 가는 길은 옹포→망포→사창→부처내→오산

으로 향하였다 한다.¹¹⁾

옹포를 통하여 내륙 깊숙이 침입하는 왜적을 방어하고자 쌓은 성지로 추측되는 무성산성(武城山城)이 옹포의 남쪽 옥길리 무성산(테피산)에 남아 있다.

『수원부선세혁과성책』에 의하면 청어 1동마다 7전, 조기 1동마다 6전, 갈치 1동마다 1냥, 큰미역 1동마다 1냥 5전, 중크기 미역 1동마다 1냥, 고등어 1동마다 1냥, 복어 1태마다 1냥, 홍어 1속마다 1전 5푼, 전복 1속마다 1전, 꼴뚜기 1급마다 4전, 진어 1속마다 1전, 염진어 1속마다 1전, 잡어 1원마다 3전, 마른새우 1섬마다 1전, 생대합조개 1섬마다 5푼, 김 1통마다 5푼, 파래 1통마다 5푼, 생강 1부마다 2전, 민어 1동마다 1냥, 염민어 1동마다 1냥 7전, 염조기 1동마다 1냥 1전, 염청어 1동마다 1전, 마른 청어 1동마다 9전, 목화 1척마다 5전, 좁쌀 1섬마다 2전, 쌀 1섬마다 3전, 백화염 1항아리마다 2전 5푼, 잡염 1항아리마다 2전 5푼, 문어 1첩마다 2전, 백목(白木) 1동마다 5전, 장목(長木) 1태마다 5푼, 소금 1섬마다 1전, 소가죽 1칭마다 2냥, 돈 500냥을 1년 포세(浦稅)로써 주인이 걷어갔는데 고종 21년(1884)부터는 해방영(海防營)에서 걷어갔다. 또한 고종 18년(1881)부터 경우궁(景祐宮)은 백화염 4항아리, 각 포구 주인들은 부상(負商)에게서 잡물대금 25냥, 선박마다 2냥씩을 걷어갔다.

18) 장안포(長安浦)

p-1 長安面 長安浦 鹽每幕三十四兩 魚船一兩 柴船二兩 海防營捧去 乙酉爲始 (水原府船稅革罷成冊)

화성군 장안면 장안리에 위치하였다. 장안리로부터 평택군 포승면 홍법리 자오포(子午浦), 평택군 청북면 고잔리(古棧里)로 건너가는 나루로서 장안면 사람들이 안중, 평택, 옹포, 안중으로 갈 때 주로 이용한 나루이다. 따라서 장안포 건너 청북면 고잔리에는 큰 고을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쇠퇴하고 말았다. 『수원부선세혁과성책』에 의하면 소금은 막(幕)마다 34냥, 고기배는 1냥, 땔나무배는 2냥씩을 해방영(海防營)에서 걷어갔는데 고종 22년(1885)부터 시작되었다.

11) 이영찬(80세, 평택군 청북면 현곡2리)증언

19) 토진(土津)

q-1 土津面 南距七十里 凡十洞 泉溪里 後坪 新塘 月谷 板橋場 乾儀村 上土津 下土津 高座里 漢峴(水原郡邑誌 坊里)

평택군 청북면 토진 1리에 위치했다. 토진 1리 김항목 소유의 가족묘가 있는 곳에 위치했다. 현지 주민들은 텃나루, 선살미나루라고 부른다. 오늘날의 청북면 토진리(土津里) 현곡리(玄谷里) 일대는 토진나루로부터 유래하여 조선시대에는 토진면(土津面)으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토진(土津)은 토진 1리로부터 관리천(官里川) 건너 수북면(水北面) 어연리(魚淵里)의 황곡(項洞)으로 주로 건너 다니는 나루였다. 송탄 서정리로 갈 때는 텃나루→어연리 황곡→동청나루→서정리로 향하였다.

20) 해창포(海倉浦)

r-1 貢鄉面 海倉浦 白花鹽 石花鹽 每船 隨其大小 本面鄭元朝 稱以立案處捧鹽以去 各物船每隻 隨其物 本面李進士容吉 以堤稅捧物以去 鹽船一隻 穀船一隻 每隻隨其大小 本面金春明 以於音捧鹽捧穀以去 魚物船每隻 隨其魚物之多小 風憲洞所任勸農邑主人 隨物捧去 各物船每隻 隨其大小 土津李敏煥 稱以海防營稅捧稅以去 乙酉爲始(水原府船稅革罷成冊)

2 貢鄉面 南距六十里 凡十六洞 舊稱貢以鄉 舊西北面 今合于此 倉村 梅山里 花堂村 工長村 角谷里 德九里 孤竹洞 葛谷里 古州洞 寒節里 防築里 仲村里 桃李洞 寒泉洞 福村里 亭村(水原郡邑誌 坊里)

조선시대 공향면(貢鄉面)에 속하였던 해창포는 오늘날의 화성군 팔탄면 해창 1리에 위치하였다. 해창 1리 53번지 유근석, 심영섭의 집앞이 해창포의 배터 자리이며 53번지 창골(창촌, 한글, 분홍양미) 일대에서는 기와편이 많이 나오는데 해창의 창고가 있던 자리이다.

해창 1리 53번지 배터 이외에도 이 근방에는 여러 군데 배터가 있었다 한다. 해창 1리 건너편의 분냉이(분향) 앞에도 배터와 주막집이 있었으며, 발안~조암 간 302번 국도변 매곡리 136-1번지에 위치하는 힐튼파크장도 원래 배터였다고 전해온다.¹²⁾ 남양만으로부터 들어오는 바닷물은 장안나루터 앞을 거쳐 독정 2리, 독정 3리의 감드러지 거먹골 수촌

12) 梁忠植 (69세, 팔탄면 매곡리 190번지)증언

1리의 꽃당산(花堂村) 밑창, 향남면 고잔저수지, 구문천오리, 구문천리, 상신리의 손개, 검정골, 용당골, 분냉이(칼바위 근처, 분향), 해창리를 거쳐 두령바위, 발안, 지월리까지 들어갔다. 지월리 장집이에는 배터가 있었고 주막집도 있었다.

내륙 깊숙이 들어오는 바닷물을 통해 침입하는 적을 막고자 지월리에는 오두산성(烏頭山城)이 있었으며, 한편 해운(海運)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근처에는 가마터가 곳곳에 있었다. 매곡리 산 1-1~2번지, 68~70번지, 74~75에서는 고려말~조선초에 활용되었던 토기 가마터가 발굴되어진 바 있으며, 가마터 퇴적층에서는 구석기가 발견되어진 바 있다.¹³⁾ 상신 2리에도 자기가마터가 있었다 하는데 이곳으로부터 구워낸 자기들은 향남면 상신리 손개배터에서 배로 실어 나갔다 한다.¹⁴⁾증언

『수원부선세혁파성책』에 의하면 백화염과 석화염은 매 배마다 그 대소에 따라 본면(本面)의 정원조(鄭元朝)가 입안(立案)을 만드는 곳에 바칠 소금이라 하고 걷어갔고, 각 화물선은 배마다 그 물건에 따라 본면(本面)의 이용길진사(李容吉進士)가 제세(堤稅)로써 바칠 물건이다 하며 걷어갔다. 소금배와 곡식배들은 배마다 그 대소에 따라 본면(本面)의 김춘명(金春明)이 어음(於音)에 바칠 소금과 곡식이다 하여 걷어갔고, 고기배는 매 배마다 그 어물(魚物)의 다소에 따라 풍헌동(風憲洞)의 농사 장려하는 일을 맡은 읍주인(邑主人)이 걷어갔으며, 각 화물선은 매 배마다 그 물건의 대소에 따라 토진면(土津面)의 이민환(李敏煥)이 해방영(海防營)에 바칠 세금이라 칭하며 걷어갔는데 고종 22년(1885)부터 시작되었다.

결 어

조선시대 수원지방의 해안선은 오늘날과 달리 내륙 깊숙이 들어왔음을 알 수 있다. 오산(烏山) 근처는 평택군 서탄면 내천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며, 발안(發安)의 경우에는 팔탄면 지월리, 팔탄면 울암리, 남양(南陽)의 경우에는 마도면 쌍송리 하라문, 조암(朝岩)

13) 한국도로공사, 단국대학교박물관 「華城 梅谷里 土器窯址 發掘調査報告」, 「화성 매곡리 출토 토기 분석」, 「화성 매곡리 가마터 출토 숯의 수종식별」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발굴조사보고서(3)』 1995, pp.3~123

윤내현, 한창균, 성현경, 박상빈, 손기연, 박성진 「구석기, 유적조사보고」,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구간(안산-안중간)유적 발굴조사 보고서(2)』 1995, p.463

14) 최승열(64세, 장안면 수촌4리)증언

의 경우에는 우정면 마산3리 각골, 장안면 사랑리 진계골, 청북면(靑北面)의 경우에는 신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 이렇게 내륙 깊숙이 들어온 해안선을 따라 나루와 포구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육로보다 편리하였던 이러한 내륙의 나루를 이용하여 조세수취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시장(市場)이 나루를 중심으로 서는가 하면 토기, 자기 요지(窯)의 발달, 창고의 형성, 취락의 발달이 있었다.

아산만과 인접한 충청남도의 북부 일부 해안이 수원부 관할이었음도 주목된다. 이는 교통의 편리, 조세수취의 편리 때문이었리라 짐작된다.

내륙 깊숙이 들어온 해안선으로 침입하는 적을 방어하고자 이에 대한 방어 체제도 형성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항곶포(項串浦)의 서쪽에 위치한 양감면의 방어를 위해서는 사창리성 소근산성 길성리토성, 해창포(海倉浦)와 금천포(金川浦)의 주위에는 팔탄 방어를 위해서 오두산성, 청북면 웅포(甕浦)의 방어를 위해서는 무성산성, 남양 개죽포(竹浦)의 방어를 위해서는 청명산성 남양영종포성 남양동토성 사강삼존리토성이 쌓아졌음도 살펴 볼 수 있었다.

고려시대로부터 조선초 수원의 속현이었던 재양, 광덕, 용성, 쌍부현도 내륙 깊숙이 들어온 포구로부터 근거리에 위치하였음도 주목된다.

재양현(載陽縣)의 입구포구로서는 금천포, 광덕현(廣德縣)의 입구포구로서는 신흥포, 용성현(龍城縣)의 입구포구로서는 웅포, 쌍부현(雙阜縣)의 입구포구로서는 우정면 마산 3리 각골, 혹은 장안면 덕다리 구래 부근에 있었으리라 추측되는 구이포와 적진포, 노진리의 진목포가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2. 교 량

우리나라의 전통교량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와서 그 자료가 정리되고 있다. 그동안 전통교량에 관해 언급하였던 중요보고서나 논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7년 일본인 관야 정(關野貞)이 관명(官命)으로 한국을 답사하고 한국건축을 조사하고 복명한 보고서에는 서울의 수표교(水標橋)와 개성의 선죽교(善竹橋)에 대해 그 구조와 형식을 언급하고 가교술의 진기함에 감탄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1907년 도변창(渡邊彰)은 부교홍교(符橋虹橋)를 비롯 승려들의 교량가설 공덕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1937

년 삼산신삼(杉山信三)이 서울의 석교(石橋)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장경호(張慶浩)가 문화재지에 전곶교(前串橋) 보수공사 보고를 통하여 공학적인 자료를 최초로 제공하였으며, 1974년 반영환(潘永煥)이 현존하는 전통교량을 서울평론에 연재하여 그동안 소홀히 생각되었던 옛다리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1975년 정재훈(鄭在鎭)이 문화재지에 경주 월정사유지를 조사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1975년 박만갑(朴萬甲) 외 2명이 조선시대 석조홍예의 구조적 특성을, 1976년 황학주(黃鶴周)가 「한국의 교량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교량사의 기틀을 잡게 되었고 1992년 손영식(孫永植)은 《한국 고 교량의 구조형식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교량의 토목공학적인 측면에서 정리하였다.¹⁵⁾

이 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는 보잘 것 없다. 수원부에는 화성의 남북수문 이외에도 아름답고 견고한 많은 교량들이 건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가 잊혀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있을 연구를 위하여 수원부에 있었던 교량들의 위치 정도를 밝히고자 할 따름이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크고 작은 많은 다리들이 있었으나 능력의 부족으로 지리지들에 보이는 다리들에 대한 조사밖에 이루지 못하였다.

1) 槐木亭橋

a-1 槐木亭 在府北十里 見蹕路(水原郡邑誌 橋梁)

2 槐木亭橋 自庚午駐蹕坵一里許 路西有標石 刻槐木亭(水原郡邑誌 蹕路)

수원을 적시는 하천으로는 광교산에서 흘러내려 연무동을 거쳐 수원 시내를 관통하는 수원천(柳川)이 있고, 역시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괴목정교 아래로 흘러나온 물줄기와 진목천(眞木川)의 물줄기가 정자동에서 만나 이루어진 영화천(迎華川)이 있다. 이들 하천은 이의동 방향에서 흘러온 원천천(遠川川)과 대황교 부근에서 만나 황구지천(黃口之川)으로 합류하여 남으로 흘러 서탄면 황구지리 부근에서 진위현 장호천과 모여 아산만으로 흘러들게 된다. 정조의 능행길은 괴목정교(彌勒堂)→ 노송지대→ 만석거(如意橋)를 지나 수원 행궁으로 들어섰다. 1810년(순조 10년)부터 경오주필대(庚午駐蹕坵 彌勒堂 短亭南)로부터 1리 정도 떨어진 곳 길 서쪽에 괴목정교라고 새긴 표석을 두었다 하는데 이

15) 손영식 《韓國 古 橋梁의 構造形式에 관한 研究》한양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7.

16) 유봉화 『꿈의 문화유산 화성』 화보로 보는 화성 200년 ⑬, 1996, 신구문화사

표석은 현재 장안구 파장동 수안주유소 뒷쪽에 남아 있다.¹⁶⁾ 표석으로부터 불과 50여m 거리에 미륵당이 있다.

2) 사형제다리

오늘날 용건능 입구로부터 동 150여m 떨어진 곳에는 도로 건너 남으로 조그마한 시멘트 다리가 있고, 이곳으로부터 남으로 옛 펠로길(현재는 농로길, 옛 정조대왕 능행길)이 남아 있는데 이 길을 따라 남으로 150여m 지점에 사형제다리가 남아 있다. 현재 측면 일부만이 노출되어 있는데 상판과 교각 일부가 관찰된다. 명에 없이 자연제의 장방형 석재 4장을 세로로 잇대어 상판(床坂)을 구성한 복합형 널마루 형식이다. 사형제 다리 동쪽의 펠로길은 안녕리→유성기다리→만년제→사형제다리→용건능 입구로 향하는 정조의 능행길이었다.

3) 大王橋

b-1 大王橋 在府園南一里許 仍舊名 辛亥石築 (水原府邑誌)

2 大王橋 在園所南一里 正宗辛亥石築 (水原郡邑誌)

현용릉으로부터 남 1리 정도 떨어져 있었다. 정조 15년 (1791) 석축으로 단장하였다. 돌다리 이전부터 이름이 대왕교였다. 용건능 입구로부터 남으로 3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했다. 즉 사형제다리 서쪽 150여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용주사(龍珠寺) 외삼문(外三門) 뒤에 위치한 해태상은 대왕교로부터 옮겨진 것인데 옆면에 구명대왕교(舊名大王橋)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앞면에는 봉헌우삼보진 윤광명수(奉獻于三寶前 尹光明壽)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옆면의 글씨체와는 다르게 임의로 판 듯한 필체로 새겨져 있는데 이로 보아서 광명수라는 불명(佛名)을 가진 보살이 해태상을 옮겨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4) 大皇橋

c-1 大皇橋 南十五里 隆健陵內 (大東地志 橋梁)

2 大皇橋 在府南二十里 安寧面 見蹕路 (水原郡邑誌 橋梁)

3 大皇橋 自甕峯百餘步 路西有標石 刻大皇橋 初名皇橋 乙卯改命名 有短亭 (水原郡邑誌 橋梁)

수원부 치지(治址)를 옮긴 이후 치지로부터 남 15리 용건능 내에 위치했다.

웅봉(甕峯)으로부터 100여보 떨어진 곳, 길 서쪽에 대황교라고 새긴 표석을 세우고 작은 숙사(短亭)를 옆에 두었다. 원래의 이름은 황교였는데 정조 19년(1795) 대황교로 고쳤다.

오늘날의 수원시 권선구 대황교동의 시멘트로 만든 대황교로부터 서쪽 400여m 떨어진 곳에 원래의 대황교가 위치했다. 정조의 능행길인 옛길은 세류파출소 앞→서쪽으로 철로를 건너→황교→웅봉→대황교→황계동으로 향하였는데, 웅봉, 황교, 대황교가 위치했던 자리는 모두 비행장 안에 있었으며 현재는 모두 파괴되어 흔적이 없다. 주민들에 의하면 큰 규모의 돌다리로서 다리발이 9개씩 4줄로 모두 36개인 우물마루형식이었다 하는데 난간이 없었으므로 다리를 건너다 떨어지기도 하였다고 한다.¹⁷⁾ 이 다리는 현재 읍능 앞에 옮겨져 있다. 그러나 현재 복원되어 있는 다리는 원래 모습대로 복원하지 않아 난간을 만들고 규모를 줄여 현재 우물마루 일반형식인 이도교(二道橋)이다. 한편 원래의 대황교에 숭정(崇禎, 明 毅宗 1628~1644)이란 연호가 새겨져 있었다¹⁸⁾하므로 대황교는 조선 인조 6년(1628)~인조 22년(1644)사이에 세워졌던 것으로 생각된다.

5) 황교(小皇橋)

d-1 皇橋 自下柳川百餘步 路東有標石刻皇橋 初名小皇橋 乙卯改命名(水原郡邑誌 驛路)

황교는 하류천으로부터 100여보 떨어진 곳에 위치했는데 길 동쪽에 황교라고 새긴 표석을 두었다. 원래 이름은 소황교였는데 정조 19년(1795) 황교로 이름을 고쳤다.

하류천(下柳川)이라고 새긴 표석은 현재 세류파출소 건너편 100여m 지점인 권선구 장지동의 하류촌(下流村)이라는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다.¹⁹⁾ 현재 권선구 대황교동의 대황교 위에 시멘트로 만든 장지교가 있는데 장지교로부터 서 400여m 지점에 원래의 황교가 있었다 한다.

6) 매교(梅橋)

e-1 梅橋 在府南三里 見蹕路(水原郡邑誌 橋梁)

2 梅橋 自八達門三里許 路西有標石 刻梅橋 初名梅山橋 乙卯改命名 舊橋 在今橋之南百餘步 純祖己酉 留守金履陽 以下路沮汝狀 請移路于萬和峴又移橋于此 移豎標石 舊蹕路 自

17) 洪善杓 (80세, 안녕1리), 崔昌德 (78세, 안녕1리) 증언

18) 상기인 최창덕 증언

19) 유봉학 『전계서』 사진 하류천 표석 p.77

舊梅橋百餘步至上流川 有標石 上流川初名三距里 乙卯改命名 通 自行宮五里立長柱 自上流川至才幹峴五里 立長柱 自才幹峴至甕峯五里 (水原郡邑誌 蹕路)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수원 극장 옆 현 매교다리 자리에 놓여 있었다. 길 서쪽에 매교라고 새긴 표석을 두었다. 원래 이름은 매산교(梅山橋)였으나 1795년(정조 19년) 매교로 이름을 고쳤다. 순조 25년 이전의 옛 다리는 지금 다리의 남쪽 100여보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순조25년(1825)년 유수(留守) 김이양(金履陽)이 아래길이 습지를 이루므로 만화현(萬和峴)으로 길을 옮기고 다리도 옮길 것을 청하므로 옮기게 하고 표석을 세웠다. 순조 25년 이전의 옛길은 옛매교다리로부터 100여보를 가면 상유천(上柳川)에 이르는데 표석을 세워 두었다. 상유천의 원래 이름은 삼거리였으나 을묘년 이름을 고쳤다. 행궁으로부터 5리인데 장생을 세웠고 상유천으로부터 재간현에 이르기까지 5리이고 장생을 세웠다. 재간현으로부터 용봉에 이르기까지 5리이다.

순조 25년 이전 옛 필로는 팔달문→옛매교→상류천(삼거리)→재간현→하류천→황교→용봉→대황교...로 향하였으나 신필로는 팔달문→매교(만화현)→건장동(建章洞)→하류천→황교→용봉→대황교...로 향하였다.

7) 매향교(梅香橋)

f-1 梅香橋 在府內 甲戌石築 一名午橋 (水原郡邑誌 橋梁)

수원시 팔달구 매향동 현 매향교 자리에 위치했다. 순조 14년(1814)에 석축으로 단장하였는데 오교(午橋)라고도 불리워졌다. 방화수류정과 화홍문을 거쳐 흘러내린 수원천(柳川)은 매향교를 거쳐 남수문으로 흘러내려 갔다. 이 다리는 수원행궁으로부터 동쪽으로 종로 사거리를 거쳐 매향교→창룡문(동문)→풍덕천으로 향하는 길 중간에 위치하였다. 『수원부 고지도』에는 우물마루 이도교(二道橋)형식의 격조있는 매향교 돌다리가 강조되어 그려져 있는데²⁰⁾ 매향교에서 꽃놀이를 하는 아름다운 풍경은 오교심화(午橋尋花)라 하여 수원춘 팔경 중에 하나였다.

20) 유봉학 『전계서』 수원고지도 p.49.

8) 목욕동교(沐浴洞橋)

g-1 沐浴洞橋 在府北七里日用面(水原郡邑誌 橋梁)

2 日用面 北距五里 據初境而言下洞 彌勒堂 琶洞 逸林里 大松竹里 棗園 亭子里 眞木亭(水原郡邑誌 坊里)

3 觀魚洞 在府北十里北部光教山 洞中有瀑 可觀爲府人沐浴祓禳之所(水原郡邑誌 形勝)

수원부 북 7리 일용면에 있었다 하는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일용면은 미륵당 파동 일림리 대송죽리 조원 정자리 진목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원군읍지』형승조의 관어동(觀魚洞)은 수원부 북 10리 북부 광교산에 있다. 동리 중에 폭포가 있으며 경치가 불만하였으므로 수원부인들이 목욕하고 재앙을 쫓는 기도를 드리는 곳이라는 기록의 관어동은 오늘날의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의 옛지명인데, 목욕하는 장소라는 점이 목욕동교(沐浴洞橋)와 관련이 있는듯하여 주목된다. 상광교동에는 광교산 기슭에 광교폭포가 있으며 상광교동 냇가와 하광교동 윗방죽은 옛부터 수원부인들이 목욕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목욕동교는 수원부로부터 북 7리, 즉 수원부로부터 북 10리에 위치하는 상광교동으로부터 남3리 거리인 하광교동에 위치하지 않았나 추측되기도 하나 목욕동교는 일용면에 있었던 반면 관어동(상광교동)은 북부에 위치하였다 하므로 확실치 않다.

9) 배양교(培養橋)

h-1 培養橋 在府南十五里 龍伏面(水原郡邑誌 橋梁)

2 龍伏面 南距十五里 凡四洞 旗田里 上松里 新村 古索里(水原郡邑誌 坊里)

수원부 치지로부터 남 15리 용복면(龍伏面)에 있었다. 오늘날 화성군 태안면 배양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비행장이 들어서고 경지정리도 하여 옛모습을 전부 잃고 말았는데 개울까지도 옛모습이 아니라고 한다. 배양리로부터 수원으로 향하는 길은 여러 길이 있었으나 배양리→황계리→대황교→수원으로 향하는 길을 가장 많이 이용하였다 한다.

10) 세남교(細南橋)

i-1 細南橋 在府南五里(輿地圖書 橋梁)

2 細藍橋 在府南二十里 文市面(水原郡邑誌 橋梁)

3 文市面 南距三十里 凡九洞 舊市峯三美兩面 今合于此 鳴鶯洞 竹潭店 墨巖洞 新村洞 坪村 細橋 觀音洞 (水原郡邑誌 坊里)

4 庚辰 莊憲世子 溫幸時 因細藍橋水漲 歷臨於南門樓 (水原郡邑誌 山城)

태안면 안영1리 아랫세내미에 위치하였다. 세람교(細藍橋) 세남교(洗南橋)로도 쓰여졌다. 수원부 치지(治址)를 옮기기 전에 만들어진 『여지도서』에는 부 남 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 수원부 치지를 옮긴 이후에 만들어진 『수원군읍지』에는 수원부 남쪽 20리 문시면(文市面)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시면은 『수원군읍지』 방리조에 수원부로부터 남 20리에 있는데 무릇 9동으로 옛 시봉(市峯) 삼미(三美) 양면이 합쳐졌는데 명독동 죽담점 흑암동 신촌 웅동 평촌 세교 관음동이 있었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세람교는 오늘날 오산시 세교동(잔다리)에 위치한 것처럼 보이나, 수원부 치지를 옮기기 전에 그려진 수원부 옛지도에는 오늘날의 안영리 성황산(城隍山)의 남서쪽이며 노성산(老城山, 禿城山城)의 서북쪽에 세남교(洗南橋)를 그려놓았고,²¹⁾ 1872년에 그려진 수원부지도에서는 오늘날의 안영리와 독성산성 사이에 위치하였음을 보여준다.²²⁾ 따라서 이 다리는 오늘날 안영리와 독성산성 사이에 위치하였음을 짐작케해 준다. 오늘날 안영 1리로부터 정남면으로 향하는 도로 중간에 있는 유성기다리 못미처에는 안영리로부터 독산성으로 향하는 옛길이 있었다 하는데, 이 길은 옛 수원부 시절에 삼남대로(三南大路)로 통하는 길로서, 이 길을 따라 남 약 400여m를 가면 아랫세내미에 대항교와 같이 큰 규모의 돌다리가 있었다 한다. 이 다리는 대항교와 같이 난간이 없었고 다리상판은 정을 맞지 않은 자연석으로 되어 있었다. 다리상판 석재는 용주사로 옮겨갔는데, 용주사 외삼문 안 불교관계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있는 돌들 중 일부가 이 다리의 상판돌이라 한다. 이 돌다리는 70여년 전까지도 마을사람들이 건너다녔으나, 이후 무너져서 그 자리에 나무다리가 있었다 한다. 오늘날도 장마가 지면 모래가 씻겨져 나가 다리의 돌들이 보인다 한다.²³⁾ 『수원군읍지』산성조에 의하면 영조 36년(1760) 장헌세자(莊憲世子)가 온천으로 거동 할 때 세람교(細藍橋)의 물이 불어 독성에 들러 남문루에 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1) 수원시 『華城行宮址 基本 및 地表調査報告』 수원부의 옛지도 1994, p.19

22) 유봉학 『전계서』 화보로 보는 화성 200년 ⑤, 수원부지도(1872)

23) 洪善杓 (80세, 안영1리), 崔昌德(78세, 안영1리) 증언

11) 신평교(新豐橋)

j-1 新豐橋 在新豐樓前 正宗己酉石築 (水原郡邑誌 橋梁)

- 2 新豐樓 在左翊門之前 鋪板爲 樓下設三門 板門是爲外三門 庚戌建 甲寅增建 初名鎮南樓
改命扁 乙卯上教 若曰 鎮南樓之改以新豐者 盖寓漢家豐沛之思也…
…樓之前 有新設石橋 (水原郡邑誌 行宮)

정조13년(1789)에 돌다리로 신축하였다. 정조와 신료들은 화성행궁을 능행길에 들르는 단순한 임시 거처로 생각하고 조영한 것이 아니다. 정조는 왕세자가 15세 되는 갑자년(1804)에 왕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자신은 상왕(上王)으로 물러앉아 아버지 무덤 곁 수원으로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가서 살아가려 한다는 뜻을 혜경궁과 근신에게 누차 언명한 바 있었다 하는데 수원행궁은 장차 정조와 혜경궁의 거처가 될 곳이기에 그 건설에 쏟은 정성은 남다른 것이었고 그 규모도 유례없이 거창한 것이었다.

수원행궁의 정문인 신평루(新豐樓)는 한(漢)나라 고조(高祖)의 고사에서 「새로운 또 하나의 고향」이라는 의미의 「신평(新豐)」이란 글귀를 따서 이름을 지었다 한다. 신평교는 바로 신평루 앞에 위치하였다.²⁴⁾ 『화성성역위례』에 실린 행궁전도(行宮全圖)에는 우물마루 삼도교(三道橋) 형식의 신평교가 그려져 있으나 『整理儀軌』에 실린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에는 신평루 앞에 우물마루 이도교(二道橋) 형식의 신평교가 그려져 있다.

12) 여의교(如意橋)

k-1 如意橋 在府北日用面 (水原郡邑誌 橋梁)

- 2 如意橋 自日用里三里許 路西有標石 刻如意橋 初名 眞木亭橋 丙辰改命名(水原郡邑誌 驛路)

여의교는 수원부 북 일용면에 있었다 하는데 일용리로부터는 3리 정도 거리에 있었다. 길 서쪽에 여의교라고 새긴 표석을 두었다. 여의교의 원래 이름은 진목정교(眞木亭橋)였으나 정조 20년(1796) 여의교로 고쳤다. 여의교는 오늘날 장안구 정자동 일왕저수지(萬石渠)의 남서쪽 송죽교(松竹橋)가 위치하는 지점에 있었다.

『화성성역의례』에 실린 영화정도(迎華亭圖)에는 만석거의 흥겨운 봄풍경과 만석거 앞

24) 유봉학『상세서』 p.71

에 여의교와 여의교라고 새긴 표석을 그려 놓았음을 볼 수 있다.²⁵⁾ 소화 18년(1943)에 만들어진 『수원읍지도』에는 일왕저수지 남서쪽에 여의교를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다. 지지대 고개를 넘은 정조의 능행길은 괴목정교를 거쳐 노송지대→ 여의교를 지나 장안문으로 향하였다.

13) 오목천교(梧木川橋)

L-1 梧木川橋 在大皇橋東 通南大路 (大東地志 橋梁)

2 鰲木川橋 在府南二十里 安寧面 純祖己丑石築(水原郡邑誌 橋梁)

『대동지지』에는 오목천교(梧木川橋)는 대황교 동쪽에 있는데 남대로와 통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수원군읍지』에는 오목천교(鰲木川橋)는 수원부 남 20리 안녕면에 있는데 순조 29년(1829)에 석축으로 단장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동지지』의 오목천교(梧木川橋)와 『수원군읍지』의 오목천교(鰲木川橋)가 같은 지점의 다리를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날의 시멘트로 만든 오목천교가 대황교의 서북쪽에 위치하는데 반하여 『대동지지』에는 대황교 동쪽에 위치하였다 하므로 현재의 오목천교와 위치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1834년에 만든 『청구도』에는 대황교 동쪽에 오교(梧橋)라는 다리가 있다고 적어 놓았으므로 김정호는 대황교 동쪽에 오목천교(梧木川橋)가 있었던 것으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현 시멘트로 만든 오목천교는 1935년 시멘트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나무다리가 있었다 하며 1935년 이후 여러 차례 다시 세워졌다.²⁶⁾

14) 유관교(遯觀橋)

m-1 遯瞻峴 自火巢一里許 路西有標石 石刻 遯瞻峴初名鵲峴 乙卯改命名 未及峴百餘步立長柱 通自襄峯五里 (水原郡邑誌 蹕路)

2 遯觀橋 自安寧面二里許 路北有標石 刻遯觀橋 初名 士成橋 乙卯改 命名 (水原郡邑誌 蹕路)

25) 유봉학 『상세서』 p.46.

26) 남양 향토사학자 홍승길 교시

유관교는 안녕면(安寧面)으로부터 2리 정도 거리에 위치했는데 길 북쪽에 유관교라고 새긴 표석을 두었다. 원래의 이름은 사성교(士成橋)였으나 정조19년(1795) 유관교로 고쳤다. 오늘날 현지주민들은 유성기다리라고 부르는데 안녕리로부터 정남면을 향하는 도로 중간에 위치한다. 안천교회 입구에 있는 시멘트 다리 자리에 있었다 하는데²⁷⁾ 다리 밑으로 사새이방축으로부터 흘러내린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다.

팔달문을 나선 정조의 능행길은 옛매교다리→상류천→재간현→옹봉→대황교→능원소화소→유침현→안녕리→유관교→만년제→능원소동구로 향하였다 하는데 오늘날의 ...황계동→황구지천 옆 하천길을 따라→작현(유침현의 원래 이름은 鵠峴이었으나 정조 19년, 1795에 유침현으로 고쳤으니 오늘날 태안면 송산리 작현이다)→송산교→안룡중학교→안녕리→유관교→만년제→사형제다리 동→용건릉에 이르는 길이었다 한다.

15) 항곶교(項串橋)

- n-1 亢串川 南六十里 源出光教山 南流 貫南北水門而出 爲上下柳川 經大皇橋 禿城之西 左過烏山川 南流 左過振威長好川 入于鵠頭津上 (大東地志 水原 山水)
- 2 大川過山北升良院 仍與振威長好川水 合流爲亢串津 (輿地圖書 陽城 山川)
- 3 長好川 在縣南一里 其源有二 一出龍仁東 一出陽智縣 西流合流 經客舍南西 水原項串津 (輿地圖書 振威 山川)
- 4 兎峴川 在縣西十五里 自龍仁駒興驛川 下流 與長好川合流 入于水原項串津(輿地圖書 振威 山川)
- 5 奈川 在縣西二十里 自水原府邑川東北 下流 與長好川兎峴川合流 入于水原項串津(輿地圖書 振威 山川)

화성군 서탄면 황구지리(西炭面 黃口池里)로부터 양감면 용소리(楊甘面 龍沼里)로 건너는 돌다리였다. 이곳 항곶교에는 조선시대 항곶진(亢串津)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항곶진(亢串津)은 항곶진(項串津), 항곶포(項串浦)로도 쓰여졌는데 항곶진 근처를 흐르는 물을 항곶천(亢串川)이라고 불렀다.

오늘날의 황구지천(黃口池川)의 원래 이름은 항곶천(亢串川)에서 비롯하였는데, 항곶천의 이름 유래는 항곶진(亢串津), 항곶교(項串橋)로부터 유래한 듯하다. 그 지류들은 여러

27) 유용길(52세, 안녕리). 증언

갈래로서 지역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여 불리워졌다. 즉 수원시의 경우에는 진목천(眞木川), 상유천(上柳川), 하유천(下柳川)으로 불리워졌으며, 서탄면 내천리 부근부터는 내천(奈川), 서탄면 황구지리부터는 항곶천(亢串川)으로 불리워졌다. 항곶교 부근에서 수원 광교산에서 발원한 항곶천과 진위 장호천이 합류하여 남으로 흘러 아산만 바다로 들어간다.

『수원부고지도』에 항곶교(項串橋)가 사창(社倉)의 동남에 그려져 있다.²⁸⁾ 이 항곶교는 홍수로 무너졌다. 현재는 양감면 용소리와 서탄면 황구지리 양 가장자리 모래사장에 묻혀 있으므로 규모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주민들에 의하면 길이 약 20여m 에 이르는 큰 규모였으며 다리 상판은 자연석의 대석을 썼다한다.²⁹⁾ 함평 고막천 석교와³⁰⁾ 비슷한 형태였다 한다.

16) 후천대교(後川大橋) 후천소교(後川小橋)

o-1 後川大橋 在府北五里 後川小橋 在府北八里 (輿地圖書 水原 橋梁)

2 後坪川大橋 後坪川小橋 俱在府西南十五里龍伏面 (水原郡邑誌 橋梁)

3 龍伏面 南距十五里 凡四洞 旗田里 上松里 新村 古索里 (水原郡邑誌 坊里)

수원부 치지(治址)를 옮기기 전에 만들어진 『여지도서』에는 후천대교는 북 5리, 후천소교는 북 8리에 위치한다 되어 있고, 수원부 치지를 옮긴 이후 1899년에 만들어진 『수원군읍지』에는 후평촌대교 후평천소교가 모두 남서 15리 용복면(龍伏面)에 위치한다 기록되어 있다. 용복면은 기전리 상송리 신촌 고색리 4개동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다리들은 오늘날 수원시 권선구 평동 고색리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오늘날 평촌 일대는 경지정리를 하여 지형이 전혀 바뀌어져서 다리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다.

결 어

수원지방의 경우 조선시대 지리지들에서는 옛 뽕로길을 따라 축조되었던 교량들을 중

28) 수원시 『전개서』 p.19.

29) 홍성관 (67세 서탄면 황구자리)증언

30) 孫永植 『韓國 古 橋梁의 構造形式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92, pp.110~111

심으로 서술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정조대왕의 능행길을 따라 축조되었던 교량들의 위치를 파악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정조대왕의 능행길에 대해서 보다 정확히 살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지지대고개를 넘은 정조대왕의 능행차는 파장동의 괴목정교(미륵당)→노송지대→여의교(만석거 남서쪽, 오늘날의 일왕저수지)→장안문→화성행궁→팔달문→옛매교→상류천(삼거리)→재간현→하류천→세류동파출소앞→서쪽으로 철길을 건너→황교→옹봉→대황교(향교, 옹봉, 대황교는 비행장 안에 있다)→능원소화소(대황교 동)→황계동→황구지천 옆 하천길을 따라 →송산리 작현³¹⁾→송산교 옆→안룡중학교→안녕리농협→우영주유소 뒷길→유관교(유성기다리)→만년제→사형제다리 옆→용건릉에 이르렀다.

31) 황계동으로부터 냇가길을 따라온 필로길은 우마차길이었고, 작현에서 3갈래길로 갈라지는데 작현→건방축→안녕리, 작현→안산→안녕리, 작현→송산교 옆→안룡중학교→안녕리로 향하는 길이 있었다. 이 중에서 옛 능행길은 주로 작현→송산교 옆→안룡중학교의 길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다.
崔昌德(78세, 안녕 1리)증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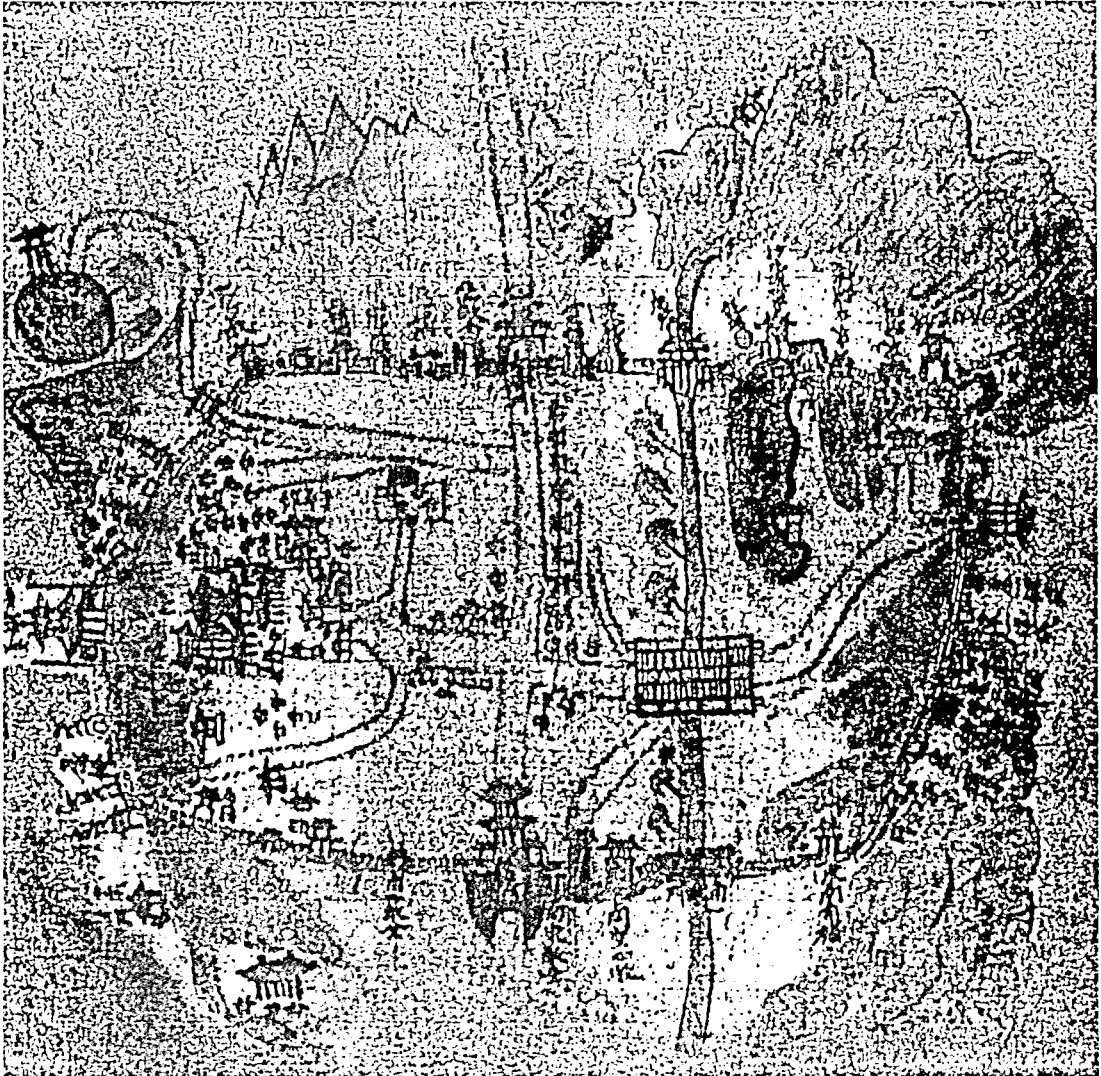


그림1. 매향교의 돌다리가 강조되어 있고 남수문과 만석거, 축만제도 보인다.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수원고지도>에서 인용, p.49



그림2. 『화성성역의궤』 영화정도 : 만석거(萬石渠)의 흥겨운 봄 풍경과 만석거 앞에 여의교를 볼 수 있고 만석거, 여의교 표석도 볼 수 있다.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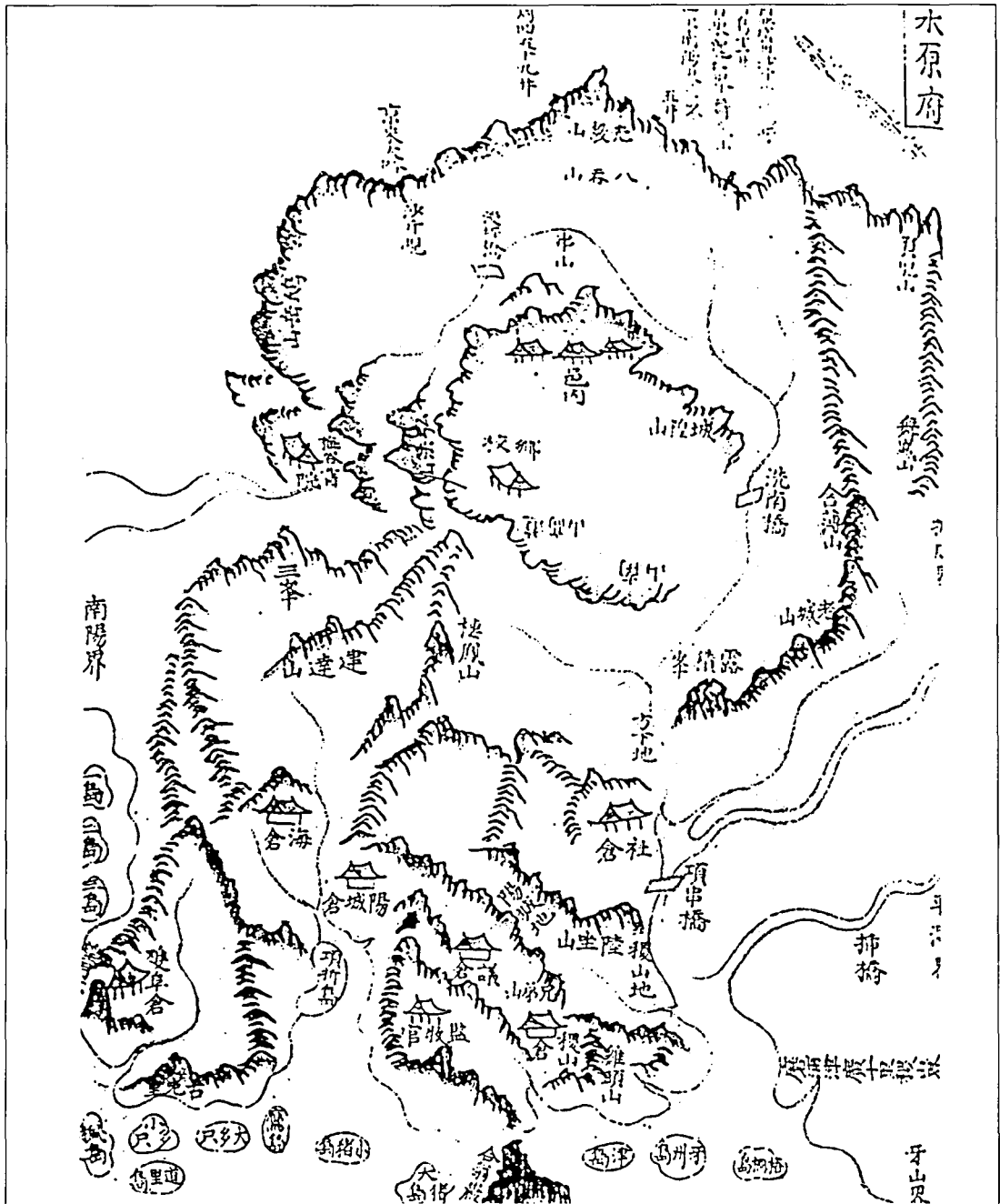


그림3. 성황산(城隍山) 서남쪽이자 노성산(老城山, 독성산성)의 동북쪽에 해당되는 지점에 세남교(洗南橋)를 그려 놓았고, 사창(화성군 양감면 사창리)의 서남쪽에 항곶교(項串橋)를 그려 놓았다.

수원시 『華城 行宮址』 수원부의 옛지도에서 인용 p.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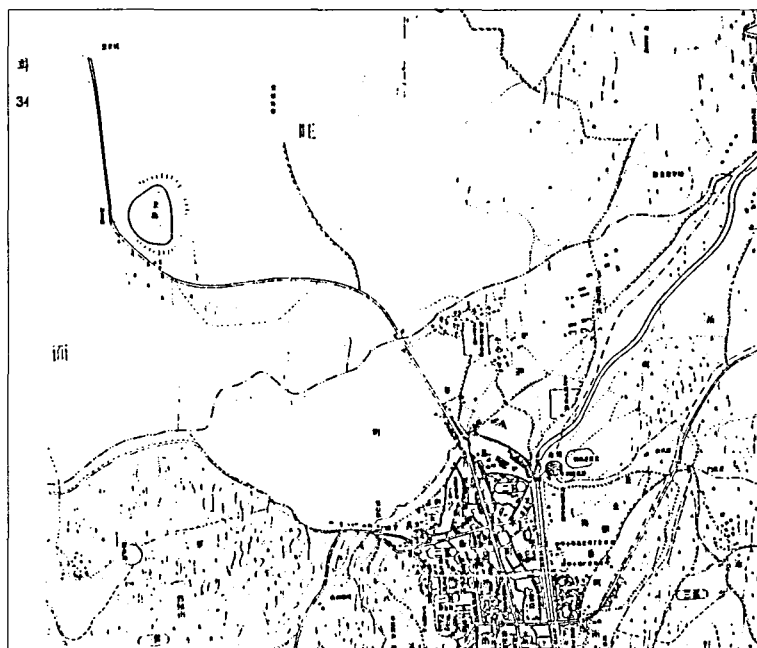


그림4. 북지(北池, 萬石渠) 서쪽에 여의교(如意橋)가 그려져있다. 1943년 『수원읍지도』, 10,000분지 1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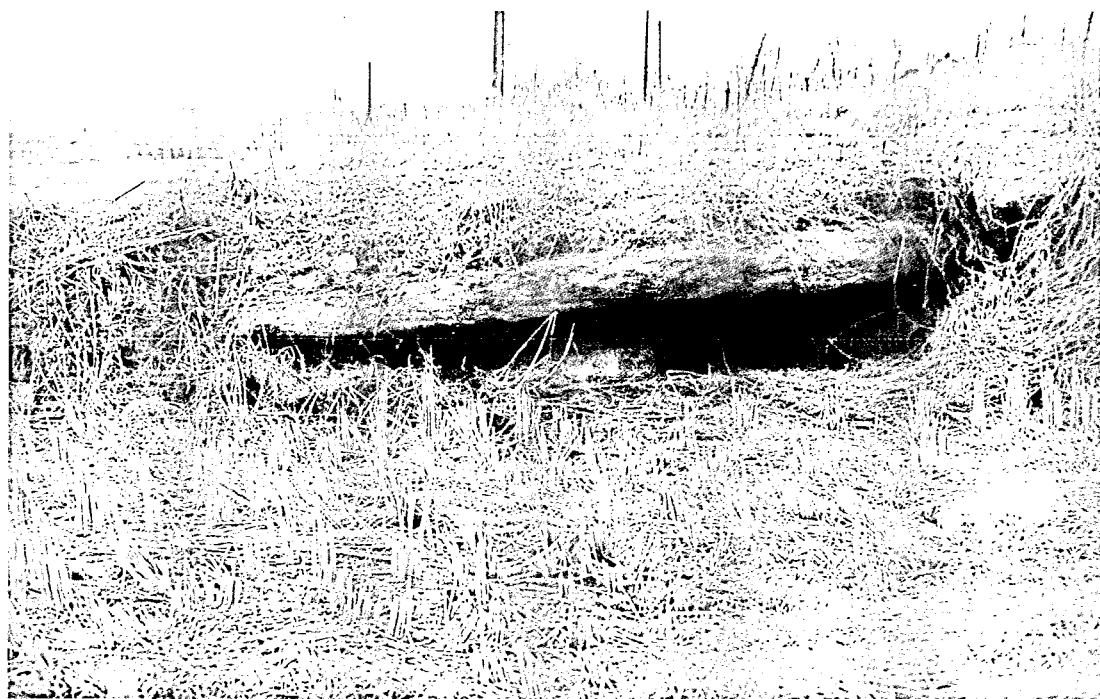


사진1. 사형제 다리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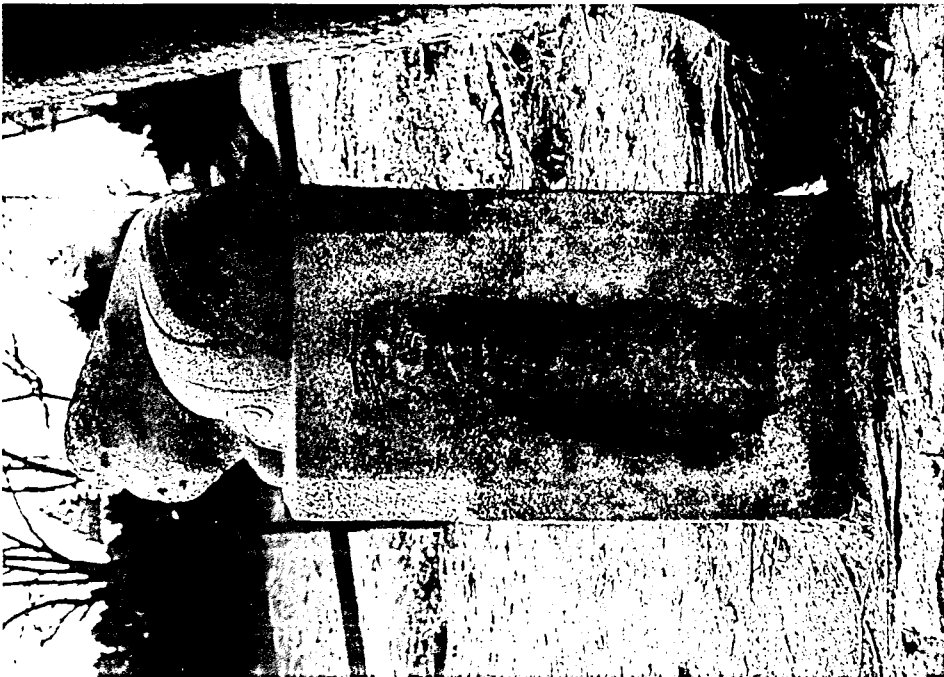


사진2. 용주사 외삼문 안 해태상 : 옹능 남 1리에 있었던 구명대왕교로부터 옮겨 온 것으로 옆면에 구명대왕교(舊名大王橋)라고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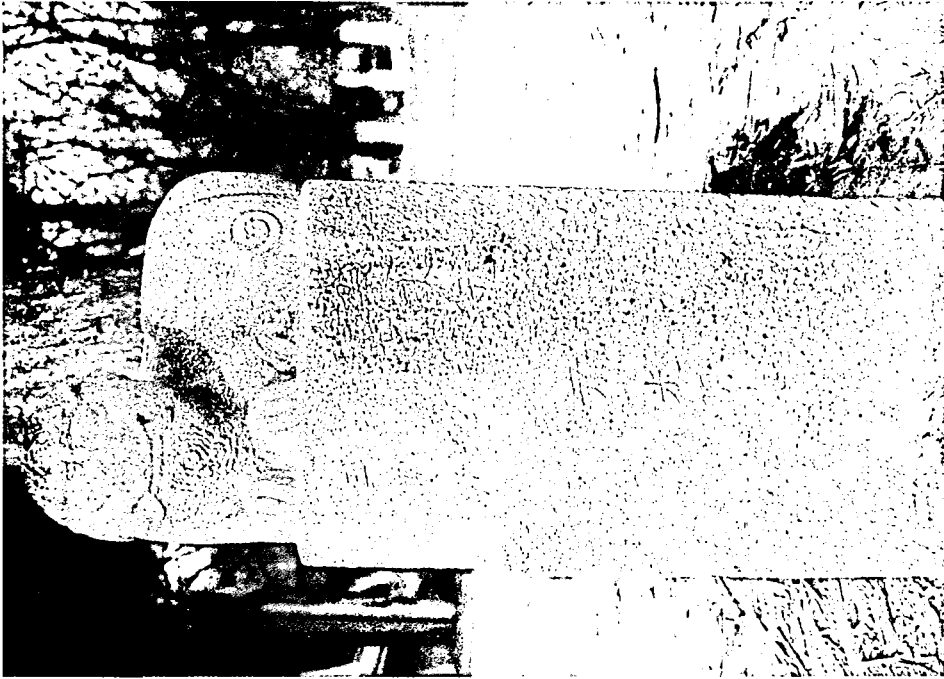


사진3. 용주사 외삼문 안 해태상 : 구명대왕교로부터 옮겨 온 것으로 앞면에 봉헌우삼보전 윤광명수(奉獻于三寶前 尹光明壽)라고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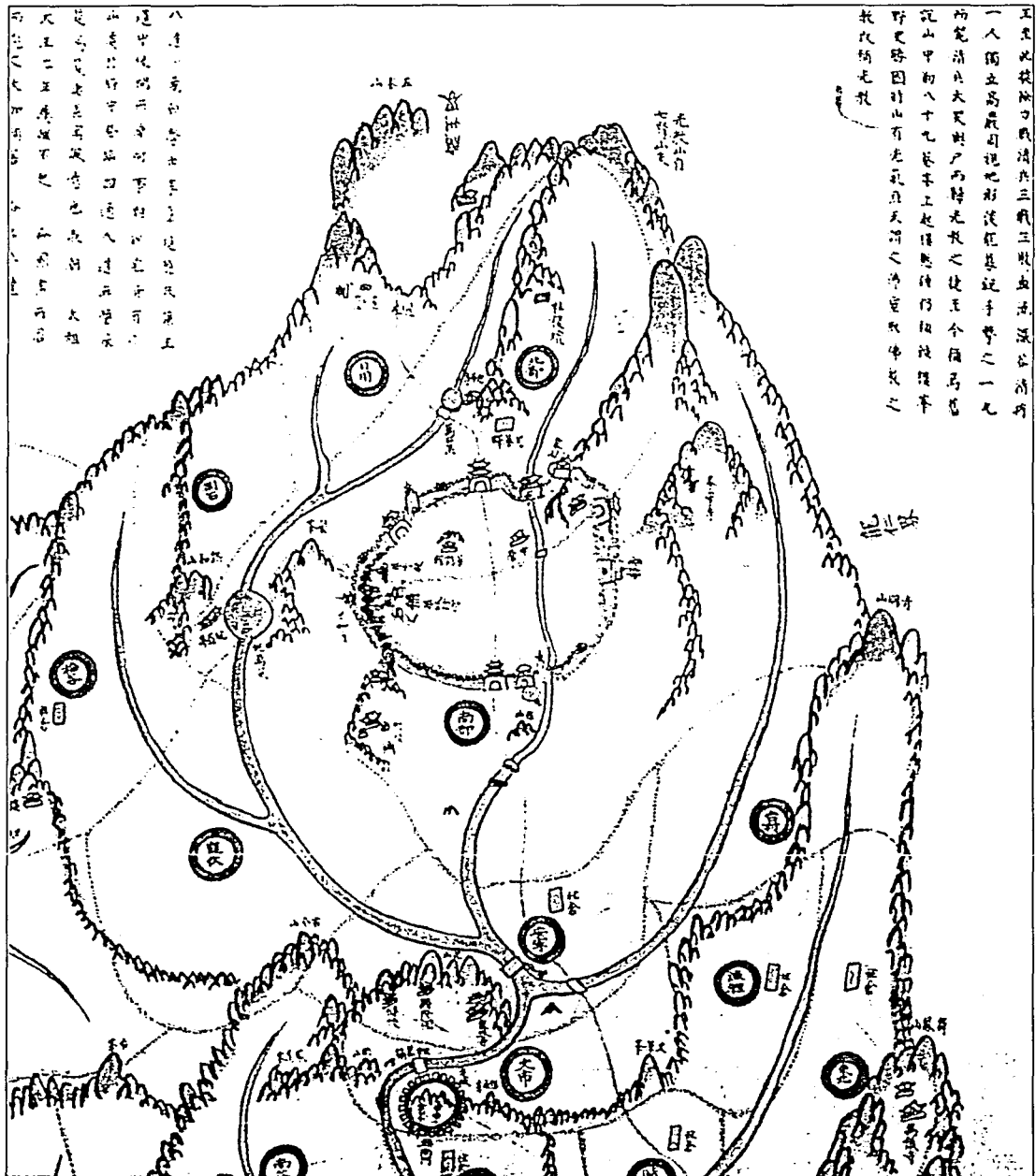


그림5. 만석거(萬石渠) 남서쪽에 여의교(如意橋), 남부(南部)에 매교(梅橋), 안녕면(安寧面)에 대황교(大皇橋), 건릉(健陵)과 독성산성(禿城山城) 사이에 세람교(細藍橋)가 보이고 있다.

유봉학 『꿈의 문화유산 화성』 1872년에 그려진 수원부 지도에서 인용. 화보로 보는 화성 200년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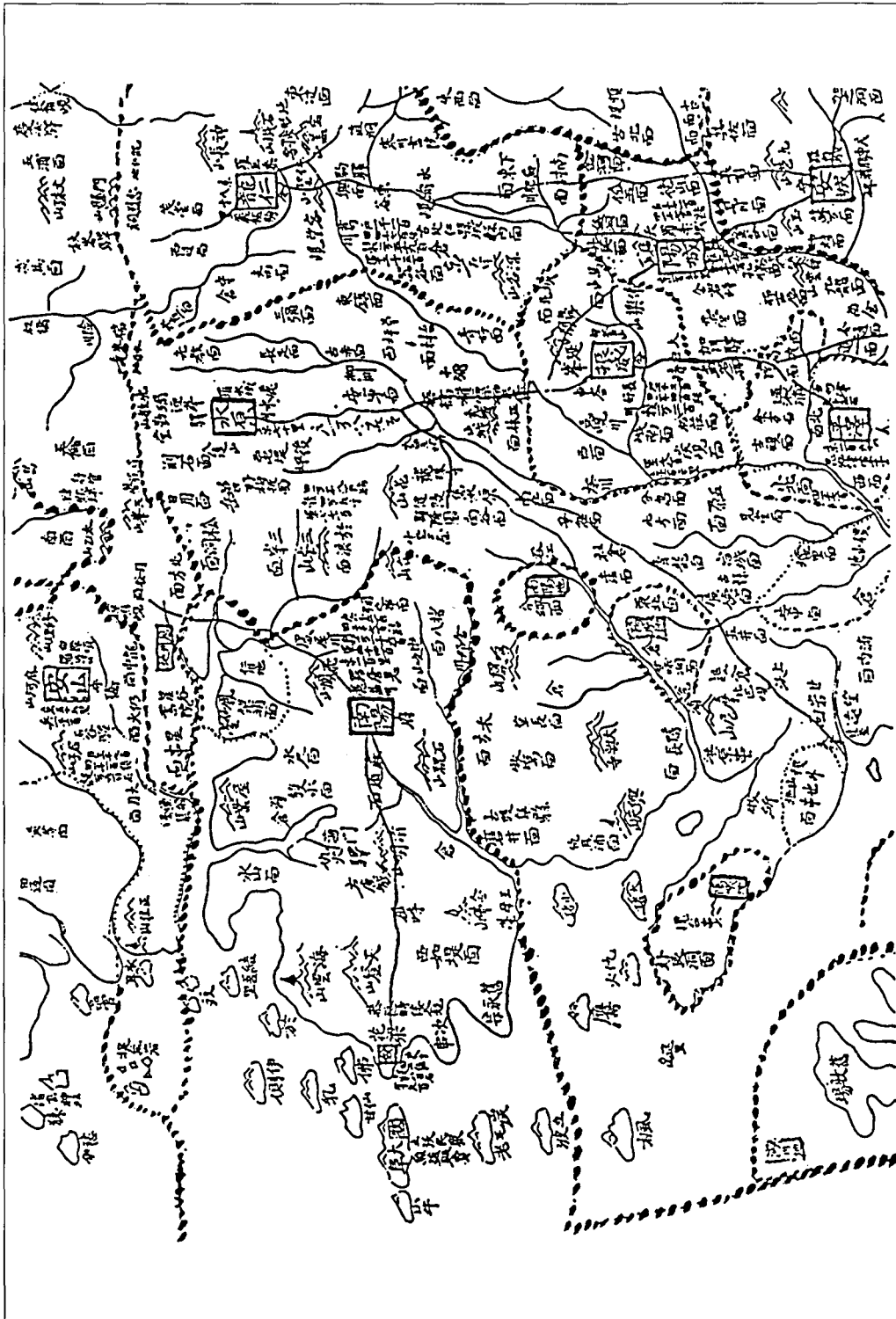


그림6. 대황교(大皇橋)동쪽에 오교(梧橋)라고 적혀져 있다. 1834년 刊 『靑丘圖』

한신대학교 박물관, 화성군 『화성군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에서 인용.

富川 복사골 民俗 놀이의 研究

蘇 鎮 燮*

目 次

序 言	3. 民俗놀이의 樣象
1. 복사골 民俗놀이의 歷史的 背景	結 語
2. 地域으로 分布된 特色있는 마을 共同祝祭	參考文獻

序 言

民俗 研究에서 資料의 歷史性 問題가 明確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어떠한 自體 變更過程을 거쳐 그 地域이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인지에 대한 說明이 없는데서 題起되는 問題点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民俗 資料의 效用성과 의미들을 크게 認定하기 때문에 歷史學과 民俗學의 연계가 必要하며, 그를 위해서는 民俗學 研究에 歷史的인 解釋들이 包含되어야만 서로 간에 연계 作業이 보다 具體化될 수 있다고 본다.

民俗學 研究에 대하여 歷史學 部分에서 가장 먼저 題起되는 아쉬움은 民俗學 研究資料들이 歷史學이 必要로 하는 歷史的 展開樣象의 差異를 거의 可視化하지 못하고 口傳에 일부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民俗의 傳通性和 固定性은 그 나름대로 분명한 설명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個人的 影響力이나 特殊常況이 傳承되고 集積되기 위하여는 共同 構成體들과 周邊 與件들이 綜合的으로 理解되어야 할 것이다. 結局은 民俗文化도 이러한 複雜한 自體 變容科程과 時代性 反映의 結果로써 殘存하여 왔다고 보겠다.

특히 民俗文化의 傳承 主體가 集團性을 가진다고할 때 그 變化過程과 要人에 對한 積

* 富川文化院 鄉土史研究委員

極的인 關心은 더욱 必要해진다. 그것은 바로 民俗文化가 單純 技能的인 것에서 벗어나 社會性이나 組織性을 뜻하고 있기 때문이다. 大體로 民俗學은 歷史學에 比하여 特定地域集團을 範圍로 하는 學文性向이 強하다. 制限된 空間性을 中心으로 研究의 對象資料가 選定되기 때문이다. 特定地域 文化는 모두가 각기 다른 內的構造나 外的條件과 相應한 結果로써 形態를 남긴다. 歷史的 條件과 社會經濟的 條件 住民 意識이 同時에 마련해낸 이러한 地域性 變化의 모습을 通하여 우리는 韓國 民俗史의 흐름뿐만 아니라 韓國 歷史上的 民衆生活을 보다 徹底하게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特히 村落 組織의 農民階層은 上位支配 組織으로부터 離脫하여 獨自의인 意識과 組織力을 가진 “두레”와 같은 民俗놀이는 典型的인 民衆組織을 胎動시켰고, 變革期에 直面하여서는 그 前衛 集團으로 技能할 程度의 團體로까지 發展되었음을 確認할 수 있었다. 이와같이 地域的 特殊性的의 모습은 民俗 資料들에서 더욱 돋보여짐을 發見하게 되었다. 한겨레의 運命을 결정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을 잃었을 때 겨레는 沈滯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고 본다. 지금까지 우리의 民俗놀이가 學術的으로 體系化한 것이 未洽한 점이 많다. 그래서 村老들의 口傳에 의해 繼承하여 그 脈을 이어 내려오던 것이 이제는 차츰 끊겨가고 있는 實情이다. 口傳에 의해 사라져가는 民俗 資料들을 조속히 蒐集 學問的 體系를 定立하고 民俗놀이의 再現 등을 통해 올바른 歷史觀을 認識시켜야 한다.

우리 民族의 主體性은 民俗文化의 根底에서 찾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特히 民俗놀이가 있는 곳에는 地方的 特色을 나타내는 民謠를 불렀다. 民謠는 우리 民俗文化의 豐饒로움을 보여주는 적절한 事例이다. 勞動의 現場에서 사라지지 않으면서 일과 人間이 造化롭게 連結하기 위해서 반드시 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같이 民謠는 勞動이나 民俗놀이의 核心部位에 該當한다고 본다. 그래서 民俗놀이가 있는 곳에는 춤과 民謠가 어울려져 한바탕 굿판을 이루고 亂場이 서기도 했다. 漢江流域 河口 附近에 는 農事를 爲主로하면서 生活했던 富川의 복사골 民俗놀이가 口傳과 斷片的인 敍述로 이어오던 것을 보다 體系的으로 研究해야 되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地域에 散在해 있는 民俗 資料들을 蒐集, 잊혀져가는 一部 民俗놀이 등을 研究 繼承發展시켜 地方文化의 特色을 富川 복사골에서 되살려 보아야 되겠다고 思料된다.

1. 복사골 地域 民俗놀이의 歴史的 考察

漢江流域 河口 부근인 서울과 향도 인천 사이에 位置한 복사골 富川은 땅이 肥沃하고 水源이 豊富해 農事짓기에 알맞은 고장이다. 그러기에 기원 전 십세기경으로 짐작되는 靑銅器 時代に 使用했던 遺物인 돌도끼 [마제석부] 돌칼[석검] 등이 發掘되었다. 이 地點은 1995.10월에 古康洞 山 93-1번지 [고강본동 청룡산 능선부]로 當時의 聚落地域임을 文化財 管理局의 地表調査와 漢陽大 博物館의 現場 發掘로 確認되어 研究調査 中이다.

富川에 대한 歴史的 記錄은 散漫의으로 되어 있을 뿐이다. 三韓時代에는 馬韓의 優休牟 琢國[우휴모탁국]에 속했다는 學說이 있으며 三國時代에는 주로 百濟의 땅이었다. 東國輿地 勝覽에 高句麗時代 처음으로 郡.單位 行政區域인 主夫吐郡[주부토군]에 속하게 되었다. 통일 新羅時代에는 장계군으로 되었으며 高麗시대에는 樹州[제6대성종·982년] 安南.桂南 都護 府로 吉州牧으로 富平府로 개칭되어 왔다. 朝鮮時代에 부평 도호부[1413년]에서 府로 강등되었고 다시 부평군에 속했었다. 1914년 日帝때 처음으로 부천군으로 되었고 1973년 부천시로 昇格되었다.

부천은 地域的인 農耕 立地 條件으로 보아 農事를 짓다보니 마을의 平安과 無故함을 벌기 위해 마을의 당굿과 같은 大同祝祭의 굿판이 벌어지고 그에 따른 民謠와 民俗놀이 가 이루어졌다. 地域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그 歴史的 背景과 正統儀式이 비슷한 점이 많다. 복사골 富川의 代表的인 農事와 마을의 平安을 비는 民俗놀이 祝祭를 세곳으로 縮小·比較研究해 보기로 하겠다.

(가)도당우물 大同祭

먼마루는 遠宗洞의 옛 이름이고 17世紀 後半에 지금의 靑丁 初等學校 附近에 遠宗洞이라는 마을이 생겼다. 이곳에 地域住民들이 定着하면서 물을 마련하기 위해 共同으로 우물을 팠다. 그로부터 우물의 所重함을 알고 300餘年 前に 도당우물 大同祭行事를 始作했다고 한다. 遠宗洞 도당우물 大同祭는 마을의 共同 祝祭로 春期인 3월 1일과 雨期인 7월 1일에 舉行되었다. 密陽孫氏. 安東金氏. 宜寧南氏. 平山申氏 등이 모여 사는 壹百餘 家口에 우물 하나를 使用했는데 이 도당우물은 마을 守護神 役割을 했다. 日帝時代에 日本人들이 우리 民俗文化 抹殺政策으로 도당우물 大同祭를 하지 못하게 하여 受難을 격기도 했다.

解放以後 해마다 두 번씩 大同祭를 행하자 마을의 平安을 가져왔다고 한다. [1993년 水原 公設運動場 京畿民俗 藝術 競演大會 綜合優勝 獲得]

(나) 農旗叩頭마리

富川은 옛부터 는 農事와 關聯된 農樂놀이가 많이 행해져 왔다. 農旗叩頭마리 行事도 農樂을 爲主로 한 민속놀이로서 1910년 舊韓末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왔다고 한다. 농기 고두마리[農旗 叩頭首]행사장소가 지금은 中洞 新都市가 되었지만 中洞 별관을 중심으로 행해졌었다. 이때 陰曆 7월 15일 百中날 새로운 果實과 菜蔬로 祖上의 神靈에 天神하는 風習으로 場이서는데 現在 自由市場 一圓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것을 百中場이라고 한다. 이 行事는 農旗를 쓰러뜨리는 상좌 다툼인데 叩頭란 삼가 머리를 숙인다는 뜻이며 首는 吏讀式으로 마리라 부르며 머리털을 뜻한다. 이는 農事철 農民들이 쌓인 苦痛의 疲勞와 애달음을 풀어주기 위해 한판 신나게 農樂을 두들기며 노는 노리다. 農旗叩頭마리의 始作年代는 確實히 알 수 없으나 朝鮮朝 中葉부터 전해 내려 왔다, 하며 1800년대에 가장 盛行했다는 것으로 보아 약 300여년에의 歷史를 가진 것으로 推測된다.

(다) 장말도당굿

장말도당굿은 장말을 開拓한 德水張氏의 始祖였다는 說로 보아 지금으로부터 400여년 전으로 抽象된다. 이 도당굿은 德水張氏의 祖上神 崇拜가 發展하여 地緣的 性格을 지닌 堂神으로 이어진 것으로 마을 共同體 性格의 堂神 祭祀로 바뀌면서 巫俗人이 加勢하였으나 宗教的인 內容面에서는 別個의 것이었다. 마을 名稱의 原因이된 德水張氏의 順龍의 12代인 夢起라는분이 京畿道 平澤에서 이곳으로 移住하면서부터이다. 當時 富川은 富平 都護府에 所屬되어 있었으며 이미 吾丁區 古康洞과 素砂區 桂水洞 등에는 마을이 形成되어 있었다. 장말은 이들 두 地域보다 조금 늦게 形成되어 富平의 15個 面中 하나인 石川面 [돌내면]이라 불리면서 發展해 왔다. 德水張氏의 장말 定着은 壬辰倭亂을 前後한 始期로 富川 平野를 中心으로 한 農耕地 때문이라고 推測된다. 流入初期의 狀況을 說明하듯 장말에는 壬辰倭亂과 관계되는 實話가 전해 내려오고 있어 장말도당굿과 密接한 關係가 있다. 지금의 당집은 日帝때 既存 당집을 헐고 지은 것으로 그때 당집을 허문 자리에서 조그마한 쇠말뚝이 하나가 나왔다고 노인들은 전한다. 그말은 묘하게도 壬辰倭亂 때 살았던 張氏 將軍이 倭軍이 놓은 덫에 치여 將軍이 탄 말의 다리가 부러지고 張將軍도 한쪽 다리

를 못써 잡혔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도 도당굿을 할 때 도당을 모시는 도당할아버지가 다리 하나 없는 흉내를 내며 외다리 춤[깨금춤]을 추고 있다.

원래 京畿道 地方에서 이루어진 굿을 도당굿이라고 하며 이러한 歴史的 背景을 가지고 마을 共同體 性格의 도당굿이 지금도 장말에서 행해지고 있어 장말도당굿이라고 한다. 이 도당은 1982년까지만 해도 두 개의 堂이 있었으나 都市計劃으로 因해 지금은 하나밖에 保存되지 않고 있다. 헐려진 당은 장말 洞里 入口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고 하는데 아쉬움이 이룰데 없다. [장말 도당굿은 1990 10.10.無形文化財 제98호로 指定됨] 우리는 여기서 도당우물 大同祭나 장말 도당굿에서 그 行事와 歴史的 背景을 살펴볼 때 共通된 점을 많이 發見할 수 있다. 卽 朝鮮朝 中葉부터 祭祀를 지내고 樂器의 伴奏에 맞추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執行하고 있었다. 당굿을 하는 마을의 時間的·空間的 座標, 곧 歴史的 地理的 位置를 分明하게 하는 同視에 굿의 目的도 뚜렷하게 밝히게 되어 神으로 하여금 굿의 主祭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意圖는 무엇인지 하는 것을 明白하게 理解하도록 함으로서 굿의 靈驗을 發揮하고 堂神이 마을 사람들에게 福祿을 베풀어 주는데 差跌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歴史를 整理하고 天地開闢 以後의 地理的 位置를 正確하게 가늠하므로서 바로 ‘지금여기’ 굿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굿하는 意圖를 神에게 分明히 傳達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

富川地域 民俗놀이 중 도당우물 大同祭가 陰曆 3월 1일과 7월 1일이고 農旗叩頭마리가 7월 15일이며 장말 도당굿이 陽曆 91. 11. 15일과 92. 4. 15일날 행해졌음을 볼 때 吉日을 擇한 循環週期에 맞추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달의 朔望週期로 매월 1일과 15일은 吉日로 알려짐]

2. 部落別로 分布된 特色있는 共同祝祭

大部分 一個 市·郡에서 舉行되는 민속놀이는 비슷한 점이 많다. 그런데 복사골 富川地域 민속놀이는 좁은 地域內에서 각기 다른 特色있는 行事가 舉行되고 있다.

첫째, 遠宗洞[면마루] 도당우물 大同祭는 遠宗洞 안동네에서 實施되었는데, 一百餘 家口에 단 하나의 우물을 가지고 있었다. 이 우물은 마을의 守護神 役割을 하여 모든 行事 前에 뽀얀 것을 밀어내고吉한 것을 불러드리는 祝願으로 始作했다. 마을에 禍가 닥쳐 疾病

이 심하거나 마을 사람들이 偶然히 죽거나 變故를 당하게 되면 精誠이 不足하다고 탓하고서 大同祭를 舉行했다. 이때 3월1일에는 소머리를 7월1일에는 소 한마리를 잡아 祭物로 바쳤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6·25事變 때에도 큰 被害를 당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으며 지금도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行事를 한다고 한다. 大同祭 當日에 소를잡아 祭物로 바친 쇠고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分配하고 祭祀가 끝난 후 수수깅에다 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우물앞 미나리밭에 꽂으면 그 소유권을 인정. 각기 미나리를 栽培하도록 한것은 遠宗洞 도당우물제에서만 볼 수 있는 特異한 現狀이다.

둘째, 陰曆 7월1일에는 深谷 本洞 現 自由市場 附近에서 百中場이 舉行되었다. 다른 地域에서 흔히 씨름대회 풍물놀이를 하였는데 이곳 百中場에는 農民들이 四方에서 모여들어 한여름 동안 農事 지은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도 했다. 百中날을 前後하여 논과 밭을 매었던 重要한 연장인 호미를 잘 씻어 保管하는 이른바 洗鋤宴[세서연] 行事를 했다. 이때 農事일에 수고스러움을 報答하기 위해 술을 빚고 떡을 하며 온갖 飲食을 장만하며 農民들을 慰勞했다. 農民들은 農樂을 치며 民謠를 부르면서 흥겹게 춤을 추며 놀았다. 그런 후 정형화된 農樂놀이의 한 形態인 農旗叩頭마리 [일명 上座 다툼놀이]가 지금의 中洞 新市街地가 되어 있는 중동법판을 중심으로 행해졌다. 이 놀이는 農旗 뺏기形態인 것으로 양쪽마을 農樂隊가 農旗를 앞세우고 登場해 원을 그리며 農旗를 保護한다. 양팀은 相對의 農旗에 달려가 이 기를 쓰러뜨리기 위해 쳐들어가기도 하고 防禦도 한다. 結局 農旗를 먼저 쓰러뜨린 자가 勝者가 된다. 勝者와 敗者間에 嚴格한 規律이 있어 敗者는 勝者에 承服하고 勝者는 堂堂한 地位를 確保한다. 이와같은 農旗叩頭마리 行事는 한 여름에 苦生했던 農民들을 慰勞해주고 온마을의 團합을 시도한다. 뿐만 아니라 上座다툼놀이로 勝者와 敗者와의 엄연한 規律을 確保하고 다음 해에 挑戰을 約束하므로써 참된 運動精神을 이미 時代에서도 反映한 特色있는 行事라고 볼 수 있었다.

셋째, 장말도당굿은 德水張氏의 祖上神 崇拜로부터 이어져 왔다고 한다. 이곳은 도당 할아버지와 巫俗人이 함께 굿을 進行하는 곳으로 京畿道의 다른 地方에서 행해진 마을 共同體로서의 도당 굿과 差異가 있어 特色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巫俗이 接木된 祭祀 儀式은 具體的인 行動을 통해 나타나는 實體의 行爲이기 때문에 祭儀를 통해 信仰의 一面을 엿볼수 있고, 굿을 통해 祭儀가 행해졌던 社會相을 알 수 있었다. 다른 地域의 경우는 마을신이 地域中心의 神이기 때문에 血緣性이 弱하다. 장말도당굿의 경우는 血緣性이 강한 德水張씨의 祖上神 崇拜가 發展하여 地域의 性格을 지닌 堂神으로 特色있게 發展한 것으로 본다

3. 民俗놀이의 樣象

(가) 遠宗洞[먼마루] 도당우물 大同祭

(1) 祭主 選定과 祭祀

大同祭는 春期 [3월 1일]와 秋期[7월 1일]로 나누어 一年에 두 번 제사를 지내는데 祭主는 마을 有志들에 의해 生氣福德을 갖춘 사람이 選定된다. 祭主가 되기 위해서는 自身의 몸이나 그의 家庭에 부정한 일이 없어야 하며 집안 중에 누가 病患 中에 있어도 안된다. 祭需는 소 한마리나 소머리·백설기·두시루·청수·북어·燒紙 등인데 여기에 드는 費用은 각기 各出한다. 里長은 떡한시루를, 有志들은 술을 내놓는다. 祝文은 井衆祝 ‘유세차 00년 0월 0일 0시 유학 00생 00 감소고우 인명생활 유축무한 가문청정·제병양조, 청정기원·금후청작·가고’ 라고 읊는다. 祝文을 朗讀한후 祭主가 먼저 마을의 安寧을 祝願하는 소지를 올리고나면 地域 有志들이 소지를 올린다. 이때 마을 婦女子들이 함께 祈願하면서 致誠을 들인다. 소지가 끝나면 飲食을 나누어 먹으며 農事 作況 및 德談을 주고받으며 飲福이 행해진다.

(2) 우물소지 및 清掃

마을에 慶事가 있을 때 祭를 올리고 喪을 당했을 때 우물에 包裝을 해 부정이 타지 않도록 精誠을 다한다. 이 우물은 生命의 根源이요 豐饒한 多産을 象徵하고 있기 때문이다. 規模는 깊이가 약6.6미터이고 직경이 2미터 정도의 五角形으로 되어 있다. 大同祭날 아침에 實施하는 우물 청소는 십여명이 참가한다. 우물 청소에 들어가기에 앞서 소지를 올리고 個人 訴願을 빈다. 특히 우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장가들었으나 得男하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했다. 이는 우물신에게 得男을 祈願하는 希願思想 때문이다. 예전엔 도당우물 이외에 個人的으로 우물을 파면 禍를 입는다고 하여서 파지 않았다고 한다. 우물 바닥까지 깨끗이 清掃하고 致誠을 드리고 우물 주변 清掃를 했다고 한다.

[3] 소잡기

祭物로 쓰이는 소는 제사 당일에 잡는다. 제를 지내는 동안은 쇠고기를 한 곳에 모아두며 절대 손을 대지 않는다. 소를 잡는 이유는 農耕社會에서 가장 필요한 동물을 아깝게

희생시키므로써 더욱 풍요를 기원하는 깊은 뜻이 담긴 것이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새끼를 꼬아 쇠고기를 마을 가구수에 맞추어 분배한다. 그리고 그 양은 넉넉한 집안은 8근 정도에 해당하는 “한메”를 가져가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두집 내지 몇 집에서 함께 한메를 가져간다. 이때는 출가했거나 出郷한 사람도 함께 와서 쇠고기를 먹었다고 한다.

[4] 미나리밭에 수숫대 꽃기

祭祀를 지내고 쇠고기를 나눈 후 미나리밭에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가 이어진다. 즉 어느 한 사람이 수숫대에 戶主의 이름을 적어 임의대로 미나리밭 일부에 수숫대를 세워 놓으면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의 소유가 된다. 미나리는 하루에 바로 심지 않고 대동제 당일부터 시작하여 2-3일 사이에 심는데 주로 부녀자들이 담당하였다. 다른 지방에서는 미나리를 심을 때 민요를 부르고 있으나 이곳에는 전혀 내려오는 民謠가 없다. 아마도 부정을 탈까 염려해서가 아닌가 추측해 보며 사료수집에 노력 중이다.

이와같이 도당우물 대동제가 끝나면 京畿農樂[웃다리농악]이 추가되어 농악놀이로 뒷풀이가 시작된다. 굿은 우물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평안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도 고루 평안을 기원하는 바램이기 때문이다.

(나) 農旗叩頭首[농기고두마리]

[1] 農旗와 노래소리

논길을 타고 동서 양쪽 마을 農樂隊가 농기를 앞세우고 춤을 추며 등장한다. 이때 농기가 양쪽으로 갈라지며 그 중간에 제금[동발]·호적[날라리]·징잡이가 농악놀이 마당을 향해 선다. 양쪽마을 농악군은 동서로 갈라져 원을 그린다. 다음엔 上座마을 상쇠와 양쪽 마을 호미를 든 농군이 마당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다른 농악소리는 그치고 상쇠의 꺽과리 소리에 맞추어 풍년을 기리는 노래가 진행된다. 진행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꺽과리 장단에 맞추어 일동]

에에하하. 에에호호. 아아우. 후후---

[상쇠] 식전 아침 찬바람에

[일동] 에에에 농부야 들어봐라

[상쇠] 우리같은 농부들은 하나님 조화로서 불같이 더운날에 농사짐을 지는구나

[일동] 이에 그리 덧없이도

[상쇠] 하루하루 달라지니 일년초야 덧없이도 어이야 사나 지루하네

[일동] 어이야 후야 지루하네

[상쇠] 잘한다 못한다고 뉘한테 원망말고 가이없는 이내일신 농부가 되었거든 가지말
러라 예예

[일동] 어이야 후야 지루하네 아우야 후야 지루하네

노래가 끝나면 상쇠가 뽕가리를 치며 앞서서 논으로 향한다. 일동 “와”소리치며 양쪽
논으로 나누어 들어간다.

[상쇠] 논머리에서 어-허어두 상사뒤여 노래하면

여기라 산이 아니로구나

[일동] 허어 허어

[상쇠] 걸렸구나 걸렸구나 남산위에 청치맷 자락이 검고도 검었구나

[일동] 어여루 상사디여 어여루 상사디여 농군들 논매기를 끝맺고 논에서 춤을 추며
나온다.

농군들이 상좌마을 상쇠와 양쪽마을 호미를 든 농군이 마당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이
때 상쇠가 뽕가리를 친다.

[일동] 어이야 후야 지루하네 어이야후야 지루하네

[상쇠] 이때는 좋을텐데 부모님은 어데그리 검은머리 백발되어 날나두고 어딜가나 이
때를 잊으시면 어느때를 지내시나

[일동] 우우 에이야 어기야 / 쿵쿵절사 방해[아]야

이렇게 신명나게 노래소리가 이어지며 농민들의 힘든 농사일을 농악과 함께 털어준다.

[구전에 의해 수집된 것으로 사료되어 정확한 문헌등은 밝힐수 없으나 좀더 연구할 과제다]

[2] 豊年祭

농악소리 요란한 가운데 지난 해 상좌다툼에서 패자마을 사람들이 풍년을 기원하는 제
사를 지내기 위해 제사상을 차려서 논쪽으로 놓는다. 제주는 상좌마을 사람이 된다.

[상쇠] 근동 사람들아 이내말 들어보소 우리모두 함께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내세.

[일동] 여으이—— 도열한다.

농기는 그 자리에 늑늑하게 서 있는데 상쇠가 무릎 꿇어 앉는다. 우집사격인 자가 술을 따라 상쇠에게 건넨다. 상쇠가 술잔을 받아 제상에 놓는다. 이때 재배하고 엎드려 있으면 축문을 낭독한다.

‘유세차 000월 0일 00유학 감소고우·수불제신·해산지동·유령소지·호청려한·여좌여우·
구제역려 가분와매·유도사용·유치사격 소화남경·이안차화·귀차유생. 숙비신원·자용중·
공전건고·상향.’

축문이 끝나면 일어나 다시 우집사에게 술을 주고 상쇠가 받아놓고 재배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상을 패자마을 사람들이 가지고 나간다. 농민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금년 새롭게 상좌다툼 놀이를 준비한다.

[3] 農旗叩頭마리 다툼

양쪽마을이 서로 마주보고 相見禮를 한다. 상견례 의식은 지난해 패자인 마을에서 상좌 마을에 문안하는 형식으로 농악을 치며 한두발 앞서가 허리를 굽히는 것으로 끝난다. 그 답례로 상좌마을에서는 선자세로 풍악만 친다. 이러한 과정은 平澤과 益山 지방에서 행해지는 기세배와 유사하다. 기세배는 미리 정해놓은 서열에 따라 질서있게 세배를 올리는데 일정한 정도로 굽혀[평택 15도정도, 익산은 45도정도] 절을하면 4-5도정도 혹은 10도 정도의 답례를 한다. 이때 절을 받는 동네 사람들은 더굽히라고 소리치며 기를 누르려고 한다. 절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못굽히게 야단을 치며 서로 농악대를 동원하여 응원을 한다. 이 농기고두마리도 기세배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으리라고 본다. 상견례가 끝나면 양쪽 마을 사람들은 농악대의 응원하에 농기와 농기를 한가운데 맞서게 하고 농기 쓰러뜨리기 싸움을 한다. 농악이 울려 퍼진 가운데 양쪽마을 농악대는 거리를 좁혔다 물러섰다 두 번 반복한다. 농악대가 간격을 벌리면 양쪽에서 중심잡이가 따라 나온다.

서서히 다가서서는 농기와 농기가 맞대고 상대편 기를 쓰러뜨리는 경기를 하지만 좀처럼 승부를 내지 못한다. 세번 째 맞부딪혀 격투를 벌인다. 마침내 한쪽기가 땅으로 넘어질 때 상대편 상쇠가 旗棒을 뽑는다. 농악이 일시 중지된 상태에서 승자가 판가름 나면 이긴쪽에서 고함을 친다. 패자측 농군은 땅에 펄쩍 주저앉아 췌신을 벗고 땅을 치며 분해한다. 상쇠 신나게 팽가리를 치며 빙빙 돌면서 농군들을 뒤따르다 우뚝 서면 상쇠를 중심

으로 농군들 빙둘러선다.

[상쇠] 쿵쿵절사 방해야 국나온다 국나온다 돌치버섯 국끓이고 술국이 나오는구나

[농군] 에에야 어기야 허어 두어허고

패자측에서는 음식상을 차려 가지고 승자가 된 상좌측을 향해 놓으면 상좌 상쇠를 위해 패자측 부쇠가 술을 따라서 잔을 올린다. 상좌 상쇠가 받아 마시면 상좌측에서 함성을 지르고 패자측 농군들은 계속 땅을 친다. 술을 마신 상좌측 상쇠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패자측 부쇠가 술상을 물린다.

[상쇠] 인근마을 농부들아 이내말을 들어보소 올해 농사는 대풍이라오.

우리함께 어울려 한마당 신나게 놀아보세

양측 농군들 소리치며 원을 그리며 한바퀴 돈다. 상좌가 된 마을이 한마당 놀이를 하고는 내년을 다시 기약하자고 패자측을 위로하면 패자측 농악군과 마을 사람이 모두 일어나 농악을 치며 함께 어울려져 놀다 양쪽 마을로 향해 떠나면서 끝을 맺는다.

이처럼 농기고두마리는 마을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고 풍년을 춤과 노래로 찬미하며 승자는 패자를 위로하고 패자는 승자에게 승복하는 예법을 익힌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풍년을 기약하며 새로운 도전을 약속한다.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사는 공동체를 구성하며 신명나게 농악을 치는 삶의 미래를 구사하는 전통 의식이라고 보겠다.

[다] 장말도당굿

(1) 장말도당굿의 脈

장말도당굿은 京畿道의 다른 지방에서 행해진 마을 공동체로서의 도당굿과는 일정한 차이를 두고 있다. 1900년대 초 일본인 赤宋智城과 秋葉隆에 의해 조사된 朝鮮巫俗에 보면 장말도당굿을 도맡아하던 李用雨의 고향인 경기도 烏山市에서는 열두거리가 행해졌으나 장말도당굿은 열다섯거리가 행해졌다. 도당굿이 진행되는 동안엔 음식과 엿, 밤 등을 파는 亂場이 섰으며 도당굿을 일명 “고창굿”이라고 하는데 난장판을 말한다고 한다. 장말도당 굿은 다른지역 굿과 순서의 차이가 있다. 당주굿·부정굿·도당모셔오기·돌돌이·장문

잡기·시루말제석[추수감사제의 의미가 깊은거리]·터벌림·손굿·구능굿·도당할아버지·도당할머니·도당모셔 들이기·뒗전·꽃밭에 부채세우기·등 15개가 있다. 烏山과 始興市 浦洞[새우개마을]과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순서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장말도당굿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점이 있으며 문화적인 전통과 생활상을 반영한 것으로 그 맥을 잘 이어온 것으로 본다.

(2) 共同의 祖上神을 崇拜

장말의 경우 德水張氏의 血緣과 巫俗信仰의 화합으로 共同의 祖上神을 가졌기에 응집력을 바탕으로 공동화합의 장을 주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장말 도당굿은 덕수장씨라는 土姓을 바탕으로 행해진 마을 공동의 축제이며 秋收感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당초에는 장씨 集成村에서 출발했으나 이것이 발전하여 他姓이 유입되었음에도 이를 포용할 수 있는 공동의 地域神으로 승화할 수 있었음은 장말이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고 邪惡함을 물리치는 酸邪[백사]信仰의 요소도 있다고 보겠다. 이는 타성일지라도 장말에 살고 있음에 대한 自矜心과 공동체를잇는 사람들에게 친밀감과 일체감을 갖게해 주는 기능을 했다. 이를 위해 순수한 개인의 이해는 개입되지 않았으며 神靈祭祀를 公的儀禮로 귀속시키고 개인의 감정적 요소를 배제하여 결국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의례와 사회적 관습을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

(3) 도당굿의 응집력

장말의 마을신은 처음 마을을 개척한 德水張氏의 시조가 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마을신은 마을에 재앙이 생겨남에 따라 재앙이 되는신을 鎮魂하는 성격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또한 도당신의 능력은 全知全能한 것이 아니므로 巫俗이 信奉하는, 여러 신봉들을 모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宗教的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 직업적인 무속인이 장말도당굿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도당 할아버지가 남성이기 때문에 도당굿을 행하는 巫堂도 만신[여자 무속인]이 아닌 산이[남자 무속인]가 보조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부천의 다른 지역인 깊은구지[深谷本一洞]와 넘말[中洞一部]·上洞·古康洞·驛谷洞 등에서도 도당굿이 행해졌으나 도당굿 자체가 소멸되거나 변화하여 “마을 繁榮 祝祭” 또는 大同山祭라는 명칭으로 단순히 告祀를 지낼 뿐이다. 이와 같이 고장동·역곡동을 제외하고 이들

지역은 장말의 덕수장씨와 같은 集成村을 이루지 못하여 血緣에 기초한 공동의 祖上神이 없었다. 이에 반해 장말도당굿은 凝集力이 있어 오늘까지 그 맥을 면면히 이어나오고 있다.

結 語

民俗學에서 歷史의 變遷過程을 살피며 그 토대 위에 민속놀이의 傳統的인 民衆 生活事를 온전하게 復元해 내고, 보다 정확한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이해하는데 기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조사된 자료가 과연 지역적으로 어떠한 차별성과 특이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시기적으로 어떠한 自體變化를 거쳐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가를 명확하게 정리해 두어야 되겠다고 본다. 아마도 現地調査 하는것도 20세기가 마감되면서 더 이상 불가능해질 것이다. 80대 이상 古老들은 많지도 않거니와 현지조사를 해보아도 聽覺障害, 記憶力衰退 등으로 조사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속자료의 변화상을 점검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거나 전체적인 이해를 위하여 역사적 지식이 적극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그것은 민속학에서 조사대상으로 하는 대부분의 자료들의 殘存時期는 대부분 近現代時期이며 그 시기가 역사적 전환기로 가치 混沌의 시대였다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제 민속놀이가 口傳되어 오다 잊혀진 자료가 있다면 이를 찾아 再照明해야 할 것이다. 이점이 민중 생활사 復元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지목될 사항이다. 우선 文獻資料는 朝鮮時代의 민속놀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는 農畵와 村落文書가 주목된다. 그러나 대개의 민중생활사가 그렇듯이 成文化된 것이 드물다. 文獻에 없고 이미 사라진 생활 풍습이지 마는 역사상에서 중요했던 풍습을 再構하는 하나의 방식을 현지 조사를 통하여 광범위한 자료를 일차 採集하고 이를 기초로 역사 문헌과 결부하여 규명하는 방식은 바로 역사 민속학적 연구 방법론의 전형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특히 민속놀이의 연구는 농민들의 組織單位를 밝혀냄으로써 민중 생활사의 저변을 力動的으로 復元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논 농사를 위주로하는 漢江 河口流域 富川地域 농민들의 민속놀이가 지역적 단체성을 띤점과 다른 지역과 달리 특색있는 민속문화를 이어왔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도당우물大同祭나 農旗叩頭마리는 지역적 민속문화를 살려가며 하부 농민 계층의 조직력과 공동 생활체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相扶相助하면서 공동으로 농사를 짓

던 전통문화의 맥을 민속놀이를 통하여 전래해 온 것이다. 좀더 중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근 地役權과의 相互關係를 만드시 비교·검토해야 될 것이다. 또한 장말도당곳은 血緣的인 集團體 형식에서 外部人을 包容하는 寬容的인 면을 보여주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슬기롭게 사는 삶의 방식을 일깨워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吟味할 가치가 있다고 보겠다.

우리나라의 민속놀이가 그 지방 특색을 가지고 발전하여 왔으나 대부분 구전에 의한 것으로 正統性을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나마도 이제는 지방의 村老들 마저 사라지고 傳統脈을 이을 사람이 稀少해졌다. 서둘러 자료를 수집하고 옛것을 재현하므로서 새롭게 民族精氣의 魂을 담아 영원히 보존해야될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富川에도 민속놀이의 發掘價値가 있는 것이 아직도 많이 산재해 있다. 重要無形文化財로서 指定된 제47호 弓矢場과 제58호로 줄다리기 등이 있으며 그밖에 文化遺産으로 驛谷山神祭, 옷 素砂 山神祭, 춘덕 山神祭 등이 있어 앞으로 연구·발전시킬 가치가 있는 것이 많이 있다. 또한 복사골 지역 민속놀이의 전통 맥을 이어가기 위해 각종 자료를 재정검하고 짜임새 있는 計劃을 세워 복사골 민속놀이 등 값진 文化遺産을 잘 保存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 아직도 口傳에만 脈을 이어오고 斷片的인 文書化로 남긴 文化遺産과 특히 민속놀이 등을 學術的으로 體系化하여 歷史的 考察을 土臺로 深度있게 研究할 問題라고 思料된다.

參 考 文 獻

1 基本史料

가. 農書

- 1] 海東農書·撮要新書
- 2] 衿陽雜錄·農家集成

나. 村落文書

- 1] 洞中完議·頭民文書

2 研究書

- 가. 金烈圭. 1975. [韓國 民俗과 文學研究]一潮閣
- 나. 임재해. 1991. [韓國 民俗과 傳統의 世界]지식산업사
- 다. 고정옥. 1949. [朝鮮 民俗研究] 수선사
- 라. 柳洪烈. 1985. [民俗의 研究].정음사
- 마. 趙芝勳. 1973. [累石壇. 信仰研究]一志社
- 바. 李能和. 1927. [朝鮮 巫俗考]啓明 具樂部
- 사. 秋葉隆. 1937. [朝鮮 巫俗의 研究] 日本 大版星 書店
- 아. 金泰坤. 1983. [韓國 民間信仰 研究]集文堂
- 자. 張籌根. 1984. [韓國의 歲時風俗]螢雪 出版社
- 차. 임동권. 1983. [韓國 民俗 文化論]集文堂
- 카. 최길성. 1981. [韓國 巫俗論]螢雪 出版社
- 타. 이해준. [韓國 民俗史 研究入門]
- 파. 황루시. [京畿 도당굿]

3. 研究論文

- 가. 고혜경. 1990. [歷史 資料와 民衆 生活事] 梨花女子大學校博士學位 論文
- 나. 이해준. 1991. [歷史 資料와 民衆 生活事]韓國 歷史 民俗學會一次月例 發表會 초록
- 다. 주강현. 1989. [歷史와 民俗. 變革의 問題.
歷史科學 으로서의 民俗學]國立 民俗 博物館 심포지움.

2. 부천 민속놀이 재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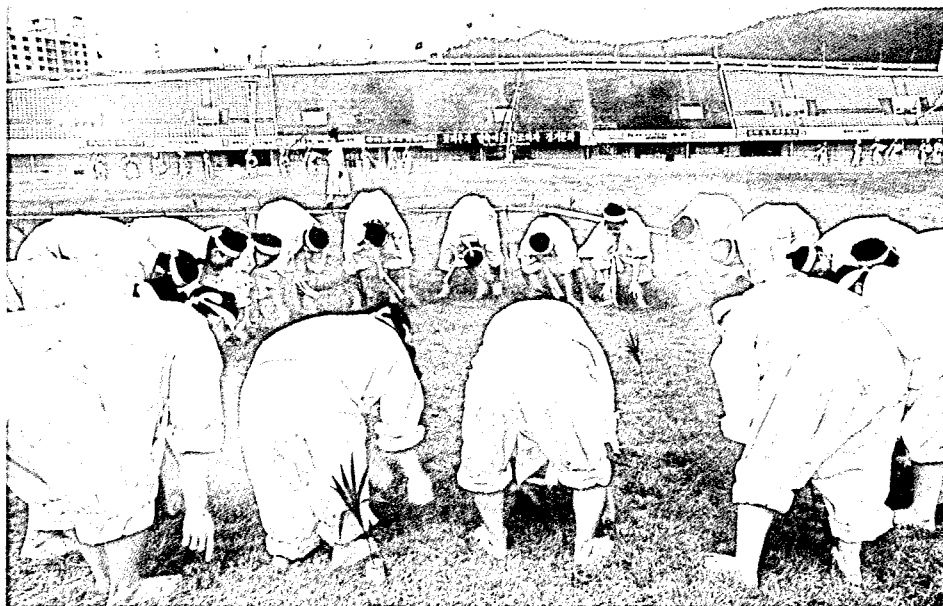


사진1. 농기고두마리중 서촌마을 사람들의 논매기 모습은 언제나 흥겨운 농요가 곁들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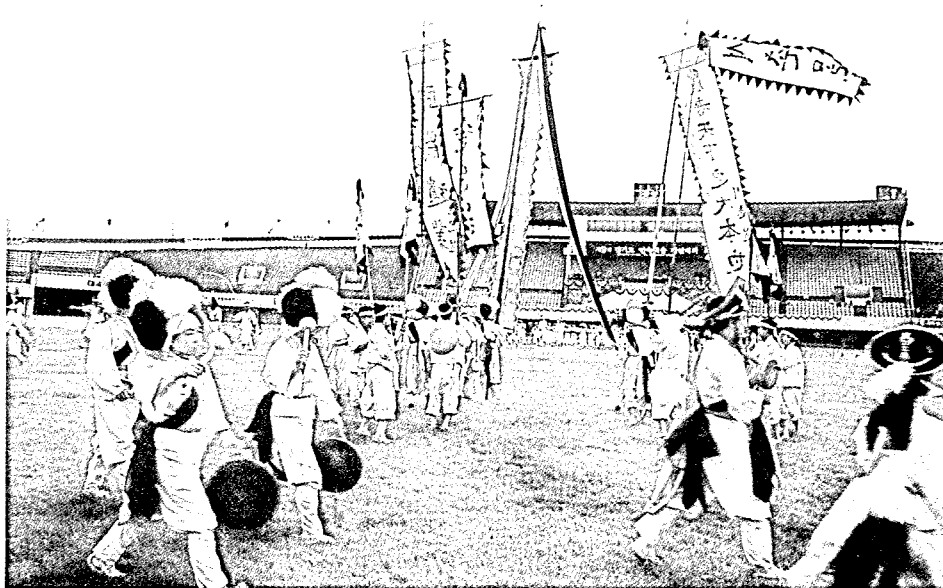


사진2. 농기고두마리, 논 농사를 마치고 7월 백중날에 건너 마을과 농기 싸움에 앞서 풍악을 울리며 주민의 단합을 과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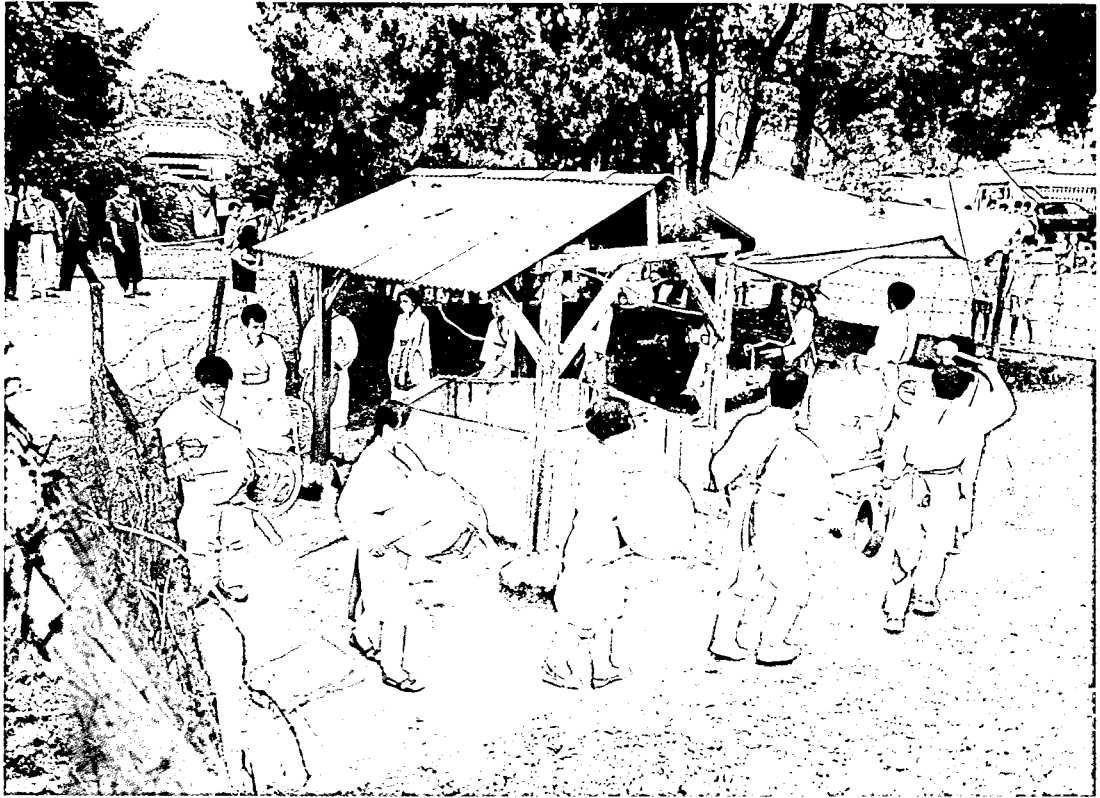


사진3. 원종동 도당우물을 빙빙돌면서 풍악을 울려 오늘이 도당우물제를 올리는 날이라는 것을 알리는 모습, 이 우물은 '94년도 공사이전의 모습으로 현존하지 않으며,현재 오정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대로변에 작은 규모로 우물과 정자를 설립해 놓았다.



사진4. '91년도 경기도 민속예술경연 대회에 출연한 장말도장굿, 종합우수상 수상 오수복씨가 삼현육각에 맞춰 시루돌움 풀이를 하는 모습



사진5. 오수복씨가 제사상을 돌면서 부정을 물리는 부정굿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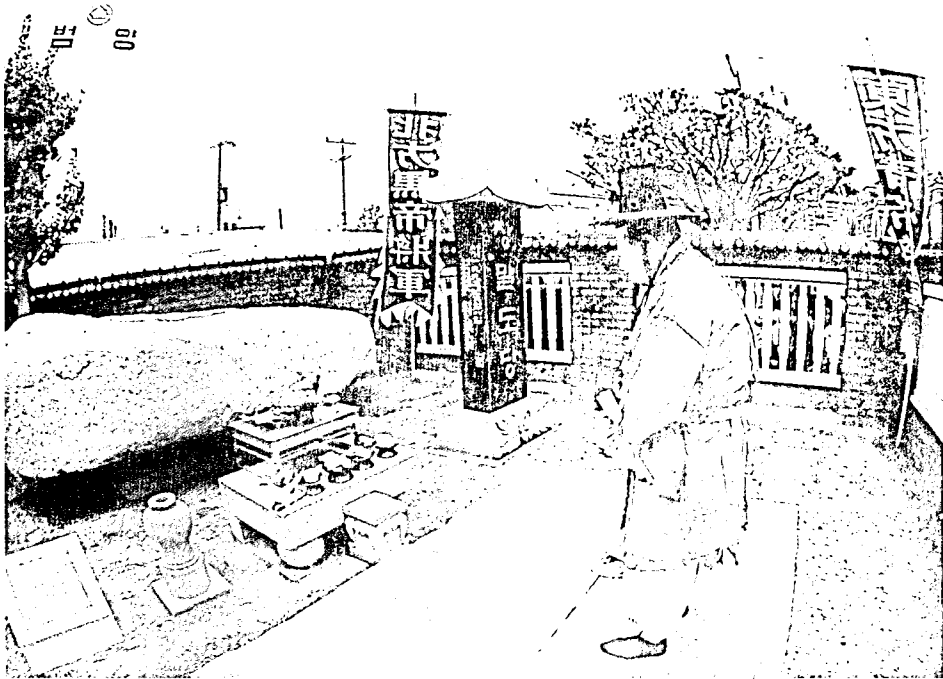


사진6. 돌판구지 앞에서 장말도당굿을 주관하는 장한복 할아버지가 도당신께 마을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며 도당신을 모셔가려고 하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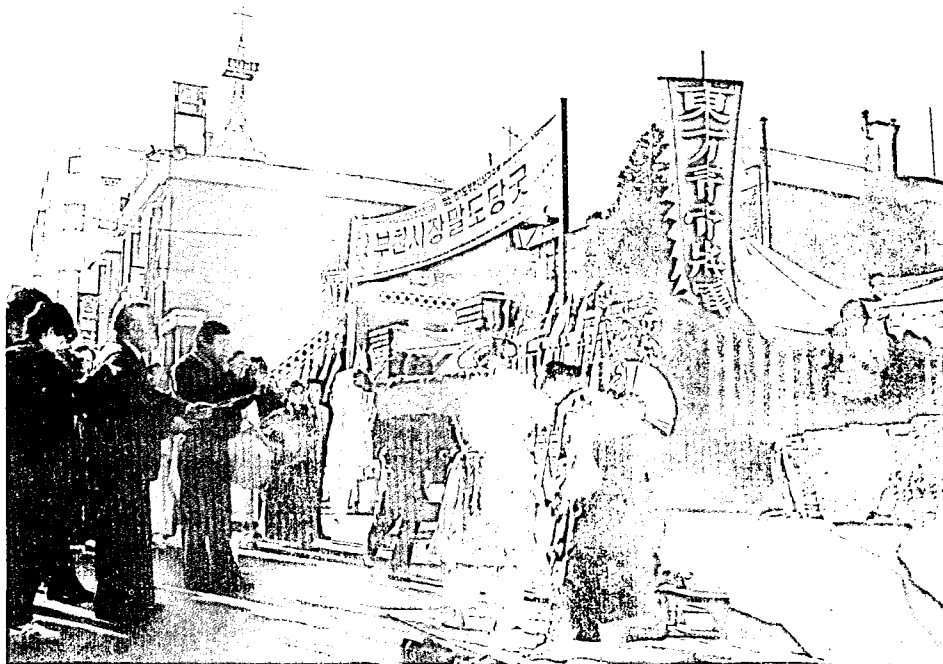


사진7. 장한복 할아버지가 도당할아버지 神을 모시고 당집으로 향하는 모습

茶山 丁若鏞의 繪畫觀에 관한 研究

林 炳圭*

目 次

머리글	三. 茶山の 美術에 관한 연구
一. 茶山の 美意識 研究	맺는글
二. 茶山の 繪畫觀 研究	參考文獻

머 리 글

朝鮮시대를 통털어 茶山만큼 여러 면에서 고루 고루 밝게 조명 된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茶山の 美術史的 위상과 畫家로서의 비중은 너무 가볍게 다루어졌고 소홀하지 않았나 사료된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혀 내고 재조명을 통하여 茶山の 美術史的 업적과 文人畫家로서의 자리 매김을 확실히 하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畫論과 理論이 지극히 미미한 관계로 인하여 美學的 접근을 시도 하지 못하고 부득이 美術史 분야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특히 茶山은 학자요, 사상가이며 대 정치가였기 때문에 잡다한 공적은 가리워져서 빛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畫家로서의 선구자적 역할은 물론 朝鮮後期 무조건적, 무비판적으로 밀려들어오는 慕華思想을 강력히 배격하고 경계하므로써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고취시켰다는 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는 분명한 예술의 혁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茶山の 美意識은 지극히 自然主義的이었으며 實用主義的이었기 때문에 詩書畫를 經世의 學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재조명고 繪畫史에서의 茶山 丁若鏞을 그려보고자 本稿를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바이다.

* 南楊州文化院 郷土史研究 所長

一. 茶山의 美意識 研究

1) 茶山의 審美眼

茶山의 출생지는 京畿道 廣州郡 草阜面 馬峴里로써 지금의 南楊州市 鳥安面 陵內里 馬峴부락 (또는 馬齊부락)이다. 漢江上流에 위치한 곳으로써 풍치가 매우 아름답고 그 당시 馬峴 앞에는 菴川이라는 냇강이 흘러 수려함을 더해주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팔당댐으로 인하여 수몰이 되어버려서 흔적조차 없어진 상태이다. 茶山은 평소 고향을 말할 때 馬峴대신 菴川(또는 소내)과 洌水라고 고집한 것을 보더라도 馬峴부락의 풍만한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茶山은 일곱살 되던 해에 부친 丁載遠의 任地인 漣川에서 살게되었고 여기에서 茶山의 첫 詩가 나왔다.

“小山蔽大山

遠近地不同”

작은 산이 큰 산을 가리웠다네

멀고 가깝기가 다른 까닭이라네.

어찌보면 가볍게 보아 넘길 수 있겠으나 詩에서 그려진 茶山의 自然觀은 繪畵에서의 기초가 되는 遠近의 構圖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때부터 藝術的 資質을 보여주었으며 그의 繪畵作品에서도 遠近法을 충실히 적용한 것을 볼 수 있다. 茶山은 父親 丁載遠이 任地를 옮길때마다 따라다니며 자연을 섭렵하고 자연을 체득하였다. 16세때 瑞石山(光州 무등산)을 거쳐 和順 북쪽 한적하게 자리하고 있는 東林寺를 관광하였고 19세때는 영남제일 명소로 꼽히는 진주 축석루와 예천의 伴鶴亭에 오르는 등 유년기와 청년기를 통하여 이렇게 자연속에서 마음의 폭을 넓히고 심미안을 길러 畵意를 싹틔웠고 폭넓은 학문을 연구하였다.

2) 茶山과 恭齋

茶山은 恭齋 尹斗緒의 學問과 藝術의 영향을 받았다. 특히 藝術에 있어서는 恭齋의 기

여가 가장 컸다고 믿어진다. 우선 茶山의 家系를 살펴보면 茶山의 母親은 海南 尹氏이다. 孤山 尹善道の 曾孫이 恭齋 尹斗緒이며 공재의 아들이 駱西 尹德熙요 낙서의 아들이 靑阜 尹熔으로서 공재, 낙서, 청고는 삼대에 걸쳐 畫業을 이어온 명문 사대부 집안이다. 茶山의 모친 尹씨가 공재의 손녀요 茶山은 恭齋의 外曾孫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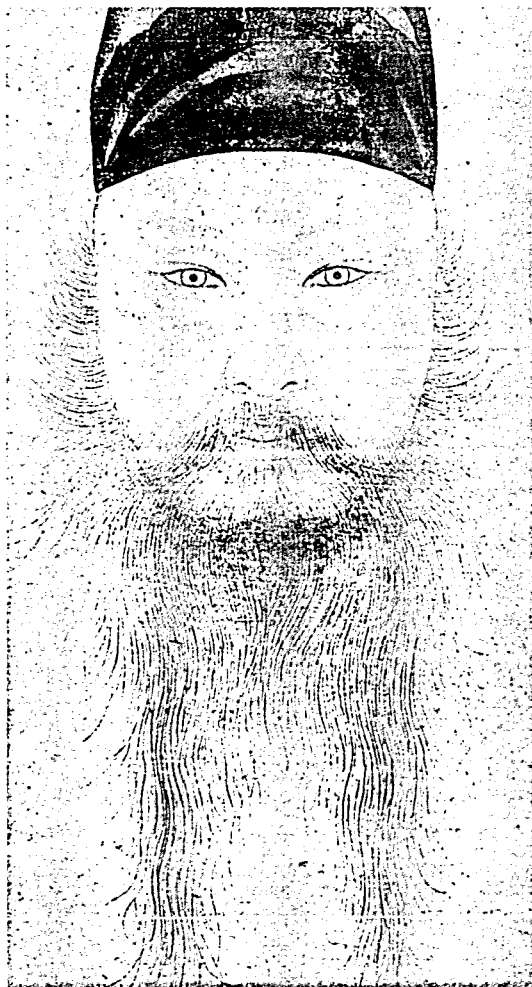
恭齋는 韓國美術史에서 후기(1700-1850) 제일 먼저 등장하는 畫家로서 문예부흥기를 주도하였다. 恭齋 尹斗緒는 詩書畫에 能한 三絶이며 謙齋 鄭敼, 玄齋 沈師正과 더불어 한국 화단의 三齋로 일컬어지는 선비 화가였다.

『靑丘書畫家名字號譜』에 보면

“海南人 字孝彦 號恭齋 鍾厓 善書畫人物 騎馬動植物 有自寫小眞”

이렇게 恭齋는 대상에 구애됨이 없이 다방면의 그림에 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나라 南宗畫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진보적인 文人畫家였다. 茶山이 恭齋家3代를 畫評한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恭齋로부터 畫名이 멀쳐 그 아들 駱西(諱 德熙), 駱西의 아들 君悅(名 熔)에 이르기까지 3세에 걸쳐 藝術은 정예하게 되어 갔다. 恭齋는 나의 外祖의 父이므로 그 遺墨이 우리 집에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人物에 能하였다. 恭齋의 그림은 聖스러우면서도 圓熟하였고, 駱西의 그림은 賢하면서도 圓熟하며 靑阜의 그림은 신령스러우나 원숙치 못하니 그것은 그가 젊었을 때 돌아갔기 때문이다. 특히 공재의 人物과 駱西의 馬 그림이 그 묘기가 대단히 훌륭했다”라고 말하였다.

英祖 때 南泰鷹의 『聽竹畫史』의 기록을 보면 “金明國, 李 澄 이 두 사람이 죽은뒤 백년이 지나서야 尹斗緒 한사람이 나오니 아직 그 이름을 같이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는 前人들보다 거룩한 명예를 차지하였다. 尹斗緒는 그림에 대한 공지가 대단하여 절대로 남의 請에 응하지 않았으나 오직 李師寬, 閔龍見, 李夏坤 이 세사람이 청하면 응하였다. 그러므로 위 세사람은 각각 세, 네권의 恭齋畫帖을 수장하고 또 障畫도 많이 가졌다.



〈그림1. 自畫像〉南北宗 畫風이 혼재한 作品으로 필치가 정밀하다. 顔面만 떼어서 그린 초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다. 「自畫像」紙本淡彩. 38.5×20.5cm

茶山の 제자인 草衣禪師가 秋史 金正喜에게 許維(1809-1892)의 그림 지도를 부탁하는 편지에서 “恭齋 尹斗緒의 그림을 보고 그린 것” 같다고 한 글과 秋史가 許維를 제자로 받아들이는 다음 그림공부를 시키며 “畫道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 그림에 있어서 이미 畫格을 터득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가 처음 배운 것은 바로 尹恭齋 畫帖인 줄 아네. 우리나라에서 옛 그림을 배우려면 곧 恭齋로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네, 秋史의 지적처럼 朝鮮 후기 繪畫는 恭齋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恭齋의 죽음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문헌이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었기

그 중에서도 李夏坤은 「萬馬圖」까지 가졌다. 그러나 이 세사람 모두가 西人이기 때문에 是非가 매우 많았다.”

朝鮮王朝의 역사를 가장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正論으로 평가되는 李肯翊의 『燃藜室記述』의 기록에서도 “恭齋는 人物에 偏長하고 山水는 그의 所長이 아니었다. 藝術의 自負가 가장 높아 마음에 맞는 자리가 아니면 절대 그려주지 않았다. 恭齋는 士人 沈得經과 더불어 金石의 交誼가 있었다. 沈得經이 죽은 뒤 畫像을 追作하여 그의 집에 보내니 온 집안이 놀라 울었다. 그 때 洪得龜가 그의 畫馬畫龍을 보고 놀라며 恭愍王 이후로 이러한 그림이 없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恭齋는 자신이 그린 작품을 남발하지도 않았고 지위 高下를 가리지 않았으며 政敵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畫意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응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당시 南人의 巨頭였던 恭齋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의외의 행동이었다.

때문에 의문점이 있었으나 尹善道の 古宅을 정리하던 중 恭齋의 아들 駱西 尹德熙가 지은 『恭齋行狀記』가 발견되므로써 해결되었다. 기록을 정리하여 보면 恭齋는 憲宗9年(1668년)戊申 5月 20日 白蓮洞에서 출생하고 숙종41年(1715년)乙未 11月 26日 가벼운 감기로 白蓮洞에서 돌아가니 향년48세였다는 내용이다.

恭齋의 遺作으로는 中國 明院體로 그린 「老僧圖」가 있으며 「馬上處士圖」「自畫像圖」〈그림1〉「美人圖」등이 傳한다. 여기서 1982年 尹善道の 古室(綠雨堂)에서 뒤늦게 발견된 「美人圖」는 美術史的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恭齋의 「美人圖」는 여인이 화장을 마친 후 흡족한 표정으로 머리를 매만지는 美人을 모델로 하였다. 손에는 금가락지를 끼었고, 저고리는 자주색 갑사, 치마는 푸른색이 돋는 연자주색 모시를 극사실로 표현하였다. 생동감과 운동감은 한국적 사실주의의 진수라 하겠다.

茶山의 繪畫世界는 恭齋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루어졌음을 가늠케 한다.

3) 茶山의 自然觀

茶山은 明禮坊(현 明洞)에서 살 때 굵은 대나무를 구하여 정원에 난간을 만들어 나무와 꽃의 훼손을 막게 하였다. 茶山은 정원조성을 꾸밈없고 자연스럽게 만든것을 보아도 茶山의 감성적인 人性을 잘 반영한 것이다. 이른바 竹欄이다.

이 竹欄舍에는 茶山이 中心되어 이삼십대 젊은 학자들이 모여 들었다. 人生을 논하고 詩를 지어 읊으며 禮와 經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문을 토론하게 되었다. 이 모임을 “竹欄詩社”라 이름하여, 定期詩會는 살구꽃 처음 필 때 한 번 모이고, 복숭아꽃 처음 필 때 한번 모이고, 한 여름 참외가 익을 때 한번 모이고 西池에 연꽃 피면 한번 모이고, 국화꽃 피면 한번 모이고, 겨울에 큰눈 내리면 한번 모이고, 세모에 盆梅가 피면 한번 모였으니 일년에 입곱번이 된다. 임시 詩會도 규칙을 정하였는데 得男한 자가 있을 때 지방 수령으로 나가는 자가 있을 때, 품계가 승진된 자가 있을 때, 자제 중에서 등과한 자가 있을 때 모였다.

이 모임에서와 같이 인위적인 것을 피한 자연스러움, 허심 탄회한 솔직성을 엿볼 수 있다.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젊음의 고뇌를 발견하게 되고 자연과의 화해를 통하여 自然美를 배우고 체험을 하므로써 예술적 영역이 축적되고 극대화되었다고 하겠다.

4) 茶聖과 茶仙과 海東文豪

茶山이 康津에 유배되어온지 5년 제가 되는 해에 白蓮寺에서 惠藏스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 만남은 茶山에게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茶山은 詩와 朱易을 가르치고 惠藏禪師는 禪과 茶道를 가르쳤다. 이것은 이질적 신분을 가진 두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었으나 茶山の 학구적 태도로 보아 능히 가능하였다고 보여진다. 즉 茶山易의 産室인 寶恩山房과 茶道의 産室인 白蓮寺간의 교유는 7년 동안 계속되며 丁若鏞은 비로소 茶山이란 號를 가지고 茶詩가 나오고 茶聖으로 칭해졌다. “茶를 마실 줄 모르는 민족은 亡한다”라는 茶禪一體를 說하게 되었다.

茶山은 惠藏禪師의 문도인 草衣禪師와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다. 茶山은 24세 연하인 草衣를 자식같이 귀여워했고 儒書와 詩를 가르쳐 주니 茶山과 草衣는 사제지간으로 맺어졌고 草衣는 “從茶山하며 受儒書觀詩道”라 하며 자랑으로 삼았다. 이 때 草衣의 그림도 처음으로 나왔는데 白雲洞의 勝景을 그리고 茶山이 詠詩를 한 「白雲圖」를 말한다. 또 「茶山圖」도 그렸다.

茶山과 秋史 金正喜의 만남을 살펴보면 一枝菴으로 草衣를 찾아온 秋史에게 茶山을 소개하여 茶山草堂에서 이루어졌다. 茶山草堂 가는 길목에 위치한 石門을 보고 秋史는 詩情과 畫格과 金石學으로 評한 내용, 그 자체가 詩書畫를 의미하며 이러한 美意識은 秋史의 繪畫와 書藝世界를 이룩했다고 믿어진다. 茶山은 그 날로 『牧民心書』草稿를 秋史에게 넘겨주어 읽게 한 사실과, 草稿를 읽고 그 날로 弟子되기를 간청한 秋史, 이러한 일들은 어찌면 당연하다고 보여진다. 秋史는 두 달 가량을 茶山草堂에서 茶山の 實學의 정수를 修學하였으며 印刻 두 点과 “茶山草堂” 懸판을 써서 陰刻하여 전하므로써 恩師에 대한 禮를 하였다. 이런 만남은 茶聖인 丁若鏞은 물론 茶仙인 草衣禪師와 海東文豪 金正喜, 모두에게 어떠한 전환점이 되지않았나 사료된다.

二. 茶山の 繪畫觀 研究

1) 시대적 배경

朝鮮時代를 美術史的으로 前期(1392-1550), 中期(1550-1700), 後期(1700-1850), 末期(1850-

1910)등 4期로 구분한다.

前期 繪畫의 흐름은 고려미술의 연장이었으며 中國 南宋院體의 米法山水가 주류를 이루었고 安堅, 崔涇, 李上佐, 金禔와 선비화가로는 姜希顔, 姜希孟 형제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당시 유행하던 明院體와 浙派畫風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했다.

中期에는 安堅畫風을 계승하면서 明의 米法山水와 南宗畫風을 일부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으며 李澄·李慶胤, 金明國 등이 활동하였다.

後期를 文藝復興期로 평가하는데 그 이유로서, 中國의 浙派의 퇴조와 韓國의 南畫가 정착되어 가는 시기였기 때문이다. 恭齋를 비롯하여 鄭敼, 卞相璽, 崔北, 李寅文, 金弘道, 金得臣, 申潤福, 李在寬, 姜世晃, 朴趾源, 朴齋家, 丁若鏞, 申緯, 沈師正 등 많은 作家가 활동하였던 시기였다.

末期 역시 南宗畫가 주류를 이루었고 秋史를 위시하여 李漢喆, 金秀哲, 張承業, 趙熙龍, 許維, 田琦 등이 있었다. 趙錫晉, 安仲植에 의하여 명실공히 한국화가들이 배출하게 되었다.

3) 茶山의 繪畫觀

茶山이 활동하던 시기는 朝鮮時代 후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南宗畫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특히 崇儒排佛思想이 그 기초에 깔려 있어 미술 각 분야에 다양성이 있는 美意識을 가지고 있었다. 儒敎立國이라는 정치적 이념과 도덕적 규범에 절대 비중을 둔 繪畫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圖書院이라는 美術敎育 기관이 있기 때문에 畫員을 양성하고 국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繪事를 담당하게 하였기 때문에 국가를 운영하는 사대부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었고 사대부들도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畫員같은 전문화가들을 천시하려는 사대부들의 편견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豹菴 姜世晃이 英祖를 뵈 온 자리에서 한 신하가 아뢰기를 “豹菴이 書畫에 능통하다”라는 말을 했을때 英祖는 “末世가 되어서 시기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賤枝에 能한 소인배로 알볼까 두려우니 다시는 그림 잘 그린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 표암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붓을 꺾어 절필하고 말았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우려해서 餘技를 즐기는 것마저 눈치를 보며 숨어할 수 밖에 없었다. 畫員을 부정적 시각으로 보는 사대주의적 견해가 대다수의 사대부들 사이에 팽배해 있었으며 심지어는 당쟁에도 이용되기도 하였다.

학문으로나 그림에 있어 茶山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恭齋 尹斗緒의 일화도 유명하다.

茶山과 같은 시대를 살던 학자요, 서예가인 燃藜室 李肯翊(1736-1806)이 지은 『燃藜室記述』에 이런 내용이 있다.

숙종 말년에 御容畫師를 초빙하는데 畫名이 높은 전국의 화가들을 廳役에 예속시키고 숙종이 恭齋를 다시 불러 기용하고자 대신들과 의논을 하였다.

小論의 영수인 南九萬은 南人의 영수인 恭齋를 탐탁하게 보지 않았다. 그 때 공재는 喪中으로 海南에 있었다. 南九萬이 숙종께 아뢰기를 “禮에 이르기를 君子는 他人이 어버이를 모시는 일을 막지 않으며 자신이 어버이를 모시는 일을 그만두어도 안된다. 다만, 전쟁이 일어나면 불가피하다. 어용을 그리는 일이 중차대하기는 하나 임금의 명하면 공재로 하여금 事親하는 일을 막게 되고, 恭齋가 어명을 따른다면 事親하는 일을 그만 두는 꼴이니 盛世에는 안될 일이다. 국가의 유지는 禮를 엄히 지켜야 하므로 어명을 따를 공재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은 공재는 심히 치욕스러워 붓을 꺾고 절필하게 된다. 따라서 사대부들은 그림에 관한 한 소극적 자세로 일관 하는가 하면 아까운 재주마저 사장시켜 버리는 일이 허다하였다.

문예부흥기인 正祖 때에 들어서면서 畫員 보호정책이 펼쳐지면서 사대부들도 다시 눈을 뜨게 되는데 中國 蘇東坡를 비롯한 北宋代의 文人畫論이 과급되고 詩畫一律思想이 畫員과 사대부들 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대부들도 書畫를 필요로 하기에 이르렀다. 이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사대부들도 그림을 수집하고 자유롭게 畫評을 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畫論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이 즈음 姜世晃, 丁若鏞등 걸출 文人畫家 및 評論家가 많이 배출되었다.

3) 茶山の 畫論

사대부는 앞다투어 화가와 교류도 하고 자연스럽게 수집도 하게 되었고 茶山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산의 畫評을 소개하면 金禔는 선조때 명성을 날렸으며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오직 서화로서 자신을 달래며 살았다. 遺作으로는 「산하모우도」 「우배도하도」가 전한다.

李蘄은 竹이 神妙하기로 이름이 났다. 그는 세종의 5세손으로 中宗때 활동한 화가로서 글씨에도 能했다. 유작으로는 「風竹도」 「雪竹도」 「竹도」가 있다.

尹斗緒는 人物에 그 묘기가 홀룡하였다. (그 외는 茶山과 恭齋에서 다루었음)

尹德熙는 말(馬) 그림에 묘기가 훌륭하였다.

卞相璧은 숙종때 畫員으로 닭과 고양이를 특히 잘 그려 卞怪樣(변괴양)이라 불렀고 초상도 잘 그려 國手의 칭호도 받았다. 유작으로 「추자도」 「묘도」 「묘작도」 「군계도」가 전한다. 다산이 유배에서 풀려난 후 1827년 변상벽의 「母鷄領子圖」를 보고 題畫詩를 지으니 이것이 「題卞相璧母鷄領子圖」이다.”

고양이 그려 세상에 유명하니
사람들 그를 보고 변고양이라 불렀는데

이번에 또다시 병아리 그려내니
머리마다 살아서 나는 듯하네

어미닭은 까닭없이 잔뜩 노해서
붉으락푸르락 사나운 표정

목털은 곤두서서 고슴도치 닭았고
건드리면 해칠까봐 꼬꼭댕 우네

쓰레기통 방앗간 돌아다니며
방바닥을 살살이 후벼 파는데

난알을 찾아내면 쪼는 척만 하고서
새끼 위한 마음으로 배고픔을 참아내네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서 허둥지둥
알고보니 숲속에 올빼미 날아가네

참으로 장하도다 자애로운 그 마음
하늘이 내린 사랑 그 누가 빼앗으랴

웅기종기 어미 곁을 둘러싼 병아리들
황갈색 연한 털이 예쁘기도 하여라.

하얀 주둥이는 이제 겨우 여물었고
벼슬은 아직도 연붉은 색이로다.

그 중에 두 놈은 서로 쫓고 쫓기는데
어디메로 그리도 급히 가려고

앞선 놈 주둥이에 무엇이 달려
뒷 놈이 빼앗으려 따르는구나

그가 옛날 고양이를 그렸을 때도
쥐들을 혼내 줄만 하였겠구나

예술의 지극함이 여기에 이르니
만지고 또 만져도 떠나고 싶지 않네

되지 못한 화가들은 산수한 그린다며
이리저리 휘둘러 손놀림만 거치네

여기서도 恭齋은 慕華思想에서 헤어나지 못한 화가들에게 모질고 예리한 畫評으로 비판하였다.

石癡 鄭喆祚는 正言 벼슬한 사람으로 23세에 그린 「龍圖」를 보고 茶山은 “鄭石癡畫龍小障子”라고 題畫詩를 썼다.

“요즘 그린 용은 귀신 그림 같아서
네 눈 귀신 머리에 뱀의 꼬리 붙인듯
용 본 사람 드문지라 그러려니 믿네만
구름 낀 듯 아득하게 현혹되고 말았네

鄭公이 분발하여 실물처럼 그리려고
비늘 하나 눈 하나 용의 모양 그려내니

꿈틀거려 솟은 기세 지붕 뚫을 형상이요
분발하는 그 모습은 사람칠까 겁나네.

이 그림 연기가 주옥보다 더 어려워
남 몰래 밀실에서 사람 피해 보았는데
세상에 알릴세라 경고받고 글을 씀은
진짜 그림 적어서 세속을 고치려는 뜻”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화가였으나 茶山은 사실적 그림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崔北은 영조때 사람으로 무주人이다. 字는 七七이요, 호는 星齋를 비롯하여 네 가지가 있었다. 「金陵集」 “崔七七傳”에 의하면 “그의 족계는 알 수 없으나 한 눈이 멀어 항상 반안경을 쓰고 그림을 그렸으며 특히 술을 즐겨 보통 하루에 5~6되를 마셨다. 성격이 괴팍해 세상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으나 詩도 잘하고 「수호지」 「서상기」 등 책을 즐겨 읽었다. 유작으로는 「하경산수도」 「추경산수도」 「관폭도」 등을 전하며 49세로 죽었다.” 茶山이 崔北의 그림 「釣龍臺」를 보고 題詩하여 評하였다.

“조룡대서 용늬은 일 황당하기 짝이없네
최북의 그림에서 처음으로 보았도다

용감한 장군이나 사나운 모습에다
찢어진 눈초리에 창날 같은 성난 수염

오른 팔에 쇠줄 감고 휘둘러 내던지니
피 흘리는 백마 미끼 용의 입에 물리네

용의 입 벌어지고 목줄기 움추리며
꿈틀 대는 갈기질에 물결이 부서진다.

용겹질 금비늘이 어지러이 번쩍여
검은 구름 가득한 하늘이 비좁은 듯

말하기는 이가 바로 唐나라 소정방
용 죽이고 강을 건너 부소산에 올랐네

부소산 밑 강물이 흐르는 곳에
주먹만한 돌들이 거품처럼 널려 있고

그 당시 당나라 배 남쪽에 대었는데
무얼하러 서북쪽 길 택해 왔겠나

안개 바람 일으킨 신령한 용이
어찌하여 미련하게 남시밥 삼켰으랴

소정방 발자욱 깊이 팬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았다고 와전되오니

전해오는 책들이 荒疏한지 오천년
호해, 馬卵 모두 다 틀린 말이네

선한일 향기 없고 악한 일에 악취 안나
소인은 방자하고 군자는 근심하네.”

여기서 호해는 병에서 나온 아기와 말의 알에서 나온 아기를 말함이니 신라 박혁거세의 전설일 게다. 이렇게 茶山은 그림 한폭을 감상 하더라도 소홀함이 없으니 조룡대는 백마강 남쪽에 위치해 있어 보정방이 조룡대에 올랐다면 이미 성은 함락된 후가 아니겠는가, 당나라 배가 바다로 와서 성 남쪽에 상륙을 하였겠는데 무슨 연유로 강을 수십리나 거슬러 올라가 이 조룡대 남쪽에 이르렀겠는가.

최북의 그림에 허구성을 지적하고 박혁거세 전설에 비유해서 역사적 진실성을 요구하

여 唐나라 소정방정의 존재를 무시하려는 茶山의 의도적 주체성을 표현하였다고 하겠다. “尹斗緒는 늘 나비, 잠자리 같은 곤충도 손에 잡아들고 그 수염, 눈썹털, 뱀시 등 섬세한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되 꼭 실물을 닮은 뒤에야 붓을 놓았다”고 茶山の 「拔翠羽帖」에 기록되어 있다. 즉 사실주의적인 사고로 보아야 하며 엄격한 관찰력과 운동감을 강조한 것이다. 즉 기초가 정확하여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李命基는 정조때 사람으로 찰방에 그쳤다. 그는 특히 초상화를 잘 그려 御眞은 물론 정승의 영정을 그렸고 옛 초상화를 다시 묘사하는 것까지 그렸다. 유작은 「송하독서도」 「산수인물도」 「서직(徐直)초상도」가 있다. 英祖의 어진은 尹德熙와 변상벽이 그렸다.

茶山은 文人畫家이면서도 다른 작가의 美術品 수집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金弘道, 姜世晃, 鄭敼, 許必, 沈師正, 柳德章 등 많은 작가의 미술품을 수집하여 소장하고 있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림마다 畵評을 하므로써 현대 美術評論의 기초를 만들었다.

三. 茶山の 美術에 관한 研究

1) 慕華思想에 對한 비판

1802년 강진에서 茶山の 두 아들에게 “중국 元·明 시대에 경망스런 文人들이 많았는데 우리나라 文人들이 이를 모방하여 우쭐대며, 우리의 것을 알보는 바 이를 경계하고, 작품을 쓰려면 학식의 기초인 경서를 먼저 읽고 역사 문헌을 먼저 섭렵하여 나라의 흥망을 먼저 알아 내고, 또한 실천적 이론을 공부한 선배들의 경제에 대한 글을 읽고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백성을 생각하는 사상을 가져야 훌륭한 글이 나온다”라고 했다. 다산은 또한 “우리의 문인들이 漢字를 빌려 詩를 쓰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慕華思想에서 벗어나 꽃핀 아침, 밝은 저녁과 무르녹는 그늘이나 보슬비 내리는 때를 당하면 그 서려있던 감흥이 격동하며 표연한 詩想이 떠올라 자연스럽게 노래하는 경지를 이루게 하라”고 모화사상을 경계한 것이다. 茶山이 71세 때 지은 詩 「老人一快事」를 요약하면 “나는 조선사람이고 조선詩를 즐겨 부른다”라고 한 글에서 中國의 詩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우리식 대로 표현하자는 뜻이니 사실상 이 점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계승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述志二首」에서
 슬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여
 자루 속에 갇힌 듯 너무 외쳐라
 삼면은 바다로 둘러 싸리고
 북쪽엔 높은 산이 주름졌어라
 팔다리가 언제나 굽어 있으니
 큰 뜻이 있다한들 무엇으로 채울건가
 성현계선 만리 밖 먼곳에 계시니
 그 누가 이 어두움을 열어 주려나
 머리들어 인간세상 바라다 봐도
 밝은 마음 가진사람 보기 드물고
 남의 것 본뜨기에만 정신 없으니
 정성껏 자기 몸 닦을 틈이 없어라
 무리들이 어리석어 바보 하나 떠받들고
 야단스레 다 같이 숭배케 하니
 질박하고 옛스런 단군 세상의
 그 시절 옛 풍습만 못한듯 해라”

茶山은 이렇게 모화사상을 비판한 보기 드문 사상가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茶山과 鄭散

茶山은 藝術의 침체성을 맹목적 모방에 있다고 보았다. 이 때 우리나라 水墨山水의 신경지를 개척한 謙齋 鄭散은 茶山の 마음을 흔들어 놓게 하였다. 茶山の 畫評에 “검재는 古松을 잘 그리는데 山水를 그릴 때는 皴法을 사용하여 순전히 횡점으로 모양을 형성 했다.”라고 말한 검재 정선을 살펴보기로 하자. 鄭散은 1676년에 출생하여 1759년에 사망하였으며 본은 光州요, 字는 元伯이며 호는 謙齋, 蘭谷이었고, 현감 벼슬을 지냈다. 圖畫署의 畫員이었으니 직업화가였다. 韋滄 吳世昌(1864-1945)이 지은 「槿域書畫徵」에 ‘鄭謙齋最善東國眞景’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검재는 우리나라 繪畫史에 한 획을 긋는 최고의

화가로서 우리 화단의 궁지이며 자존심이 걸린 세계적인 작가인 것이다. 겹재는 환달한 필력과 독창적 皴法으로 實景山水를 개척한 당대 제일의 화가로서, 李澄, 尹斗緒 趙涑 등 선구자의 영향을 받은 겹재는 종래 畵譜에만 의존한 中國의 그림을 과감하게 벗어나 朝鮮畵를 정착시켰다. 자신이 전국 각지를 여행하여 實寫하고 수직평행으로 겹재준법이라는 특이한 화법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필시 金剛山을 사생하면서 그 岩骨의 모습에서 터득한 준법으로 보여진다. 수평수직과 수평으로 교차되는 橫點으로 구사하였고 구도에서도 종래의 水平視 또는 仰視의 山水畵에서 下向俯視의 山水를 그리게 되었으며 朝鮮 最初로 산수도에 實雲을 표현하기에 이른다. 특히 文氣는 없으나 늘 새롭고 힘이 있었으며 多作하는 화가였으나 같은 그림은 절대 그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 제일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다. 생각된다.



〈그림2〉「仁王齋色圖」謙齋 鄭敼紙本水墨 72.2×138.2cm

「仁王齋色圖」는 淡彩水墨畫로서 인왕산의 암벽을 量感과 力感을 표현하기 위해 父劈皴을 구사하기 시작한다. 특히 中景과 近景을 무시하고 遠景의 산이 화면을 메워 색다른 신선감을 주는 작품이다. <그림 2>

3) 茶山의 詩書畫

「夏景山水圖」는 茶山의 心意畫로써 강진 유배 때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畫格이 고매하며 岩皴은 간결하게 생략하여 宋代初 范寬의 骨法을 무색하게 한다. 도토리나무와 오동나무는 南唐의 徐熙의 沒骨法에 견주었고 중앙에 외롭게 枯木을 배치하여 작가의 처해진 현실을 표현한 것으로 畫題와 어우러지고 文氣가 서려있는 茶山의 대표작 중 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림3>



<그림3> 「山水圖」 畫帖一面紙本淡墨淡彩 26×32.7cm

동아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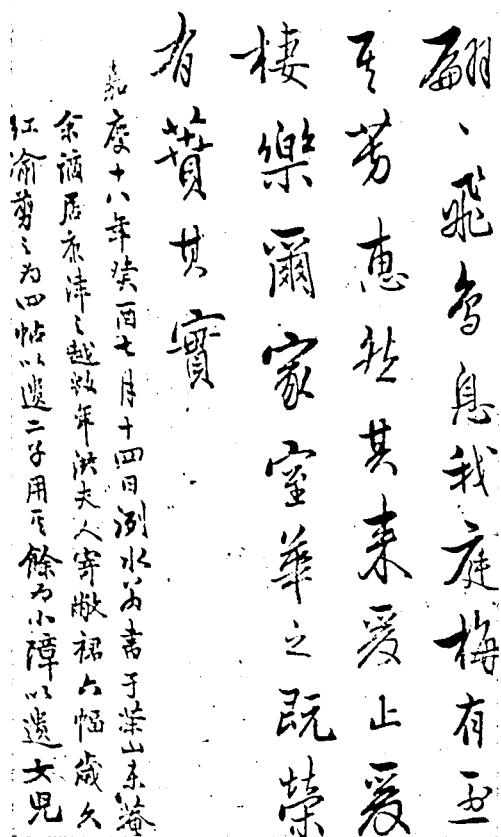
遠近法을 무리없이 다루었고 遠山을 感筆法 처리를 하므로써 전형적인 우리나라 野山을 부드럽게 표현하였다.

“輕榭肥梧葉正舒 此株枯木獨蕭疏
范寬筆意徐熙墨 好向殘山乘水攄”

“연한 도토리나무 비대한 오동잎은 잘퍼져
그루를 함께한 마른 나무만은 홀로 쓸쓸하네
범관의 붓숨씨요 서희의 먹 빛으로
낮은 산, 물, 넉넉한 곳으로 즐거이 향하네”

七言律詩를 行書로 여백을 처리하므로써 균형미를 이룬 文人畫의 전형이다. 시제에서와 같이 중심에 개성이 다른 세 그루를 배치했는데 그 중 마른나무는 고독한 자신의 심정적 畫意를 표출한 것이다. 왼쪽 하단의 藏印은 洪顯周로서 豐山人이며 호는 海居齋이고 正祖의 딸 淑善翁主와 결혼하여 永明尉에 봉해졌고 知寧府事를 지냈고 文章에 能한 바 妻家와의 연관이 있지 않나 짐작된다.

「梅鳥併題」는 茶山이 52세(1813년)가 되던 해에 그린 作品으로 13년이란 긴 유배 생활의 아픔과 고독함을 스스로 달래 보려는 마음의 그림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특징 있는 구도를 발견하게 되는데 전체 화폭의 3분의 1를 그림에 두고 3분의 2를 詩題에 넓게 활해하여 배치한 구도이다. 그것도 그림을 상단에, 시제를



〈그림4〉「梅鳥併題」絹本淡彩 45×19cm

고려대 박물관 소장

하단에 배치한 것이다. 그러나 그림을 淡彩로 처리하고 시제가 큰 글씨로 쓰여지니 작품이 안전성을 가지게 되고 화면 전체로 보면 조화의 극치를 엿볼 수 있다. 상단 우측에서 뻗은 두줄기의 가지는 좌하로 늘어지니 梅花송이 때문인가, 아니면 두마리 새 때문은 아닐런지... <그림 4>

翩翩飛鳥 息我庭梅
有烈其芳 惠然其來
奚止奚樓 樂爾家室
華之既榮 有蕢其實

훨훨 새가 날아와
우리집 마당, 매화나무에 앉네
길은 향기에 이끌려
흔연히 찾아 왔으니
이에 그치고 이에 깃들어
함께 집짓고 즐겁게 살아다오
꽃핀 다음에는
열매도 가득 맺으리

茶山은 梅花를 즐겨 그렸으며 매화를 소재로한 詩 또한 즐겨 다루었다. 「梅鳥圖」에서 두 마리의 정다운 새를 누구로 보여지느냐가 문제의 초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長男 學淵과 次男 學游 兄弟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鳥類의 본질상 부부 한쌍이 생활하는 것으로 보아 부인을 몹시 그리워한 듯하다. 洪夫人寄敝裙...’라는 작은 글씨가 있다. ‘...부인의 흰 치마 자락...’ 비단치마에 그린 것으로 보아 애뜻한 연민의 정이 사모침이 아니겠는가.

五. 맺 는 글

韋滄 吳世昌의 “槿域書畫徵”에 丁若鏞은 英祖 38年 壬午에 출생하여 憲宗2年 丙申에 사

망한 것으로 기록되었고 또 “羅州人 字美鏞 頌甫 號俊庵 茶山 三眉 鐵馬山樵 洌老 洌老 洌水 與猶堂 官金井察訪 刑曹參議 善書畫 外曾考恭齋 尹斗緒” 이 단서를 가지고 茶山의 繪畫을 조명하는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茶山의 遺墨이 생각외로 없고, 茶山의 “實事求是” 사상을 체험하지 못한 筆者로서는 두려웠다는 것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까지 茶山의 實學思想은 많은 학자들의 研究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잘 밝혀졌다고 사료된다. 그러나 茶山의 繪畫史에 있어서는 지극히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 다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라도 茶山의 繪畫史의 평가가 다시 내려져야 한다는 당위에 많은 美術史家들은 동의하여 마지 않는다. 茶山의 繪畫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하여 결론으로 한다.

첫째로 茶山의 예술 형성과정은 자연의 내면적 實體와 투합된 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는 당시 모화사상이 만연한 상황에서 그림을 통하여 경계하였고, 한국화는 한국적이어야 된다는 전환기적인 선비 화가였다.

셋째 다산의 회화는 실학에 입각한 사실주의적 기법과 묘사력을 중시하였다. 다산의 그림속에 담겨있는 畫意는 그 무엇을 심오하게 啓示하고 사색하게 하는 외적 표현보다는 미묘한 정신세계를 표출하였다.

극심한 당쟁의 와중에 휘말려 불운하게 살다간 화가로도 볼 수 있겠으나 다산의 삶은 결코 비극적 생애는 아니다. 茶山의 업적을 기술한다면 사실주의에 바탕을 두고, 여백을 극대화하여 처리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응졸하지도 응졸할 수도 없다는 중국에 대한 저항적 선비 화가로 보아야 한다.

이제는 菴川을 기억할 수는 없으나 초천의 맑은 물 흐르는 소리 들리는듯, 茶山의 체온이 가장 깊게 스며드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예비적 접근이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바란다.

“追” 本稿가 완료될 즈음 “나주 丁씨 월헌공파 종회”에서

1. 「梅花圖」 부채 고대 박물관 소장
 2. 「雨景山水圖」 西江大 博物館 소장
 3. 「山水圖」
 4. 「竹石圖二曲屏」 茶山의 후손 丁學敎 작품
- 사진을 보내주었으나 다음에 다루려고 한다.

參 考 文 獻

1. 槿域書畫徵, 오세창, 학문관
2. 靑丘書畫家名字號譜, 맹인재, 통문관
3. 한국미술의 미의식(회화편), 안휘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美學序說, 백기수, 서울대학교 출판부
5. 다산을 찾아서, 고승제, 중앙일보사
6. 永遠한 墨香, 허영환, 능력개발사
7. 한국미술문화의 이해 김원용, 예경출판사
8. 韓國美術小史, 김원용, 삼성미술문화재단
9. 壹山外史/里鄉見聞錄, 조희룡·유재건
10. 韓國의 文化, 문일평, 을유문고
11. 茶山論叢, 정약용, 을유문고
12. 東洋美術史, 김청강, 을유문고
13. 朝鮮實學의 開拓者 10人, 정약용외, 청구문화사
14. 月軒集(六刊) 나주, 정씨 종회
15. 韓國人の 族譜, 일신각
16. 韓國의 옛造境, 정재훈, 대원사
17. 恭齋公行狀, 윤덕희, 독서신문, 76년
18. 茶山先生의 생애와 업적 나주 정씨 종회
19. 南楊州文化院 10年史, 남양주문화원
20. 楊州郡誌, 양주문화원
21. 잡지 “세대” 76년 5월호(장승업편), 정광호, 세대사
22. 잡지 “세대” 76년 6월호(신윤복편), 최완수, 세대사
23. 잡지 “세대” 76년 7월호(김홍도편), 최완수, 세대사
24. 독서신문(이산해편), 독서신문사 895호
25. 독서신문(신위 편), 독서신문사 79. 11. 4
26. 한국일보(평화회구의 조형적표현), 이경성, 한국일보사 77. 3. 6
27. 한국일보(이상좌의 주유도), 한국일보사, 82. 8. 28
28. 한국일보(尹斗緒편), 한국일보사 81. 7. 30
29. 조선일보(尹斗緒), 조선일보사 82. 3. 4

休庵과 牛溪의 生涯와 文學的 연관성에 대하여

성 희 모*

목 차

머리말

1. 休庵과 牛溪가 살았던 시대상황에 관한 고찰
2. 조광조의 비극과 性理學
3. 휴암의 生涯와 詩世界

4. 우계의 生涯와 詩世界

5. 휴암과 우계의 生涯와 文學的 연관성
맺는말
참고문헌

머 리 말

휴암 백인걸(休庵 白仁桀)과 우계 성혼(牛溪 成渾)은 조선 중기의 성리학자이다. 그들은 한시대를 살면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다. 우계의 부친 聽訟과 休庵은 靜庵 조광조의 문하생으로 성리학을 계승 발전시킨 사람들이다. 그들이 살다간 시대는 당쟁(대윤과 소윤)이 그칠 날이 없던 시대였으며 잦은 왜적의 침입 등으로 나라가 시끄럽던 때였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정치싸움으로 그 시대의 관직생활을 하던 이들은 순탄치않은 일생을 살았음을 엿볼수 있다. 파주에 살았던 분들로서 또한 후학에 힘썼던 두사람에 대하여 연구하려면 우선 靜庵 조광조의 사상을 살펴보아야 한다.

정암은 우리나라 성리학의 宗匠이다.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때 남송의 朱熹에 의하여 집대성된 학문이다. 우주는 理와 氣로서 구성된다는 이원론으로서 宋나라의 사상계의 기초가 되었다. 유교를 새로운 각도에서 재해석하여 유학의 참정신을 구하고자, 우주생성의 원리와 인간의 본성을 밝히고 이에 입각하여 정신의 수양과 윤리실천에 나서야 한다는 학설이다. 성리학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高麗말이었으나 널리 보급되지 못하였고, 조선 초기에도 詞章의 학만이 높이 숭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도 이것에만 치중하

였고 道學은 일반적으로 경시되었다. 그러다가 中宗朝에 들어와 조광조의 개혁정치로 인하여 급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 士林파가 대부분 젊고 정치적 경륜도 짧은데다 개혁을 급진적이고 과격하게 이루려다가, 정치적으로 노련한 훈구세력에게 짓밟히게 된다. 조광조의 영향을 받은 휴암과 우계의 살아온 흔적을 성리학자로서 살아온 생애와 문학적인 면을 통하여 두분의 연관성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1. 休菴과 牛溪가 살던 시대상황에 관한 고찰

甲子士禍이후 연산군의 폭정은 더욱 노골화 되어가기 시작한다. 이에 성희안, 박원종을 비롯 신윤무등이 뜻을 모아 신수근, 신수영 형제와 임사홍을 제거하는 반정거사는 12년 동안의 연산독재 정치를 종식시키게 된다. 이로서 정치의 주도권은 훈구세력으로 돌아갔고, 중종이 왕위에 오름으로서 조선의 정치형태는 성종 이전으로 돌아간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해서 19세의 나이에 조선 11대왕으로 등극한 중종은 왕위에 올랐지만 반정공신 세력에 밀려 조정의 주도권을 장악하지 못한다. 그래서 중종은 이들 공신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신진 士林세력이자 개혁론자였던 조광조를 끌어들인다.

중종은 등극한 뒤 가장먼저 연산군의 폐정으로 말미암아 문란해진 나라기강을 바로잡고 정치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게 된다. 왕의 자문을 담당하던 弘文館의 기능을 강화하고, 經筵을 중시하여 정책 논쟁의 강도를 높이고 春秋科試등을 엄중히 시행하여 문벌세력들을 견제하려 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종이 의도했던 대로만 되지는 않는다. 중종 즉위 4년후인 1510년 領議政직에있던 박원종이 죽어 공신세력의 위세가 위축되면서 한편에서는 반정이후 지속된 개혁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정치여론이 높아간다. 개혁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갑자사화로 밀려났던 사람들로서 그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였다. 중종의 신임을 받기 시작한 조광조는 그와 뜻을 같이하는 士林세력들을 끌어들인다. 이무렵 조광조가 주상께 아뢰는 내용 한가지를 살펴보면

조광조가 相에게 아뢰기를

“性理大全은 채용이 모두 갖추어진 책으로 天文, 地理, 禮樂, 法制, 道德, 性命의 이치

가 모두 다 갖추어져 있으니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을 다른데서 구할 것이 없습니다. 김안국, 이자, 김정등으로 하여금 집에서 강론하게 하고 한달에 세번 홍문관 에모여 진강하게 한다면 聖學에 보탬이 될 것입니다. 김식은 학문이 매우 정통하고 천문과 율령의 이치를 상당히 터득하고 있으니 그또한 이 선발에 넣는것이 좋을 것입니다.”하니 相이 따랐다.

중종은 조광조의 의견을 이처럼 잘 받아주었고 이런 정책을 4년여를 펼치게 된다. 조광조는 유교적 도덕관을 심기위해 여씨향약¹⁾을 실시하고, 또한 科擧制度도 인재등용에 한계가 있다면서 사람들의 천거에 의해 인재를 등용하자는 賢良科²⁾를 실시하여 새로운 士林과 28명을 요직에 배치시킨다.

2. 조광조의 비극과 性理學

조광조의 호는 靜庵 시호는 文政公이다. 死後 선조 임금때에 신원(伸冤)되어 영의정에 추증된 후 문묘에 배향되었다. 후에 그의 학문과 인격을 흠모하는 후학들에 의하여 사당이 세워지고 서원도 설립되었다. 1570년 능주에 竹樹서원, 1576년 회천의 양현사, 1605년 그의 묘소아래 深谷書院에 봉안되었다. 율곡은 그를 김광필, 정여창, 이언적과 함께 東方四賢이라 불렀다. 조광조의 개혁정책은 지나치게 급진적이고 과격해서 훈구세력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 일으킨다. 그는 도학정치 이념을 내세워 임금에게까지 압박을 가하자 중종도 조광조의 급진적 경향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한다. 중종의 이런 심증을 헤아린 훈구파의 남곤, 심정, 홍경주등이 상소를 올리게되고 이를 받아들여 조광조, 김정, 김식등 사림세력을 숙청하였는데 이를 기묘사화라 한다. 이때 백성들이 조광조를 얼마나 신망했었는가를 실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조광조를 대사헌으로 삼았다. 조광조가 法 집행을 매우 공평하고 정당하게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감복하였다. 매번밖에 나갈 때마다 시장 사람들이 말앞에 줄지어 었드

1) 여씨향약: 송나라 학자 여대충이 지었으며, 후에 朱熹가 첨삭하고 주석한 [주자중손 여씨향약]이 널리 유포됨. 이는 유교사상을 기반으로한 일종의 민간 자치규율 이었다.

2) 현량과: 이조 중종때 경학에 밝고 덕행이 높은사람을 뽑던 과거.

려 말하기를 “우리 상전이 이르셨다”하였는데 상전은 노복이 주인을 일컫는 속어이다.

남곤, 심정등은 음흉한짓을하여 죄를 짓고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세력이 급부상하는 士林파에 불기를 원했으나, 사림파에서는 상대를 해주지 않았다. 이에 앙심을 품고 위와같이 장안에 떠도는 말을 洪嬪을 통하여 중종의 귀에 들어가게 한다. 중종은 반정거사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므로 그런 소리가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이에 중종은 조광조를 처벌하기로 결단을 내린다. 이 처사에 대하여 윤희인등이 중종께 올린 내용을 중종실록을 통해서 보면

대사간 윤희인, 전한, 정응등이 面對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며 희인이 아뢰기를 “광조는 처음에 나라의 일을 위하였는데 마침내 큰 벌을 받게되면, 士氣가 꺾여서 국맥이 시들 것입니다. 또 이제 유생들이 망령되게 사체를 모르고서 궐성에 난입하여 통곡하매 곡성이 御所에까지 들리게 한 것은 과연 놀라우나 군사를 시켜 몰아내게 한 것도 차마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생을 대우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가두지 말고 놓아주소서 ”

육조의 판서 등이 면대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며, 승지 김근사, 성운이 아뢰기를 “사람을 형벌하고 사람에게 벼슬을 줌에 있어서 치우치는 데가 있어서는 안되니 더 잘 헤아리셔야 합니다.”

이후 심정등 훈구파의 전횡이 자행되면서 중종 중반기 이후에는 정치적 혼란이 거듭되고, 각종 獄事등이 끊이지않고 일어나게 된다. 그때의 대신들간에 조광조의 일에대해 올린것을 중종실록을 통해 살펴보면,

윤세림, 오결, 이겸, 유형, 윤개등이 아뢰기를

“광조등이 지나치게 천寵(天寵)을 받아 말하면 들어주고 계책은 따라 주셨습니다. 이처럼 신임하시다가 하루아침에 죄주어서 버리시니 그 연유를 모르겠습니다. 신등은 감히 취직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조 등을 다시 사용한 뒤에야 직사를 돌볼 수 있습니다. 10여년 동안 聖學의 공이 전혀 없으므로 신등이 취직하더라도 有爲할 수 없으니 사직을 청합니다.”

하니 相이 이르기를

“광조등은 내가 과연 조정의 일을 함께 할수 있다고 믿었으나 물정에 어그러지는 줄 모르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물정이 이러하니 따르지 않을수 없다. 大諫, 侍從은 그중에서 죄줄 만한 자를 추열해야하므로 이미 갈았으니, 이제 복직시킬 수 없으며 또 이미 죄 주었으니 도로 놓아주기도 어렵다.”

이로써 조광조의 개혁정치는 막을 내리지만 그의 도학정치는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그 개혁에 대한 평가는 후에 名宰相 이율곡의 [석담일기]에 “趙文政公은 賢哲한 자품과 經世治民의 재주를 가졌으면서도 학문이 채 대성하기도 전에 갑자기 정치의 要路에 올랐기 때문에, 위로는 임금의 그릇된 마음을 바로잡지 못하였고 아래로는 權門勢家들의 비방을 막지 못했다. 그리하여 막 충성을 베풀려 하는데 참언(讒言)들이 바로 생겨 목숨을 잃게되고 나라는 어지러워지게 되었다.”고 잘 드러내주고 있다.

그렇다면 조광조가 그렇게 빠져들었던 性理學은 어떤 學問인가, 조광조는 무오사화로 유배 중이던 김굉필의 문하에서 학문을 배웠으며 사마시(司馬試)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들어간 인물로,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당시 사림학자들 사이에서 추앙 받는 급진세력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조광조는 김굉필이 순천으로 移配되기 전까지 2년동안 철저한 도학주의적 실천사상을 배운다. 조광조는 그에게 매료되어 미친 사람처럼 빠져들어 當時 사람들에게 미친놈이라거나 화태(禍胎)라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했다.

성리학은 宋 明시대의 유학이라 지칭된다. 성리학은 程朱學, 朱子學, 陸王學, 陽明學, 理學, 道學등으로 불리는데 정호, 정이 형제와 주희, 왕수인등이 이 학문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나라는 高麗말 쯤 안향이 처음으로 소개를 하였으며, 정몽주에 의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다. 본연의 性을 발현하기 위하여 物에 대한 理를 참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설로, 우리나라에서는 후기 사림파들이 이론탐구의 주역들이다. 특히 이황 율곡간에 그리고 성혼과 율곡사이의 四端七情³⁾에 대한 이기해석론이 벌어지게 된다. 朱熹의 主理說이 主氣說을 누르고 정통시 되는데, 朱熹의 이론과 다르면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 탄압을 하기도 했으며, 유교의 三綱五倫식 예의에 어긋나는 천주교의 세계관과

3) 四端七情: 仁 義 禮 智에서 우러나는 惻隱 羞惡 辭讓 是非의 네가지 마음씨와, 사람의 일곱가지의 감정 喜 怒 哀 樂 愛 惡 慾에 대한 이기해석론으로서 16세기 후기 士林파들이 성리학 이론탐구의 주역들이다. 정지운이 天命圖에서 퇴계와 논의하여 四端과 七情은 理에서 發하고 氣에서 發한 다고한 해석이 발단이 됨. 후에 퇴계와 고봉 사이에 율곡과 성혼사이에 이에 대한 검토는 무려 300년에 걸쳐 계속되었다.

윤리관이 기존사회의 질서를 파괴시키는 근본원인이라고 배척하였다. 이들의 사고나 태도가 보수적이긴 하지만 위기에 선 국가의 기운을 공고히 하려한 애국심의 발로였음을 인정해야 하겠다.

3. 休庵의 生涯와 詩世界

휴암은 1497년(연산군3)서울 동숭동부근에서 태어나 1597년(선조12)까지 살았다. 선생의諱는 仁桀, 字는 士偉, 號는 休庵, 본관은 水原이다. 휴암은 忠肅公이란 익호를 임금으로부터 받았으나, 그후 士林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文敬公으로 되었다. 휴암은 大司成 김식, 조광조의 門下에서 수학하여 학덕을 넓히고 文科에 급제 평남현감, 양주목사, 홍문관교리, 대사헌, 성균관 대사성, 의정부 우참찬등 中職을 거치면서 학정일치의 仕官論을 실천하였다. 태어난지 1년이 못되어 부친을 잃었으며, 그후 얼마아니하여 연산군의 昌慶宮 확장공사로 집이 헐리게 되고 편모슬하에서 형과 함께 어렵게 살았다. 선생은 효성이 지극하여 홀어머니가 샴바느질로 생계를 이어갔는데 어머니가 잠들기 전에는 잠을 자려하지 않으



사진1. 파주군 향토유적 제1호 용주서원
백인걸·조감·김행·백유함·신제현을 모셨으며 휴암이 살며 제자들을 가르치던 곳

므로 어머니는 짐짓 자는 체하다가 일어나 갓 등을 씌우고 바느질을 했다고 한다. 그런 빈한한 살림 속에서도 선생은 학문에 뜻을 세워 처음에는 金湜선생에게 수업하다가 다음에는 靜庵 선생에게 배웠다. 정암 선생 곁에 書堂을 짓고 스승을 위함인父母와 같이 하였다. 그러다 선생의 나이 23세 되던해에 己卯士禍가 일어나 스승과 名流들을 모두 잃고서 한때 금강산에 들어가 마음을 위로하였고 그후 스승 조광조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추호도 어김없이 살았다. 선생이 坡州의 월룡산 밑으로 내려와 살게된 때가 이때부터가 아닌가 추측한다.

휴암은 중종 3년(선생나이 35세)에 家勢로 인하여 벼슬길에 나서게 되었고 명종이 즉위하게 된다. 이때 명종의 외숙인 윤원형 일파는 회대의 惡后 文定王后와 함께 명조의 이복형이며 인종의 외숙인 尹任과 유관, 유인숙등을 역모로 몰아 사사케 하는 乙巳士禍가 일어난다. 문정왕후는 정사에 간여하며 기강을 혼란하게 만든다. 이때 왕후의 密旨가 내려졌을 때 휴암은 이密旨의 부당함을 “國家之事，當出於公明正大，今罪此三人，而不廷議，不列罪名，后弟奉密旨行事，何以示後世云云”이라며 통렬히 탄핵하다가 下獄되었다. 그러나 重臣들의 極諫으로 極刑을 면하게 되고 파직과 동시에 파주로 歸鄉하였다. 그로부터 2년 후인 丁未년에 양재 壁書事件이 일어난다. 이 사건으로 士林들이 혐의를 받아 유배당하였는데 선생도 그때 安邊으로 귀양을 갔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文才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 무렵쯤 어떤 사람이 그 이름을 숨겨 글을 보내왔는데

가을비는 몽몽하여 이미 장마 되었는데
美人이여 무슨일로 홀로 마음 상하는고
비단소매 다 젖어서 못쓸 것을 알린마는
우리님 밤에 멀어감이 다만 한되네.

後에 알고 보니 그는 閔達衷이란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명종 6년(선생나이 55세)에야 유배에서 풀려나 다시 파주로 돌아왔다. 파주에 돌아온 15·6년간은 선생이 물질적으로는 넉넉치 못했지만 일생에 가장 意義 깊었던 때가 아니었나 싶다. 太極圖說과 程朱學의 서적들을 깊이 연구하였고 후진 양성에 즐거운 세월을 보냈기 때문이다. 선생의 사는 형편이 좋을리가 없었을 것이다. 이에 경기감사가 주상께 그 곤궁한 형편을 글로 올리니 약간의 먹을 것과 물건을 下賜했다. 그일에 대하여 선생이 감사하고 趙靜庵을 문묘에 從祀할것을 청했으나 선조 임금이 답하고 이르기를 “적은 물건을 보냈으니 사양치 말것이며 문묘배향은 일이 重大한 일임으로 지금 가벼이 논의키 어려우니 경은 잘 알아 차리라”고 하였다.

선생의 同門인 聽松 成守琛도 7년전 파주로 내려와 竹雨堂을 짓고 파산에 살고 있었다. 청송이 그의 아들 牛溪를 보내어 학업을 닦게 한것도 이 시기였다고 하는데, 그 보고 해득함이 범상치 아니하여서 畏友로 대했다고 한다. 이 무렵 쫓아있던지 선생이 성혼의 부친 성수침의 ‘환산을 전송하며’라는 詩 한 수를 들어보자.

적막한 거친마을 *小微가 숨겨있네
 쓸쓸한 적은돌길 사립문에 다왔구나
 마음은 물과같이 세간으로 빠져나고
 생각은 白鶴되어 강물위를 날고싶네
 山은 客窓에 아롱거리고 구름은 방안에 드는데
 비는 책상에 뿌리고 낙엽은 휘장에 치누나
 초연한 마음으로 벼슬길을 던졌으니
 塵土인들 깨끗한 옷에 물들리도 없으리

*小微：小微星으로 處士를 상징함.

세상이 어수선했기에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고 맑고 처연하게 살아가는 성수침을 생각하며 적은 글이다. 선생도 벼슬을 버리고 은거하고 있을 때였으니 말없음 가운데 통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이외에도 선생의 청송에 대한 우의는 대단히 깊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에게 보낸 글 두편을 소개해 본다.

成守琛에게 보낸 글

삼가 절하며 安否를 묻나이다. 全般에 惠翰을 받아보니 10년동안 보고싶던 마음이 일시에 풀리어 즐겁고 다행한 생각은 잠시도 떠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한때의 말로는 쌓인 바를 모두 펴지 못하여 나의 생각을 다 말할 수는 없으나 表表한 회포는 도리어 보통 때보다 배가 더합니다. 莢은 일로써 서방 산지에 있으나 가을 초에 단천의 선영을 성묘하고자 하오니 만일 이 願이 이루어진다면 고헌에 올라가 다시 玉音을 들을것이 莢의 소망입니다. 다행히 乾魚 한 마리를 얻어서 보내오니 물리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奴子가 일로 인하여 내려감으로 감히 問安의 禮를 닦으오며 더 갖추지 못합니다.

成守琛에게 보낸 글

새해에 많은 복을 받을것을 연상하오며 경하하는 요즈음에 비겨 살피오니 前의 병이 아주 낫지를 못했다하니 우러러 恨됨을 무어라 말하겠습니까. 傑도 역시 학질에 걸려서 혹은 덜했다 혹은 더했다하며 지금 3년이 되었는데 요사이 또한 더욱 심하옵니다. 민망하게 된 것은 한 고을 안에서 때때로 往拜치 못하고 헛되이 役役하여 세상일에 구애됨이 한스럽습니다. 날이 따습고 日氣가 평온함을 기다려서 마땅히 나아가서 목은 회포를 펴 보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엿드려 下照를 생각하며 삼가 書狀을 올립니다.

初3일

이 때쯤이었던지 선생의 유작중 병중에 지은 詩 한 首가 있다. 노구의 몸으로 生老病死의 무상함만을 탓하지 않고 내면의 외로움을 시로써 승화시키며 산 고고한 정신은 휴암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준다.

[病中에 지은 시]

聖功을 함양하니
靈丹보다 더욱 좋네
和氣가 배가운데
한덩이로 發하는구나
늙은 病의 昏妄함이
간단없이 일어나니
즐거이 먹기나하여
여원얼굴 구해보리

명종 20년(1565)에 문정왕후가 돌아가고 윤원형등이 제거되자 乙巳이후의 화를 입은 사람들이 모두 풀려나게 되고 선생도 다시 國事에 임하게 된다. 선생은 내직의 잔 벼슬을 거쳐 명종 말년에는 양주목사에 임명되어 공납의 폐단을 개척하는 등의 치적을 쌓는 선정을 베푼다. 後에 양주고을 사람들이 선생의 뜻을 기리며 기념비를 세웠다.

휴암은 宣祖가 등극하면서 대사간에 임명되고 사조참의, 성균관, 대사성등을 거쳐 의정부, 우참찬의 중직에까지 올랐다. 그 동안 선생은 자주 사퇴를 마지않았으나 선조가 부

득이 허락지 아니하였다. 선조 즉위 이후로 선생은 기묘사화후 명종 대까지 계속되는 훈구세력에 맞서 士林과의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獻納때 密旨를 논하는 啓]

上으로부터 政事를 할 때는
비록 적은 일이라 하더라도 마땅히
光明正大하게 해서 國民으로 하여금
모두 알게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 乙巳 8월 23일 -

선생은 스승인 靜庵선생을 문묘에 從祀하게 해달라는 疎를 여러번 올린다. 1545년 乙巳 士禍때는 一身을 돌보지 않고 윤원형의 음모에 대항한 것을 후대사람들은 길이 칭송하였다. 율곡과 함께 東西黨爭의 폐를 논하고 군비강화를 강조하였다. 임금을 섬김에 정의로써 다하니 이름처럼 결백하고 어질고 뛰어났다고 당시 사람들은 評 하였다. 동지춘추관사로 <명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선조때 耆老所에 들어갔으며 청백리에 뽑혔다. 선생은 학자들과 더불어 토론과 분석을 계속하면서도 이를 낙으로 삼았기에 피곤을 몰랐다고 하였다. 율곡은 석담일기에서 “나이가 80인데도 학문을 연구 하기에 애쓰며 토론하기를 좋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지않는 사람은 오직 이분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선생의 나이 82세가 되어 耆老所⁴⁾에 들어갔다. 특히 성혼 율곡과는 同鄉의 후배로 교유가 가장 많아 만나면 道學을 얘기하고 시사를 논하기를 좋아하였다. 왕께 이들을 중용케 하여 王道政治의 구현을 역설하고 시사에 관한 上疏로서 간혹 율곡을 시켜 代作케 한 일도 있다. 이때 정암선생을 문조에 從祀할것을 율곡에게 代作시킨 일을 가지고 東人측이 들고일어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선조는 일찍이 휴암의 인격을 높이 평가하여 [忠節貫日月 節義凌水霜]이라고까지 하였다. 역시 훌륭한 선비가 되려면 그의 뜻을 알아주고 지지해주는 임금 밑에서라야 빛남을 알 수 있다. 중종이 조광조를 계속 기용했었다라면 도학정치와 사상은 좀 더 일찍 뿌리를 내리고 정국이 안정되었을 것이다.

4) 耆老所 : 이조때 나이 많은 노인들 예우하는 뜻으로, 임금과 正二品 70세 이상의 文官이 入參하여 記名하던 곳.



사진2. 경기도 지방문화재 제58호 휴암
백인걸 선생의 묘

당대의 휴암은 士林으로서의 지조와 긍지로 일생을 마쳤던 분이였었다. 그후 선생의 학문과 덕행을 후대에 길이 기리기 위하여 전남 나주의 蓬山書院, 위패를 모신 坡山書院, 선생이 살던 집터자리에 세운 龍州書院에 배향이 되었으며, 저서로는 休庵集이 전한다. 선생의 부음소식을 들은 왕께서 下敎하여 말하기를 “賢宰가 죽으니 내마음은 지극히 驚動되노라 朝會를 2일간 철폐하게 하라”하시었다. 선생의 묘소는 양주에 있으며 경기 지방문화재 58호로 지정되었다.

이제 선생의 詩 몇 수를 들어보며 선생의 마음을 느껴보기로 하겠다.

[景受에게 준 詩]

東西로 떠서도는
있잖같은 이 한몸이
索居하니 伴侶없고
집도 또한 가난하네
산림에서 양성하니
맑은세상 생각이요
한잔술에 마음달래
주인만을 괴롭히네
달을보고 글 읊으니
모두가 즐거이요
봄놀이 가을감상
영원토록 이웃되리
시골집에 홀로누워

평생일을 회상하다
홀러간 구름보며
꿈속으로 들어갔네

山자락 밑의 적막한 집에 홀로 누워 自然과 하나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여유자
적한가. 한잔술에 마음을 달래며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는건, 한유로운 내면의 모습이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세계이리라. 휴암의 시는 모두 8편이 전해진다.

[朴 湖 壽 席에 和合함]

여러노인 모아두고
수연을 베풀는데
윗자리에 앉을사람
地上仙을 칭송하노라
모두가 장수하여
千百이 넘으리니
元豐年間* 옛일들도
정말로 이랬으랴

* 宋나라 元豐年間に 있었던 耆老所

4. 牛溪의 生涯와 詩세계

선생의 휘는 渾, 자는 浩原, 호는 默庵또는 우계이며 본관은 昌寧인이다. 선생은 1535년
서울 順化坊(현재의 順化洞)에서 태어나 9세 되던 해에 부친을따라 淸주로 이주하여 아버
지로부터 글을 배웠다. 15세때에는 經史에 博通하고 문사에 뛰어났다. 17세에 順천군수
신여람의 딸과 혼인하였으며 進士양시에 급제하였는데 그는 복시는 보지 않고 학문에만
전심하였다. 우계는 당시 시험장에서 울타리에 구멍을 뚫어놓고 드나들게 함을 보고 부끄
럽게 여기며 일생 과거를 포기하였다고 한다. 이해 겨울 부친의 권유로 휴암선생에게 가

서 尙書를 배웠는데 보고 깨우침이 범상치 않아 畏友로서 대했다고 한다. 어느 날 우계의 집에 휴암선생이 찾아왔던가 보다. 그때 선생을 배웅하며 쓴 詩한편이 있다.

[休庵선생을 배웅하며]

일만산이 중첩한곳
외롭고 쓸쓸한 마을
복숭아꽃 흐르는 물은
東門밖에 아름다운데
이제부터 돌밭길은
깊숙하고 가늘구나
말없이 오신어른
참뜻의 근원되리

牛溪는 많은 시와 시조를 남겼다. 주로 自然과 人事에 대한 시가 많은데 사람에 대한 시중에는 栗谷에 대한 시편이 제일 많고, 다음이 松江, 심의점, 退溪에 관한 시편들이 전해진다. 20세에 율곡과 사귀게되어 평생의 知己로 지내게 된다. 그중 율곡을 만나서 밤 깊은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눌때의 심정을 노래한 詩 한편을 들어보자

풀뿌리 찬 이슬이 몸에 닿아서
고통스런 소리가 밤새도록 요란하구나
저 벌레들도 타고난 본성 제대로 다 하는데
靈長이란 사람이 부끄럽기만 하다.

한가지 일도 못 이루고 병만 앓는 이 몸인데
밤새도록 벌레소리 듣고 앉아만 있었네
쓸쓸한 옛날 마음 그대로 있는데 지는 달빛도 옛날 같구나.

미물이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운다고 우계가 말한다. 이에 율곡은 지각이 많은자는 이 해를 찾아 편한데로 나가기 때문에 본성을 다하지 못하지만 미물인 귀뚜라미는 겉치레를

하지 않기 때문에 타고난 천직을 다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우계는 살아가면서 자연과 친구를 그리워하는 詩를 많이 쓰게 된다.

21세때 큰 병을 앓은 뒤 비장(脾臟)이 虛하여 평생 고질로 되었다. 25세에 차남 문준이 출생하였으며 뒷날 休庵의 외손녀와 혼인을 하게 되고 이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 신민일에게 출가한다. 27세에 모친상 30세에 부친상을 당하여 6년간 侍墓살이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다. 그후 宣祖가 즉위하자 穆淸殿참봉 적성현감등으로 불렸으나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 그해 우계는 退溪를 만나게 된다. 그 뒤 우계는 퇴계의 학문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분이 벼슬을 버리고 시골로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기관귀산이란 시로써 이별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己巳년 늦은 봄철에
退溪가 그만 시골로 돌아간다고.
서울에 宗仰이 없어
선비를 의탁할 바 잃었구나.
大老도 복이 없어서
천운이 쇠한때를 만났었다.
산중에서 남모르게 탄식하니
한밤중에 눈물이 쏟아지네.

聞退溪先生 棄官歸山己巳

우계는 그후로 계속 퇴계의 이론을 지지하게 된다. 이제 나이 들고 천운이 다해 시골로 내려가게 된다는 소리를 듣고 산중에서 남모르게 눈물을 쏟는다는 시이다. 우계는 퇴계의 영향에 크게 감명을 받았다. 退溪는 우리나라 성리학의 큰 봉우리로 남게 되는 분이었으니 그분을 흠모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우계의 나이 34세에 조헌이 찾아와 배우기를 청하였다. 그후 명성이 날로 높아가서 사방에서 학생들이 모여들었다. 37세 때에 僞學之方에 관계되는 朱子의 글을 발췌하여 가르치고 書室 22조를 지어 벽에 걸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해 천마산을 돌아보고 오던 길에 花潭의 옛집을 방문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다.

10년동안 이름만 듣고 못 보았더니
 오늘 아침 이 몸은 이 산에 들어와 있구나
 참으로 아는 경지 정신집중에 있는 것이어서
 옆 사람에게 말해 보았자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

— 遊 天磨山 —

천마산을 다녀오며 서화담의 집에 들렀을 때의 감회를 적은 시이다. 그는 마음으로 존경하던 분이면 故人の 집이라도 찾아가 살아온 자취와 지혜를 느끼고자 했던것 같다. 옆에있는 사람에게 말해보았자 의견이 통하지 않는다 함은 화담에대한 우계의 깊은 정을 사람들이 이해하려들지 않을 것이란 외로운 시인의 마음, 유람하는 자연인으로서의 외로움을 나타낸 것이다. 牛溪의 나이 38세가 되던 선조5년 율곡과 9차례나 서신을 주고받았다. 그것이 성리학자들 사이에 300여년간 계속되어온 사단칠정에 대해 論한 것이었다. 선생이 율곡에게 보낸 서신 중 第一書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

“人心 道心の 發은 그 所從來에 있어서 진실로 主理와 主氣는 같지 아니한 것이다. 옛날 많은 理論이 없을 때에도 이미 그런 說이 있었으므로 성현들의 宗旨는 다 兩下說로 하였으니, 지금 四端 七情의 圖를 만들면서 사단은 發於理, 칠정은 發於氣라 한것이 왜 不可할까? 그리고 퇴계가 四端理之發, 七情氣之發이라 하여 互發을 발하고 있는 것이 이에 천하의 定理가 되어있으니, 퇴계의 견해가 저절로 正當한 것이 아닐까. 그러나 퇴계가 氣隨之 理乘之라 말한 說은 너무 설명을 길게 붙여 名理를 잃은 것 같다. 내생각으로는 사단과 칠정을 對學해서 말할 것 같으면 四端發於理 七情發於氣라 可하지만, 性情의 道를 그럴때에는 分開해서는 부당하다고 본다. 다만 四端 七情을 모두 精圈안에다가 놓고 四端은 七情중에서 理一邊만 가리켜 말한 것이고, 七情의 不中節은 이 氣가 過하거나 不及하여 악으로 흐른다고 말할것 같으면, 理氣의 發을 혼동하지도 아니하고 또 理氣를 分開하여 두갈래로 하는 근심도 없을것이 아닌가 싶다.”

다음해에는 공조좌랑을 거쳐 司憲府持平을 역임하였으며 선조 7년에는 모든 것을 사직하고자 하였다. 그랬으나 다음에도 계속 工曹正郞에 제수되고 소명이 내려져 사직疎를 올려도 허가되지 않았다. 이에 우계는 부득이 소명에 의하여 서울로 향하던 중 고양까지 갔다가 주상이 율곡의 諫言을 거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중도에서 돌아오고 말았다. 그후에

도 掌令등으로 계속 부름이 있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선조 14년인 47세에 宗廟令으로 상경하였다가 遍任되었으나 귀향을 허가하지 않았다. 왕으로부터 급록이 아닌 週給의 특은으로 미곡의 하사를 받기까지 하였다. 다음에도 계속하여 전직이 되었으나 萬餘言에 달하는 장문의 봉서를 올려 그 채납여부로 자기의 거취를 정하려고 하였다. 대개 학문의 요청으로는 “심신을 수습하여 정신을 保惜하고 응정(凝定)에 전일하여 지기를 항상 맑게 하고 의리를 빛나게 할 것”을 강조하고 군자와 소인을 등용함에 따라서 치세가 결정된다고 역설하였으며, 또 役法과 공법의 민폐를 논하고 경장을 역설하여 혁폐도감(革弊都監)의 설치를 제의하였다. 그러나 우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렇다고 귀향이 허락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때 심정이었던지 우계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에 머물고 싶어하는 시들이 많다.

구름 덮인 강과 하늘은 칠흑인데
바람이 일자 휘날리는 눈은 어둠속에 쌓였다.
멀리 초가집 한 채 보이는데
오솔길 따라 깊은 숲에 들어왔네

—自京日暮冒雪坡山—



사진3.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0호 파산서원, 성수침
백인걸, 성수증, 성혼의 위패가 모셔져있음

서울에서 해질 무렵 한강을 지났으니 하늘은 칠흑처럼 어두울 것이다. 바람이 일고 눈은 흩날리고 있다. 멀리 보이는 초가집은 선생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집이 오솔길 속에 있는 것이다. 선생은 길 떠난 나그네처럼 고향을 찾아왔고 숲길을 접어드는 것이다.

선생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도 고향에 머무는 생활이 허락되지 않는다. 이어 특별히 經筵의 출입을 명하고 典設司守등을 역임하게 된다. 그러나 우계는 오로

지 사임하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선정전에서 왕을 뵈고 고향에 내려가는 允許를 얻어 坡山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후에도 계속 제명(除命)이 따랐으나 그때마다 병이라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그러다가 율곡의 상경권유로 史曹參判으로 특은되어 謝恩하지만 선조 17년(1584)정월 율곡이 사망하므로 귀향을 바랐으나 불허되었고 우계는 사실상 西人의 가장 책임있는 지도자가 되었다. 율곡이 조정에 나가 벼슬하는 것을 “시국을 걱정하여 숨어살지 못하고 풍악에서 수양하다 재량이 되었다”고 표현한 詩도 있다. 젊은 나이에 만난 평생지기로 생각했던 벗을 잃은 슬픔이 어떠했는가를 挽詞에 이렇게 적고있다.

관직없는 것이 좋치 않으나
몸이 한가롭고 글도 읽을 수 있다
산과 들에 너그럽지 않느냐
마음 놓고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
무슨일로 갔다 다시 돌아와
末路에 이르러 왜 머뭇거렸나
志士도 성취함은 적은 것
하늘은 어떻게 생각했으랴
大道가 끝내 감감해져서
생민들이 의탁할 바를 잃었구나
모르는 듯 혼자하는 것이 지혜롭고
숨쉴 부르는 것은 도리어 어지럽기만 하네
그대가 남긴 한은 한량이 없고
나의 노래는 왜 이렇게 슬플까
살아 있음이 고통인 줄 알겠구나
太虛로 돌아간 것이 한없는 즐거움
얼마후 지하에서 만날 것이니
길이 길이 처음 뜻 이루어보게

— 挽栗谷 甲申春 —

율곡의 죽음을 대도가 감감해지고, 생민들이 의탁할 바를 잃었다고했다. 또한 그의 재주와 경륜에 대하여는 모르는 듯 혼자하는 것이 지혜롭고, 재주있고 숨쉴있는 사람을 불

러 같이 일을하는게 더 시끄럽고 어지럽다고 말하고 있다. 율곡의 안팎을 속속들이 이해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친구인 율곡이 죽으니 한없이 서럽고 너무슬퍼지기 때문에 차라리 살아 있는게 고통스럽다고 했다. 죽음의 세계로간 친구를 얼마후 지하에서 만나 뜻을 이루어 보자고 한다. 얼마나 돈독한 우의를 지녔었는가를 엿볼수 있다. 이때 율곡과 더불어 파산을 드나들던 사람으로서 심의겸이 있었다. 그는 서인의 명수로 明宗의 妃 인순왕후의 동생이었으나 정인홍의 탄핵을 받는다. 그때 율곡의 변호로 무사하게 된 사람인데 세사람은 마음을 열고 지내는 사이가 된다. 그 벗을 잃고서 挽詞를 지었는데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는 복잡한 세상에
그대는 나그네처럼 서로 만난 옛 친구였다.
오늘 갑자기 노래 한 곡 부르면서
그대를 산으로 보내 누워 잠지게 한다.

— 挽沈方叔義謙 —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런 세상에 나그네처럼 만난 한 친구를 보내고난후의 심정을 노래하고 있다. 오늘은 네차례 내일은 내차례인 인생, 인생의 모든 것을 초연하도록 슬픈 마음으로 읊은 이 시는 옛친구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己丑獄事로 西人이 득세하게되자 東人의 최경영이 갑자기 죽게되자 화살이 우계에게 집중되지만 그는 도리어 정철에게 최영경을 구원하는 서간을 보내기까지 하였다. 그는 정철과도 가깝게 지낸 친구였다. 친구인 松江 정철에 대한 詩는 그 시의 운을 松江의 시에서 따왔다고 적고 있다.

저 아름다운 松江물은
가을이 오면 밀바닥까지 깨끗하여
湯盤과 같이 날마다 목욕하면
마음속도 따라서 명랑할꺼야

— 次鄭松江徹韻 —

자신이 살고있는 쇠내의 물과(牛溪) 송강의 물(松江) 두사람을 서로 물에 비유한 시이다.

물과 같이 마음속까지 깨끗하게 살자고 우의를 다짐하는 것같이 읽는 이의 마음도 맑아지는 느낌이다. 송강은 性情이 과격하고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한 성격이었다고 한다.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 松江의 母夫人인이 상을 당하자 挽詞를 지어 바친다. 송강은 부모에 대한 효도가 지극했다고 한다. 선생이 마음을 주고받던 친구였으니 자신의 부모가 돌아간 것처럼 슬픔이 일었을 것이다.

선조 24년에는 율곡집을 편정(編定)하였다. 평생지기로 살고 싶었던 친구 율곡을 생각하며 그 일을 하였을 것이다. 선조 25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선조가 임진강을 건너 蒙塵을 갈 때 집이 산중에 있어서 나가 뵈지를 못하였다. 훗날 이일을 가지고 임금께 엄책하는 批答을 듣게된다. 그러면서도 備局堂上에 임명이 되고 사임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을 하지 않는다. 우계는 그후 좌참찬과 비국당상을 겸하게되어 便宜時務 14조를 올렸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 무렵 明에서 대왜강화를 요구하였을 때 首相유성룡과 함께 명나라의 요청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아뢰었다가 임금의 강렬한 반대에 봉착하였다. 우참찬으로 전직이 되었을 때 사직 소와 자해소등을 올리며 퇴임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윤허되지 않는다. 그러다 왜적과 내통하는 강화를 주장하는 일이 있다며 왕은 備忘記를 내렸는데, 여기서 유식인의 동조자가 있었다고 은근히 우계를 暗示하였다. 이에 선생은 용산으로 나와 乞骸疏⁵⁾를 올리고 병으로 軍職에 編任 되자 西江을 출발하여 연안의 角山에 우거하였다. 이때 우계는 사실상 朝廷을 영영 떠나왔던 것이다. 벼슬살이를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심정을 우계는 다음과 같이 적는다.

만첩 산 속에 병들어 누웠던 몸이
山野에 돌아오니 생각이 새롭구나
임금님 은혜 보답할 길이 없어
나중에 죽어서 結草하는 사람 되겠다.

— 還 坡山 —

병든 몸으로 더 이상의 벼슬을 감당할 수 없어 산속에 있는 집으로 돌아온다. 돌아오고 보니 임금을 잘 모시지 못한 후회의 마음이 이는걸 죽어서라도 결초보은 하겠다는 마음으로 적고있다. 그후 선조29년 결국 대왜강화가 추진되자 황진은 서신으로 우계의 선견지명을 칭찬하였다. 다음해 정유재난이 터지고 서울에 騷動이 일어나자 우계는 죄명이 무겁

5) 결해소 : 나아든 宰相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기를 임금께 청하는 疎

다하여 나가지 못하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였다. 우계의 대표시라고 할 수 있는 시 한수를 들어보기로 하자.

말없는 청산이요 樂없는 유수로다.
 값없는 청풍이요 임자없는 明月이라
 이중에 병없는 몸이 분별없이 늙으리라.

선생이 自然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가 잘 드러나는 시이다. 말없는 청산을 보며 임자없는 달을 노래했으니 우계의 몸과 마음은 자연과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된채로 그렇게 살다간 것이다. 그러다가 病이 다시 심해져 선조 31년 6월 6일 파산서당에서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묘소는 파주읍 향양리에 있으며 파산서원에 배향되었다. 우계는 그후 선조 35년 기축옥사와 관련시켜 삭탈관직의 가혹한 조치가 단행되었으나 인조 11년 복관(復官)사제 되었고, 좌의정의 贈職과 文簡公의 시호가 내려졌으며 숙종 8년(1682)에는 율곡과 함께 成均館 문묘에 모셔졌다.⁶⁾ 그러다가 숙종 15년 일시 그쳤다가 다시 숙종 20년 승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저서로는 牛溪集 . 元集 . 續集이 있다.



사진4. 경기도 기념물 제59호 우계 성혼 선생의 묘

6) 성균관에 모셔진 한국의 18賢 : 설총·최치원·안향·정몽주·김굉필·조광조·이황·성혼·이이·정여창·이언적·김인후·김장생·조헌·김집·송시열·송준길·박세채

5. 휴암과 우계의 문학적 세계의 批評과 聯關姓

휴암의 詩는 모두 8편이 전해진다. 휴암은 문학자이기 보다는 학자이며 정치가이다. 곧은 直言을 잘한 청백리의 사회개혁의 思潮로써 더 명망이 높은 사람이다. 한국 유학의 도학정신을 부르짖으며 立言·立德·立功의 사표로서 참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위로는 조광조를 스승으로 아래로는 우계와 율곡에게 도학을 이어준 공적을 높이 살만하다.

선생이 남긴 시중 몇편의 시세계를 통하여 본바에 의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자연의 질서 속에서 논하였다는 것이다. 학문이 이르지 않음과 때가 이르지 않았음을 마음으로 다스릴줄 알았고, 생각은 白鶴이되어 강물위를 날고싶다는 대목은 선생의 참모습이 아닐까 해진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해보겠지만 세상에 초연하게 살기란 쉽지않은 것이다. 휴암은 어진정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한 사람이다. 선생의 시는 문학적인 면에서 보자면 어떤 깊이는 없다하겠으나 선생의 생각과 사상을 느낄수있어 의의가 깊다 하겠다. 휴암은 정치와 문학 그리고 생활의 세계를 조화롭게 접목시키며 살다간 스승다운 풍취가 풍겨오는 사람이다.

우계의 전해오는 時調와 漢詩는 여러편이 전해진다. 젊은시절에 지었던 것들을 기억나는대로 적은 것이 그정도라고하니 그는 정치가라기 보다는 학자이며 문장가라야 더 어울리는 사람이다. 그가 바라던 바대로 자연속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더많은 시를 남기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 끝내 벼슬을 마다하고 문장과 후진양성에 더많은 세월을 보냈더라면 그시대의 문학적 세계는 좀더 달라졌을 것이다.

우계의 詩는 儒家的인 修己를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이에서 창작된 詩가 선생의 성리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다. 또한 선생의 인생철학이 배어있는 시를 접하면 자연속에서 철학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수있다. 시골로 내려가는 퇴계와 서화담의 생전에 살던 집터를 둘러보고, 율곡과의 지새우던 밤을 생각하며 지은 詩들은 그가 바로 사람들과의 情을 얼마나 소중히 하였는가를 나타내준다. 고향을 두고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친구의 죽음을 생각하며 살아있음을 고통이라할 정도로 애달파하는 일면에서 그의 마음이 여리게 다가온다. 그는 말없는 청산과 달을 보며 자연과 하나되어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다.

두분의 詩世界를 밝아보면 자연과의 교감에 있어서 堯化시중과 같은 마음이었음을 느끼게 한다. 그 시대의 학자들은 道德과 志操등을 인간이 지녀야하는 덕목으로 꼽았다. 그

렇게 자연속에서 자신을 깨우치다보니 마음으로부터 많은 시들이 나왔고, 선비와 같은 길을 걷는 학자치고 문장가아닌 사람이 드물었다. 그것은 곧 詩란 창작이고 여러생각과 시각이 가슴 깊은곳으로부터 마음의 교감이 용어리되어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두 분 모두 安貧樂道의 마음으로 자연을 즐기며 후학들에게 귀감이 되게 살아간 것 또한 같은 점이다.

맺 는 말

休庵과 牛溪는 당쟁과 외세의 침입으로 조용할 날이 없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휴암과 우계는 성리학을 따르던 학자들이며 조광조의 몰락으로 坡州라는 한지역에서 마음을 달래며 시를쓰고 후학에 힘을 쓰며 깊은 인연을 맺게된 인물들이다. 게다가 두사람은 학문으로서 스승과 제자가되며, 인맥으로는 우계가 휴암의 손주사이로 만나게되는 인연까지 맺게된다.

두사람의 살아온 흔적을 살펴보면서 연관성을 찾아보면 自然의 본질이 母胎가 되었음을 알수있다. 그들은 그렇게 자연속에서 살면서 세상일에 임함에 있어 ‘用之則行 舍之則藏’ 즉 써주면 행하고 버리면 숨는 전형적인 학자의 자세로 살다간 사람들이었다. 어느 시대고 正道를 걷는 학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았음을 알수 있다. 그 시대의 학자들은 자연속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自然의 이치에 맞게 경륜이 쌓였다고 생각하면 세상에 나가 벼슬을 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벼슬길에서 물러나 인격을 수양하였다. 그렇게 자연속에서 살다보니 마음에 여유가 있었음은 물론이고 글쓰는 것은 기본이었던 것 같다.

中宗은 나라를 다스림에있어 등극초기에 조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중종은 조광조의 의견을 따라가기에 바빴고, 게다가 그를 수용할 능력이 없던 중종은 그를 버리고 만다. 조광조의 그런 學說이 다른시대를 만났더라면 우리나라의 도학정치 脈은 일찍 자리를 잡았을 것이다. 또한 당쟁의 사태도 좀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며, 조광조는 性理學의 뜻을 제대로 펴다 세상을 떠날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조광조의 정치사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태를 만나 그가 그토록 빠져들었던 이상정치라 일컫던 도학정치 이념은 실현되지 못하고 만다. 그러나 그의 정치이념은 그를 추종하던 후학들에 의해 빛을 보게 된다. 그중 한사람이 백인걸이었다.

휴암은 스승 조광조의 정치이념 사상을 실천하며 살기를 고집하였고, 스승 조광조를 문묘에 종사하기를 바라는 疎를 여러번 올린다. 그것은 본인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스승을 얼마나 극진히 생각했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는 강직한 선비의 자세로 살아왔기에 몇번의 변고를 치루기도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훗날 학자들 사이에 기개있는 선비로 알아주는 사건이 된다. 바른정치를 실현하려 애쓰며 벼슬살이를 하던 사람치고 변고를 치루지않은 사람은 드물었다. 正道가 통하는 시대는 治世의 시대요, 그렇지 않은 시대를 亂世의 시대라고 한다. 시대가 인물을 낳고 인물이 시대를 낳는다. 사람들이 살다간 흔적은 후세에 전해지게 마련이어서 뒷세대에 평가를 받는다. 휴암은 기개있는 정치가요 학자로 평가를 해야할 것이다.

우계의 성품은 과감한 자부심은 갖지않았으나 겸손하고 무슨일이든 삼갔다고 한다. 다만 몸이 약하였기 때문에 조용한 자리에 기용을 하였더라면 聖德에 보탬이 되었을 것이다. 牛溪의 학문은 정통을 가르쳤고 나라의 요직에 임함에도 충성을 다하였으나 모든 징조는 우계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였으니 마치 己卯사화때의 현인들과 흡사하였다고 하겠다. 牛溪도 다른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그의 뜻을 펼치며, 後學을 기르고 그시대의 학문의 세계에 기여하는 바가 달랐을 것이다. 우계의 생애와 작품이 말해주듯 그는 정치보다는 문장가요 학자의 성품이었다

현재는 과거로 통하는 역사의 관문이다. 그래서 역사는 옛이야기가 아닌 오늘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다. 휴암과 우계의 일생도 옛이야기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그들의 詩세계와 마음가짐 또한 오늘을 사는 문학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너무 바쁘고 여유없이 기다릴줄 모른다. 자연과 먼 생활을 하기때문이고 내 자신을 채우기도 전부터 나서려고하는 때문일 것이다. 자연을 향유하며 마음의 여유를 부릴줄 알았던 선비들 이야말로 멋을 아는 문인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現世를 사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스승인 것이다.

參 考 文 獻

中宗實錄

先朝實錄

한국민족대백과사전, -91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 실록 -박영규 著, 들녘-

이야기 한국 인물사 -최상일 著, 太乙出版社-

石潭日記 -울곡 著, 삼성문화문고 179-

坡山書院誌, -파산서원지 편찬위원회-

休庵先生實記, -휴암백선생기념 사업회-

成牛溪思想研究論叢, -재 단법인 우계문화재단-

坡州郡誌

坡州文化, 9호

研究論文

成校珍 著, 成牛溪의 性理思想

金喆熙, 번역 牛溪先生 詩

成耆兆, 牛溪詩 評設

七支刀 銘文 解讀을 考察해 본 百濟의 對倭 關係

安 國 承*

目 次

- | | |
|----------------|--------------------|
| I. 序 論 | 3. 七支刀銘文의 여러 解釋 |
| II. 本 論 | 4. 七支刀 銘文 解釋上의 問題點 |
| 1. 日本側 解釋의 問題點 | III. 結 論 |
| 2. 七支刀의 傳來 | 參考文獻 |

I. 序 論

韓國古代史에서 廣開土大王碑 문제와 船山(후나야마)古墳¹⁾에서 出土된 大刀銘文과 함께 韓日間の 古代歷史 論爭에서 또 하나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 日本奈良縣天理市の 石上(이소노가미)神宮에 간직되어 있는 길이 75cm의 저 有名な 七支刀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文獻이나 傳說에 조차 나타나지 않고 日本側 史書인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만 記錄이 보인다.

日本書紀에는 神功 섭정 52年(AD. 252年 : 百濟 古爾王 19) 9월에 七支刀 一口와 七子鏡 一面 등 여러 가지 寶物과 함께 百濟王이 倭王에 獻上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古事記에는 應神王朝에 橫刀와 大鏡과 함께 論語 十卷, 千字文 一卷을 바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바로 그 七支刀가 石上神宮에 하나의 神物로서 간직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

* 議政府 鄉土文化研究所

1) 江田船山古墳, 日本 菊水棟 教育委員會, p.22.

한 것은 보내진 時期와 보내진 動機와 함께 七支刀의 刀身 앞면에 34자, 뒷면에 27자 모두 61字가 金으로 상감되어 있는 銘文 글씨이다.

이 銘文은 1883年에서 1887年까지 石上神宮의 宮司로 있었던 菅政友가 刀身의 銘을 벗겨보니 金으로 상감된 銘文이 보여 이를 최초로 解讀하였다.²⁾ 그리고 당시 日本 軍部の 指示에 따라 日本에 不利한 銘文 일부를 削除하였다는 것이 日本 學者들의 共通된 見解이다.

이는 銘文을 皇國史觀의 立場에서 歪曲 解釋하여 百濟의 近肖古王이 七支刀를 倭나라의 大和朝廷에 獻上한 것처럼 造作하여 古代 日本의 南韓支配라는 허구를 뒷받침하고 이를 教科書에까지 실어 마치 사실인 것처럼 教育하여 왔고, 특히 日本 軍國主義者³⁾들은 日本이 二次大戰에서 敗北할때까지 이에 對한 批判조차 禁忌로하여 오다가 終戰과 함께 解除되어 日本의 일부 良識있는 學者들이 합리적인 새로운 해석을 하고 있으나 그나마도 國內學者들의 해석과 너무나 거리가 먼 미흡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이의 모순점을 들어 古代 日本의 史書 記錄과 南韓支配說의 不當性和 虛構性을 살펴본다.

II. 本 論

1. 日本側 解釋의 問題點

七支刀의 銘文을 解釋하기 전에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記錄에 대한 虛構性을 먼저 指摘한다. 事實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記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不合理한 점이 많다. 卽 BC 660年에 王位에 올라 127세에 죽었다는 神武王이나 AD 405年에 110세에 죽었다는 應神王, 그리고 AD 388년에 100세에 죽었다는 神功王后 등의 生沒年代를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日本의 那阿通世도 神武王은 實體人物이 아니며 9代 開化王까지는 천황의 계보자체가 架空에 가깝고 崇神王부터 비로소 實體人物 같다고 하였다.⁴⁾ 또 笠原一男 教授는 神功王后의 「三韓征伐」說 역시 황당무계한 것으로 「大和政權」의 朝鮮(韓國)

2) 尹營植, 百濟에 의한 倭國統治三百年, p.227.

3) 李種敏, 三國時代 對日關係史, p.81.

4) 角林文雄 任那滅亡と 古代日本 p.24.

進出을 正當化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巨大한 應神王陵古墳(大山古墳)이나 仁德王陵古墳(譽田古墳)의 주인공도 實體로는 벼 재배로서 富를 蓄積하여 그 地方에서 實權을 잡은 한반도의 渡來人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우기 日本書紀의 記事 가운데 우리 三國 관계 史料도 주로 百濟側 史書에 의존한 흔적이 많이 보일 뿐 아니라 너무나 誇張된 潤筆이 많아 이를 그저 보아 넘길 수는 없다. 倭國 관련 용어는 「聖朝」「聖王」「天皇」「朕」「陛下」「皇后」「貴國」등을 사용하고 우리측을 가르키는 기사는 「王」「西蕃」「朝貢」「貢上」「獻上」「稱臣」「下賜」「征伐」등을 사용한 古事記와 日本書紀 記錄은 당시의 국제 관계로 보아 지나치게 고의적인 가필과 왜곡이 가해졌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와같은 事實은 日本側의 良識있는 學者들도 솔직히 是認하여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관계 記錄을 불신하는 것이 대세로 되어 있다. 日本의 古代 歷史는 아직 해명 안된 것이 많아 잘 모르는 것이 많다. 말하자면 수수께끼에 찬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된 理由로서 日本은 中國과 같이 옛부터 文字로 記錄된 사료가 없었다는 것이다. 古事記와 日本書紀는 神話時代로부터 記錄하고 있는데 그 當時를 기록한 기초적 사료는 거의 六世紀 頃의 것으로 古事記와 日本書紀 등 五世紀 以前の 서술은 傳承研究 方法에 依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古事記, 日本書紀에 記錄되어 있다고 하여 그것이 歷史 事實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日本側의 이와 같은 史料의 弱點을 補充해주는 중요한 史料가 中國의 歷代史書에 나오는 日本 관계기사이다. 그러나 中國의 歷史書에는 日本이 활기차게 交流를 구할때의 것들만이 반영되어 있다. 三世紀경의 기록이 三國志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이는 266년에 倭의 女王이 中國에 使臣을 보냈다는 記事이고 그후 中國의 역사서에 다시 日本이 나오는 것은 宋書의 記事中에 422년부터 비로소 나타난다. 그 보다 먼저 413년에 간단한 기사가 보이나 이것을 포함하여도 266년부터 413년까지의 150년간이 中國의 一切의 史料로부터 완전히 모습을 지우고 있다. 그래서 日本 學者들은 이 시기를 「수수끼끼의 4세기」라고 하며 4세기를 중심으로 전후 150년간을 日本歷史의 수수끼끼중의 수수끼끼 時代라고 한다. 수수끼끼 150년의 시대중의 일본 형편을 기록한 내용이 高句麗 廣開土大王碑의 倭에 關한 기사이며, 다른 하나가 지금 취급하려는 奈良縣天理市の 石山神宮에 간직되어 있는 저 有名な 七支刀 銘文인 것이다.⁵⁾

5) 山尾辛久 日本古代の 國家形成 p.17.

2. 七支刀의 傳來

가. 日本書紀 記事中에 나타난 七支刀 관계기사

神功 52年(AD 252)秋 9月, 丁卯朔 丙子(10日)에 久氐 등이 千熊長彦을 따라 일본에 왔다. 그때 七支刀一口와 七子鏡一面 및 여러 종류의 寶物을 貢上하였다. 그리고 啓하기를 「나의 나라의 西方에 河가 있다. 그 源은 谷那의 鐵山에서 나오고 있다. 그 거리는 7 일을 가도 도착할 수 없는 멀고 먼 곳이다. 마땅히 이 물을 마시고 이미 이 山의 鐵을 파서 오직 聖朝에 바칠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때 百濟의 王은 孫子 枕流王에게 말하여 「지금 내가 通交하고 있는 바다 東方의 貴國은 하늘이 열어 준 나라이다. 그래서 天恩을 내려 바다 서쪽 땅을 분할하여 나에게 賜 하였다. 이로 인하여 나라의 기초는 영구히 굳어졌다. 너도 또한 잘 友誼를 닦아 土物을 모아 奉貢하는 것을 끊지 아니하면 죽어도 무슨 후회가 있겠느냐.」云云...

神功 55年(374)에 百濟의 近肖古王(374)이 죽었고 神功 56年(375) 百濟의 王子 貴須가 王位에 올랐으며 神功 69年(388) 夏四月 辛酉朔 丁丑(17年) 皇太后가 죽었다. 때 나이 100세(388)이었다.

「...神功 52(371)年 秋九月丁卯朔丙子, 久低等從千熊長彦 旨之 卽 獻上七支刀一口七子鏡一面, 及種種寶 ...倭啓曰 臣國以西 有水源出自谷那鐵山...」

나. 古事記에 나타난 七支刀 記錄

또 新羅人들이 건너왔다. 그리하여 「타케우찌노 스쿠네 미코토」가 이들을 이끌고 관개 공사를 하여 百濟池라는 연못을 만들었다. 그리고 百濟의 國王인 照古王(照古王)이 암수 말 한필씩을 아찌키시(阿知吉師)에게 주어 헌상하였다. 이 아찌키시는 아찌키노후비토(阿直史)의 선조이다.

또 百濟王은 큰 칼과 큰 거울을 헌상하였다. 그리고 天皇은 百濟國에게 「만약 현인이 있으면 보내도록 하라」하고 명 하였다. 그리하여 그 명을 받아 헌상된 사람이 와시키시(和邇吉師)이었다. 그에게 論語 10권과 千字文 1권 모두 11권을 주어 함께 바쳤다. ...그리고 기술자 두명을 보냈는데 그 한명은 한인대장장이로 그 이름은 타쿠소(卓素)라 했으며...

「亦 新羅人參渡來 是以 建內宿彌引率, 爲 役之堤池而作百濟池 亦百濟國主 照古王 以牡

馬壹正付阿知吉師以貢上, 亦 貢上橫刀及 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 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卽 論語 十卷, 千字文一卷 并十一卷, 付是二人卽貢進, 又貢上手人 韓鍛名卓素」

3. 七支刀銘文의 여러 解釋

가. 韓國側

(1) 李丙燾

(앞면) : 泰△四年△(九)月十六日 丙午正陽(日中)에 百鍊鋼鐵의 七支刀를 만들었다. 이는 나아가 百兵을 물릴칠 수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候王들에게 供給할만하다. △△△(人名인듯)가 製作한다.

(뒷면) : 先世以來로 아직 이런 칼이 없었던바 百濟王世△(子) 奇生聖音이 짐짓 (故로 일부러) 倭王旨를 위하여 만들었으니 後世에(길이) 傳하여 보일지어다.⁶⁾

(2) 李道學

(앞면) : 春△△四年△月十六日 正午에 백번 단련한 鋼鐵로 七支刀를 만들었다. 모든 兵害를 물리칠 수 있다. (아무개)가(이 칼을)제작하였다.

(뒷면) : 先世以來로 아직 이런 칼이 없었다.

百濟王 治世에(이 칼을) 기묘하게 얻은 聖스러운 소식이 생긴 故로 倭王을 위하여(이 칼을) 만든 뜻을 후세에 전하여 보이라.

또 「百濟王 治世에 기묘하게 얻었음을 聖스럽게 布告하는 故로 왜왕을 爲하여 (이 칼을) 만든 뜻을 後世에 傳하여 보여라」⁷⁾

(3) 文定昌

(앞면) : 泰和四年□月十六日 正午 百鍊 七支刀를 만들었다.

마땅히 모든 候王 君과 各軍에 供給하여 備置해야 한다.

(뒷면) : 先世以來 이와 같은 칼이 없었다. 百濟國에 慶事가 있었으므로 倭王 旨를 위하

6)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1992. 11. 30) p.529.

7) 李道學 백제 고대국가 연구(1995. 8. 5) p.237.

여 만들었으니 永世保存하라.⁸⁾

(4) 尹營植

(앞면) : 泰和四年五月十一日 丙午 正陽에 百鍊鋼으로 七支刀를 만들었다.

여기 百兵을 피하겠느냐 마땅히 候王을 받들고 받들라. □□□□

(뒷면) : 先世이래 이러한 칼은 아직 없었다. 百濟王世子는 神靈스럽게 誕生하신 생님 (王子이상의 호칭)이시다. 그래서 倭王이 되었다.그런 뜻으로 만든 것이니 後世에 전해 보이도록 하라.

여기에서는 倭王은 近仇首를 말하고, 寄生을 奇異한 誕生으로 보아 「神聖스럽게 태어나다」로 聖音を 「생님」으로 生辟白兵을 「豈避百兵」으로 해석하였다.⁹⁾

(5) 金聖吳

魏의 太和4년(AD 230) 5월 16일 丙午正陽에(谷那產) 百鍊鐵로 七支刀를 造했으니 「百兵을 막아 낸 諸王 諸侯들에게 골고루 供給할 수 있도록(谷山에서 난 百鍊鐵로) 七支刀와 同類品을 제작하게 하시오 先世以來로 此刀와 같은 것은 未有했는데 百濟王世子는 聖音의 뜻을 받들어 귀하를 候王이 되게 했으니 此刀를 造하여 이 뜻을 後世에 傳示 하도록 하시오」

泰和四年은 東晉의 太和 4年(369)으로 보는 것이 日本史學界의 통설이고 이것은 神功 52(252)년을 2周甲 끌어내려 계산한 372년과 비슷한 연대이기 때문에 억지로 牽強附會한 것일 뿐이며, 年號도 東晉의 太和가 아닌 魏의 太和 4年(230)이라야 神功과 히미코 사망 연도 및 邪馬台紀年復元으로 볼때 비로서 맞는다. 供供이 아니라 複供의 뜻은 供與하라의 뜻으로, 候王이 아니라 諸侯 諸王으로 해석하는 것이 추세이다.¹⁰⁾

(6) 蘇鎮轍

辟은 避의 뜻으로 百兵은 재앙의 의미로 해석하고 寄生聖音은 별다른 뜻이 없는 吉祥語에 不過하며 七支刀는 백제왕이 헌상한 것이 아니라 백제왕이 왜왕에게 정벌권과 통치

8) 文定昌 百濟史(1988. 10. 15) p.128.

9) 尹營植 百濟에 의한 倭國 統治 三百年 p.236.

10) 金聖吳 沸流百濟와 日本속의 國家起源 p.240.

권을 부여하는 象徵的 의사 표시라 한 것으로 해석하였다.¹¹⁾

(7) 金錫亨

한국의 고대 사회에서는 太子라고 했지 王世子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 하여 百濟王 世世라 해야 옳다고 했다. 七支刀는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보다는 주술용으로 만들어 백제왕이 왜왕에게 준 것이다. 백제의 우수한 금상감 기술이 倭 땅에 전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船山の 古墳出土大刀銘文 금상감과 같다고 본다. 그리고 泰和는 百濟의 연호일 수밖에 없다. 「禾」라고 한 획만 분명하므로 中國年號로 보여지는 泰□의 □속 글자는 始라고 읽힐 수 없어서 泰始(265年)라고 해석되지는 않기 때문이다.¹²⁾

日本側

(1) 笠原一男¹³⁾

刀身の 앞뒷면이 금상감으로 문자가 새겨져 있는데 泰和四年에 만든 이 칼은 倭王에게 獻上했다고 하였다. 泰和四年은 西紀 369년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

(2) 新 詳明 日本史¹⁴⁾

銘文에 보이는 大刀와 鐵

石上 神宮 七支刀 銘文은 刀身の 앞뒷면에 금상감으로 61자가 적혀 있는데 泰和4年(東晉의 太和4年 396年)에 百濟王이 倭王을 爲하여 만든 것이다.

(3) 山尾幸久

(앞면) : 泰和四[年]五[月]十六日 丙午正陽造

百鍊鋼[七]支刀生辟 百兵 宜[]復

和 供侯王

(뒷면) : 先世以來未有此刀百濟 [王]世[子]

寄生聖音故爲倭王者旨造傳[示]

[後]世

11) 김인배, 김분배 任郡新書

12) 金錫亨 일본에서 조선 소국의 형성과 발전

13) 笠原一男 詳說 日本史 研究(1992. 1. 10) p.42

14) 井上 光貞의 2명 新詳說 日本史(1993. 9. 5) p.23.

풀이 (앞면) : 泰和四[年][五]月十六日 丙午 正陽 百鍊의

[鋼]의 [七]支刀를 만든다. [生]나아가

百兵을 물리쳐(辟)候王을 받을라.

[] [] (大羊=祥) 할 것이다. [] []

(뒷면) : 先世以來 아직까지 이런 칼이 없었는데

百濟[王]이 世[] (子) 聖音에 生할 것을 奇로하고 여기(故)에 倭王의 旨
(뜻)을 爲하여 만들어 傳하여 [後]世에 보일지어다.¹⁵⁾

이상과 같이 명문을 韓國側과 日本側이 각각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였다. 韓國側과 日本側의 해석을 비교해 보면은

- ① 百兵을 물릴칠 수 있으리라고 百鍊鋼鐵七支刀를 만들었다. (共通)
- ② 百濟王의 世子가 倭王을 위하여 만들었으니 길이 전하라. (共通)
- ③ 百濟王이 泰和四年에 만들어 倭王에게 貢上하였다. (日本)
- ④ 泰和四年은 東晉의 年號이다. (韓國 一部)
- ⑤ 東晉의 年號를 百濟가 사용했다. (日本)
- ⑥ 百濟王이 日本에 下賜한 것이다. (韓國)
- ⑦ 「聖音」에 관한 해석-경사스러운 일, 거룩한 일 (韓國)
- ⑧ 聖音은 道教의 가르침 (日本)

金富軾은 新羅에만 年號가 있고 高句麗와 百濟에는 年號가 없다고 하였으나 廣開土大王的 年號가 廣開土大王碑에 「永樂」이라고 뚜렷이 기록되어 있고 百濟에도 威德王때 建興이라는 年號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太和는 東晉의 年號가 아니라 百濟의 年號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銘文의 내용으로 보아도 百濟의 近肖古王이 상급자의 입장에서 下位에 있는 倭王에게 七支刀를 下賜한 것이 분명하므로 古事記와 日本書紀에 記錄된 「獻上」은 왜곡된 기사임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 日本書紀의 神功王后의 新羅征伐條에 나오는

15) 山尾辛久 日本古代の 國家形成(1988. 6. 5.) p.19.

「…新羅王 常以八十船之朝貢于 日本國 其是之緣由也, 於是高麗 百濟 二國王聞 新羅收
圖籍 降於 日本國, 密令何其軍勢, 日月知 不可勝 自來干營外叩頭而款曰 今後 永稱 西蕃
不絕朝貢…」라든지

神功51年(252) 久氐 等遣百濟國 因以垂大恩曰 朕從神所驗道如開道路, 平定海西, 以賜
百濟, 今復 厚結好永寵當之是時百濟王父子額 致地, 啓曰 貴國鴻恩重於天地, 何月何時
敢有忘我聖王在土明如日月 今 臣在固如山岳 永爲西蕃 終無貳心…」운운(방점은 필자)

또는 神功 五十二年(371) 秋九月丁卯朔丙子久氐 從千態彥詣之獻則七支刀一口七支鏡一
面云」등은 너무나 誇張되고 허황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모독하는 記錄으로
이에 對한 國內學界의 깊은 研究와 합리적인 반박이 切實하다고 본다.

4. 七支刀 銘文 解釋上的 問題點

첫째가 「泰和四年」이다. 日本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百濟王은 345年以後 高句麗王에게
從屬하고 있어서 고구려 지배권의 일부분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다 364년부터 독립적인 동향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371년에 백제의 王子가 인솔한
大軍이 당시의 고구려의 王都인 평양을 공격해 고구려왕을 戰死시켜 大勝利를 취하였고,
그해 처음 中國의 王朝인 東晉에 使臣을 보냈으며, (372년 1월), 6월에는 東晉의 答禮使
가 파견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冊封)로서 백제가 東晉의 年號를 쓰기 시작한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고 하였다. 그리고 372년 백제의 使臣派遣에 앞서 먼저 369년 이전에 이미 백제는 東晉
의 年號를 사용하였다고 하였다.¹⁶⁾ 그러나 百濟가 高句麗에 從屬되었다는 記錄은 三國史
記나 三國遺事에 없다. 구태여 이와같이 百濟의 威勢를 훼손하려는 底意는 무엇인가? 新
舊唐書에는 遼西 晉平의 百濟領有 事實이 보일뿐 아니라 唐에서 太山 太守 職에 있던 崔
致遠이 百濟強盛時 百萬大軍으로서 「南侵吳越北撓 燕齊魯」라고 한 것으로 보아 妥當하지
않고, 東晉과 수교하기 전에 벌써 東晉의 年號¹⁷⁾를 썼다는 것은 그 當時百濟의 國力으로
보아 전혀 수긍할 수 없다.

두번째는 七支刀의 상감기술에 관한 부분인데, 百濟에 이와같은 상감기술이 없었다고

16) 山尾幸久 日本 古代の 國家形成(1988. 6. 5) p.24.

17) 崔致遠 三國史記 列傳 第6 崔致遠 傳

하는 일본측 주장은 너무나 當時의 倭의 技術 수준에만 執着한 결과로서 百濟문화의 수준을 모르는 無識의 所致이다. 武寧王陵 遺物과 扶餘에서 發見된 유물로 보아 百濟에는 이미 뛰어난 상감기술이 있었다.

셋째로, 銘文의 문장을 보면 앞면에서 뒷면으로 이어지는 문장으로서 年月日 吉日吉時 刀名 그리고 吉祥句 作刀者 緣由의 순서로 되어 있다. 鏡의 銘文에서는 作者와 作所가 글 끝에 없고 글의 처음에 나오는 예가 있으나 七支刀에 있어서는 뒷면의 文章이 앞면보다는 자수가 적은 것으로 오히려 「□□作所」은 뒷면의 문말에 옮겨야 자수에 균형이 잡히는 것으로 보아 앞뒷면이 이어진 文章이 아니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뒷 문장에 「吾」라고 하지 않고 「百濟國」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第三者的文章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先世以來」 이와같은 칼이 없다고 한 것 등은 대단히 단정적인 것으로서 銘文의 作者에 對하여 백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단순히 상상해서는 안된다. 일본측에서는 372年 後半에 百濟의 서울에 온 東晉 王朝의 冊封使가 七支刀를 가져온 것으로 상상하여 吾라고 하지않고 百濟王이라는 三者的 文章을 사용했다고¹⁸⁾ 주장하나 이는 下賜하는 主人公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解釋하여야되며 여기에서도 東晉과 關係시킨 것은 百濟의 位相을 低下시키기 위한 日本의 底意에서 나온 無理한 해석이다.

石上神宮의 七支刀는 백제에서 만들어 진 것이 틀림없다 단지 모델이 된 東晉製의 原七支刀가 있었다고 상상해 볼 수는 있겠다.

그러나 東晉에서는 七支刀를 만든 예가 보이지 않는다고 李丙巖도 言及하고 있으며 또한 東晉에서 만들어서 백제를 거쳐 일본에 보냈을 것이라는 주장은 억지로서 직접 보내지 구태여 百濟를 通하여 倭王에게 보낼 필요와 명분이 전혀 없는 것이다. 더욱이 韓國의 記錄에는 七支刀나 七子鏡을 보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近肖古王으로서는 대수롭지 않은 倭王이 이 칼을 갖기를(통치의 권위물로서) 원하기에 만들어 倭王에게 下賜했을 뿐인 것이다. 古事記나 日本書紀의 誇張된 記錄은 이를 거꾸로 입증하는데 陛下 皇后征伐 下賜 등의 용어를 쓰며 우리를 西蕃으로 낮춘 것 등은 當時 百濟의 國력이나 國제적 位相으로 보아 전혀 있을 수 없는 虛構이며 지나친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8) 山尾辛久 日本古代の 國家形成(1988. 6. 5.) p.25.

III. 結 論

七支刀에 對하여 韓國側學界와 日本側學界의 論調를 比較해 보았는데 韓國側 學界에서는 百濟의 近肖古王이 倭王에게 자신의 통치권 안에 있는 지배력을 승인하는 상징으로 神器(信標)로서 七支刀를 만들어 下賜한 것으로 합리적인 解釋을 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側 學界에서는 七支刀 銘文에 있는 太和年號를 泰和年號로 부회하여 百濟가 東晉으로부터 百濟王으로 冊奉되기 前에 이미 東晉의 年號를 使用했다고 主張하면서 七支刀는 東晉에서 만들어진 原七支刀를 백제가 모델로 해서 倭王의 명으로 百濟의 近肖古王이 만들어서 倭王에게 獻上하였다고 主張하여 서로 相反된 主張을 하고 있다.

日本學界에서는 百濟人의 유치한 상감 기술로 보아 도저히 이와 같은 상감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東晉에서 만들어 진 후에 近肖古王을 通하여 倭王에게 貢上되었거나 百濟에서 東晉의 原七支刀를 모델로 만들어 倭王에게 獻上했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主張은 은연중에 백제의 威勢를 格下시키어 百濟가 高句麗에 支配되어 오다가 東晉으로부터 冊奉된 이후에야 京畿道 廣州에 首都를 옮기게 되는 漢城百濟로부터 비로서 高句麗의 支配에서 벗어나 겨우 自主性을 찾은 것으로 주장하여¹⁹⁾ 은근히 神功王后의 「三韓征服說」과 任那統治說을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記錄을 歷史事實로 확립하려는 저의를 보여주고 있다.

더우기 七支刀 銘文에 있는 「聖音」을 東晉에서 盛行하고 있는 道教에서 말하는 敎理의 가르침이라고 하고 神功王后가 바다 西方의 땅을 평정하여 百濟王에 下賜하자 百濟王이 西蕃의 王으로서 聖朝의 天恩과 鴻恩에 二心을 품지 않고 西蕃으로서 영구히 稱臣하겠다고 한것과 谷山에 있는 광산에서 나오는 鐵을 파서 聖朝에 바치겠다고 맹서한 日本書紀의 허구적 기록을 역사적 사실로 확립하려는 底意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더우기 石上神宮은 다른 神宮과 같이 사람을 神位로 피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칼을 받고 있는 神宮으로서 그 가운데 백제에서 건너간 七支刀가 國寶로서 指定되었는데 明治 이전까지 放置 상태로 내려오다가 明治 以後 우리나라에 침략의 독수를 뱉기 시작하면서부터 七支刀에 새겨진 銘文을 조작, 왜곡 해석하여 注目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石上神宮이 位置한 포루(布留)는 후루로도 읽는데 이는 소부리(蘇夫里=所夫里)나 徐伐의 부

19) 山尾幸久 日本古代の 國家形成(1988. 6. 5.) p.18.

리 별(도읍의 뜻)에서 나온 말이라고 傳하는 것으로보아 우리로서는 그 의미가 심장한 바도 있다.²⁰⁾

韓國學界에서는 銘文의 해석에만 매달려 각각 구구한 해석으로 倭王에게 百濟의 近肖古王이 獻上 한 것이 아니라 下賜한 것이라는 것만을 강조하여 神功王후의 三韓征伐說이나 倭의 任那統治說이 不當하다는 消極的인 論旨을 펴고 있을 뿐 當時의 百濟의 정확한 국력과 이에 바탕한 국제관계(예를 들면 百濟略有 遼西 晉平說^{21), 22), 23)})뿐 아니라 石上神宮에 얹힌 傳說조차 具體的으로 연구하여 積極的으로 日本學界의 論旨을 반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中國側 기록이나 고고학적 증거, 그리고 三國史記의 기사 등을 無視하고 一方的으로 古事記와 日本書紀에만 依存한 그들의 억지論旨가 是正되도록 한국학계에서도 이에 對한 진지하고도 旺盛한 연구활동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韓國學界에서는 지극히 少數의 學者들만이 자기 著書가운데 한 부분으로 七支刀 銘文을 取扱하고 있는데 우리도 獨立된 學術分野로서 發展시키는 것이 時急하다고 본다.

參 考 文 獻

1. 三國史記,
2. 三國遺事,
3. 震檀學會, 韓 國 史
4. 김인배, 김분배 지음, 任 那 新 書
5. 李 丙 燾, 韓國古代史 研究
6. 尹 營 植, 百濟에 의한 倭國統治三百史
7. 李 道 學, 百濟 古代國家 研究
8. 金 聖 昊, 沸流百濟와 日本의 國家起源
9. 俞 元 載, 中國正史 百濟傳研究
10. 崔 夢 龍, 沈 正 輔, 百濟史의 理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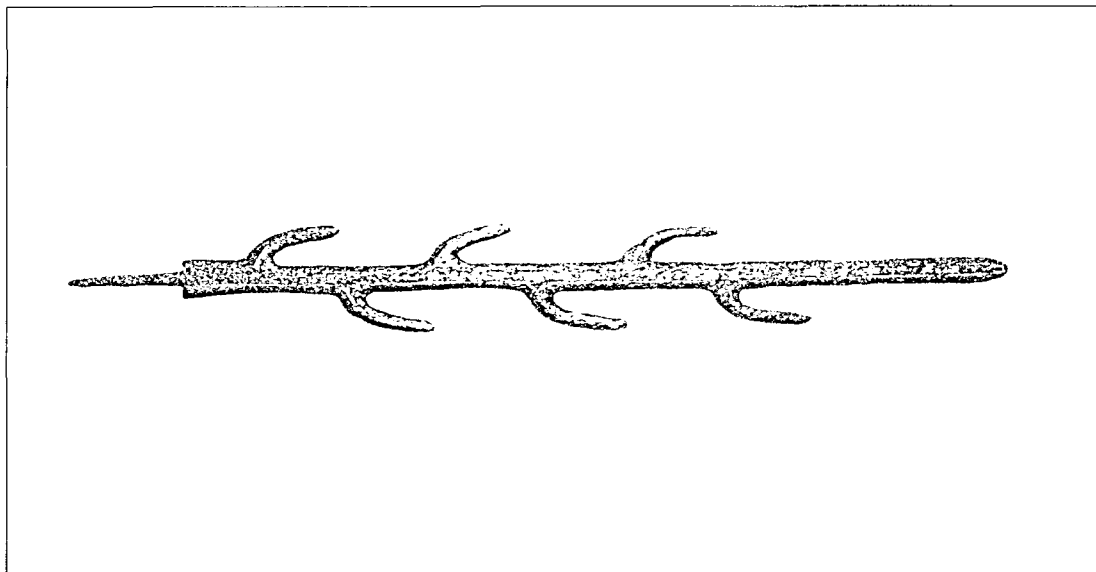
20) 송형섭 일본속의 백제 문제

21) 崔夢龍 沈正輔 百濟史의 理解(1991. 7. 5.) p.123-p.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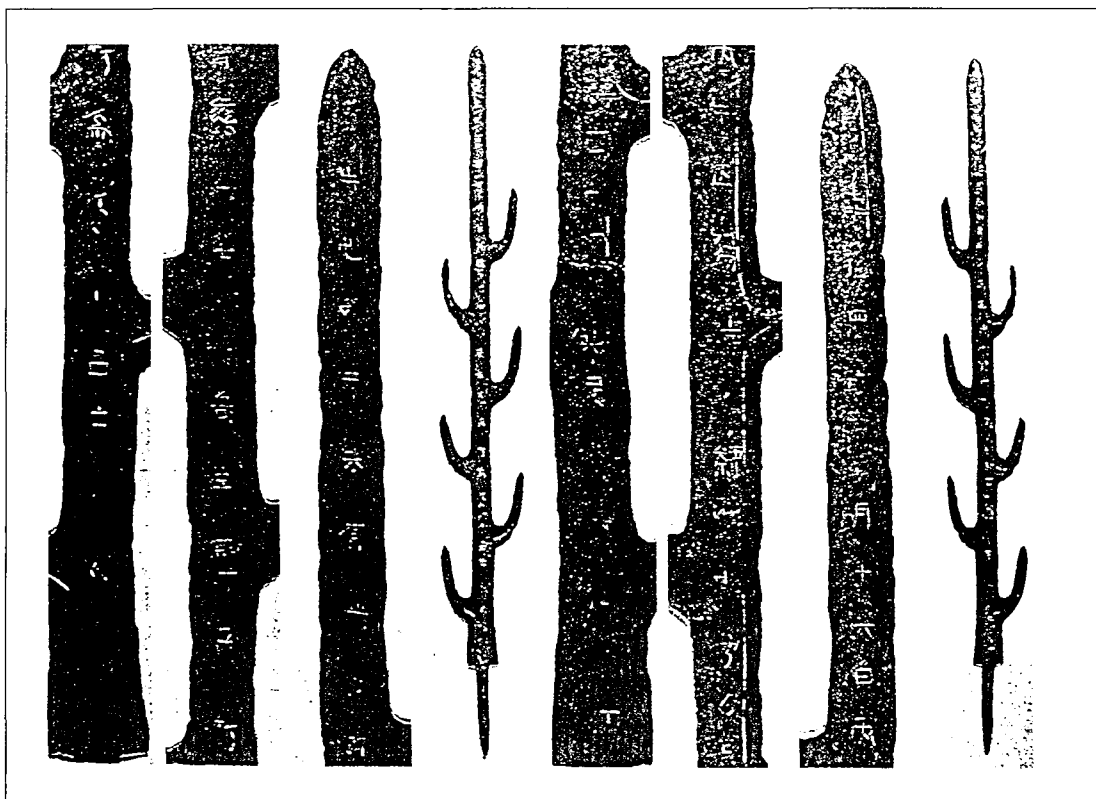
22) 俞元載 中國 正史 百濟傳 研究(1993. 6. 21.) p.78-95.

23) 梁書 54列傳, 宋書 99列傳 南史 卷79列傳, 旧 唐書卷 199列傳, 唐書卷 220

- | | |
|-----------------|---------------------------|
| 11. 王 健 群, | 廣開土大王碑 研究 |
| 12. 文 定 昌, | 百濟史 |
| 13. 李 鍾 敏, | 三韓時代와 對日 關係史 |
| 14. 金 錫 亨, | 일본에서 조선 소국의 형성과 발전 |
| 15. 송 형 섭, | 일본속의 백제문화 |
| 16. 古 事 記, | |
| 17. 日本書紀, | |
| 18. 笠原一男, | 詳說日本史 研究 |
| 19. 山尾幸久, | 日本古代の 國家形成 |
| 20. 井上光貞, 笠原一男, | 新詳說 日本史 |
| 21. 菊水堦 教育委員會, | 江田 船山 古墳 |
| 22. 角林文雄, | 任那滅亡と 古代日本 |
| 23. 문교부, |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
| 24. 川田侃外 35名, | 新しい 歴史(中學)
「文部省 檢定教科書」 |
| 25. 梁沈約「宋書」 | |
| 26. 姚思兼「梁書」 | |
| 27. 李延壽「南史」 | |
| 28. 劉昫「旧唐書」 | |
| 29. 宋 邪「唐書列傳」 | |



① 石上 神宮에 神物로 간직하고 있는 七支刀



② 七支刀身에 새겨진 銘文

규문요람(閨門要覽)

번역 : 姜 眞 淑*

우리 나라 부녀자에 대한 교육은 간략하다. 처음에는 이룩되어 있는 과정(課程)이 없었으니, 과정이라고는 글자를 익히는 바로서 오직 언간(諺簡: 한글로 쓴 편지)·패설(稗說: 민간의 향담(巷談)·기담(奇談)·이문(異聞) 등의 설화)에 불과하여,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응답할 것을 생각하는 등의 한가롭고 조용한 것뿐이었다. 심한 경우에는 또한 황당무계하여, 덕성을 기르고 나라의 풍속을 올바르게 하는 바가 아니었다. 정절과 신의, 사대부로서의 덕행을 숭상하고 예양(禮讓: 예를 두터이하여 사양함)을 돈독히 하다보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배게 되어, 그 가운데 어진 자는 정숙한 여자도 되고 열녀(烈女)도 되며, 비록 마을의 신분이 낮은 자라 하더라도 사모하여 본받거나 품행이 나쁜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게 된다. 예의 있는 풍속이 한번 무너지면 보고 듣는 바를 외부의 유혹에 빼앗겨, 부녀자로서의 행실을 넘어서고 인륜을 더럽히는 것이 부끄러운 줄도 다시는 알지 못하게 되어서, 부녀자의 도리가 방탕해지고 방탕해져 사람들의 기강이 문란해질 것이니, 아아! 어찌 작은 일이겠는가?

성백(聲伯) 한영뢰(韓永雷)씨가 이를 바로잡고자 생각하여 모아서 책 한 권을 만들었으니, 간략하게 해서 여자들로 하여금 알기 쉽게 하였다. 여자들이 미혼이든 기혼이든 모두 항상 눈여겨볼 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규문요람(閨門要覽)이라고 이름하였으며, 나에게 교정보고 서문을 써주도록 부탁하였다. 나는 보잘 것 없는 자로서, 먼지를 청소하는 구실에 응할 수 없겠으나, 대개 모두가 여자들의 법칙이 되는 바를 바르게 하고자 하는 데에서 나온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인하여 돌이켜보고 대략 한 마디 말을 하여, 그 요청에 응하도록 하겠다.

아아! 예전의 경사(經史) 가운데 여자들이 보도록 갖추어져 있는 것이 매우 많으니, 내칙(內則: 예기(禮記)의 편명)·열녀전(烈女傳)과 같은 종류가 오래되었다. 우리 나라의 풍속을 돌아보면, 한글이 아니면 내실의 과정으로 가르치지 않아서, 자양소학(紫陽小學: 주희(朱熹)의 가르침을 적은 소학)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언해(諺解)가 있어 배우고

* 과천 향토사연구회 연구위원

익힐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부녀자의 직분만을 오로지 가려뽑은 것이 아니어서, 너무 넓어 충분히 살필 수 없었다. 그러므로 이 책을 만든 것은, 옛사람들의 것에 많은 것을 더하고자 함이 아니라 다만 그 가운데 간략한 것만 모아서 알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여스승되는 자가 진실로 민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물리치고 간찰(簡札: 글씨를 쓰는 대쪽과 나뭇조각, 즉 문서)의 공력을 옮길 수 있다. 이 책을 과정으로 삼으면, 덕성을 기를 수 있고 부녀자의 도리를 곧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어찌 유독 한 씨 일가의 홀륭함뿐이겠는가? 비록 온나라가 취하여 여자가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삼아도 좋겠으니, 바로 우리 나라 부녀자를 가르치는 과정에 더러 이것을 쓰는 제제가 될 것이다. 나는 지으기 이를 바라겠노라.

경오년(庚午年: 1930년) 2월 초하루(初吉日)

천곡기인(泉谷畸人) 이후(李廔) 쓰다.

* 이후(1870~1934): 자는 선재(善載), 호는 낭산(郎山)·구시현(求是軒). 13세 때 군시(郡試)에 장원했으나 벼슬을 단념, 산사(山寺)에 들어가서 학업을 닦아 성리학을 비롯하여 천문·지리·병서(兵書)·역서(歷書)·산수(算數)·선불 제가(仙佛諸家)에 이르기까지 박통했고, 시문에도 뛰어났다. 후에 거유(巨儒) 곽종석(郭鍾錫)의 문하에서 이황의 학통을 계승했고, 시국이 혼란해지자 팔공산(八公山)에 옮겨 은신했다. 1910년 한일합방이 되자 통분하는 시 20편을 짓고, 일생동안 일본의 연호를 쓰지 않고 단군기원만을 사용했으며, 인근의 청년을 모아 학문을 강론하여 많은 제자를 길렀다.

목 차(目次)

- | | |
|----------------------|----------------------------|
| 1. 총설(總說) | 11. 동서와의 화합(和妯娌) |
| 2. 마음가짐(存心) | 12. 일가친척에 대한 대접(待宗族) |
| 3. 성품 도야(養性) | 13. 살림살이하는 법(治產業) |
| 4. 몸가짐(持身) | 14. 손님에 대한 대접(待賓客) |
| 5. 부모에 대한 효도(孝父母) | 15. 이웃에 대한 대접(待鄰里) |
| 6. 시부모에 대한 효도(孝舅姑) | 16. 하인 거느리는 법(御下人) |
| 7. 남편에 대한 공경(敬夫君) | 17. 선행을 쌓는 법(積善) |
| 8. 제사 받드는 법(奉祭祀) | 18. 검소하여 복을 누리는 법(惜福) |
| 9. 자손의 양육(育子孫) | 19.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는 법(安分) |
| 10. 시숙·시누이와의 화합(和叔妹) | 20. 옛일을 고증함(稽古) |

1. 총설(總說)

부드럽고 온순하며 곧고 한결같은 것은 부인의 덕성이고, 굳게 절개를 지키며 단정하고 깨끗한 것은 부인의 행실이고, 음식을 만들며 길쌈과 바느질하는 것은 부인의 직분이고, 자식을 기르며 살림살이하는 것은 부인의 임무이니, 이 네 가지를 잘 하는 자라면 어진 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마음가짐(存心)

마음가짐은 진실되고 공평무사하며 삼가고 두려워함을 근본으로 삼고, 음란하고 간사하며 난폭하고 거칠며 완고한 것을 경계로 삼아, 어진 부인이 되도록 바라는 것을 평생의 큰 법도로 삼아야 한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외모가 비록 아름답다고 해도 무엇을 볼 것이 있겠는가? 마음이 바르면 외모가 비록 못생겼다고 해도 어진 부인이 될 수 있다.

3. 성품 도야(養性)

성품을 기르는 법은 항상 화평하고 온화하며 정성스러운 것을 근본으로 삼고, 분노하고 근심하며 원망하는 것을 경계로 삼으면, 덕성이 자연히 완전하고 굳건해질 것이다. 성품이 온화하지 않으면 부딪치는 곳마다 화합하기 어려우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부르는 것이고, 성품이 온화하면 모든 일이 편안할 것이니, 이는 스스로 복을 구하는 것이다.

4. 몸가짐(持身)

몸가짐은 항상 옥(玉)을 가진 듯 가득찬 물그릇을 받든 듯하여 잃을까 두려워할 것이고, 옳지 않은 곳과 옳바르지 않은 일은 모두 가까이하지 말아야 한다. 대체로 말은 항상 낮고 평안하게 하여 마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듯이 하고 절대로 높은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한다. 만약 몸에 질병이 있으면 모두 말하고 거리끼지 말아서 빨리 낫도록 하되, 무릇 약이나 음식이 병에 적합한 것은 맛이 비록 좋지 않더라도 마땅히 선선히 먹도록 힘쓰고, 그 맛을 보고서 의지를 태만히 하여,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끼치고 자기 자신이 고생을 사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음식과 거처를 조심하면 저절로 병이 적을 것이다.

5. 부모에 대한 효도(孝父母)

부모에 대한 효도는, 결혼하기 전에는 한마음으로 봉양하여 모든 일에 어김이 없어야 하고, 결혼한 후에는 시부모를 잘 섬기고 남편을 공경하여 반들어서 부모에게 치욕을 끼치지 말아야 하니, 이것이 여자의 효도이다. 형제의 아내를 잘 대우하여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여자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데에 크게 중요한 것이니, 생각지 않을 수 없다.

6. 시부모에 대한 효도(孝舅姑)

시부모에 대한 효도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시부모께서 주무시는 곳에 가서 밤사이 안부를 묻고 항상 잠수시는 여러 가지 음식물을 드리되, 반드시 부드러운 음성과 유순한 얼굴로 반들어야 한다. 매일 모시고 봉양함에 있어 나아가거나 물러가고 앉거나 서 있는 것을 명대로 따르며, 의복과 음식을 뜻대로 해야 해서 혹시라도 어긋남이 없게 한다. 여러 가지 하는 일을 반드시 물어본 후에 시행해서 혹시라도 자기 마음대로 함이 없도록 한다. 저녁식사 후에 주무실 곳에 가서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따뜻한지 추운지 살피며, 편안히 주무시도록 말씀드린 후에 나오도록 한다. 만약 편안하지 않은 점이 있으면, 마음으로 근심하고 안색을 바꾸면서 정성과 힘을 다하여 다시 평상 상태로 되돌리도록 기하되, 조금이라도 번거롭고 수고로움을 꺼려 자신이 편안할 생각을 하지 말도록 한다.

7. 남편에 대한 공경(敬夫君)

남편을 공경하는 것은 하늘을 공경하는 바로서, 진실로 혹 공경하지 않으면 이는 하늘

에 죄짓는 것이니, 어찌 빌어서 면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조심하고 공경하면서 어긋남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한다. 만약 총명과 식견이 남편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조용하게 잘 말해서 남편의 능하지 못한 바를 도울 것이고, 결코 자기가 능하다고 여겨 남편을 멸시해서 스스로 도리에 어그러지고 미련한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할 터인데, 하물며 남편이 의리로 이끄는데도 듣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남편이 출입할 때에, 병이 있지 않으면 반드시 일어나서 공경스럽게 할 것이다. 남편이 만약 병이 있으면 힘을 다하여 조심해서 완쾌하도록 기하되, 단지 마음의 정성과 약·음식의 도움을 좋은 방법으로 삼고, 거짓되고 요망한 것에 이르러서는 결코 몰래 가까이할 수 없다.

8. 제사 받드는 법(奉祭祀)

제사를 받드는 것은 근본에 보답하는 바이다. 선조는 자손의 뿌리이고 자손은 선조의 가지와 잎이니, 어찌 그 뿌리를 잃어버리고서 홀로 가지와 잎을 보전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근본에 보답하는 것을 중한 바로 삼았다. 근본에 보답하는 길 이 한 가지가 아니지만 오직 제사가 중요하고, 제사를 받드는 길이 한 가지가 아니지만 오직 정성이 귀한 것이다. 사람이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신령(神靈)이 흠향하지 않으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성을 다하는 도리는 남녀가 각기 그 마음을 다하는 것이지만, 음식물이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고는 부인에게 달려 있는 바이기 때문에 부인이 더욱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기일에 앞서 몸을 씻고 날마다 머리를 감고 빗질하여 때문고 냄새나지 않도록 한다. 모든 물건과 그릇·용품들을 정결하게 하도록 힘써서 거칠고 더럽지 않게 하고, 한 곳에 만 마음을 써서 다른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제사지내는 신령과 교감(交感)하는 것을 뜻으로 삼아야 한다. 비록 뜻에 맞지 않는 곳이 있다 하더라도 원망하고 분노하거나 불평하는 기색을 가져서는 안된다. 어린아이들과 닭·개·고양이·쥐 등은 마땅히 미리 엄하게 막아서 제물(祭物)을 잘못 범하지 말도록 하되, 또한 나쁜 말을 퍼부어서는 안된다.

시제(時祭)¹⁾에는 성복(盛服: 성장한 의복)을 입고 기제(忌祭)²⁾에는 담복(淡服)을 입되, 만약 조부(祖父) 이상의 기제라면 천담복(淺淡服: 제사 때에 입는 엷은 옥색의 옷)을

1) 해마다 음력 2월·5월·8월·11월에 가묘(家廟)에 지내는 제사.

2) 삼년상이 끝난 뒤에 해마다 죽은 날(忌日)에 지내는 제사.

입는다. 기제 때에는 재계(齋戒)³⁾를 시작하고 끝마치는 날에 모두 소식(素食)⁴⁾하되, 재계를 끝마침은 바로 상일(喪日)이라서 더우기 술마시고 고기를 먹을 수 없다. 담배를 즐겨 피우는 것은 원래 좋지 않은데, 재계할 때에 만약 입에 담뱃대를 물고 손으로 제물을 만진다면, 이는 법도 없음이 심한 경우다. 신령이 만약 안다면 흠향하려 하겠는가? 절대로 경계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다.

음식을 상에 차려놓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밥은 신위(神位)의 오른쪽에 있고, 국은 신위의 왼쪽에 있으며, 밥에 곁들이는 술잔은 밥의 왼쪽에 있고, 수저 접시는 가운데 있고, 장 접시는 국의 오른쪽에 있으니, 이는 신위 앞 첫번째 줄이다.

국수는 오른쪽 끝에 있고, 떡은 왼쪽 끝에 있고, 고기 접시는 국수의 왼쪽에 있고, 산적 접시는 가운데 있고, 생선 접시는 떡의 오른쪽에 있으니, 이는 두번째 줄이다.

포(脯)는 오른쪽 끝에 있고 김치(沈菜)는 왼쪽 끝에 있고, 익힌 나물(熟菜)은 포의 왼쪽에 있고, 식혜는 익힌 나물의 왼쪽에 있고, 초나물(醋菜)은 식혜의 왼쪽에 있고, 젓갈은 김치의 오른쪽에 있으니, 이는 세번째 줄이다.

여섯 가지 과일은 남쪽에 있는데, 대추가 오른쪽 끝에 있으니, 예문(禮文)에서 대추를 높인다 함이 이것이다. 밤을 다음에 놓고, 감·배·연밥·잣·포도·약과(藥果)·정과(正果)는 마땅한 데에 따라 쓰되, 인공적으로 만든 과일은 비록 모양이 좋더라도 반드시 아래에 두니, 이는 네번째 줄이다.

차례대로 서는 위치는, 남자는 동쪽 뜰 밑에 자리하되 왼쪽을 위로 하고, 부인은 서쪽 뜰 밑에 자리하되 오른쪽을 위로 하여, 세대마다 각기 한 줄로 해서, 섞여 구분이 없게 해서는 안된다.

시제(時祭)의 의식은, 출주(出主: 사당에서 신주를 모셔냄)·참신(參神: 신주에 참배함)·강신(降神: 술을 잔에 따라 부으면, 신령이 내려옴)·진찬(進饌)·초헌(初獻)·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⁵⁾·함문(闔門)·계문(啓門)·진다(進茶)·수조(受胙: 제사에 쓰고 난 고기를 나누어 받음)·고리성(告利成)·사신(辭神)·납주(納主)·철준(徹醢: 제사지낸 음식을 거두어 치움)한다.

기제(忌祭)는 수조(受胙)도 없고 준례(餼禮)도 없으며, 참례는 오직 단헌(單獻)이다.

3) 제사를 지낼 때 그 전 며칠 동안 심신을 깨끗이하며 부정한 일을 가까이하지 않는 일.

4) 고기나 생선 등이 없는 반찬으로 밥을 먹는 것.

5) 제사지낼 때에 제주(祭主)가 잔에 술을 따르고, 또 깃데에 술가락을 꽂고 깃가락을 대접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제관들이 문 밖에 나와 문을 닫고 십 분 가량 기다리는 일.

초헌(初獻)할 때 축문(祝文)을 읽는다. 유식(侑食)할 때 첨작(添酌: 초헌 드린 잔에 다시 술을 가득 채움)하고 술가락을 꽃고 젓가락을 바로 놓는다. 사신(辭神)한 후에 축문을 불사르되, 단헌(單獻)이면 축문이 없다.

신주를 만들지 못한 집은 우선 지방(紙榜: 종이 조각에 글을 써서 만든 신주)으로 제사를 지내되, 그 의례는 신주를 이미 만든 예에 따라 행하니, 가세(家勢)는 비록 가난하고 부유하며 귀하고 천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이야 어찌 다를 수 있겠는가? 또한 미리 익히지 않으면, 비록 훗날 신주를 받들게 되었을 때라도 어찌 행할 수 있겠는가?

주부(主婦: 제사를 맡아 받드는 책임을 진 사람의 아내)는 아헌(亞獻)이 되고, 여러 부녀자들이 일을 맡아 한다. 절하는 의식은, 주부는 참신(參神)·아헌(亞獻)·유식(侑食)·사신(辭神)에 모두 네 번 절하고, 여러 부녀자들은 참신·사신에 모두 네 번 절하고 그친다. 유식할 때에 모두 두 번 절한다는 예문이 있으나, 주(註)에 주부는 네 번 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절하는 위치는, 참신·사신에는 서쪽 뜰 아래에 있고, 아헌·유식 때에는 향안(香案) 앞 조금 서쪽에 있다.

생선과 고기를 자르고 난 나머지는 마땅히 깨끗한 곳에 묻어야 하고 마음대로 버리지 못한다.

9. 자손의 양육(育子孫)

자손을 기르는 것은 세대를 잇는 바이니, 어찌 소홀히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예전에 부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잠잘 때 옆으로 눕지 않고 앉을 때 가장자리에 앉지 않았으며, 설 때 한쪽 발로 기우뚱하게 서지 않았고, 올바르지 않은 맛이면 먹지 않고 똑바르지 않게 베어진 것이면 먹지 않았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고, 눈으로는 간사한 것들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좋은 말 듣기를 즐겨하고 올바른 일을 말하기를 기꺼이 하였다. 이와 같이 하면 아이를 낳음에 용모가 단정하고 재주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 것이다.

음식과 의복, 거처는 모두 절도에 맞아 법도에 지나치지 말도록 한다. 음식이 지나치면 병이 나고 모자라면 기운을 손상시킬 것이며, 의복이 너무 따뜻하면 기운을 손상시키고 너무 추우면 병이 날 것이며, 거처가 너무 더우면 병이 나고 춥거나 습해도 모두 병이 나는 바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일일이 주의해야 하되, 음식이 지나치면 병이 날 뿐만 아니라 총명함도 크게 감소하게 된다. 모든 날 것이나 찬 것, 썩은 것과 딱딱해서 소화하기

어려운 것은 모두 양생(養生: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섭생함)하기에 마땅치 않으니, 아울러 깊이 경계해야 한다. 만약 해롭고 유익함을 돌아보지 않고 자식이 욕심내는 대로 힘껏 따르는 것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여기는 자는 도리어 그 자식을 해치게 되니, 그 무지함이 누가 이보다 심하겠는가?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고, 편애하여 미워하지도 말며, 속여서 달래지 말고,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며, 반드시 사리에 맞는 말로 정성껏 타일러서 잘 이끌어, 온몸에 충만하게 하여 덕기(德器: 착한 행실과 뛰어난 재능)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만약 따르지 않으면 반드시 남편에게 알려서 엄하게 회초리를 때려 뉘우쳐서 고치도록 해야 하지만, 또한 나쁜 말로 몹시 꾸짖거나 예에 맞지 않게 함부로 때려서는 안된다. 옛말에 이르기를, ‘아이는 어릴 적에 가르친다.’ 하고, 또 이르기를, ‘어려서 잘 가르치는 것은 어머니의 임무이다.’ 라고 하였으니,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남녀가 분별 없음은 음란함의 매개가 된다. 그러므로 예전에 성인(聖人)이 미리 그 분별을 가르쳐, 일곱살이 되면 남녀가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같은 그릇에 먹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 뜻이 깊다. 형제간에도 그러한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으며, 일곱살도 그러한데 하물며 열살이 넘은 자이겠는가? 현명한 부인으로서 그 자녀를 올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라면 깊이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10. 시숙·시누이와의 화합(和叔妹)

시숙과 시누이는 남편의 동기간이고 시부모께서 사랑하시는 바이다. 시숙과 시누이에게 잘하면 남편과 시부모가 기뻐하고, 시숙과 시누이에게 잘못하면 남편과 시부모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니, 소홀히할 수 있겠는가? 말은 반드시 공경스럽게 하고 안색은 반드시 화평하게 하여, 비록 어리다 하더라도 웃어른과 같이 대우하고, 비록 바쁜 때라 하더라도 평상시와 같이 대접한다. 음식과 의복을 청결하도록 힘쓰고, 출입하며 왕래할 때에 반드시 일어나 공경한다.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절대 경솔히 말을 하지 말고, 만약 부득이하면 반드시 완곡한 말로 간략하게 말하되, 웃어른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도록 한다. 만약 따르지 않는다고 하면, 단지 나의 직분만 삼가서 행함이 마땅하고, 말을 많이 함은 마땅하지 않으며, 사리를 헤아려서 틈을 타 웃어른에게 약간 알려 금지하게 하되, 충분히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 대강은, 좋은 일은 시숙·시누이에게 돌리고, 좋지 않은 일은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큰 과오가 거의 없을 것이다.

11. 동서와의 화합(和妯娌)

동서는 남편 형제의 아내이다. 집안 형제가 우애있고 우애없음은 대부분 동서들에게서 연유하며, 자손들이 화목하고 화목하지 않음도 대부분 동서들에게서 연유하므로, 동서들의 관계가 중하니,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만약 자기가 맏동서라면, 아래 동서들을 후하게 대우하여 모든 일을 술선해서 스스로 힘을 다하고, 마음을 헤아려 아랫사람에게 뜻이 미치게 하여서 우의를 돈독하게 하여 화평하도록 힘쓸 것이고, 스스로 웃사람이라 하여 아래 동서들을 업신여김은 마땅하지 않다. 만약 자기가 아래 동서라면, 맏동서를 공경히 섬겨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맏동서에게 물어 그 지시를 들되, 반드시 힘을 다하도록 하고, 혹시라도 싫어하고 태만히 하여 맏동서에게 거만하게 굴지 말아야 한다. 동서들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동서의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대하며, 동서들에게 기쁜 일이 있으면 자기도 기뻐하고 동서들에게 슬픈 일이 있으면 자기도 슬퍼하며, 좋은 일은 동서들에게 돌리고 좋지 않은 일은 자기에게 돌리도록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거의 화목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12. 일가친척에 대한 대접(待宗族)

일가는 남편의 친척이다. 일가친척이 화목하면 집안이 반드시 번성하고 일가친척이 흠어지면 집안이 반드시 쇠퇴하니, 생각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진실로 일가친척을 박대하면, 이는 남편을 박대하는 것이다.

13. 살림살이하는 법(治產業)

살림살이 가운데 바깥일에 관계된 것은 부인이 말할 바 아니고, 집안일에 관계된 것은 부인이 마땅히 힘써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쌀·잡곡 등 음식물은 반드시 중히 여기고 조심해서, 비록 조금이라 하더라도 쓸데없는 곳에 버리지 말아야 한다. 봉해서 간직해 두는 것을 조심하지 않고, 밥짓고 요리하는 것이 때가 없으며, 쌓아둔 곡식을 사사로이 탐하여 갖고 싶은 것을 즐겨 사들인다면 살림살이에 크게 해되는 것뿐만이 아니므로, 현명한 부인이 마땅히 할 바가 아니니, 경계하고 경계해야 한다. 삼(麻)과 목화(棉)·누에(蠶) 농사는 각기 그 시기에 따라 반드시 힘을 쓰고 반드시 그 공력을 다해 위아래 사람들의 의복을 공급하되, 남음이 있으면 또한 공사(公私)의 비용을 도울 수 있다.

14. 손님에 대한 대접(待賓客)

손님은, 집이 있는 사람이라면 없을 수 없는 바이다. 손님이 오지 않으면 문호(門戶)가 천하고 손님이 즐겨 오면 문호가 빛나니, 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비록 가장(家長)에게 달려 있다고는 하나, 안사람에게 관계된 바가 더욱 중요하니, 음식 대접을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고 말을 반드시 삼가서 하여, 무례한 행동으로 귀와 눈에 거슬림이 없도록 한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안팎의 치욕이 어떻겠는가? 극도로 경계해야 마땅하다.

15. 이웃에 대한 대접(待鄰里)

이웃은, 서로 의지하는 자이다. 사람은 높이 날거나 멀리 달려서 홀로 세상 밖에 거처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이웃에 있어 서로 의지하게 되니, 비록 다른 성씨(姓氏)라 하더라도 마땅히 일가친척에 버금가게 대접해야 하고, 오직 내외(內外)의 구분만 엄격하게 한다.

16. 하인 거느리는 법(御下人)

하인은, 웃사람을 섬기되 웃사람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이다. 귀천(貴賤)은 비록 다르나 인정은 마찬가지로인데, 어찌 차마 모질게 굴 수 있겠는가? 웃사람이 된 자는 마땅히 어진 마음으로 비호하고 의리로 처단하며 예법으로 막고 관대하게 용서해야, 위아래가 서로 평안해서 어긋나게 되는 근심이 없을 것이다. 노비뿐만 아니라 안팎의 고용원과 남편의 첩(妾)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한 도리로써 대우해야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경멸하고 투기하는 습관 같은 것은 모두 나쁜 행동이어서 재앙을 자초할 것이니, 결코 해서는 안된다.

17. 선행을 쌓는 법(積善)

선행을 쌓으면 하늘과 사람들이 도와서 반드시 경사가 자손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선행을 쌓는 요체는 삼가고 후하게 하는 데 있다.

18. 검소하여 복을 누리는 법(惜福)

검소하게 생활하여 복을 누리면神明(神明: 하늘과 땅의 신령)이 보호하여 영구히 그 복을 누릴 것이니, 검소하게 생활하여 복을 누리는 요체는 부지런하고 검소한 데 있다.

19.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는 법(安分)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면 욕됨이 없고 분수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욕됨이 많다.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킨다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난하고 비천한 자는 가난하고 비천함에 잘 처신하고 곤궁하고 홀로 된 자는 곤궁하고 홀로 된 바에 잘 처신하여, 의복·음식과 거처·기거 동작과 일체 모든 일에 천명(天命)을 순순히 받드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해주고 하늘이 반드시 도울 것이다. 그 몸은 비록 수고로우나 그 마음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며, 지금은 비록 곤궁함에 처해 있으나 훗날 반드시 형통할 것이다. 분수에 어긋난다 함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난하고 비천하면서도 부유하고 귀한 것을 거짓 본뜨고, 곤궁하고 홀로 되고서도 신의와 절개를 지키지 않는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사람들이 반드시 천대하고 하늘이 반드시 싫어할 것이다. 그 몸이 혹 면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반드시 부끄러울 것이고, 지금은 비록 즐겁다 하더라도 훗날 반드시 근심이 있을 것이다. 부유하고 귀하면서도 교만하거나 인색한 마음이 없어서,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는 자다. 부유하고 귀하면서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이 있어 가난하고 비천한 이를 구박하는 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는 자가 아니다. 가난하고 부유하며 귀하고 천하며 흥하고 망하며 성하고 쇠하며 영예롭고 치욕스러우며 화(禍)가 되고 복(福)이 됨은 스스로 초래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현명한 부인이 되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취하고 버릴 것을 살펴서 처신해야 한다.

태공(太公：중국 주(周)나라의 강상(姜尙))이 말하기를, “부인의 예는, 말을 반드시 작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어진 부인은 남편을 귀하게 하고 나쁜 부인은 남편을 천하게 한다. 집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불의의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어진 부인은 육친(六親：부(父)·모(母)·형(兄)·제(弟)·처(妻)·자(子))을 화합하게 하고 간사한 부인은 육친을 흠어지게 한다.

여계(女誡：중국 후한(後漢)의 조소(曹昭)가 편찬한 책)에 이르기를, “여자에게는 네 가지 행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 부덕(婦德)이고 둘째 부언(婦言)이고 셋째 부용(婦容)이고 넷째 부공(婦功)이다.”라고 하였다. 부덕은 반드시 재주가 있다는 평판이 특출한 것이 아니고, 부언은 반드시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며, 부용은 반드시 얼굴이 예쁘고 고운

것이 아니고, 부공은 반드시 교묘한 손재주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다. 얌전하고 정숙하며 절개를 지키고 몸가짐이 바르며, 행동을 할 때 부끄러움이 있고 기거 동작에 법도가 있음을 바로 부덕이라 하고, 말을 가려서 하고 나쁜 말을 하지 않으며 때가 알맞은 후에야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음을 바로 부언이라 하며, 더러운 것을 빨래하여 의복을 청결하게 하며 때때로 목욕하여 몸이 더럽지 않게 함을 바로 부용이라 하고, 마음을 다하여 길쌈하고 농지거리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술과 음식을 깨끗하게 마련해서 손님을 대접함을 바로 부공이라 한다. 네 가지는 여자의 큰 법도라서 없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행하기가 매우 쉬우니, 오직 마음에 두고 있는 데 달려 있다. 성인(聖人)이 말씀하시기를, “어진 것이 멀리 있는가? 내가 어질게 하고자 하면, 이에 어짐이 이르게 된다.” 하였으니, 이를 말한 것이다.

20. 옛일을 고증하는 편(稽古篇)

(1) 태임(太任)은 문왕(文王)의 어머니이니, 지(摯)^{나라} 임씨(任氏)의 둘째딸로서, 왕계(王季)가 장가들어 비(妃)로 삼았다. 태임의 성품이 바르고 한결같으며 성실하고 엄숙하여 오직 덕이 있는 행동만을 하였다. 문왕(文王)을 임신하기에 이르러, 눈으로는 나쁜 모양을 보지 않고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내지 않았다. 문왕을 낳으니, 총명하고 통달하여 태임이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알았는데, 마침내 주(周)나라의 제왕이 되었다. 군자(君子)가 논평하기를, “태임이 태교(胎敎)를 잘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열녀전(烈女傳)과 소학(小學)에 나온다.

(2) 태사(太姒)는 무왕(武王)의 어머니이니, 신(莘)^{나라} 사씨(姒氏)의 딸로서, 문왕(文王)이 장가들어 비(妃)로 삼았다. 태사의 덕이 얌전하고 정숙하여 문왕을 공경하고 섬겨서 문왕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았으며, 여러 첩(妾)들을 사랑하여 여러 첩들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았다. 문왕이 평안하고 여러 첩들이 화목하여, 화평한 기운에 감응해서 복록(福祿)이 날로 이르러, 자손이 많아지고 무왕(武王)·주공(周公)을 낳았으니, 모두 성인(聖人)이다. 군자가 논평하기를, “태사의 덕이 문왕에게 짝될 만하다.” 하였다. 주시(周詩)에 나온다.

(3) 공강(共姜)은 위(衛)나라 세자(世子) 공백(共伯)의 아내로서, 제(齊)나라 강씨(姜氏)의 딸이다. 성품과 행동이 곧고 절개를 지키며 바르고 착해서, 공백이 일찍 죽고 자식이 없었으나 절의를 지키니, 그 부모가 뜻을 빼앗아 시집보내고자 하였다. 공강이 백주

(栢舟)의 시(詩)⁶⁾를 지어, 죽음으로써 스스로 맹세하니, 그 아름다운 이름과 탁월한 절개가 만세에 영구히 전한다. 위시(衛詩)와 소학에 나온다.

(4) 경강(敬姜)은 노공(魯公)의 아버지 문백(文伯)의 어머니로서, 제(齊)나라 강씨(姜氏)의 딸이다. 남녀의 구별에 엄하고 상례(喪禮)의 처리를 상세히 하므로, 공자(孔子)께서 듣고 현명하게 여기셨다. 몸이 귀함에도 불구하고 길쌈하는 데 부지런하고 또 고전(古典)을 낱낱이 들어 그 자식을 교육하되 매우 조리가 있으니, 주자(朱子)께서 취하여 교훈으로 삼으셨다. 곡례(曲禮)와 소학에 나온다.

(5) 맹자(孟子)의 어머니 장씨(仉氏)는 그 집이 묘지 가까이 있었는데, 맹자가 어렸을 적에 놀면서 무덤 만드는 일을 하여, 흙을 파고 묻고 다지고 봉분을 쌓고 하였다. 장씨가 말하기를, “이곳은 아들이 살 곳이 못된다.” 하였다. 이에 시장으로 이사하였는데, 아들이 놀 때에 물건 파는 일을 하니, 장씨가 말하기를, “이곳도 아들이 살 곳이 못된다.” 하였다. 이에 학교 옆으로 이사하였는데, 아들이 놀 때에 제기(俎豆)를 늘어놓고, 절하면서 나아가고 물러서고 하니, 장씨가 말하기를, “이곳이야말로 아들이 살 만한 곳이다.” 하고, 마침내 그곳에 살았다. 장(仉)의 음(音)은 장(蔣)이다. ○열녀전과 소학에 나온다.

맹자가 어렸을 적에 묻기를, “동쪽 집에서 돼지를 잡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너에게 먹이려는 것이다.”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서 곧 후회하기를, “예전에 태교(胎敎)가 있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마침 알고 있는데도 속인다면, 이는 가르쳐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하고, 이에 돼지고기를 사다가 먹였다. 맹자가 자라서 학문의 길로 나아가 마침내 아성(亞聖: 성인인 공자에 버금가는 대현인(大賢人))에 이르렀다. 열녀전과 소학에 나온다.

맹자가 이르기를, “지금 도(道)가 행해지지 않는데 어머님께서 노쇠하셨으니, 이것이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어머니가 이르기를, “부인의 예는, 다섯 가지 곡식을 정결하게 하고 술과 장(醬)을 잘 덮으며 시부모를 봉양하고 옷을 꿰매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가정 안의 수양은 있어도 경계 밖에 대한 뜻은 없는 것이다. 주역(周易)에 이르기를 ‘중饋(中饋: 주부가 부엌 안에서 한집안의 식사를 주장하는 일)에 있고 멀리 나감은 없다.’라 하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그릇됨도 없고 의로움도 없다.’ 하였으니, 부인은 마음대로함이 없다는 의미를 말한 것이다. 너는 너의 직분을 행하고 나는 나의 예를 행할 뿐이다.” 하

6) 시경(詩經)의 백주편(栢舟篇)에 공강의 시가 나온다.

였다. 군자가 논평하기를, “맹자의 어머니는 도(道)를 알고 있다.” 하였다. 주시(周詩)의 주(註)에 나온다.

(6) 조희(趙姬)는 조성자(趙成子)⁷⁾ (쇠(衰))의 아내 희씨(姬氏)로서, 진(晉)나라 문공(文公)의 딸이다. 처음에 조성자가 오랑캐땅(狄)으로 도망하였다가 그곳의 여자 계외(季隗)에게 장가들어 조돈(趙盾)을 낳았었다. 이윽고 진나라에 들어와 경이 되자, 문공이 딸을 아내로 삼게 하여 세 아들을 낳았다. 조희가 조성자에게 간청하여 장자(長子)인 조돈의 모자(母子)를 오랑캐 땅에서 맞아들여, 계외를 높여 정부인(正嫡)으로 삼고 조돈을 적자(嫡子)로 삼도록 하고 자신은 여러 첩(妾)의 지위에 있었다. 군자가 이를 의롭게 여겼다.

진사(晉史)와 여범(女範)에 나온다.

(7) 제(齊)나라 대부(大夫) 왕손가(王孫賈)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랑하고 대체(大體: 사물의 기본적인 큰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 왕손가에게 임금이 있는 곳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여 이르기를, “네가 아침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문에 기대어 기다리고,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마을 어귀의 문에 기대어 기다린다. 너는 지금 임금을 섬기다가 임금이 밖으로 나가 달아났는데, 간 곳을 알지 못하면서 네가 어찌 돌아왔느냐?” 하였다. 왕손가가 곧 저자 가운데로 들어가 말하기를, “요치(淖齒)가 우리 임금을 죽였으니, 나와 함께 요치를 치고자 하는 자는 옷을 벗어 매고 뒤따르라.” 하여, 이에 4백여 명을 얻어서 요치를 쳐부수어 임금의 원수를 갚고, 왕자(王子) 법장(法章)을 세워 그 나라를 회복시켰다. 군자가 그 어머니를 현명하게 여겼다. 통감(通鑑)과 소학에 나온다.

(8) 채(蔡)나라 사람의 한 아내는 송(宋)나라 사람의 딸이었다. 이미 시집간 다음에 보니 남편에게 나쁜 병이 있으므로, 그 어머니가 장차 개가시키려고 하였다. 여자가 말하기를, “남편의 불행이 바로 저의 불행인데, 어찌 떠나겠습니까? 남에게 시집가는 도리는, 한번 남과 혼례를 하면 죽을 때까지 고치지 못하는 것인데, 불행하게 나쁜 병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끝내 듣지 않았다. 군자가 그를 어질게 여겼다. 열녀전과 소학에 나온다.

(9) 위(魏)나라 대장(大將) 악양(樂羊)의 아내는 청렴결백하고 지혜가 있었다. 처음에 그 남편이 길에 떨어뜨린 금(金)을 주운 것을 보고 간(諫)하기를, “뜻이 있는 선비는 의롭지 못한 물(盜泉之水)을 마시지 않고, 현명한 자는 업신여기며 주는 음식(嗟來之食)을 받지 않는데, 당신은 어찌 법도에 어긋나는 금을 좋아하여 의롭지 못한 일을 즐겨 하려 하십니까?”

7) 춘추 시대 진(晉)나라 문공(文公)의 신하. 문공을 따라 출망(出亡)한 지 19년만에 귀국한 후 문공을 도와 그 패업(霸業)을 이루는 데 크게 이바지하여 경(卿)으로 임명되었음.

까?” 하니, 답하기를, “금은 주인이 없는 것이오.” 하였다. 아내가 말하기를, “금은 주인이 없는 것이라지만, 마음에도 주인이 없겠습니까?” 하니, 악양이 부끄러워하며, 이에 길에서 기다리다가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악양이 또 타향(他鄉)에 가서 공부하다가 다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니, 아내가 그 까닭을 묻자, 말하기를, “고향이 생각나서 돌아왔소.” 하였다. 아내가 마침 베를 짜고 있다가 곧바로 칼을 가지고 스스로 베틀의 실을 끊고서 말하기를, “촌(寸: 한 치)이 쌓여서 척(尺: 한 자, 열 치)을 이루고, 척이 쌓여서 장(丈: 열 자)을 이루며, 계속 쌓이기를 그치지 않아야 이에 온전한 필(匹)을 이룹니다. 지금 당신은 학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돌아오셨으니, 제가 베틀의 실을 끊어 앞서의 공(功)을 모두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니, 악양이 두려워하며 깨닫고서 그 학업을 힘써 끝마쳤다. 후에 대장이 되어 마침내 큰 공을 이루니, 군자가 그 아내를 현명하게 여겼다. 사요(史要)와 여범에 나온다.

(10) 진(秦)나라 범기량(范杞良)의 아내 강씨(姜氏)는 결혼한 지 겨우 3일만에 남편이 진시황(秦始皇)의 장성(長城)을 쌓는 부역에 멀리 나아갔다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강씨가 옷을 가지고 멀리 찾아나섰다가 그 남편이 이미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에 쌓인 시체 가운데에서 유골(遺骨)을 검사하였는데, 자기의 피를 방울져 떨어지게 해서 시험하니, 피가 모두 (유골에) 들어가지 않았다. 삼일 동안 밤낮없이 쉬지 않고 크게 울자 성(城)이 무너지고 백골(白骨)이 보이므로, 마침내 피를 떨어뜨려 보았더니, 백골에 스며들어 닳을 수 없었다. 그것이 남편의 유골임을 알고서 유골을 지고 동관(潼關)으로 나와 힘을 다하였으나 갈 수 없었다. 이에 유골을 바위 아래에 두고 그 곁에 앉아서 죽었다. 동관 사람들이 슬퍼하며 어질게 여겨서, 인하여 그 부부(夫婦)를 장사지내고 사당을 세워 제사지냈다. 여범에 나온다.

(11) 한(漢)나라 사람 강시(姜詩)의 아내 방씨(龐氏)는 지극히 효성스러워, 시어머니가 강물을 마시고 싶어하자 방씨가 멀리 가서 길어다가 드리고, 시어머니가 강의 물고기를 먹고 싶어하자 방씨가 장신구를 떼어 (물고기와) 바꾸었다. 집 옆에 갑자기 맛있는 샘물이 솟아났는데, 그 맛이 강물보다 나았고, 샘 안에 날마다 두 마리의 잉어가 뛰어올라 가져다가 드리니, 사람들이 모두 효성에 감응하여 이루어진 바라고 하였다. 여사서(女四書)에 나온다.

(12) 진(陳)나라의 효부(孝婦)는 나이 16세에 시집가서 아직 자식이 없었는데, 그 남편이 수자리살러 나가게 되었다. 갈 때에 효부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살아날지 죽을지 알 수 없는데, 마침 늙은 어머님이 계시고 봉양할 다른 형제가 없으니,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잘 봉양하겠소?” 하니, 부인이 응답하기를, “삼가 뜻을 받들겠

습니다.” 하였다. 남편이 과연 죽고 돌아오지 않으니, 부인은 시어머니 봉양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굳건해졌으며, 길쌈하는 것을 가업(家業)으로 삼고 끝내 재가할 뜻이 없었다. 상(喪)을 당한 지 3년이 되자 그 부모가 딸이 젊어서 자식 없이 일찍 과부가 된 것을 애처롭게 여겨 데려다가 개가시키고자 하였다. 효부가 말하기를, “남편이 떠날 적에 저에게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도록 부탁하여 제가 이미 허락하였으니, 대개 남의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다가 끝마치지 못하고 남의 부탁을 허락해 놓고서 신의를 지키지 못한다면, 장차 어찌 세상에 나설겠습니까?” 하고 자살하려 하니, 그 부모가 두려워서 감히 개가시키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 시어머니를 봉양한 지 28년만에 시어머니가 80여 세의 천수(天壽)를 누리고 죽으니, 그 밭과 집과 재물을 팔아 장례지내고 끝까지 제사를 받들었다. 회양 태수(淮陽太守)가 듣고서 사자(使者)를 시켜 황금(黃金) 40근(斤)을 내려 주게 하고, 세금을 면제하여 종신토록 거두는 바가 없도록 하였으며, 칭호를 효부(孝婦)라고 하였다. 열녀전과 소학에 나온다.

(13) 포선(飽宣 : 한(漢)나라 사람)의 아내 환씨(桓氏)의 자(字)는 소군(少君)이다. 포선이 일찌기 소군의 아버지에게 가서 배웠는데, 아버지가 그의 청렴하고 부지런히 힘쓰는 것을 기특하게 여겨 딸을 그에게 시집보내었으니, 몸을 잘 단장하고 혼수도 매우 성대하게 하여 보냈다. 포선이 이를 기뻐하지 않고 그 아내에게 이르기를, “소군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름다운 치장에 익숙한데, 나는 실로 가난하고 천하여 예(禮)를 감당할 수 없소.” 하니, 아내가 말하기를, “아버님께서선 선생이 덕망을 닦고 검약을 지키셨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남편을 받들게 되었으니, 오직 명대로 따르겠습니다.” 하자, 포선이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와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뜻이오.” 하였다. 아내가 곧 시중들러 온 사람과 화려한 의복을 모두 돌려보내고, 짧은 베옷으로 갈아 입고서 남편을 따라 작은 수레(鹿車)를 함께 끌고서 고향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에게 절하는 예를 마치고 나서 물동이를 가지고 나가 물을 길고 부녀자의 도리를 닦고 시행하니, 고을과 나라에서 칭송하였다. 소학과 여사서에 나온다.

(14) 태창령(太倉令) 순우의(淳于意 : 제(齊)나라 사람)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딸이 다섯 있고 아들은 없었다. 어린 딸 제영(緹縈)이 아버지를 따라 서울에 가서, 글을 올려 애걸하면서 자신이 대신하기를 원하였다. 문제(文帝)가 그 효성을 가

상하게 여겨 용서하고, 인하여 육형(肉刑)⁸⁾을 면제하여 주었다. 동갑과 여사서에 나온다.

(15) 백란처사(伯鸞處士) 양홍(梁鴻)의 아내 맹광(孟光)이 처음 시집갔을 적에 의복과 장식이 매우 사치스러웠다. 양홍이 좋아하지 않으니, 맹광이 다시 머리를 틀어올리고 베 옷을 입었다. 양홍이 기뻐하며 말하기를, “진실로 나의 아내로다.” 하고, 자(字)를 지어 덕요(德耀)라 하였다. 맹광은 힘이 돌절구를 들 만하였으나, 유순하고 공경하며 삼가서, 매번 남편에게 음식을 갖다줄 때마다 반드시 눈썹 높이까지 밥상을 들어올려 남편을 섬기면서도 오직 삼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니, 같은 집의 귀인(貴人) 고백통(皋伯通)이 경탄하여 마지 않았다. 한사(漢史)와 여사서에 나온다.

(16) 조(趙)나라 왕가령(王家令)의 아내 진나부(秦羅敷)는 매우 아름다웠다. 임금이 그를 빼앗고자 하니, 진나부가 시(詩)를 지어 풍자하였으니, 대략 이르기를, “임금으로 하여금 또한 어찌 어리석게 만들 수 있겠는가? 임금에게는 본래 부인이 있고 나부에게도 본래 남편이 있다네.” 하자, 임금이 곧 그만두었다. 후세 사람들이 말하기를, “부녀자들이 항상 품고 있는 심정이라는 것이, 가난하고 천한 것을 싫어하고 높고 귀한 것만 사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왕가령은 신분이 천하고 낮으며, 조나라 임금은 신분이 귀하고 높으니, 만약 의리 없는 자가 그런 일을 당하였다면 반드시 기꺼이 따랐을 터인데, 진나부는 부귀를 하찮게 여기고 그 절개를 굳게 지켜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돌아보지 않았으니, 어질도다! 조나라 임금이 의리에 맞지 않게 하였다가 의로운 말을 듣고 고쳤으니, 또한 면할 만하다.” 하였다. 여사서에 나온다.

(17) 양(梁)나라의 한 절개 있는 부인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있었다. 위(魏)나라 임금이 그의 용모가 아름다운 것을 보고 데려다가 비(妃)로 삼고자 하였더니, 부인이 코를 자르고서 말하기를, “임금께서 저를 욕심내시는 것은 용모 때문인데, 이제 형여(刑餘: 형벌을 받았으나 목숨을 보전함)한 사람을 어찌하시겠습니까? 제가 죽지 않은 이유는, 어린 아들을 양육해서 장성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자, 임금이 크게 부끄러워하여 이에 고행절부(高行節婦)라는 호칭을 내려 주었다. 여사서에 나온다.

(18) 진(晉)나라 형주 자사(荊州刺史) 도간(陶侃)의 어머니 잠씨(湛氏)는 어질고 지혜가 있었다. 처음에 매우 가난하였으나 손님이 오면 기뻐하며 대접하였다. 하루는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니, 잠씨가 머리를 잘라 손님을 대접하고 자리를 썰어서 말을 먹였

8) 몸에 상처를 내는 형벌, 곧 의형(刖刑)·비형(劓刑) 등.

다. 후에 아들 도간이 감어리(監魚吏)가 되어 젓갈을 보내어서 어머니에게 대접하였다. 잠씨가 젓갈을 봉한 채 돌려보내고, 편지를 보내어 책망하기를, “네가 관가의 물건을 나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하니, 도간이 더욱 감동하고 힘써서 마침내 이름난 신하가 되었다. 진사(晉史)와 역사서에 나온다.

(19) 허윤(許允)의 아내 완씨(阮氏)는 용모가 지극히 추하여 그 남편이 처음에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으나, 너그럽고 착한 마음씨가 매우 아름답고 말에 조리가 있어, 마침내 그 남편으로 하여금 공경하고 소중하게 여기게끔 하였다. 진사(晉史)에 나온다.

(20) 위(魏)나라 조문숙(曹文叔)의 아내 하후씨(夏侯氏)의 이름은 영녀(令女)이니, 위나라 재상 하후문녕(夏侯文寧)의 딸이다. 조문숙이 일찍 죽고 조씨(曹氏) 일족이 법에 저촉되어 모두 죽었다. 부모가 개가시키고자 하니, 영녀가 말하기를, “어진 사람은 (그 집안의) 왕성과 쇠퇴에 따라 절개를 고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생존과 죽음에 따라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고, 이에 스스로 그 귀를 베어 맹세하였다. 그 후에 부모가 또 강제로 개가시키고자 하니, 딸이 또 코를 베어 절개를 보전하였다. 사마의(司馬懿)가 가상하게 여겨, 후계자를 세워 후사(後嗣)로 삼도록 들어주었다. 자치통감(資治通鑑)과 소학에 나온다.

(21) 당(唐)나라 정의종(鄭義宗)의 아내 노씨(盧氏)는 경서와 역사를 두루 공부하고, 시 부모를 모시는 데 부녀자의 도리를 매우 잘 지켰다. 밤에 여러 명의 도둑이 그 집에 침입하였는데, 어른과 어린이가 모두 도망가고 오직 늙은 시어머니만 방에 있었다. 노씨가 시퍼런 갈닐을 무릅쓰고 뚝으로 시어머니를 막다가 도적에게 매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 도적이 간 후에 사람들이 노씨에게 묻기를, “어찌하여 도망가지 않았는가?” 하니, 답하기를, “이웃에 위급한 일이 있어도 오히려 구호해야 마땅한데, 하물며 시어머니이겠습니까? 만약 돌아가신다면, 의리상 어찌 혼자 살아남겠습니까?” 하자, 모두 그 의리에 탄복하였다. 당서(唐書)와 소학에 나온다.

(22) 최산남(崔山南)의 증조모(曾祖母) 장손부인(長孫夫人)은 나이가 많아 이(齒)가 없었다. 조모(祖母) 당부인(唐夫人)이 젊었을 때 아침이면 반드시 뜰 아래에서 절하고 나서 방으로 올라가 시어머니에게 젓을 먹이니, 시어머니가 쌀밥을 먹지 못하였어도 수년 동안 건강하였다. 죽을 때에 다다라 집안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새며느리의 아들과 손자들이 모두 새며느리의 효성과 같기를 바란다.” 하였다. 후에 최산남이 과연 후한 녹봉(祿俸)으로 당부인에게 효도하고 공경하였다. 당서와 소학에 나온다.

(23) 하동 절도사(河東節度使) 유공작(柳公綽)의 아내 한씨(韓氏)는 재상 한휴(韓休)의

증손(曾孫)이다. 유씨에게 시집간 지 삼년 동안 사람들은 그가 이를 보이고 웃거나 눈썹을 찌푸리고 성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시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남편을 공경하여 섬기고, 아랫사람을 은혜로 거느렸으며, 몸가짐을 검소하게 하여 수놓은 비단옷을 입지 않고 고운 색깔의 가마를 타지 않았다. 고삼(苦參)·황련(黃連)·웅담(熊膽)을 가루내어 환(丸)을 지어서 여러 아들에게 나누어주고 먹게 해서 긴 밤 동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였는데, 그 아들 유중영(柳仲郢)이 과연 어진 대부(大夫)가 되었다. 소학과 여사서에 나온다.

(24) 궤주 사호(虢州司戶) 왕웅(王凝)의 아내 이씨(李氏)는 남편이 죽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관을 지고서 돌아가다가 여관에 다다랐는데, 주인은 그가 관을 가지고 있다 하여 들이지 않으므로, 이씨가 간청하였으나, 주인이 그 손을 끌어당겨 내쫓았다. 이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하늘이시여! 제가 불행하게도 재앙을 만나 이 손을 다른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하고, 곧바로 칼을 가지고 스스로 그 손을 잘랐다. 유사(有司)가 듣고서 그 절개를 포상하고 주인의 죄를 다스렸다. 오대사(五代史)와 여사서에 나온다.

(25) 송(宋)나라 하남(河南) 정부자(程夫子)의 어머니 후씨(侯氏)는 어렸을 적에 옛 시를 읽다가 ‘여자는 밤에 나가지 않는다’는 구절을 보고 이때부터 해가 저물면 집을 나가자 않았다. 정씨(程氏)에게 시집가게 되자, 시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고 남편과 서로 손님처럼 대우했으며, 항상 스스로 겸허하여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아뢴 후에 행하였다. 여러 서자(庶子)와 조카들을 사랑하여 자기 자식과 다름없이 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데 법도가 있었다. 숨웃과 국을 보면 책망하기를, “어려서 하고자 하는 대로 다하고자 하면 커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남과 다투는 것을 보면 비록 올바르게 하더라도 편들지 않고 말하기를, “급히지 못함을 걱정해야지 이기지 못함을 걱정할 것 없다.” 하였으며, 자식들이 노비를 꾸짖는 것을 보면 훈계하기를, “귀천이 비록 다르다고 하나 사람은 한가지이다.” 하였다. 남편이 성난 바 있으면 반드시 너그럽게 품어주고, 여러 아이들 가운데 잘못이 있으면 가려주지 않고 말하기를, “자식이 미련한 바는, 어미가 그 잘못을 가려서 아비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고, 항상 아이들로 하여금 어진 스승을 따라 벗들과 놀게 하였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손님이 있으면 기뻐하며 차렸다. 비록 글을 좋아하기는 하였으나 시문(詩文) 짓기를 좋아하지 않아, 세상의 부녀자 가운데 혹 문장이나 기록으로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자는 매우 그릇되게 여겼으므로, 실로 여자 가운데 군자(君子)이니, 마땅히 군자를 낳을 만한 자이다. 근사록(近思錄)과 여사서에 나온다.

(26) 여형공(呂榮公)의 어머니 신국부인(申國夫人) 노씨(魯氏)는 참정(參政) 노종도(魯

宗道)의 딸이다. 성품이 엄하고 법도가 있어, 비록 자식을 깊이 사랑하였으나, 자식을 가르침에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반드시 법규를 따르게 하였는데, 여형공은 덕행과 기량을 이루어, 과연 다른 사람들과 크게 달랐다. 여형공의 아내 장부인(張夫人)은 대제(待制) 장온지(張溫之)의 딸로서, 여형공과 함께 산 지 60년 동안 하루도 뜻을 거슬린 적이 없었으니, 어진 남편의 뜻을 거슬림이 없었음은 그의 어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어진 아들 여순종(呂舜從)을 낳았으니, 그 훌륭함이 대대로 이어졌다. 여씨가전(呂氏家傳)과 소학에 나온다.

(27) 당(唐)나라의 재상 최현위(崔玄暉)의 어머니인 노씨(盧氏)는 일찌기 아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내가 이종사촌오빠인 신현어(辛玄馭)에게서 들으니, 어린아이로서 시종이 된 자가 씹씹이가 군색하다고 하면 좋은 소식이고, 재물이 충분하다고 하면 나쁜 소식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것이 확실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또 말하기를, ‘벼슬살이하는 자가 돈이나 물건을 가지고 그 부모에게 드리면, 부모는 다만 기뻐할 줄만 알고 이 물건이 어디에서 생긴 것인지는 물어보지 않으니, 도리에 얻을 만한 것을 가지고 스스로 검소하게 하여 아버이를 섬긴다면 옳거니와, 만약 도리에 어긋나게 얻은 바라면 도적과 어찌 구별되겠느냐? 설사 큰 허물은 없다 하더라도 유독 마음에 몰래 부끄럽지 않겠느냐?’라고 하였다. 대개 시종이 되어 군색하다고 하면 반드시 청렴한 것이고, 충분하다고 하면 반드시 탐욕스러운 것이니, 청렴은 군자(君子)의 도리이고, 탐욕은 소인(小人)의 도리이다.” 하였다. 그 아들이 가르침을 삼가 받들어서 드디어 어진 재상이 되었다. 당서와 소학에 나온다.

(28) 송(宋)나라 화정선생(和靖先生) 윤논(尹焞)의 어머니 진씨(陳氏)는 아들로 하여금 정자(程子: 정호(程顥) 또는 정이(程頤)의 존칭)를 스승삼게 하였다. 성장하여 과거(科擧)를 보게 되었는데, 조정에서 올바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여 과거 제목의 글 뜻이 옳지 않음을 보고는 답을 쓰지 않고 나와서 정자에게 아뢰기를, “다시는 과거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정자가 말하기를, “어머니께 돌아가 아뢰도록 해라.” 하여, 이에 어머니에게 아뢰니, 어머니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아는데, 올바름으로써 봉양해야지 녹봉(祿俸)으로써 봉양함은 원치 않는다.” 하자, 정자가 듣고 감탄하여 말하기를, “어질도다! 어머니여.” 하였다. 송사(宋史)와 이정전서(二程全書)에 나온다.

(29) 통판(通判: 송나라에서 한 주(州)의 정사를 감독하던 벼슬) 조양발(趙昂發)의 아내 웅씨(雍氏)는 남편이 지주 통판(池州通判)이 되어 관사(官舍)에 따라가 살았다. 원(元)나라 군사가 성을 포위하여 형세가 위급하게 되자, 조양발이 웅씨에게 이르기를, “나는 마땅히 의롭게 죽어야 하나, 당신은 나가서 피하는 것이 좋겠소.” 하니,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명관(命官 : 임금이 직접 임명한 벼슬아치)이 되고 제가 명관의 부인이 되었으니, 당신이 충신(忠臣)이 되는데 저만 충신의 부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부부가 동시에 절의를 지켜 죽으니, 천년 동안 명성이 후세에 전해진다. 송사와 역사서에 나온다.

(30) 양향(楊香)은 진(晉)나라 농부 양풍(楊豐)의 딸이다. 나이 14세에 아버지가 밭을 갈다가 호랑이에게 물리게 되었는데, 양향이 뛰어서 앞으로 나아가 호랑이 목을 끌어당겨 조르니, 호랑이가 놀라서 달아나고 아버지는 살아났다. 대개 어린 여자가 어찌 호랑이를 제압할 수 있겠는가? 오직 아버지를 구하려는 마음이 절실해서, 아버지가 계신 것은 알면서 자기 자신이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천신(天神)이 감동한 것이다. 역사서와 이륜실록(二倫實錄)에 나온다.

(31) 봉천(奉天) 사람 두씨(竇氏)의 두 딸은 일찌기 지조가 있었으니, 맏이는 19세이고 둘째는 16세였다. 도적떼가 있어 마을을 노략질하니, 두 여자가 바위굴에 도망가 숨었는데, 도적들이 끌어내었다. 여자가 말하기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치욕을 당할 수는 없다.” 하고, 언니가 먼저 절벽 아래로 떨어져 죽었으며, 동생도 이어서 떨어져 거의 죽게 되니, 도적이 버려두고 가버렸다. 경조윤(京兆尹)이 그 정렬(貞烈)을 가상하게 여겨 아뢰니,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고 그 집의 정역(丁役)⁹⁾을 면제하여 주었다. 당서와 소학에 나온다.

(32) 민(閔)나라 사람 여홍(余洪)의 아내 정씨(鄭氏)는 당(唐)나라 장수 왕건봉(王建封)에게 사로잡혀 그 원수(元帥) 사문휘(查文徽)에게 바쳐졌다. 사문휘가 그 용모를 보고 기뻐하여, 받아들여서 배필로 삼고자 하였다. 정씨가 그를 책망하여 말하기를, “제왕의 군대는 정벌할 때 충성된 자를 포상하고 절개있는 자를 표창함이 마땅합니다. 왕건봉은 군대의 장수로서 오히려 절개를 더럽히지 말아야 할 것인데, 공(公)은 원수로서 어찌 스스로 제왕의 단서를 만드십니까?” 하니, 사문휘가 부끄러워하며 곧 그 남편을 찾아서 잘 돌려 보냈다. 역사서에 나온다.

(33) 명(明)나라 한태초(韓太初)의 아내 유씨(劉氏)는 시어머니가 중풍을 앓자 밤낮없이 파리와 모기를 쫓았고, 중기가 썩어서 구더기가 생기자 그 구더기를 조심스럽게 없앴으며, 자기의 팔뚝을 찢러 피를 내어서 약에 타 드리니 병이 마침내 나았으므로, 효성이 온 나라에 널리 알려졌다. 역사서에 나온다.

(34) 강동(江東)의 부녀자들은 교유하는 바가 거의 없어, 비록 혼인한 집안이라 하더라도 왕래가 없었으며, 오직 신의에 따라 선물하는 것으로 은근한 정을 다하였으니, 군자(君

9) 옛날 중국에 여러 나라로부터 정남(丁男)·정녀(丁女)가 경도(京都)에 와서 여러 가지 일에 복역(服役)하던 일.

子)가 의롭게 여겼다. 업(鄴) 땅의 부녀자들은 예의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 하였으므로 군자가 그릇되게 여겼다. 소학에 나온다.

(35) 신라(新羅)의 명신(名臣) 김개국공(金開國公: 김유신(金庾信))의 어머니는 개국공이 어렸을 적에 매일 훈계하여 함부로 교유하지 말도록 하였다. 하루는 계집종 천관(天官)의 집에서 우연히 자게 되었는데, 부인이 책망하여 말하기를, “내가 늙어서, 밤낮으로 오직 네가 장차 뛰어난 인재가 되기만 바라고 있는데, 지금 네가 어린아이와 음란하게 노느냐?” 하고, 울기를 그치지 않았다. 공이 그 죄를 깊이 반성하고 분발하여 힘을 다해서 큰 공을 이룩하였다. 속소학(續小學)과 동사(東史)에 나온다.

(36) 고려(高麗)의 충신 청송당(靑松堂) 도응(都膺)선생의 네째 며느리 서씨(徐氏)는 남편이 죽은 후 여묘(廬墓)¹⁰⁾살이를 3년 동안 하였는데, 지성이 신을 감동시켜 가지고 있던 대나무 지팡이에 흰 죽순이 솟아났다. 조선조(朝鮮朝) 태종대왕(太宗大王)이 가상하게 여겨 백죽도(白竹圖)를 내려 주고 백순시(白筍詩)를 지어 이르기를,

“천년 동안 소상(瀟湘) ¹¹⁾ 의 한은 끝이 없는데	千載瀟湘恨不窮
해마다 대나무에는 붉은 반점이 보이는구나.	年年竹上見斑紅
모름지기 절개를 앓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으니	須知素節無今昔
흰 죽순이 한두 개 새로 났도다.	白筍新生一兩叢”

하고, 인하여 정려(旌閭)¹²⁾하도록 명하니, 자손들이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여긴다. 동사의 도씨보(都氏譜)에 나온다.

(37) 조선조(朝鮮朝)의 명신 김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선생이 두번째로 상가는 부인인 정부인(貞夫人: 2품의 외명부(外命婦)) 문씨(文氏)는 18세에 선생에게 시집가서 10년 동안 살고 선생이 죽으니, 향년 61세였고 부인의 나이는 27세였다. 나라에서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고 예우가 매우 융숭하였다. 그후 6년째인 무오년(戊午年: 1498년)에 간신(奸臣)의 모함을 당하여,¹³⁾ 죽은 사람에게까지 해가 미치고 문씨는 운봉(雲峯)

10) 상제가 무덤 근처에 여막을 짓고 살면서 무덤을 지키는 일.

11) 중국 호남성(湖南省)에 있는 두 강 이름인 소수(瀟水)와 상수(湘水). 술이기(述異記)에 의하면, 중국의 순(舜)임금이 남쪽으로 순행(巡行)하다가 창오(蒼梧)의 들에서 죽었을 때 두 왕비인 아황(娥皇)과 여영(女英)이 뒤를 따라가다가 소수와 상수에 다다라 서로 붙들고 울었는데, 눈물이 대나무를 적셨더니, 반문(斑紋)이 생겼다고 전해짐.

12) 충신·효자·열녀들을, 그들이 살던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는 일.

13) 연산군 4년(1498년)에 유자광(柳子光)을 중심한 훈구파(勳舊派)와 김종직(金宗直)을 중심한 사림파(士林派)사이에 일어난 무오사화(戊午史禍). 훈구파가 성종실록(成宗實錄)에 실린 사초(史草) 조의제문(弔義帝文)으로 사림파를 모함하여, 이미 죽은 김종직의 판을 파헤쳐 그 목을 베고, 김일손(金駟孫)을 비롯한 많은 명신이 죽임을 당하고 쫓겨났음.

으로 내쫓겼다.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르신의 평생 지조와 절개는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죽어서 잘못되게 화를 당하니, 이는 세상의 운수에 관계된 바이므로, 단지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머리를 자르고 상복(喪服)을 입고서 유배지에 9년 동안 있었는데, 한번도 웃지 않고 또한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안색을 바로잡아 엄정하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경탄하고 탄복하였다. 필재연보(畢齋年譜)에 나온다.

(38) 일두(一蠹) 정여창(鄭汝昌)선생의 어머니 최씨(崔氏)는, 선생이 젊었을 적에 술을 좋아하여 취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엄하게 책망하여 이르기, “너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내가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오직 너뿐인데, 이제 네가 이와 같으니, 나는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겠느냐?” 하였다. 선생이 깊이 깨달아 다시는 술을 가까이하지 않고서 독실하게 공부하고 힘써 수행하여 마침내 대현(大賢: 성인(聖人)) 다음가는, 지덕(智德)이 아주 높은 사람이 되었다. 속소학에 나온다.

(39) 진산군(晉山君) 강희맹(姜希孟)의 부인 안씨(安氏)는 젊어서부터 부녀자의 도리를 매우 잘 지켰다. 성종(成宗) 8년(1477년)에 원자(元子: 임금의 적자(嫡子)). 연산군(燕山君)이 병이 있어, 장수(將帥)와 재상(宰相) 가운데 법도 있는 집안을 택하여 보호하게 되었는데, 부인의 처소로 옮기도록 명하였다. 부인이 그 춥고 더운 것을 조절하고 젖먹이는 것을 때 맞추어 해서 열흘도 안되어 기운이 건강해졌다. 임금이 기뻐하고, 또 좋은 집안에 법도 있음을 가상하게 여겨, 매우 후하게 상을 내려 주었다. 안씨가 죽자, 중종(中宗)이 부의(賻儀)를 모두 갖추어 특별히 내려 주었으니, 대개 전세에 드문 은혜이므로, 모두들 그가 평생 선행을 닦은 소치라고 하였다. 청야록(靑野錄)에 나온다.

(40) 회재(晦齋) 이언직(李彦迪)선생의 어머니 손씨(孫氏)는, 선생이 일찌기 고아가 되어 배우지 못함을 근심하여 서로 붙잡고 울다가, 사랑하는 마음을 끊고, 선생의 외삼촌인 우재선생(愚齋先生)의 부임지 양산(梁山)에 보내어 배우게 하였다. 그 후에 선생이 자기 스스로 깨닫기를 더하여 마침내 대현(大賢)이 되었다. 회재연보(晦齋年譜)에 나온다.

(41) 퇴계(退溪) 이황(李滉)선생의 어머니 박씨(朴氏)는 남편이 죽고 어린 아이들만 앞에 가득하니 집안을 보전할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농사와 누에치기에 더욱 힘썼다. 그들이 점차 자라기를 기다려 재산을 내어서 공부하는 데 비용으로 삼고, 경계하여 이르기, “너희들은 힘써 공부하여 과부의 자식이라서 배운 게 없다는 수치를 남기지 말도록 하여라.” 하였다. 그 후에 여러 자식들이 모두 현명하였는데, 선생이 대현(大賢)으로 더욱 널리 알려졌다. 퇴계연보(退溪年譜)에 나온다.

(42) 상공(相公: 재상)인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선생의 어머니 신씨(申氏)는 항상 자식들에게 훈계하기를, “과부의 자식은 사람들이 더불어 교제하지 않으니, 반드시 학문에 여러 갑절 힘써서 옛일을 게을리하지 말라.” 하였는데, 공이 과연 우리 나라의 현명한 재상이 되었다. 속소학에 나온다.

(43) 울곡(栗谷) 이이(李珣)선생의 어머니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는 진사(進士) 신명화(申命和)공의 둘째딸이다. 어려서부터 온화하고 올바르며 절개가 굳고 청렴하며 조용하고 겸손하며, 또 경전(經傳)을 환히 알고 문장도 잘 지었으며, 바느질·자수·그림 등에 이르기까지 정통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어버이에 대한 효도가 더욱 지극하였다. 시집가게 되자 더욱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여, 집안의 잔치에 여자 손님들이 모두 웃으면서 이야기 하였는데 신씨만 혼자 잠자코 있었다. 시어머니 홍씨(洪氏)가 보고 말하기를, “새아기는 어찌 말하지 않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여자는 문밖에 나가지 않으므로 본 바가 전혀 없는데 오히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하자, 한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다. 남편인 찬성공(贊成公) 이원수(李元秀)의 성품이 뜻이 크고 기개가 있어 재산 늘리는 것을 일삼지 않으니, 신씨가 물품을 절약하여 썼으며,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바가 없었다. 남편이 간혹 실수가 있으면 반드시 조용하고 바르게 충고하였으며, 자녀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훈계하였고, 첩과 노비들을 반드시 온화한 안색으로 거느렸으며 일찌기 꾸짖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환심을 모두 샀다. 그가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시에 이르기를,

“돌아보니 고향은 아득하기만한데

回首北村時一望

흰구름만 저문 산을 날아내리네.

白雲飛下暮山靑

하고, 또 이르기를,

“밤마다 달을 향해 비나니

夜夜祈向月

생전에 만나볼 수 있기를 기원하노라.

願得見生前”

하였으니, 대개 이미 시집간 지 오래 되었어도 부모에 대한 효성이 줄어들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 사람들이 그를 사임당(師任堂)이라 일컫고 또한 따라서 그를 칭송하여 말하기를, “마땅히 현명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신씨행장(申氏行狀)과 호상기문(湖上記聞)에 나온다.

(44) 울곡(栗谷: 이이(李珣))선생의 아내인 정경부인(貞敬夫人)¹⁴⁾ 노씨(盧氏)는 중부시

14) 조선조 때 정1품이나 종1품인 문무관의 아내에게 주던 봉작(封爵).

정(宗簿寺正) 노경린(盧慶麟)의 딸이다. 온화하고 유순하며 인자하여, 군자의 배필이 되어 그 덕을 거스름이 없었고, 서모(庶母: 아버지의 첩)를 친어머니 섬기듯 섬겼으며, 종사(宗姁: 큰집의 만동서) 곽씨(郭氏)를 받드는 데에 성의를 다하였고, 여러 첩을 은혜로써 대우하여 자매와 같이 여겼으며, 첩의 자식을 자기 소생과 같이 사랑하고 길렀으며, 여러 조카를 자기 집안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였고, 집안과 이웃 사람들을 예의있게 대하였으며, 시비(侍婢: 옆에서 시중드는 계집종)처럼 미친한 자에 이르기까지도 일찌기 성내는 법이 없었다. 선생이 죽은 후에 크고 작은 집안의 살림살이를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자손으로 하여금 일체 주관하게 하고, 모든 법도를 선생이 살아계셨을 때와 같이 하였다. 만력(萬曆: 중국 명나라 신종(神宗)의 연호)의 난(亂)¹⁵⁾에 아들과 조카에게 이르기를, “나는 달리 생명을 아낄 마음이 없다. 타향을 진진하다 죽느니 차라리 파산(坡山)의 묘소 곁에서 죽겠다. 너희들은 나를 염려하지 말고 군사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아들과 조카가 듣지 않으니, 부인이 말하기를, “나는 남편과 사별한 지 이미 9년이 되었으니, 죽지 않은 목숨이 아니냐? 난리를 만나 구차하게 사는 것이 어찌 의롭겠느냐? 다시 말하지 말아라.” 하고, 즉시 파산의 묘소 곁으로 쫓아가 있다가 적(賊)을 만나 굴하지 않고 죽었다. 다음해에 정려(旌閭)하도록 특별히 명하였다. 율곡행장(栗谷行狀)에 나온다.

(45) 상공(相公)인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어머니 최씨(崔氏)는 가법(家法)이 매우 엄하여, 친오빠 최정수(崔廷秀)가 같은 동네에 살아서 자주 서로 만났는데, 반드시 시종으로 하여금 옆에 있도록 한 후에야 서로 대하였다. 여러 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은 나이가 이미 찼으니 예법을 알 만하다. 비록 친척처럼 절친한 자리라 하더라도 즐거워하고 웃으면서 서로 희롱해서는 안되니, 앉거나 눕거나 말할 때에도 분별이 있어야 마땅하다.” 하였다. 속소학에 나온다.

(46) 은은당(隱隱堂) 조인(趙遴)의 아내 김씨(金氏)는 부잣집에서 자라났으나 결코 교만하거나 잘난체하는 버릇이 없었고, 행동거지와 말을 예에 맞도록 힘썼으며, 소학(小學)¹⁶⁾·내칙(內則) 등의 책을 읽기 좋아하여 자녀를 교육할 때 반드시 이 법도대로 하였고, 제사를 받들고 손님을 대접할 때에는 더욱 공경을 더하였으며, 고기를 자르고 채소를 썰 때에 반드시 네모반듯하게 하였고, 천첩(賤妾)을 대우하기를 손아래나 손위 동서와 같이 하

15) 조선조 선조(宣祖) 25년(1592년)부터 31년(1598년)에 이르는, 전후 7년에 걸친 일본의 침략 전쟁인 임진왜란(壬辰倭亂).

16) 중국 송(宋)나라 유자징(劉子澄)이 주희(朱熹)의 가르침을 받아 지은 아동용 교훈서. 일상생활의 법절을 비롯하여 격언·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은 것임.

였다. 항상 여러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에게 가까운 사람은 바로 어머니이니, 너희들이 어찌 소홀히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공이 간혹 과실이 있으면 부인이 반드시 조용하게 잘 충고하였으므로, 공이 좋은 보좌관으로 여겼다. 속소학에 나온다.

(47) 문효공(文孝公) 조지서(趙之瑞)의 부인 정씨(鄭氏)는 문충공(文忠公) 포은선생(圃隱先生: 정몽주(鄭夢周))의 증손(曾孫)이다. 연산군(燕山君)의 갑자사화(甲子士禍)¹⁷⁾에 조공(趙公)이 붙잡혀서 정씨와 헤어지며 말하기를, “내가 만약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신주(神主)를 받들겠소?” 하니, 정씨가 말하기를, “마땅히 죽을 힘을 다해서 삼가 보전하겠습니다.” 하였다. 공이 과연 죽음을 당하고 그 집안이 몰관(沒官: 죄인의 재산이나 가축을 관아에서 몰수함)되었다. 정씨의 아버지가 장차 번고를 당하게 되자 그 딸을 돌아오게 하였었는데, 정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돌아가신 남편이 나에게 신주를 부탁하여, 죽을 힘을 다하겠다고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신주를 안고서 그 집으로 가 성의를 다하여 받들었으며, 남편의 상례(喪禮)를 지켜서 3년을 마쳤다. 중종반정(中宗反正)¹⁸⁾에 이르러 그 일이 조정에 알려지니, 정려(旌閭)하도록 명하였다. 속소학에 나온다.

(48) 상공(相公)인 상촌(象村) 신흠(申欽)의 부인 이씨(李氏)는 청강공(淸江公) 이제신(李濟臣)의 딸이다. 근검하고 스스로 본분을 지켜, 잔치할 때마다 내외종(內外從)의 손아래·손위 동서들이 매우 성장하여 사치스럽고 아름답기에 힘쓰는 것을 가지고 서로 뽐내었는데, 유독 이씨만은 몸치장을 거의 하지 않았으므로, 식견 있는 사람들이 경탄하였다. 상공이 처음 진랑(鎭郎)¹⁹⁾이 되었을 때 내실(內室)에 뇌물을 바쳐 아침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씨가 그것을 물리치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 뇌물로 인하여 집안의 규범을 더럽히겠는가?” 하였다. 아들 신익성(申翊聖)이 공주(公主)에게 장가들었는데, 이씨가 집안의 번영에 대해 더욱 삼가서, 항상 겸허함을 지키고 오직 자기의 직분만을 일삼으니, 백사(白沙) 이상공(李相公: 이항복(李恒福))이 당세의 어진 부인 가운데 이씨가 으뜸이라고 칭송하였다. 속소학에 나온다.

17) 조선조 연산군(燕山君) 10년(1504년)에 일어나 사화.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尹氏)가 폐위(廢位)된 사실을 임사홍(任士洪)으로부터 알게 된 연산군이 성종(成宗)의 후궁(後宮)들과 왕자들을 죽이고, 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성준(成浚)·김굉필(金宏弼) 등 폐위 사건에 관련된 10여 명의 제신들을 학살하고, 이미 죽은 한명회(韓明會)·정창손(鄭昌孫) 등을 부관 참시(剖棺斬屍)하였다.

18) 연산군 12년(1506년)에 성희안(成希顔)·박원종(朴元宗) 등이 연산군을 폐하고, 진성대군(晋城大君: 중종)을 임금으로 추대한 일. 연산군은 강화 교동(喬桐)으로 쫓겨 나갔음.

19) 조선조 때 이조(吏曹)의 정랑(正郎)과 좌랑(佐郎)을 이르던 말. 내외 관원을 천거·전형하는 데 가장 많은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

(49) 아고(莪皐) 정응기(丁應璣)공의 아내 정씨(鄭氏)는 평소에 정숙한 덕이 있었는데, 만력(萬曆) 정유재란(丁酉再亂)²⁰⁾에 시부모를 모시고 신산(新山)으로 피하여 들어갔다. 갑자기 적병(賊兵)을 만나 늙은 시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장차 늙은 시어머니에게 미치게 되었는데, 정씨의 용모를 보고 위협해서 데려가고자 하니, 정씨가 말하기를, “나의 늙은 시어머니를 살려 준다면 너를 따르겠다.” 하였다. 적이 그 말을 믿고서 군대를 피할 만한 곳을 가리키고는, 부인을 억지로 말에 올라타게 하였다. 가다가 1리(里)쯤 다다랐을 무렵 부인이 스스로 목을 찢어 떨어져서 죽으니, 적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진실로 효성스러운 열부(烈婦)로다.” 하고, 감히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 일이 조정에 알려지니, 정려(旌閭)하도록 명하였다. 효열기(孝烈記)에 나온다.

(50) 증좌승지(曾左丞旨) 조경우(趙景祐)공의 아내 성씨(成氏)는 시부모를 매우 효성스럽게 모셨는데, 그 며느리 박씨(朴氏)도 효성과 절개로 널리 알려졌고, 그 손주며느리 신씨(申氏) 역시 효성스러운 며느리로서 칭송을 받았다. 한 집안 삼대의 효성과 절개는 사람들이 더욱 하기 어려운 바이니, 어질고도 어질도다! 속삼강록(續三綱錄)에 나온다.

(51) 훈도(訓導) 김련(金鍊)공의 아내 김씨(金氏)는 집서란(執徐亂: 임진왜란)에 남편은 망우당(忘憂堂) 곽선생(郭先生: 곽재우(郭再祐))의 화왕산(火旺山) 의병(義兵)에 나아가고, 홀로 세살난 아이를 안고서 산골짜기로 피해 숨었다. 적을 만나, 어린아이를 빼앗고 강간하고자 하므로, 마침내 의롭게 죽었으니, 절개있도다! 정려(旌閭)하도록 명하였다. 속삼강록에 나온다.

(52) 화남(華南) 한경(韓敬)공의 아내 정씨(鄭氏)는 정성이 신명을 감동시켜, 남편이 병으로 죽게 되어 약으로도 구할 수 없었는데, 손가락을 잘라 피를 흘려넣어서 다섯 달 동안 살 수 있게 되었다. 일이 널리 알려져서 급복(給復)²¹⁾하였다. 한씨가승(韓氏家乘)에 나온다.

(53)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선생의 어머니 장씨(張氏)는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선생의 딸이다. 하늘이 충명함을 부여하여, 일찌기 규범(閨範: 여자가 지켜야 할 도덕)을 배우고 시서(詩書)에 아울러 통하였다. 십여세에 시를 지어 이르기를,

20) 임진왜란 뒤에 도요토미 히데요시(豐臣秀吉)의 화의 조건 말살로 말미암아, 조선조 선조 30년(1597년) 정월에 한 번 패한 왜군(倭軍) 카토오 키요마사(加藤清正)군이 14만 대군의 병력을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 난리.

21) 복호(復戶)를 줌. 충신·효자들에게 부역을 면제하여 주는 것임.

“내 몸은 바로 부모의 몸이니

身是父母身

감히 이 몸을 공경하지 않겠는가

敢不敬此身

이 몸을 만약 욕되게 한다면

此身如何辱

이는 바로 부모의 몸을 욕되게 함이네.

乃是辱親身”

라고 하였다. 자라서 시집가 후처(繼室)가 되었는데, 전부인의 자식을 자기 자식과 같이 돌보고, 시부모를 효성스럽고 공손하게 섬겼으며, 남편을 손님처럼 공경하였다. 임신해서는 열녀전(烈女傳)의 훈계를 생각해서, 비록 과일이나 채소류라 하더라도 모양이나 색깔이 완전하거나 바르지 않은 것은 모두 입에 대지 않았고, 친척간에 수모연(壽母宴: 장수하는 모친을 위한 잔치)이 있어 기악(妓樂: 기생과 풍류)이 함께 베풀어지고 귀신가면이 서로 희롱하였는데, 부인이 머리를 숙여 쳐다보지 않고서 종일토록 얼굴을 들지 않았다. 평생동안 상스러운 말과 버릇없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고, 여러 자녀를 가르칠 때 반드시 정성스럽게 타이르기를 반복하였는데, 일찌기 이르기를, “착한 자는 사람들이 가까이하고 자 하는 바이다. 지금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가리켜 말하기를, ‘네가 착하면 기쁘고, 네가 착하지 않으면 화가 난다.’라고 하니, 착한 일을 마땅히 해야 함은 사람들의 마음에 같은 바이다.” 하였다. 일찌기 실을 짤 적에 어린 계집종이 잘못하여 거의 반을 불살랐는데, 부인이 천천히 이어 짜면서 끝내 성내지 않았다. 자녀 가운데 지극히 사랑하던 자가 불행하게도 일찍 죽었는데, 슬픔을 억눌러 지나치게 상심하기에 이르지 않고서 말하기를, “내가 애통해하여,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남겨 주신 몸을 손상시켜서는 안되겠다.” 하였다. 선생이 귀하게 되어 부인에게 은혜를 돌리니, 사람들이 모두 영광스럽게 여겼으나, 부인은 기쁜 기색이 아니었고, 더욱 수행하여 선행을 쌓으려는 뜻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기를 거듭하였다. 그 후 4년만에 죽으니, 해로한 지 54년이고, 향년(享年) 83세였다. 장씨실기(張氏實記)에 나온다.

예전의 어진 부인으로서 본받을 만한 자가 어찌 이에 그치겠는가마는, 건문이 좁고 학식이 천박하여 아는 것이 적어서 대략 위와 같이 열거하였으니, 미흡한 바는 다시 식견이 높고 현명한 분을 기다린다. 또한 이 책은 감히 옛사람을 칭송하고 드러내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단지 개인의 집안에 알아듣게 일러주고자 하는 바이고, 또한 한바탕 이야기나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착한 마음을 감동시켜 일어나게 해서 그 행동에 실제 효과

가 있게 하고자 하는 바이다. 과연 이로 인하여 미루어서 널리 펼 수 있다면, 어찌 어진 부인이 되지 않겠는가? 보는 자는 깊이 유념할지어다. 착한 행동은 끝이 없으니, 어찌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비록 자기의 소행에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오히려 스스로 다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더욱 힘쓰도록 항상 유념한다면, 마땅히 어진 부인이 될 것이다.

閨 門 要 覽

編 著：韓 永 雷

筆 寫：曹 永 悟

孝父母 在家時 一心奉供 凡百無違 適人
 後 善事舅姑 敬承夫子 無貽羞辱於父母
 是為女子之孝也 善待兄弟之妻 以安父母
 之心 亦女子孝父母之大関也 不可不念
 心 亦女子孝父母之大関也 不可不念

孝舅姑 上 每朝 上 早起盥洗 上 適舅姑寢所 上 問夜
間安否 上 進恒食諸物 上 必以柔聲婉容 上 承藉之
餘 上 每日侍奉 上 進退坐立 上 惟命是從 上 衣服飲食
惟意是適 上 固或有違 上 凡百所營 上 必咨稟而
後 上 行 上 無或自專 上 後 上 適寢所 上 定其褥席
察其溫清 上 道萬福安寧而後 上 退 上 如有不安

12	11
----	----

惡言二加之也非時祭則衣盛服忌祭則衣淡服若祖以上忌祭則衣淺淡服忌祭時入齋罷齋皆行素即喪日也元是不佳齋戒時如酒食肉嗜吸草烟元是不佳齋戒時如或口橫烟具手執祭物其為無道甚矣神若有知其肯享之切戒切戒陳設之儀飯居神位之右奠居神位之左飯盞居飯左匙筋櫟居中醬櫟居奠右是為神位前第一行也麵居右之端餅居左之端肉櫟居麵之左次櫟居中蒲櫟居餅之右是為

第二行也。脯居右之端。醢菜居左之端。醢菜居脯之左。鹽居醢菜之左。醢菜居鹽之左。鮓居醢菜之右。是為第三行也。六果居南。棗居右之端。禮所謂尚棗是也。栗次之。柿梨蓮栢葡萄藥果正果。隨宜取用。人造果。雖美。必居下。是為第四行也。序立位。男位於東階下。以左為上。婦位於西階下。以右為上。世各為一行。不可混為無分也。時祭儀。出主。參神降神。進饌。初獻。亞獻。終獻。備食。闔門啓門。進茶受胙。告利成。辭神納主。徹饌。忌祭。無受。

食時添酌神匙正筋五斗辭神後焚祝主單獻則無祝
 依神主既成之禮而行矣日勢雖異貧富貴賤誠
 心則何可殊也且不習於先時且雖當他日奉主
 之時何可行也主婦為亞獻諸婦女一
 執事辰拜儀主婦參神亞獻備食辭神皆四拜而止外食
 皆四拜諸婦女參神辭神皆四拜而止外食
 時有再拜之文四拜展拜位參神辭神在
 家以有主婦當四拜展拜位參神辭神在
 西階下亞獻備食時在香案前小西魚肉

剪割之餘 當埋於潔處 不可慢棄
 本집인바 이라 초원은 그 본을 이 본이 노
 법을 보듯 할 리히 이삼스라 그 흙이 노
 가기로 처중의 흙을 삼으니 그 흙이 노
 는 색이니 저사이에 흙이 되니 그 흙이 노
 성을 극진히 가나 흙이 되니 그 흙이 노
 가히 우점지이니 흙이 되니 그 흙이 노
 입각일지니 흙이 되니 그 흙이 노
 더욱그정형을 지니니 흙이 노
 원기에서 압착을 하여나 바나 이리
 금씨못고것을 밟으니 바나 이리
 기계산고것을 밟으니 바나 이리
 되얌고것을 밟으니 바나 이리
 각지얌고것을 밟으니 바나 이리
 들외니 바나 이리
 히원양고것을 밟으니 바나 이리

치접어누는국백역절슬지제이것저은이논뮈근
는시물벤볼벤가키인면이극상사외로크뮈를갠
포는은먹흔먹이경딘그홀날셔만사뮈뎡니
침물핏먹먹이잇제우씨바비노닐찰당안
시훈볼을까베잇고홀칠드에피곤반조지계히
벤역혼요에잇고죽지거함완우더제부사하이우
억가떡구이나수그러이이불기욱일이에되리
네에에이고너더릭다름신혹질과파생은또업와
잇잇잇고편이럼이차한은입거허와화혼점잇
고고나기는노신신월은지후슬제지복박운악
식창이산벤신는위은기근압은아일거말호야이
희쳐이적억귀가개노자뒤바원시에고팔호며
는는노점가압본억번간신틀현더다형기로여기
숙벤돌시에헛덕가는절이고이고소입치외품머
치억제는잇제에이방히만논곳기외복디더그퍼
웬가줄가요줄고잇이경악에히떡늘입은능무방
억메이노욕러강고인제아제몸퇴의이나느지제이
에잇노티물요전잔위은름글음붓테와이담못물와
잇고고이은족지디는물떠이들이출제은근복출미취
고숙포고국수는흑간잇말오지논가되외범등

邪味_{ㄉㄨˊ}割_{ㄍㄜˋ}不正_{ㄉㄨˊ ㄋㄟ}不食_{ㄉㄨˊ ㄋㄟ}席不正_{ㄒㄧˊ ㄋㄟ ㄋㄟ}不坐_{ㄉㄨˊ ㄋㄟ}目不視_{ㄉㄨˊ ㄋㄟ}邪色_{ㄉㄨˊ ㄋㄟ}耳不聽_{ㄉㄨˊ ㄋㄟ}淫聲_{ㄧㄣ ㄋㄟ}喜聞善言_{ㄒㄧˇ ㄋㄟ ㄋㄟ}樂道正事_{ㄌㄜˋ ㄋㄟ ㄋㄟ}如此則生子_{ㄋㄟ ㄋㄟ ㄋㄟ}形容端正_{ㄒㄩㄥ ㄋㄟ ㄋㄟ}寸過人矣_{ㄘㄨㄣˋ ㄋㄟ ㄋㄟ}飲食衣服處_{ㄉㄨㄥ ㄋㄟ ㄋㄟ}皆有節中_{ㄉㄨㄥ ㄋㄟ ㄋㄟ}勿使過度_{ㄉㄨˊ ㄋㄟ ㄋㄟ}飲食_{ㄉㄨㄥ ㄋㄟ}過度則生病_{ㄉㄨˊ ㄋㄟ ㄋㄟ}不及則損氣_{ㄉㄨˊ ㄋㄟ ㄋㄟ}衣服_{ㄧ ㄋㄟ}太溫則損氣_{ㄉㄨˊ ㄋㄟ ㄋㄟ}太寒則生病_{ㄉㄨˊ ㄋㄟ ㄋㄟ}居處_{ㄍㄨ ㄋㄟ}太熱則生病_{ㄉㄨˊ ㄋㄟ ㄋㄟ}寒與濕_{ㄏㄢ ㄋㄟ ㄋㄟ}亦皆所以生病_{ㄉㄨˊ ㄋㄟ ㄋㄟ}當一一注意而飲食過度_{ㄉㄨˊ ㄋㄟ ㄋㄟ}不惟生病_{ㄉㄨˊ ㄋㄟ ㄋㄟ}聰明太減_{ㄉㄨˊ ㄋㄟ ㄋㄟ}凡生冷腐敗_{ㄉㄨˊ ㄋㄟ ㄋㄟ}硬強難化者_{ㄧ ㄋㄟ ㄋㄟ}皆不宜養生_{ㄉㄨˊ ㄋㄟ ㄋㄟ}並加深戒也_{ㄉㄨˊ ㄋㄟ ㄋㄟ}若不顧損益_{ㄉㄨˊ ㄋㄟ ㄋㄟ}惟以勉從其所欲_{ㄉㄨˊ ㄋㄟ ㄋㄟ}為愛者_{ㄉㄨˊ ㄋㄟ ㄋㄟ}反害其子也_{ㄉㄨˊ ㄋㄟ ㄋㄟ}不智孰

婦人妊子寢不側坐不邊立不跛不食
 育子孫所以繼世也豈可忽乎故古者

19

賢婦之欲善教其子女者一可不深念也哉
於他人乎七歲五猶然則而況於過十歲者耶
昔聖人豫教其別七年一男女不同席而坐
不共器而食其意深矣外同氣五猶然則而況
賢婦之欲善教其子女者一可不深念也哉
語曰教兒與後又曰幼而善教母之任也古
就改亦不可以惡言暴罵非禮且浪打古
必以格言諄諄誘使之盈耳充腹德器成
其焉以無溺愛無偏惡無誑誘無匿非

21

分而不宜多言度其理乘間微告於尊長
叔妹夫之同氣也舅姑之所愛也
則夫與舅姑一悅失於叔妹則夫與舅姑一
其可忍乎言必敬顏必和雖幼穉
視如尊長雖倉卒待如平常飲食衣服
務要精潔出入往來必須起敬雖有過差
勿勿輕言如入其不得已也必婉辭略陳
不使尊長知之如或不從則必當謹修吾
分而不宜多言度其理乘間微告於尊長

22

叔妹夫之同氣也舅姑之所愛也
則夫與舅姑一悅失於叔妹則夫與舅姑一
其可忍乎言必敬顏必和雖幼穉
視如尊長雖倉卒待如平常飲食衣服
務要精潔出入往來必須起敬雖有過差
勿勿輕言如入其不得已也必婉辭略陳
不使尊長知之如或不從則必當謹修吾
分而不宜多言度其理乘間微告於尊長

23

叔妹夫之同氣也舅姑之所愛也
則夫與舅姑一悅失於叔妹則夫與舅姑一
其可忍乎言必敬顏必和雖幼穉
視如尊長雖倉卒待如平常飲食衣服
務要精潔出入往來必須起敬雖有過差
勿勿輕言如入其不得已也必婉辭略陳
不使尊長知之如或不從則必當謹修吾
分而不宜多言度其理乘間微告於尊長

24

35

38

37

40

39

之心_二為心_一時_レ愛恤衆妾_二以衆妾之心_一為心_二文王_一安之_二衆妾_一化之_二和氣所感_一福祿_二日至_一子孫_二衆多_一而篤生武王周公_二皆聖人也_一君子_二謂太姒之德_一配文王_二外_レ親周_一共姜_二衛世子共伯之妻_一齊姜氏之女也_二性行_一貞烈端淑_二共伯_一早卒_二無子_一猶守義_二其父母_一欲奪而嫁之_二共姜_一作柩舟之詩_二以死自誓_一其芳名卓節_二萬世不朽_一不_レ衛_二嚴於男女之別_一審於喪禮之辨_二孔子_一聞而

41

賢之_二己貴勤於紡績_一又歷舉古典_二教誨其_一子_二極有條理_一朱子_二取而為教_一見_二小學_一孟子之母仇氏_二其舍近墓_一孟子之少也_二嬉戲_一為墓間之事_二踊躍築埋_一仇氏曰此_二非所以居子也_一乃去舍市_二其嬉戲_一為賈衛_二旁_一仇氏曰此_二非所以居子也_一乃徙舍學宮之_二此_一真可以居子_二遂居之_一仇氏曰_二孟子幼時_一問東家殺猪_二何為_一母曰欲啖汝_二既而悔曰吾聞古有胎教_一今適有知而欺之

42

是_二教之不信_一乃買猪肉_二以食_一既長就學_二遂至亞聖_一見_二女傳_一孟子曰_二今道_一不用而母老_二是可憂也_一母曰婦人之禮_二精五飯_一常酒醬_二養舅姑_一縫衣裳而已_二故_一有閨門之修而無境外之志_二易_一曰在中饋_二無攸遂_一詩曰無非無義_二以言婦人_一無擅之義也_二子行乎子義_一吾行乎吾禮而已_二君子_一謂孟母_二知道_一吾行乎吾禮而已_二趙姬_一妻姬氏_二晉文公之女也_一初_二成子_一奔狄_二娶狄女季隗_一法趙盾_二既入晉為卿_一文公

43

以女妻之_二生三子_一趙姬固請成子_二迎長子_一盾_二母子於狄_一尊季隗為正嫡而以盾為嫡子_二自居庶妾之位_一君子義之_二齊大_一王孫賈之母_二慈子而識大體_一責王孫賈失王之_二處曰汝朝出而不還則吾_一倚門而望_二汝暮出而_一不還則吾_二倚閭而望_一汝今事王_二王_一出_二走_一不知其處_二汝尚何歸_一王孫賈乃入_二市中曰淖齒弑吾君_一與我共誅淖齒者_二右袒_一乃得四百餘人_二擊淖齒報君讎_一立王子法章_二恢復其國_一君子_二賢其母_一及_二小學_一蔡人妻

44

上 宋人之女也。既嫁而夫有惡疾。其母將改嫁之。女曰：「夫之不幸，乃妾之不幸也。奈何去之？適人之道，一與之醮，終身不改。」不幸遇惡疾，何以得去？終不聽。君子賢之。初，見其夫拾遺金道而諫曰：「志士不飲盜泉之水，且賢者不受嗟來之食。」夫子何戀非禮之金而甘為不義乎？答曰：「金無主者，乃妾曰：『金無主者，心亦無主。』」以樂羊之難，乃俟於道而還其人。羊又遊學未成而歸，妻

45

知其為夫骨。因負骨出潼關，力竭不能行，乃置骨於巖下，坐其傍而死。潼關人哀而賢之，因葬其夫婦，立祠以祀之。觀女漢人妻詩：「妻龐氏，至孝姑，姑好飲江水，一遠汲以供之。姑好食江魚，龐氏毀莊以易之。舍側忽湧甘泉，其味勝江水。泉中，日躍雙鯉，取以供之。人皆以為孝感所致。其夫當行成，行時屬孝婦曰：『我生死未可知，幸有老母，無他兄弟，備養。』吾不還。」

47

問之曰：「思鄉而歸，妻方織，乃引刀自斷機絲，曰：『積寸成尺，積尺成丈，積累不已，乃成全匹。』今夫子學業未成而歸，猶妾之斷機而盡棄前功也。」羊惕然感悟，勉卒其業。後為大將，遂成大功。君子賢其妻，要及。秦范杞良妻姜氏，婚後纔三日，夫遠赴秦，始皇長城之役，久而不還。姜氏持衣遠尋，聞其夫已死，乃檢骨於積骸之中，滴已血以驗之。血皆不入，大哭三晝夜，不徹。城忽崩，見白骨，遂滴血滲入骨而不可拭矣。

46

養吾母乎？婦應曰：「謹奉教。」夫果死，不還。婦養姑不表，慈愛愈固。紡績織紵，以為家業。終無嫁意。居喪三年，其父母哀其少無子而早寡也，將取而嫁之。孝婦曰：「夫去時，屬妾以供老母。」妾既許諾之，夫養人老母而不能卒，許人以諾而不能信，將何以立於世？且欲自殺，其父母懼而不敢嫁也。遂使養其姑。二十八年，姑八十餘，以天年終。賣其田宅財物，以葬之。終奉祭祀。淮陽太守以聞，使使者賜黃金四十斤，復之。

48

母欲改嫁之時令女一曰仁者不以威衰改節
義者不以存亡易心乃自截其耳以
為誓其後父母又強欲嫁之女又斷鼻
以全節司馬懿嘉之聽其立後為嗣又見資
鑑及唐鄭義宗妻盧氏略涉書史事舅姑
甚得婦道夜有群盜入其家長幼奔竄
惟老姑在室利盧氏冒白刃以身蔽姑如
為賊箠擊幾死賊去後人問盧氏曰如
何不去答曰鄉鄰有急猶當救護況於
姑乎脫有不幸義豈獨生咸服其義

53

觀唐書崔山南曾祖母長孫夫人年高無齒
祖母唐夫人少時朝必拜於堂下輒上堂
乳哺其姑姑不粒食數年而康寧臨卒
謂家人曰願新婦有子有孫皆如新婦孝敬
後山南果以厚祿孝養唐夫人唐見
書及河東節度使柳公綽妻韓氏相國休
曾孫歸柳氏三年未見其啓齒而笑敏
眉而怒事舅姑以孝事夫以敬御下以恩
持身以儉不着錦繡衣不采金碧與粉黃連
熊膽為丸賜諸子吞之助永夜學習

54

其子仲郢果為賢大夫見小學及魏州
戶王凝妻李氏夫卒携幼子奉喪歸止於
旅舍主人以其有喪不納李氏固請
主人樓其手而出之李氏泣曰天乎吾
不幸遭禍而此手為人所執乃引刀自臂其
掌有司聞之震其烈而治主人罪見五
書及宋河南程夫子母夫人侯氏幼時讀古
詩見女子不夜出之句自是日暮則不出
房閤及歸程氏常舅姑以孝誼與夫公
相待如賓常自謙虛雖小事必稟而後行

55

撫諸庶子及諸姪無異已出愛子而教之有
度見繁美而責之曰幼求補欲則長當何如
見與人爭則雖直而不石曰患不能屈則不患不能
仲見諸子叱奴婢則戒之曰貴賤雖殊人
則一也夫公有怒則必為寬解惟諸兒有
過則不掩曰子之所以不肖由母教其過而父不
知常教兒從賢師友遊雖食利有客則喜為
之具雖好父而不喜為詞章見世之婦女或
以文章筆札傳於人者則深以為非實女中君
子宜其生君子子也見近思錄呂榮公

56

母中國夫人魯氏。參政宗道之女也。性嚴有法度。雖甚愛子。教之。事事勿自行。必循矩規。榮公。德器成就。果大異衆人。榮公之妻張夫人。待制昱之女也。與榮公同處六十年。未嘗一日違志。不違賢夫之志。則其賢學。唐崔相國玄暉。母夫人盧氏。嘗戒子曰。吾聞諸姨兄辛公玄馭。兒子從官者。用度窘乏。則好消息。貨充足。則惡消息。吾以為確論。又曰。仕宦者。將錢物。上其父母。則父母

57

養。史及二。趙通判。妻雍氏。夫為池州通判。隨居官舍。元兵圍城。勢急。昂發。謂雍氏曰。我當死義。子可出避。妻曰。公為命官。我為命官婦。公為忠臣。我獨不為忠臣婦耶。夫妻同時死。即千載流芳。女四書。楊香。晉農夫楊豐之女也。年十四時。父耕田。遇虎將噬。香踴身向前。按搗虎頸。虎驚走。父得生。蓋幼女馬能制虎。惟救父之心。切。知有父而不知有身故。天神。

59

但知喜說。不問此物。從何而來。以理所當得者。儉其已奉其親。善矣。如非理所得。與盜賊何別。縱無大咎。獨不內愧於心乎。蓋謂從官而窘。則必廉。充足則必貪。廉潔君子之道也。貪污小人之道也。其子謹奉其教。遂為賢相。及見唐書。宋尹和靖先生。母夫人陳氏。教子師程子。及長。應舉。見朝議欲害正人。策題語意不善。不對而出。告于程子曰。不復應舉。程子曰。歸告于母。乃告母。母曰。吾知汝。以善養。不願以祿。

58

感動也。長年十九。次七十六。有群盜。剽掠村落。二女亡匿嚴穴。盜或出之。女曰。吾寧死。不受辱。姊先投屋下而死。妹繼投。幾死。盜舍去。京兆尹嘉其貞烈。奏人余洪。妻鄭氏。為唐將王建封。所獲。獻其元帥。查文徽。悅其色。欲納為配。鄭氏責之曰。王師吊伐。宜褒忠旌節。建封行伍之將。尚不污節。公。元帥。奈何自為禍首。

60

韓太初^上妻劉氏^上姑患風疾^上徹晝夜^上鼓蠅蚊^上
 蝨^上瘡腐而生蛆^上徹除其蛆^上刺已臂取血^上和^上
 藥而進^上疾遂愈^上以孝聞于郡國^上見女^上書^上江^上
 東婦女^上略無交遊^上惟婚姻之家^上亦未嘗往^上
 來^上惟以信命贈遺^上致慇懃焉^上君子義之^上
 鄰下婦女^上不顧禮義^上任其自行^上君子非之^上
 學^上新羅名臣金開國公^上母夫人^上於開^上
 國公兒時^上日加訓飭^上不妄交遊^上一日^上偶^上
 宿女隸宦官家^上夫人^上貴之曰^上我^上老^上夜^上

惟望汝將為大器今汝與小兒遊戲淫
亂耶下泣不已公深受其罪奮然用力
終成大功及東史○高麗忠臣都青松堂
先生肅第四子婦徐氏夫亡後廬墓三年至
誠感神所執竹杖白筍湧生本朝太
宗大王嘉之賜白竹圖題白筍詩曰千載
滿湘恨不窮年年竹上見斑紅須知素節無
今昔白筍新生一兩叢因命旌閭
子孫至今榮之○本朝名臣佔畢
齋金先生宗直再聘婦貞夫人文氏十八歲歸

先生^자居十年^에先生^이沒^{하시}享年^이六十一^노
夫人^의年^이二十七^세國家^에遣官致祭^{하고}禮之^노
甚隆^이其後六年戊午^에被奸臣誣陷^{하고}害及泉
壤^고遷文氏于雲峯^{하니}歎曰家翁平生志節^은天
日^을照臨^{하니}死得謬禍^은是^은關於世運^이但當
順受^{하고}斷髮服喪^고在謫所九年^에一不啓齒^고
亦無惡尤^고天然正色^{이니}人皆敬服^{하니}見^은先生^이少時^에
一蠹鄭先生^은汝昌母夫人崔氏^은見先生^이少時^에
嗜酒醉倒^고痛責曰爾父既沒^에未^는人所賴而生
者^이惟爾也^니今爾如此^로吾誰賴乎^고先生

川深悟小更不近酒小篤學力行小遂成大賢小
 小見續○姜晉山君希孟夫人安氏自少執婦
 道甚善小成廟八年元子有疾擇將相法
 家調護小命移夫人所小夫人調其寒溫
 節其乳哺小不旬日而氣健小上悅之又
 嘉其宜家有法小賞賜甚厚及卒中廟特賜
 賻禮甚備小蓋前世罕比之恩數也皆謂其平
 生修善之致也小野錄○晦齋李先生庚地母
 夫人孫氏憂先生早孤無學相與對泣小
 割慈忍愛小送于先生之內舅愚齋先生梁山任所

而學焉其後先生益加自得遂成大賢
幼穉滿前恐不能保家益務農桑俟其稍長
捐貧資學戒之曰汝曹勉之無貽寡婦之子
無教之羞也其後諸子俱賢先生无
以大賢著其後諸子俱賢先生无
申氏常戒子曰寡婦之子人不與交必十
倍勤學毋墜舊服公果為東國賢相必十
小見續○栗谷李先生母夫人師任堂申氏進
士公命和之第二女也自幼溫雅貞潔聞靜

65

又曰夜夜祈向月願得見生前蓋已
嫁之久而孝不衰於父母也洛人稱之曰師任
堂又從而贊之曰宜其生賢子見中氏
湖上○栗谷先生妻貞敬夫人盧氏宗簿寺正
慶麟之女也和順仁慈配君子無違德事庶
母如事母奉宗如郭氏極其誠意待衆妾以
恩視之如姊妹撫妻子如已出恤諸姪
甚於私親待宗族鄰里以禮以至侍婢之賤
未嘗加怒先生沒後家政細大一使奉祀子
主之凡百節度一如先生在時萬曆亂

67

謙遜又通經傳善文翰至於針線刺繡圖畫之
類無不精妙尤篤於孝親及嫁益自檢
飭宗族燕會女客皆談笑申氏獨默如也
姑洪氏見之曰新婦蓋言對曰女子不出
門外一無所見尚何言哉一座皆慙
夫贊成公元秀性儻不事治產申氏
即用供給而凡事無所有擅夫或有失必
從容規諫子女有過必戒之御姐妾職獲
必以溫色未嘗苛比故皆得其歡心其
思親詩曰回首北村時一望白雲飛下暮山青

66

謂子姪曰吾無他偷生與其轉死他鄉寧死坡
山墓側爾輩勿以我為念善為避兵子
姪不肯夫人曰吾喪所天已九年命不
頑乎逢亂苟生何義勿復言即歸坡山墓
側遇賊不屈而死明年特命旌閭見
嚴其親兄廷秀居同里數相見必使侍人
在側而後與之相對戒諸女曰汝輩年已長
足知禮法雖親戚近之地不可嬉笑相謔
坐卧言語亦當有別小學○趙隱隱堂通

68

夫人金氏生長綺紈絕無驕矜之習舉止言動務合於禮好讀小學內則等書教子女必以是法奉祭祀賓客尤加敬割肉斷菜必使方正待賤妾如娣姒常語諸子曰父之所近是亦母也汝等何可慢乎公或有所過差夫人必從容善諫公視以為良輔見續趙文孝公之瑞夫人鄭氏文忠公國隱先生曾孫也燕山甲子禍趙公被執與鄭氏訣曰我若不返何以奉神主鄭氏曰當以死謹保公公果見殺沒其

69

相公稱當世賢婦以李氏為首見續我臯丁公應機妻鄭氏素有幽閑之德萬曆丁酉亂陪舅姑避入新山猝遇賊兵老舅被害將及老姑而見鄭氏容色欲脅去鄭氏曰活我老姑則從汝矣賊信之指避鋒處逼婦上馬行至一里許婦自剄墜死賊大驚曰真孝烈婦不敢復入其里事聞于朝命旌其閭見續贈左丞趙公景祐妻成氏事舅姑甚孝其子婦朴氏亦以孝烈聞其孫婦甲氏亦以孝婦見稱

71

家則鄭氏父將率還其女鄭氏泣曰公夫託我以神主許之以死抱神主詣其家盡誠奉之執其夫喪以終三年及中廟反正事聞于朝命旌其閭見續象林申相公欽夫人李氏清江公濟臣之女也勤儉有守每宴會中表娣姒甚盛務以修麗相高獨李氏略無容飾識者敬之相公初為銓郎時人有納利求媚於內者李氏斥之曰吾何可以利居垢家範見續子翊聖尚公主李氏益惧盛滿恒存謙虛而惟事已職白沙李

70

一家三世孝烈人所難能也賢乎哉賢乎哉見續訓導金公錄妻金氏執徐亂夫公赴忘憂堂郭先生大旺山義陣獨抱三歲兒避隱山谷遇賊奪幼兒欲脅去遂死義烈哉命旌其閭見續華南韓公敬妻鄭氏誠動神明夫病將死藥不能救而斷指注血得蘇五朔事聞而給復見續韓氏見續葛庵李先生逸母夫人張氏敬堂先生與孝之女也天賦聰敏早學閨範五魚通詩書十餘歲有詩曰身是父母身不敢不敬此身此身

72

量如可辱則乃是辱親身則及長嫁為繼室
 怙視前婦子如已出之事舅姑孝謹敬君子如
 賓當有娠念烈女傳之戒雖果蔬之屬形
 形色不完正者皆不接口族黨有壽母宴
 妓樂俱張鬼面交戲夫人以低頭收視
 竟日不舉眉平生不以鄙言媒語掛口
 教誨諸子女必諄諄反覆而嘗曰善者人之所
 欲也今夫三尺童子指而言曰汝善則喜
 汝不善則怒善之當為人心之所同然也
 當理織絲小婢誤熟至半夫人徐徐緝理

73

終不加怒子女之鍾愛者不幸夭死約情
 抑象怙不至過傷曰吾不以哀痛毀傷先父母遺
 體先生既貴推恩夫人人皆榮之夫
 人不色喜益以修行為善之意致禱復焉
 後四年卒偕老五十四年以享年八十三
 見張氏古昔賢婦人可效可法豈止是也
 客舉如石其所未及更俟高明且此篇非敢為後影前人設欲
 曉私門亦非為一場說話但欲感發善心實效其行以果能因此推廣
 豈不為賢婦人也覽者其深念之哉善行無窮豈可自足
 雖已之所行已無過猶自以為未盡念勉則當為賢婦人矣
 閨門要覽見終

74

1. 임·직원 현황

(1997년도 1월 현재)

직 위	성 명	문화원명	전 화 번 호	비 고
지 회 장	송승영	부 천	(032)651-3739	시민회관 내
부 지 회 장	이은구	이 천	(0336)635-2316	군민회관 3층
부 지 회 장	김종기	수 원	(0331)44-2161	권선구청 내
이 사	박영재	과 천	(02)504-6513	과천회관 2층
이 사	이형하	성 남	(0342)753-1020	농촌지도소 내
이 사	김승락	의정부	(0351)872-5678	구 보건소
이 사	최종규	포 천	(0357)32-5055	군청맞은편(자체원사)
이 사	민영신	양 주	(0351)40-6467	가남리 726(자체원사)
이 사	송재권	용 인	(0335)35-2033	김량장리 133-61
이 사	문춘기	구 리	(0346)553-3993	시민회관 1층
감 사	이상윤	안 양	(0343)49-4451	문화센터 4층
감 사	유재호	평 택	(0333)655-2184	문화예술회관 3층
사 무 국 장	김태훈	도지회	(0331)39-1020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간 사	백은영	도지회	(0331)39-1020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2. 문화원 현황

(1997년 1월 현재)

문화원	원장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부 천	송승영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8 시민회관 내	(032)651-3739
이 천	이은구	이천시 창전동 산1번지 시민회관 내	(0336)635-2316
수 원	김중기	수원시 권선구 교동 74	(0331)44-2161
성 남	이형하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96-2 농촌지도소내	(0342)781-1020
의정부	김승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7-23 구 보건소	(0351)872-5678
과 천	박영재	과천시 별양동 45	(02)504-6513
구 리	문춘기	구리시 수택동 374-1	(0346)557-6383
포 천	최종규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신읍리 33-45	(0357)32-5055
양 주	민영신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가남리 726	(0351)40-6467
평 택	유재호	평택시 비전동 847 문예회관 3층	(0333)655-2184
안 양	이상윤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1307-37	(0343)49-4451
용 인	송재권	용인시 김량장동 133-61	(0335)35-2033
동두천	조인희	동두천시 상패동 121	(0351)865-2923
화 성	천광인	화성군 향남면 평리 67-1 기양빌딩 5층	(0339)353-6330
안 산	류천형	안산시 고잔동 604	(0345)80-9823
남양주	이기영	남양주시 금곡동 산74-3 새마을회관 내	(0346)592-0667
광 명	정원조	광명시 철산동 222-4 시민회관 내	(02)618-5800
오 산	조석구	오산시 오산동 49	(0339)375-7755
군 포	서정선	군포시 당동 751-15	(0343)59-0661
안 성	최병찬	안성읍 보개면 양복리 산41 문예회관 2층	(0334)73-2625
여 주	조무호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2리 545-1	(0337)83-3450
파 주	이기현	파주시 아동동 산 31	(0348)941-2425
양 평	양혜석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510-1	(0338)71-3866
고 양	어 한	고양시 주교동 600	(0344)63-0600
김 포	류지만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28	(0341)84-6550
가 평	신현정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505-2	(0356)82-2016
광 주	박경득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경안리 산 9-8	(0347)61-0315
연 천	현문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옥산리 449-1	(0355)34-2350
하 남	구자관	하남시 덕풍동 426-10	(0347)795-1020
시 흥	정학진	시흥시 거모동 2575-4(원장님 댁)	(0345)494-4547

3. 경기 향토사학회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장	안 국 승	의정부시 의정부동 427-23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한국문화학교 교장	자 : (0351)872-5900 문 : (0351)872-5678
부 회 장	김 민 수	구리시 수택동 374-1 구리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	자 : (0346)557-6383 문 : (0346)553-3993
회 원	강 진 숙	과천시 부림동 주공A 720-301 과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자 : (02)503-2112 문 : (02)504-6513
"	정 동 일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04번지 2호 고양시청 공보담당관실	자 : (0344)62-6093 사 : (0344)905-7603
"	이 도 남	서울시 노원구 상계10동 670 주공A 908-606 양주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사료조사전문위원	자 : (02)931-3167 문 : (0351)40-6467
"	이 채 용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 785-1 양주문화원 이사	자 : (0351)871-4754 문 : (0351)40-6467
"	임 병 규	남양주시 양정동 764-1 남양주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	자 : (0346)66-8080 문 : (0346)62-0666
"	김 병 훈	의왕시 내손1동 352-1 안양문화원 사무국장	자 : (0343)29-9186 문 : (0343)49-4451
"	양 철 원	광명시 철산4동 467-38 광명문화원 사무차장	자 : (02)625-2621 문 : (02)618-5800
"	이 인 영	용인시 남동 196-2 용인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부소장	자 : (0335)36-4526 문 : (0335)35-2033
"	소 진 섭	부천시 원미구 심곡1동 367-30 부천문화원 향토문화연구 소장	자 : (032)663-4004 문 : (032)651-3739
"	성 희 모	파주시 법원읍 법원4리 139-2 파주문인협회 회원	자 : (0348)958-1840 문 : (0348)941-2425
"	이 명 수	동두천시 생연동 335번지 에이스A 202-803 동두천문화원 이사	자 : (0351)865-5248 문 : (0351)865-2923
"	이 우 형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중리 783 연천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	자 : (0357)33-1885 문 : (0355)34-2350
"	홍 정 덕	의정부시 호원동 우성A 202-1405 의정부문화원 향토문화연구위원	자 : (0351)874-3918 문 : (0351)872-5678
"	정 인 숙	수원시 팔달구 구천동 18-1	자 : (0331)252-4003 문 : (0331)44-2161
"	조 광 원	오산시 오산동 439-2 문협 화성군지부장	자 : (0339)374-4244 문 :
"	강 대 옥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20	자 : (0331)43-5090 문 : (0331)39-1020

4. 도내문화원 조직현황

(1996년 12월 현재)

구분 문화원	임원				회원				사무국		합계
	원장	부원장	이사	감사	고문	운영	일반	특별	국장	직원	
부천	1	1	19	1	5	11	8		1	3	50
이천	1	2	12	2	7	44	143	6	1	2	220
수원	1	2	25	2			35	13	1	4	83
성남	1	3	4	2		60		220	1	3	294
의정부	1	2	30	2	1	70	50		1	2	159
과천	1	2	14	2	1	58		4	1	2	85
구리	1	2	34	2	1		330		1	1	372
포천	1	2	16	2			127		1	2	151
양주	1	2	12	2		19	70		1	1	108
평택	1	3	6	2			34		1	1	48
안양	1	2	19	2	4	20	100		1	1	150
용인	1	1	19	2	2	5	470	3	1	1	505
동두천	1	2	8	2	10	10	23	20	1	1	78
화성	1	2	19	2		161			1	1	187
안산	1	2	26	2	2	133	288		1	2	457
남양주	1	2	20	2	7		43		1	1	77
광명	1	3	13	2			250		1	2	272
오산	1	2	36	2		36			1	1	79
군포	1	1	22	2	1		40		1	1	70
안성	1	2	12	1		9	31	13	1	2	72
여주	1	2	19	2	5		115		1	1	146
파주	1	2	12	2	5	15	300		1	1	339
양평	1	2	18	2	4		161		1	2	191
고양	1	2	9	2	3		124		1	1	143
김포	1	2	12	2			89		1	1	108
가평	1	2	16	2			120		1	1	143
광주	1	3	28	2			70	8	1	1	114
연천	1	1	9	2		40	151		1	2	207
하남	1	2	16	2	14	39	237	7	1	1	320
계	29	59	505	56	72	730	3,405	294	29	45	5,216

경 기 향 토 사 학

창 간 호

1996년 12월 15일 인쇄

1996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송승영

편집인 : 김태훈, 김민수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전화 : (0331)39-1020 FAX : 39-3785

인쇄처 : 동창프로세스

(비매품)

본 지는 국·도비 및 자부담으로 발간하였습니다

